

2002년 여름호

언론중재



특 집

명예훼손의 비교법학적 고찰

-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비교연구
- 공직자의 명예훼손소송과 그 법리
- 언론관련 명예훼손소송 추이 비교
-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연구

기획연재

일본 언론윤리법제의 현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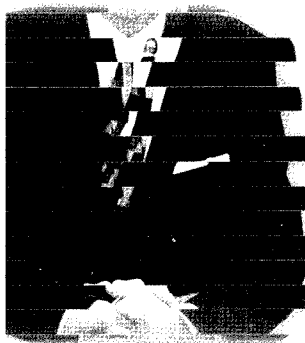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2002. 여름

차 례



계간/2002년 여름호 • 제23권 • 제2호/통권83호
 인쇄/2002년 6월 25일 • 발행/2002년 6월 30일
 등록/1981년10월14일 등록번호/바-692
 발행인/박 영 식 • 편집인/최 정
 인쇄인/이 병 석
 발행/언론중재위원회 • 서울 중구 태평로1가25
 (프레스센터빌딩15층)
 전 화:732-6031~5, 732-6011~3, 725-0050,
 730-9498, 2001-7627
 FAX:730-9420, 730-5487, 732-7585
 www.pac.or.kr
 석자,편집/태성인쇄기획
 인쇄/(주)제이디세텍

특 집

명예훼손의 비교법학적 고찰

- 4 •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비교 연구 • 성낙인
- 22 • 공직자의 명예훼손소송과 그 법리 • 배금자
- 37 • 언론관련 명예훼손소송 추이 비교 • 이재진
- 52 •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연구 • 윤철홍

기획연

68 • 일본 언론윤리법제의 현 주소 • 한영학

지방토론

79 • 경남지방토론회
언론보도의 면책요건과 한계 • 이병섭

언론보도와 언론

85 • 언론의 한건주의와 부정확한 예단이
빚어낸 이중살인 • 김창룡

위원칼럼

92 • 신문의 권위와 신뢰성 • 조균상

해외동향

94

자 료

- 100 • 언론중재신청사례
- 122 • 최근의 국내언론관계판결
- 144 • 외국의 언론관계판결
- 156 • 외국신문평의회사례

언론과

160

위원회소

166

언론법제관련

168

지상중

170 • On-Line 중재상담실

- * 본지는 전자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
-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이 책은 방송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반론보도 청구권에 관한 비교연구

I. 서론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유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자유보다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언론(기관)의 보도를 통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에 언론의 자유는 곧 언론보도의 자유로 지칭되기도 한다. 그런데 언론보도는 그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하여 한 번 보도되고 나면 그 보도 내용에 따른 보도당사자의 피해는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여기에 언론보도와 개인의 권리(인격권·사생활권) 사이의 조화가 요망된다.¹⁾

언론침해에 의한 피해의 일반적인 구제방법으로는 언론사에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방법, 피해구제기구를 이용하는 방법, 소송을 통한 구제방법이 있다. 한편 언론보도로 인한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언론사의 자율적인 구제나 민간단체를 통한 구제방법은 현실적으로 만족스러운 정도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인 효과를 동반하는 손해배상청구, 사전유지, 사죄광고, 반론권에 의한 구제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곧 궁극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통하여 결정될 사안이다.²⁾ 이 중 사죄광고제도는 종래 일반화된 방법 중의 하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³⁾에 의하여 판결문공시의 방법으로 대체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구제제도는 언론침해의 경우에서도 고

성 낙 인

서울대 법대 교수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
- 저서: 『헌법학』, 『헌법연습』, 『언론정보법』, 『선거법론』, 『프랑스 제5공화국의 각료제도』(불어판)
-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학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1)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 일반론에 관해서는, 성낙인, 『헌법학』, 제2판, 법문사, 2002, pp.375-410 참조.
- 2) 언론보도와 사법과의 관계 일반에 관하여서는, 법원행정처, 근대사법 백주년 기념 심포지엄 『언론과 사법 결과 보고서』, 1995 참조.
- 3) 헌재 1991. 4. 1. 89헌마160, 민법 제761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판례집 3, p.149 이하. 이에 관한 논의의 상세는, 성낙인, 『언론정보법』, 나남, 1998, 참조.

프랑스는 프랑스혁명 이후 언론자유의
남용이 심각하여 인격권 보호차원에서
반론권 제도 입법화

의·과실 등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고 손해 기타 법익의 침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며, 그 구체절차인 소송제도의 성질상 신속한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생각하면 언론에 의해 공격받은 개인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미흡한 점이 많다.

이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신속성·효율성·경제성을 기하기 위하여 반론권 또는 반론보도청구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반론권제도는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에 언론의 자유가 홍수를 이룬 시대에 그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으로 나타난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제기된 이론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모든 권리의 출발점인 동시에 그 구심점을 이루는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언론에 의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 엄중한 배상책임을 지우는 방법에 의하여 그 해결책을 찾았다. 그러나 대륙법계인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반론권을 제도화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현행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반론권은 바로 이들 프랑스나 독일의 제도를 계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반론권제도는 정기간행물과 방송(시청각매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비슷하므로 이하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정기간행물에 대한 반론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반론권제도의 연혁

1. 프랑스에서의 반론권제도의 도입¹⁾

1) 고전적 언론인 정기간행물에 대한 반론권의 도입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언론의 자유는 그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억압된 자유의 분출은 언론 자유의 남용문제 또한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균형추로서의 반론권을 입법화하려는 노력이 제기되었다. 1799년(혁명력 7년) 500인회에서 명예를 침해당한 자에게 반론기사를 허용하는 최초의 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반론권 입법은 1822년까지 기다려야 했다. 1822년 3월 25일 법률에서 반론권(droit de réponse)을 보장하기에 이르렀다. 동법에서는 명예나 명성이 침해된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정기간행물에 언급된 누구나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간 반론권의 내용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친 끝에 1881년 7월 29일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에서 1835년 9월 9일 법률의 규정을 삼입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정기간행물에 관한 반론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동 법률은 그간 여러 차례의 보완과 개정을 거친 바 있으며, 1993년 1월 4일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현대적인 시청각매체에 대한 반론권의 도입

1881년 법률에서는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1) 성낙인, 『언론정보법』, pp.317-347 참조.

같은 시청각(audiovisuel) 매체에 의하여 야기된 보도내용에 대하여서는 반론권을 규정하지 않았다. 시청각매체의 영향력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론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1881년 법률상의 반론권을 시청각매체에 확대하는 것을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에⁵⁾ 이에 관한 한 법적 공백 상태가 되어 버렸다.⁶⁾

이에 법원에서도 시청각매체에 대한 새로운 법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마침내 의회와 관련된 여러 개의 법안이 제안된 바 있으며 그 중 1959년-1960년 국민회의 특별회기에 Hersant 의원 법안이 정식으로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1972년 7월 3일 법률에서의 라디오-텔레비전의 개혁법률⁷⁾을 통하여 최초로 반론권이 도입되었다.

1972년 법률 제8조 및 1975년 5월 13일 데크레(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론권은 1881년 법률의 반론권보다 제한적이다. 즉 반론권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하며, 객체도 라디오와 TV로 제한되었다. 더구나 당시엔 아직도 공영방송체제를 견지하고 있던 프랑스의 특성상 방송에 대한 반론권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1975년 3월 13일 데크레 제1조에서는 반론권은 오로지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공역부에 관한 방송에만 허용될 뿐이라고 규정함으

로써 사적 영역에 관해서는 이를 인용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다.

1982년 7월 29일 법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6조에서 시청각통신(communiqué audiovisuel) 전체에 관한 반론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1986년 9월 30일 '통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서는 원칙적으로 1982년 시청각통신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을 유지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1986년 법률 제83조에서는 제6조의 마지막 항을 개정함으로써 반론권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1986년 법률은 1989년 1월 17일, 1992년 1월 18일, 1994년 2월 1일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에서의 반론권은 이와 같이 정기간행물에서 출발하여 라디오·텔레비전을 거쳐 오늘날 시청각통신(매체) 전체에 대하여 반론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프랑스에서 반론권 행사는 반론권자만이 유일한 반론에 대한 적합성의 판단자이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관례법상 반론권은 개인의 주관적인 기본적인 권리이자 동시에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⁸⁾

하지만 정기간행물에 대한 반론권과 시청각통신에 대한 반론권은 개시조건, 행사방법, 반론권의 보장에서 상이하다. 따라서 이를 따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⁹⁾

5) Paris, 27 novembre 1929, D.1930, 2, 155 : "라디오방송은 반론권행사에 관한 한 1881년 7월 29일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건대 신문과 동일시할 수 없으며, 동 법률의 반론권에 관한 규정은 인쇄된 정기간행물에만 적용된다."

6) Bertrand Cousin et Bertrand Delcros, *Le droit de la communication, presse écrite et audiovisuel*, tome I, Editions du Moniteur, Paris, 1990, p.228.

7) Loi du Office de Radio et Télévision Française, 3 juillet 1972, n° 72-553(일명 ORTF).

8) Jean Morange, *Droits de l'homme et libertés publiques*, P.U.F., Paris, 1996, p.285.

9) Emmanuel Derieux, *Droit de la communication*, L.G.D.J., Paris, 1994, pp.401-402.

독일의 반론권은 독일 특유의 언론의 공적
기능과 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형성

3) 정부만이 제기할 수 있는 정정보도
청구권

또 다른 프랑스 반론권제도의 특성으로서는 1881년 법률 제12조에서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정부만이 제기할 수 있는 정정권(droit de rectification, 정정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정정권은 1972년 법률 및 1982년 법률을 통하여 시청각통신에 대하여서도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정정권도 마찬가지로 정기간행물과 시청각통신에 있어서 각기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독일에서의 반론권제도의 도입

1) 언론의 공적 기능과 책임에 따른 반론권의
제도화

독일에서의 반론권(Gegendarstellungsanspruch)은 독일 특유의 언론의 공적 기능과 책임¹⁰⁾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독일에서의 반론권제도는 이 제도의 모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의 반론권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독일에서의 반론권제도는 1931년 바덴(Baden)주에서의 정정강제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겠으나, 그 이전에 1874년 제국출판법(Reichspressegesetz)을 통하여 반론권제도를 도입한 적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독일 기본법의 언론관련 규정에 따라 반론권제도의 현황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언론에 관해서

는 기본법 제75조의 이른바 태두리규정에 따라 동조 제1항에서는 “연방은 제72조의 요건 하에 다음 사항에 관하여 주(Land)의 입법을 위한 태두리 규정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언론의 일반적 법률관계”를 열거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태두리규정은 예외적인 경우만 개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직접 효력을 가지는 규정을 포함한다”. 제3항에서는 “연방이 태두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주는 법률로 규정된 적당한 기간 내에 필요한 주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론권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은 각 주(支邦)법률을 통하여 제정되게 된다. 통일적인 연방출판개괄법은 현재 논의 중에 있다.¹¹⁾

방송에 있어서의 반론권제도도 기본법 제70조, 제71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주의 권한에 속한다. 연방은 다만 대외적 사무에 관련하여 본래 가지고 있던 권리인 독일연방라디오, 독일주파수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다.

2) 각 주 법률을 통한 반론권의 제도

1949년 바이에른(Bayern)주에서 출판법에 반론권제도를 도입한 이래, 1958년 헤센(Hessen)주 자유법과 출판법, 1964년에서 1966년에 이르는 기간동안에 제정된 각 주의 출판법에서 반론권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반론권제도에 관해서는 각 주마다 다소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에서 언

10) 박용상, 『언론의 자유와 공적 과업』, 교보문고, 1981 참조.

11) Walter Seitz, German Schmidt, Alexander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in Presse, Film, Funk und Fernsehen, München, C. H. Beck'sche Verlags, 1990, S.1.

론기본법을 제정할 당시 모델로 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덴 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 출판법 제11조에 규정된 반론권 제도를 중심으로 독일의 반론권제도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¹²⁾

다만 프랑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신문을 중심으로 한 정기간행물에 대한 반론권 제도와 방송매체에 대한 반론권제도가 다소 상이한 점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정기간행물에 대한 반론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한국에서의 반론권제도의 도입

1) 권위주의적인 언론기본법을 통한 반론권 제도의 도입

원래 반론권제도의 도입은 자유민주주의의 만개와 더불어 야기된 언론의 자유의 남용에 대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반론권제도는 권위주의가 팽배하던 시대에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을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서 반론권제도는 1980년에 제정된 언론기본법(1980.12.31. 법률 제3317호: 동 시행령 1981.1.29. 대통령령 제10190호: 개정 1984.12.31. 법률 제3786호)에서 법제화된 바 있다. 언론기본법은 그간 모자이크식으로 흩어져 있던 언론관계 법규범을 하나의 종합적인 언론법으로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언론기본법은 지나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내포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으며, 이른바 한국헌법사에서 권위주의 시대를 상징하는 제5공화국의 대표적 악법으로 지목받아 왔다. 이에 따라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시대가 새로이 정립되면서 언론기본법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2) 민주화와 더불어 존치된 반론권제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면서도 종래 언론기본법에 제도화되어 있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고, 이를 방송법에 준용하고 있다. 이는 반론권제도의 존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는 종래의 정정보도청구권 이외에 추후보도청구권 제도를 새로이 도입한 바 있다. 그런데 종래 반론보도청구권은 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래의 의미의 정정보도청구권과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이에 이론과 관례에 따라 1996년에 법률을 개정하여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자리 매김을 하게 되었다.

Ⅲ. 반론권의 주체(반론보도청구권자)

1. 프랑스

프랑스법상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는 언론

12) 헌법재판소 1991.9.16. 98헌마165, 관례집 3, 536면, 재판관 한병채·이시윤의 반대이견 중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원래 우리 나라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독일의 바덴 뷔르템부르크주의 언론법상의 반론권이 그 모범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헌법재판소의 뷔르템부르크라는 표현은 뷔르템베르크를 잘못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출판법의 전문은 한국언론연구원, 『세계의 언론법』(상), 1995, 584면 이하 참조.

프랑스나 독일과 달리
우리 나라의 반론권 제도는
권위주의가 팽배하던 시대에 도입

을 통하여 “지명되고 지칭된 모든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사실 자연인과 법인은 그 본질이 상이하기 때문에 반론권의 행사에서도 서로 상이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반론권을 인정하고 있다.

1990년 7월 13일 법률에 삽입된 1881년 법률 제13조의 1에서는 모든 인종차별적이고 유대인 차별적인 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하여 반론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13조의 1의 제2항에서는 개인적으로 관련된 사안일 경우에는 이들 단체는 관련 개인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반론권을 인정하고 있다.

반론의 대상이 된 보도의 형태, 본질, 내용이 여하하든 간에 언론보도의 기사내용에서 지명되고 지칭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반론의 대상은 사실적 보도뿐만 아니라 일반적 정보나 비판적인 기사도 포함되며, 나아가서 법원의 판결을 보도한 것까지도 반론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반론권은 일반적이고 절대적이다.¹³⁾

이에 따라 반론권은 단순히 방어수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격이나 비난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지명되고 지칭된 자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반

론권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반면에 반론권 남용의 우려 또한 부인할 수 없으나 실제로 남용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¹⁴⁾

반론권의 존재나 개시에는 언론보도에서 지명이나 지칭된 이외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지명되고 지칭된 자에는 공동저자의 경우에도 포함된다.¹⁵⁾ 지명되거나 지칭된 자를 확정한다는 것은 때로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예컨대 정기간행물에 사진이 게재된 자일 경우에는 지칭된 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명이인의 반론권 문제도 제기된다. 이 경우 언론보도에서 당사자를 분명히 식별할 수 있는 직업·주소 등을 제시해 주지 않은 한 당사자의 반론제기에 응하여야 한다. 실제로는 당사자가 언론에 자신과 무관하다는 편지를 보내고 이를 게재해 줌으로써 해결되고 있다.¹⁶⁾ 하지만 판례에 의하면 정기간행물에 여러 사람의 집단적인 사진이 게재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1881년 법률 제13에서 의미하는 지칭의 범주에 충분히 해당될 수는 없으며 그에 따라 반론권을 부여할 수도 없다고 본다.¹⁷⁾

이와 같이 정기간행물에 대한 반론권의 기능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기관·사람·동기 등이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어 왔음에 비추어, 1990년 법률에 따른 1881년 법률 제13조의 1에 의할 경우 반론권에 대한 제한적인 요인을 제시해 주고 있다. 즉 단체에 대한 반론권은

13) Crim. 28 avril 1932, *Bull. crim.*, n° 117, p.217.

14) Emmanuel Derieux, *op. cit.*, p.404.

15) Cour d'appel de Paris, 11re Ch., sec A, mercredi 8 janvier 1992, Talamon c. Mme B.; Caroline Mecary, “Droit de réponse sollicité par le co-auteur d'un article,” *Légipresse*, 1993,7, septembre, n° 104, pp.101-105.

16) R.Dumas, *op. cit.*, pp.593-594.

17) Cass. crim., 27 mai, 1972, *Gaz. Pal.*, 13 septembre 1972.

개인이나 단체가 그 출신이나 특정 민족·국가·인종 혹은 종교에 속하는지의 여부로 인하여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명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경우에만 개시될 뿐이다.¹⁸⁾

반론권은 생존해 있는 상속인·배우자 또는 포괄수유자의 명예 또는 존엄을 훼손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배우자 또는 생존해 있는 포괄수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1919년 개정 법률 제34조 제2항).

2. 독일

반론권 행사의 주체는 언론보도의 사실주장에 관련된 자이다. 여기에는 자연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널리 단체에게도 폭넓게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자연인에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인정된다. 단체는 정당을 포함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자기와 관련된 사실보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연 이 경우 어느 정도까지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보다는 비교적 폭넓게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언론보도를 통하여 공표된 사실이 적어도 당사자임을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반론권의 주체로 볼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직접적인 관련성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어도 충분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예컨대 바이에른 주 법률에서와 같이 직접적인 관련성

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제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론권자가 반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3. 한국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피해 '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이다. 생각컨대 반론보도청구권을 반론권으로 이해하고 그 반론권의 본질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장에 따른 인격권 및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임을 전제로 한다면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주체에 관한 일반이론이 원용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내외국인을 포함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이다. 한편 반론보도청구권의 본질이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있음에 비추어 민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는 당사자 적격에 관한 이론이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에 따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종중 등)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제49조)의 인정 여부에 엄격히 구애될 필요 없이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⁹⁾

또한 "서울 모대학 정모 교수 등 2명"이라고 보도하여 신청인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할 수 없다는 KBS의 주장(94서울중재272)에 대해 법원은 "동시간대 또는 그 전후로 보도·방송된 TV뉴스 및 신문 기사를 종합하면 신청인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18) Cour d'appel de Paris, 1re Ch., 30 juin 1972, Licra c. Le Figaro.

19) 서울민사지법 1983. 8. 19. 83카9145.

프랑스나 독일은 우리보다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²⁰⁾

이에 반하여 협회지부에 대한 당사자 능력을 부인한 판례는 앞의 판례이론의 일반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²¹⁾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를 “피해를 받은” 자로 한정하는 것은 반론보도청구권의 과도한 행사로 인하여 언론의 보도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 법의 배려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여기서 피해를 받는다는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자칫 반론보도청구권의 다른 요건을 갖추고도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피해를 받은’의 의미를 독일법상의 관련성 정도로 넓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그 관련성은 보도내용과 피해자의 고유한 이익간에 일반적인 연관성만 있으면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²²⁾

동명이인(同名異人)의 경우 기사의 내용으로 볼 때 원문기사에서 지명된 자라고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사에서 이의 식별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된다.

사자에 대한 기사로 인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론보도청구권이 상속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고인의 명예에 대한 중상 또는 모욕이 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에게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프랑스법의 예가 타당하리라고 본다.

하나의 사실적 보도에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한 사람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가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나머지 사람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나머지 각자에게도 반론보도청구권의 인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각자에게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IV. 반론권 행사의 대상인 언론매체

1. 프랑스

반론권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를 한 기관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도 논의의 소지가 있다. 1981년 법률 제13조 제1·2항에서 일간지와 비일간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일간지의 편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990년 7월 13일 법률 제13조의 1은 정기간행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법규정상의 표현을 종합해 보건대 반론권은 1881년 법률에서 모든 정기간행물에 대해 개방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²³⁾

간행물의 정기성의 여부는 기술적이고 실제적인 조건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따라서 법상의 요구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비정기간행물(책, 팸플릿, 벽보)에 관해서는 반론권이 허용되지 않고 다른 수단을

20) 서울지법 남부지원 91카합3123.

21) 청주지법 1990. 7. 21. 90카1874.

22) 대판 1986. 1. 28. 85다카1973.

23) E.Derieux, op. cit., p.419.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정기간행물의 범주는 매우 넓게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간행물의 정기성이 인정된 다음에는 그 정기성의 정도가 여하하든 간에 반론권은 인정된다. 정기성의 차이는 반론권행사의 양태가 달라질 뿐이다. 예컨대 간행물의 정기성이 명확히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반론권이 인정된다.²⁴⁾ 1881년 법률 제13조와 제13조의 1에 따라 반론권이 존재하기 위하여서는 문서화된 정기간행물이어야 한다.

공보나 관보 및 판례집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론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또한 국회(국민의회와 상원)에서 간행된 보고서 및 양원의 공개회의에서 선의로 행하여진 행위가 정기간행물에 보도된 경우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반론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1958년 11월 17일 법률명령(ordonnance), 1981년 법률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삽입].

2. 독일

정기간행물의 책임편집인과 발행인은 그 인쇄물에 게재된 사실주장에 의하여 피해받은 개인 또는 기관의 반론을 인쇄할 의무를 진다(제11조 제항). 인쇄매체에 대한 반론권 행사의 객체는 정기간행물에 한한다. 여기서 정기성의 의미는 비교적 넓게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부정기적인 형태로 간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간행물의 성격상 단속적으로 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의 개념에 포괄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반론의무자(Anspruchsverpflichteter)가 된다.

피해 받은 개인 또는 기관이 공표에 관하여 하등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 반론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오로지 영업적 거래만을 위한 광고의 경우에는 반론을 인쇄할 의무가 없다(제11조 제2항).

3. 한국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기타간행물을 말한다”(정간법 제2조 1호). 따라서 정기간행물의 의미에 포함되는 것은 일간, 주간, 격주간, 월간, 격월간, 계간, 반년간 등 어떠한 경우이든 정기성만 띠고 있으면 정기간행물의 의미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특정 기간동안에 한정적으로 정기적인 간행을 하는 것이든, 학술잡지이든, 혹은 합본호 형식으로 다소의 정기간행의 성격이 약화되더라도 이 법상의 정기간행물로 보아야 한다.

정기간행물이 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그 자체로서 정기간행물로서의 독자성이 없고 전체 정기간행물의 단순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추록 등은 정기간행물로 볼 수 없다.

관청의 고지사항 등을 안내하는 관청의 고지물과 관보 등은 편집자의 임의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법상의 정기간행물로 보지 아니한다.

사실적 주장이 공표된 이상 그 공표의 형식

24) Trib. civ. Seine, 12 février 1931, Gaz. Pal., 31, 1, 735.

반론권 행사의 객체인 정기간행물은
세 국가 모두 정기성만 띠고 있다면
폭넓게 인정

여하는 불문하고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한다. 정기간행물이 공표되지 아니하고 제작 중에 있거나 공표대상이 아닌 내부보관용 간행물인 경우에는 공표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발행 시 행하는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납본(정간물법 제10조) 여부는 공표와 관련성이 없다.

V. 반론의 대상

1. 프랑스

일반적으로 반론권의 객체와 관련하여 한국이나 독일의 법제에서는 사실관계에 한정하고, 언론의 비판이나 평론기사는 반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반면에 프랑스의 법제하에서는 언론의 비판이나 평론기사가 원칙적으로 반론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언론의 모든 평론이나 비판기사가 반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비판이나 평론기사가 반론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러한 반론권의 행사로 인하여 언론의 비판이나 평론 자체 즉 언론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반론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민전선 사건²⁵⁾에서 국민전선이라는 정당의 정강정책에 대하여 인종차별적이고 이민에 대하여 적대적인 극우정당이라는 평가는 이미 프랑스의 일반국민이나 정계에서 일반화된 인식이고, 또한 객관적인 사실에 가까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가를 문제삼

아 국민전선의 반론문을 게재할 경우에는 사실상 국민전선의 변호지면만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중국에는 전 프랑스 언론이 국민전선의 반론문을 거의 매일 게재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법원은 반론게재의 거부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언론의 반론문 게재 거부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을 준거로 하여 프랑스에서의 반론권행사에 비판이나 평론기사에 대한 반론권 행사에 폭넓은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서도 안 될 것이다.

결국 실제로 어떠한 비판이나 평론기사가 반론의 대상이 되고 또한 반론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독일

반론의 대상은 사실주장(Tatsachenbehauptung)이다. 따라서 프랑스법상의 가치판단에 관한 사항은 반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 또는 의결기관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판에 대한 진실에 충실한 보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1조 제5항). 그러나 3월이 지나면 반론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로 사실주장인지 의사표현인지의 구별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사실주

25) Front National c/ J. Saint-Cricq et La Nouvelle République du Centre-Ouest 판결 파리지방법원(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1ère Chambre), 1997년 9월 11일 판결: LEGIPRESSE Revue mensuelle du droit de la communication 통권 135호, 1997년 3월(제2호), 28 ~ 29면.

장과 의사표현이 혼재된 경우에 있어서 사실 주장 부분이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의 의사표현의 개념이라는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기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특히 논쟁 중 표출되는 비핵심적 부분에 관한 문제에서 증대된다.”²⁶⁾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지극히 위협적인 사실주장을 의사표현과 연관시킴에 있어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같이 찬성 또는 반대 등의 입장표명의 요소로 특징지워지는 한, 동일적으로 의사표현으로 취급하여 법률상 보호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의사표현 및 그에 따른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중시하는 경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서 언론매체의 피해 당사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1991년 10월 9일에 내려진 두 개의 판례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의 구별논의에 비교적 언론자유를 강조하는 듯한 판시사항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른바 바이에르(Bayer)주식회사 판결에서 “가치판단과 사실주장의 구별은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는 특히 양자의 표현형식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한 표현의 의미는 총체적으로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효과적인 기본권의 보호를 위하여 의사표현이라는 개념은 널리 해석되어야 한다. 어떤 표현에 의사와 사실이 혼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찬성·반대의 입장표명이 그 본질적 요소인 경우에는 기본권에 의하여 의사표현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치는 가치적인 내용과 사실적인 내용이 분리되면 그 표현의 의미가 훼손되거나 왜곡되는 경우에 특히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사실적인 측면이 결정적인 요소일 때에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적인 보호는 본질적으로 축소되어 질 수 있다”²⁷⁾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설문(Frage)판결에서 “설문은 그것이 어떤 진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가치판단 및 사실주장과 구별된다. 설문은 그에 대한 답변을 겨냥하는 것이다. 답변에는 가치판단 또는 사실주장이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설문은 위 두 개념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며 독자적인 의미의 범주를 갖는다. 그러나, 설문이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는 기본권 보장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자명하다. 즉,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독일 기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유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인간다움의 직접적 표현일 뿐 아니라 민주질서의 전체가 된다는 데 있고, 이러한 점에서 설문 또한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²⁸⁾라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사실주장과 가치판단에 대한 논쟁은 사실주장에 한하여 반론권을 인정하고 있는 독일법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실제로 사실주장과 가치판단의 구별이 이론상으로는나 실무상으로도 완전한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독일법제가 안고 있는 한계라고 볼 수

26) BVerfGE, 82, 215.

27) Bverf GE, 1992, 526.

28) Bverf GE 1992, 526.

우리 나라와 독일은 사실관계에 한해 반론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가치판단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반론의 대상에 포함

밖에 없다.

3. 한국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적 주장”에 한정된다. 따라서 가치판단에 대하여는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프랑스법적인 반론제도보다는 독일법적인 반론제도의 입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원문 기사를 두고서 그것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혹은 가치판단에 관한 것인지의 관별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 입법론적으로는 반론권의 객체를 논평 등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반론보도청구권의 본질상 보도된 사실적 주장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앞에서 설명한 반론보도청구권의 본질에 비추어 보건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즉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한다.

반론(정정)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언론 보도는 정확성과 완전성의 심사가 가능한 사실적 주장²⁹⁾이어야 하며, “어떤 보도나 표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느냐, 가치평가 또는 의견에 해당하느냐는 그 보도표현 내용에 대한 입증가능의 여부에서 구해야 할 것”³⁰⁾이다. 법원은 대체로 위와 같은 준거하에 사실적

주장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언론보도에 따른 국민의 반론(정정)보도청구권의 인정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³¹⁾

한편 위와 같은 판례의 흐름에 비추어 보건대 “이들 클럽이 사기성이 없다면 그 많은 광고비를 어디에서 충당하겠느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는 부분은 그 전제가 된 사실에 대한 타인의 논평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지 위 기사내용이 사실적 주장이라고는 보기 어렵다”³²⁾는 판례는 사실적 주장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으로 비판의 소지가 있다. 단순히 외형상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라는 평가적 의미를 내포하는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서 국민의 피해구제로부터 언론이 회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사진이나 만화 등 상징적 표현에 대하여도 반론보도청구권은 인정된다.

VI. 반론권의 행사

1. 프랑스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1881년 법률의 규정으로 보아서 약간 불투명한 점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정기간행물에 보도된 이후 1년으로 이해하고 있다(법 제13조 제10항). 이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반론권을 행사할 수

29) 서울민사지법 1992. 11. 30. 92카합3879.

30) 서울민사지법 1993. 9. 6. 93카합792.

31) 대판 1991. 1. 15. 90다카25468: 반응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일단 그 내용이 동아일보를 통하여 공표된 이상 ...이미 동아일보의 사실적 주장이 되었다.

32) 서울민사지법 1990. 5. 25. 89가28984.

없다.³³⁾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반론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반론권의 본질에 비추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1993년 1월 4일 법률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1년의 기간 외에 결정일로부터 3월내에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다. 즉 형사소추시 정기간행물에 지명되거나 지칭된 자는 공소기각·무죄·면소의 결정이 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반론게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법 제13조 제11항).³⁴⁾ 법상 강제게재소송의 의미는 입법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를 반론권 행사기간으로 이해하게 된다.³⁵⁾

1881년 법률에서는 반론권행사 방법에 관해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881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반론이 정당화되었을 경우 정기간행물에 반론문을 게재할 의무를 지는 자는 발행인이다. 반론신청의 방법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장차 야기될 지도 모를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배달증명 등기우편이나 공증인을 통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기간행물에 게재될 반론문의 크기는 1881년 법률에서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반론문에는 주소, 인사말, 의례적인 요청 및 서명을 기재하지 못한다. 반론문은 반론을 야기한 기사의 길이로 제한된다. 이에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즉 반론보도문은 최저 50줄에서 최고 200줄로 제한된다. 이러한 반론문과 관련

하여서는 그 계산상에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반론문이 너무 길거나 단순히 독자의 편지 형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반론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행인측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⁶⁾ 반론문의 양을 줄로 규정하는 것보다 이를 보다 구체화시키는 방법으로서 글자 수로 제한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제한은 기자가 반론문에 대한 새로운 논평을 가할 때에도 준용된다(법 제13조 제3항). 또한 원칙적으로 반론문을 분리하여 게재해서는 안 된다.³⁷⁾

일간지의 경우 발행인은 반론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만일 반론문 게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론을 야기한 기사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인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3백 프랑 이상 1만5천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3조 제1항).

선거라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일간지의 경우 별도의 반론기간을 설정하여 두고 있다. 즉 선거기간 중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일간지의 경우 3일의 기간이 24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반론문은 이를 게재할 신문이 인쇄되기 6시간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선거기간이 시작되면 일간지 발행인은 신문의 인쇄시간을 검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벌금에 처한다. 반론문 게재거부에 대한 소환

33) T.G.J. Paris, 8 juillet 1970, D.71, sormm, 61.

34) 이는 한국법상의 추후보도청구권과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다.

35) E.Derieux, *op. cit.*, p.407.

36) Cass, crim., 30 avril 1970, Beuve c. Lamarque, J.C.P., 1971, 2, 16625.

37) Cass, crim., 16 janvier 1969, D.69, 239; Rolland Dumas, *op. cit.*, p.599.

프랑스는 일간지가 반론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문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기간은 24시간으로 단축되며, 법원장은 특별명령을 통하여 매 시간마다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반론문 게재를 명하는 판결은 항소나 이의제기에 관계없이 즉시 집행된다. 만약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게재명령을 법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발행인은 3일 이상 6월 이하의 구류나, 300 프랑 이상 1만5천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3조 제9항). 이는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왜곡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국민의 선정한 주권행사가 굴절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국민주권의 실질화를 위한 법적인 배려이다. 사실 선거과정에서 언론의 잘못된 보도가 즉시 시정되지 않는다면 선거결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어 갈 소지가 크며 동시에 그것은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론권의 제도적 보장이라고 볼 수 있다.³⁸⁾

일간지가 아닌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반론을 접수한 후 2일 이내에 발행되는 다음 호에 반론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벌금은 제1항의 경우와 동일하다(제13조 제2항).

반론문은 반론을 야기한 기사와 “같은 위치에 같은 글자로” 게재되어야 한다(법 제13조 제3항). 동일 지면의 의미는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동일 글자는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반론문의 게재거부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문제가 되따르는 사항이긴 하지만 반론문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야기되는

미묘한 문제가 있다.

법원은 반론문 게재요구자의 책임이 야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서는 발행인이 반론문을 게재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의 취지로 본다. 즉 관례에서 정립된 이론에 의하면, 반론이 법률, 선량한 풍속, 제3자의 정당한 이익, 언론인의 명예에 반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³⁹⁾ 즉 반론권은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전통적인 법원의 관례에 비추어 위와 같은 특정한 게재거부사유를 제외하고는 반론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반론문을 게재하여야 할 책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위와 같은 명시적인 사유가 아닌 새로운 사유 즉 1881년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언론사의 반론문 게재거부에 대해 정당함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곧 이제 반론권행사의 적합성까지도 법원이 심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⁴⁰⁾

반론문 게재거부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반론문 게재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소된다. 법원은 반론문 게재 거부소송의 소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의제기나 항소에 관계없이 게재를 명하는 판결을 집행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항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판결을 하게 된다(법 제13조 제8항).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거기간 중 후보자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에는 10일이 24시간으로 단축된다.

38) E. Derieux, *op. cit.*, p.108.

39) Cass. crim., 15 avril 1982, D.1984, J. 358: “언론인은 신문에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성격을 띤 기사의 신문게재를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관례이다.”

40) T.G.I. Paris 1re Ch-1re sec, 19 janvier 1994, Société française pour la défense de la tradition famille et propriété c. Bernard Porte; Christophe Bigot, “L’abus du droit de réponse et la convention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Légipresse*, 1994.6, Juillet- Août, n° 113, pp.97 ~ 101.

반론권행사와 관련된 소송과 별도로 당사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독일

독일은 각 주 법률에 따라 그 내용이 다소 상이하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법률에서는 기사가 게재된 후 3월 이내에 반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체없이 하여야 하겠지만 그 행사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에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반론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반론문은 원문기사에 대응하는 청구인의 사실주장을 게재하게 된다.

정기간행물의 책임편집인과 발행인은 그 인쇄물에 게재된 사실주장에 의해 피해받은 개인 또는 기관의 반론을 인쇄할 의무를 진다(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법률 제11조 제1항). 피해 받은 개인 또는 기관이 공표에 관하여 하등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 반론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오로지 영업적 거래만을 위한 광고의 경우에는 반론을 인쇄할 의무가 없다. 반론이 이익있는 본문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면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반론은 사실적 진술에 국한되며 가벌적 내용을 가져서는 안된다. 그것은 서면형식에 의함을 요하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반론이 지체없이 늦어도 공표 후 3월내에 책임편집인 또는 발행인에게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그 인쇄를 요구할 수 있다(제2항). 반론은 그 제출의 수령 즉시 인쇄완료되지 아니한 판에 이의

있는 본문과 동일한 인쇄물부분에 동일한 문자로서 첨삭함이 없이 인쇄되어야 한다. 그것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발간될 수 없다. 인쇄는 무료이다. 반론에 대하여 동일한 판에 언급하는 자는 사실의 진술에 국한하여야 한다(제3항). 반론권의 집행을 위해서는 통상 재판권에 의한 구제가 주어진다.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책임편집인과 발행인이 제3항의 방법으로 반론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치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청구권의 위태화에 관하여는 소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본안절차는 행해지지 아니한다(제4항).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 또는 의결기관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판에 대한 진실에 충실한 보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5항).

3. 한국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언론사에 직접 청구하거나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언론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정기간행물법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제16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 협의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8조 제1항). 언론중재위원회제도를 통한 중재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이다.

독일의 반론권 행사기간은 3월 이내로
프랑스나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짧아

중재 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한다. 다만,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18조 제6항). 중재 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청구할 수 없다.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제18조 제6항의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제7항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한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제19조 제1항).

중재를 필요적으로 거친 후의 반론보도청구의 소(구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한 심판)를 상당한 기일이 걸리는 본안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한 것이 유별나게 신속성을 강조한 것이어서 부당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 피해자가 본안소송에 의하여만 그 권리를 구제받게 된다면 대중이 그 사실을 망각한 다음에야 비로소 구제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므로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다.⁴¹⁾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자체가 인격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여론의 형성을 위한 도구일 뿐 진실을 발견하여 잘못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사요건은 비교적 형식적인 사유에 기한 제한적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하도록 완화되어 있고, 그 예외사유도 법의 문언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판단이 가능한 경우들로서, 반론권을 제도로서 인정하고 있는 한 그 심리를 위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민사소송법에 정한 본안절차에 따르게 하기보다는 가처분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이 제도의 본질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정정보도청구사건을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절차가 부당하게 간이하게 되어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언론자유 본질적인 내용과 언론기관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⁴²⁾

그간 불복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던 것을 1996년 개정법률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제19조의2 제1항). 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9조의2 제2항).

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

41) 현재 1991. 9. 16. 89헌마165. 판례집 3, pp.532~534.

42) 현재 1996. 4. 25. 95헌바2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 위헌소원, 판례집 8-1, p.420 이하.

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제16조 제5항). 반론보도문의 작성형식은 원문기사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에 대한 반론보도신청 내용이 기재된다. 다만 사진이나 만화의 경우에는 동일크기의 사진이나 만화 혹은 반론보도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반론보도문의 보도는 원칙적으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동일한 지면에 기사형식으로 게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반론보도문에는 이의대상인 원문기사가 특정될 수 있도록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반론보도문의 사실적 진술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반론보도문의 사실적 진술에서는 진실에 반하는 주장의 반론보도문과, 진실에 합치하나 오해의 소지를 해소해 주는 반론보도문이 있다. 이와 같이 원문기사의 내용은 그 진실성 여부가 문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론보도문의 경우에는 진실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것은 무기대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만”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형사상 처벌 받은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Ⅶ. 종합 및 결론

(1)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언론법의 반론권제도를 원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한국의 반론권제도는 반론권이 갖는 본질적인 논리에 비추어 반론권의 원류적 제도를 정립하고 있는 프랑스의 반론권제도와 그 본질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반론권의 모국인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시청각통신이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던 시점에 이미 인쇄매체에 대한 반론권이 제도화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시청각매체에 대한 반론권제도의 정립이 상대적으로 늦었으며, 그에 따라 시청각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특칙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반론권제도가 비교적 최근에 법적으로 정립된 상황에서 인쇄매체와 시청각매체에 따른 반론권의 법적 기초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 법제의 단순히 시청각매체에 대한 반론권 이상으로 비디오 매체·쌍방향통신 등 첨단정보통신에까지 반론권 행사를 확대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국에서도 현재 전파방송 및 케이블방송 등에 한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객체를 정보과학의 발달에 따른 기술적 진전에 비추어 이를 확대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반론권 행사의 주체에 관한 한 한국·프랑스·독일에서 모두 그 범위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반론권의 행사기간을 개정 정기간행물법에서 6월로 상향조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독일의 3월은 너무 짧은 것 같고, 프랑스의 1년의 기간에 대해서 너무 길다는 비판이 있음을 유념한다면 적절한 입법적 조치임을 알 수 있다.

(3) 반론의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에서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가치판단 등에 관한 보도에 대하여서는 반론권 행사가 불

프랑스는 공적 집행인에 대하여
특별히 정정권을 인정하고 있어

가능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보인다. 독일에서도 사실보도에 한정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한 프랑스와 같이 그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언론보도를 통하여 공표된 것이면 반론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입법적 준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사실적 주장'의 의미를 확대해석함으로써 입법적 불비를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가치판단의 문제인지 사실적 주장인지의 구별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논평기사에 대한 반론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논평기사에 대한 반론권을 허용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위하여 반론권의 남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법원의 판례 입장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4) 프랑스에서 선거에 관한 반론권 행사에서의 특칙을 둔 것은 반론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새로운 특칙을 설정하고 있으나 선거법에 규정할 사안인지는 의문이다. 특히 선거방송에 관한 한 선거보도와 관련된 반론보도에서 방송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가 이원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5) 한국에서의 반론권행사에 관한 한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제도이다. 실로 언론중재위원회는 그간 반론권의 한국적 정립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아도 부리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는 외국의 입법례에서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특수한 제도이다. 따라서 제도 자체의 윤리성·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반론권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구로 정립하는 데에

는 아직도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완전히 불식시켰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에 관한 보다 정밀한 제도적 장치의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프랑스나 한국 다 같이 반론권제도의 법적 기초를 언론관련 기본법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00년 이상 정립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간 잦은 개정과 제정을 통하여 이를 보완·실천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인 근거를 찾아내는 데도 여러 법률과 명령을 추적해야 하며, 법률의 규정 또한 비교적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반론권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반론권제도는 비교적 최근에 외국의 법제를 도입하고 있음에 비추어 차제에 독일의 주 법률과 같이 이를 독자적인 단일법률로 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와 같은 모자이크식의 반론권관련 법제는 우리의 경우 극복될 수 있으리라 본다.

(7) 한국에서는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적 집행인이라고 볼 수 있는 공무원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공적 집행인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정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정정보도청구권에 더 가까운 성격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한 특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청각매체에 대하여서는 공적 집행인에 대하여 응답권제도를 두고 있다. 그것은 공적 집행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 할 수 있다. □

공직자의 명예훼손소송과 그 법리

I. 공직자 명예훼손 현황

1. 개관

한국에서 명예훼손소송은 해방 이후 1987년까지 13건에 불과하던 것이, 1988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10년여 만에 92건으로 크게 늘어서 연간으로 따지면 25배 이상 급증하였다.¹⁾ 특히 1997년을 기점으로 공인에 의한 제소가 전체의 2/3를 차지하며, 소송가액이 급증하고, 공직자들에 의한 명예훼손소송이 줄을 잇는 것이 최근 명예훼손 소송의 특징이다.²⁾

공직자들의 신분과 지위를 보면, 대통령,³⁾ 전직 국무총리,⁴⁾ 청와대 경제수석,⁵⁾ 행정부관리,⁶⁾ 전·현직 국회의원,⁷⁾ 검사,⁸⁾ 군장성⁹⁾과 군판사,¹⁰⁾ 경찰관,¹¹⁾ 및 전직 경찰관,¹²⁾ 도지사,¹³⁾ 전

배 금 자 변호사

- ☐ 부산대 사회과 졸
- ☐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17기) 수료
- ☐ 부산지법 및 동부지원 판사
- ☐ 하버드 로스쿨 졸,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

- 1) 경향신문, 2001. 11. 28, 자 19면
- 2) 차용범, 『한국언론학보』 제45-2호, p.388
- 3) 서울지방법원 1998. 7. 1. 선고 97가합88220 판결.
- 4) 서울지방법원 2000. 1. 19. 선고 99가합42730 판결.
- 5) 대법원 2000. 7. 29. 선고 99다6203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12. 24. 선고 98나47575판결; 서울지방법원 1998. 8. 12. 선고 98가합15397 판결.
- 6) 서울지방법원 1998. 11. 18. 선고 97가합83683판결.
- 7) 서울고등법원 2000. 8. 24.판결 99나11986 ; 서울지법 1999. 9. 1.판결 98가합 107104 ; 1997. 12. 10.판결 96가합22315 ; 서울고등법원 1995. 4. 12.판결 94나35185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12. 4.판결 91가합82923.
- 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6. 22.판결 99가합5683 ; 서울고등법원 2002. 2. 7.판결 2000나31320 ; 서울지방법원 2000. 2. 2.판결 99가합77460 ; 서울지방법원 2000. 6. 7.판결 99가합88873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 4. 28.판결 99가합2207.
- 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 2. 10.판결 99카합2941 ; 서울지방법원 2000. 10. 18.판결 99가합95970.
- 10) 서울지방법원 2000. 7. 12.판결 99가합90005.
- 11) 서울지방법원 1998. 4. 15. 선고 96가합84238 판결.
- 12) 서울고등법원 1991. 9. 25. 선고 91나27329 ; 서울민사지법 서부지원 1991. 5. 7. 선고 90가합10957.
- 13) 서울지방법원 2001. 8. 29. 선고 99가합33460.

공직자, 정당, 공공기관이 언론의 비판이나 의혹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명예훼손소송을
빈번히 제기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직 법무부장관.¹⁴⁾ 전직 국가정보원장.¹⁵⁾ 등 다양하다.

대한민국의 최고수반인 대통령에서부터 검찰권력,公安권력, 경찰권력을 행사하는 막강한 위치의 권력자들,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수반인 도지사, 법집행과 공무집행의 담당자인 일선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명예훼손소송을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방어하는 주된 무기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우리 나라 공직자 명예훼손소송의 특징과 문제점

우리 나라 공직자 명예훼손에 있어서 특징과 문제점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검사들, 군판사들, 기무사 장성들과 같이 권력기관의 집단 구성원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현상, 둘째, 정부, 공공기관, 정당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공공기관, 정당 등의 명이나 또는 대표자인 시장이나 소속 공무원 전원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현상, 셋째,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어 있는 중대한 공공의 관심사이며 공익에 관련된 사안에서도 공직자들의 명예를 두텁게 보호하는 판례들, 넷째, 공직자와 정당, 심지어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경찰관들까지 자신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예훼손을 형사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 등이다.

비판이나 의혹만 제기했다고 하면 공직자, 정당, 시정부나 공공기관까지 나서서 명예훼손소송을 쉽게 제기하고, 형사고소, 고발을 빈번하게 제기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명예훼손제도가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할 개인의 명예손상에 따른 구제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정부, 정당, 공직자, 정부기관 등이 자신들의 공적인 업무수행에 관련한 비판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함부로 의혹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이 온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자는 우리 법원이 명예훼손에 있어서 확실한 기준을 정립하지 않아서, 예측가능성이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공적인 사안, 공직자와 공인에 대해 일반인 및 사적인 사안과 확실히 다른 면책기준을 세우지 않았고, 과연 시정부나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도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공공기관이나 어떤 부서의 공무에 관련한 비판보도에 대해 소속 공무원들의 개인 명예훼손으로 쉽게 인정하는 것이 옳은지, 인정할 경우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확실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명예훼손이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법원이 검사들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제기하

14) 안동수 전 법무부장관이 동아일보사, 경향신문사, 한국일보사, 문화일보사, 조선일보사, 한겨레신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은 현재 서울지법 민사제26부에, 사건번호 2001가합18939, 48922, 48915, 48892, 48885, 48878호로 계류 중에 있다.

15)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은 2002. 3. 7. 한나라당의 수석부대변인 장광근을 상대로 국정원장 재직시 패스21 대표 윤대식을 비호한 것처럼 논평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대한매일 2002. 3. 8, 25면), 2002. 3. 15.자로 소를 취하하였다.

는 집단명예훼손에 있어서 압도적인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도, 공적 이슈에 대한 활발하고 공개적인 토론을 위촉시키고, 공직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꺼리게 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3. 공직자들의 집단명예훼손소송 실태와 판례 경향

검사들의 언론사 상대 소송은 1999년 5건을 시작으로 2000년 1건, 2001년 5건 등 모두 11건이며, 총 손해배상청구액은 무려 113억5000만원이고, 소송을 건 검사는 91명으로 전체 검사의 8%에 달한다고 한다.¹⁶⁾ 검사의 명예훼손은 1999년 서울지검 최운식 검사가 KBS 등을 상대로 구속영장기각 보도와 관련하여 제기한 명예훼손소송¹⁷⁾에서 검사 1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1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사 명예훼손 소송은 그 후 주로 집단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대부분 승소를 하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4부 소속 검사 10명이 검찰직원 수사에 대한 보도를 문제삼아 한겨레신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소송,¹⁸⁾ 대전 법조비리보도로 인해 검사들이 집단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하면서 보도당시 대전지검 소속 검사뿐만 아니라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

라 이름이 특정되지 않는 검사들 22명이 구성되어 MBC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소송,¹⁹⁾ 검찰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12명이 조폐공사파업관련 사건 수사에 있어서 감청의혹을 사설에서 제기한 조선일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소송,²⁰⁾ 대검찰청 부장검사 등 20명이 “인사청탁과 로비를 통해 승진했다”는 보도를 한 조선일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소송,²¹⁾ 서울지검 공안2부장 등 광주지검 부장검사 등 출신 검사 11명이 “호남검찰이 조폭과 깊은 유착관계를 맺어왔다”고 보도한 시사저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²²⁾ 등 검사들의 집단명예훼손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공직자들에 의한 집단명예훼손소송은 검사 외에도 군관사들 5명이 재판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등 비리를 보도한 경향신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사건,²³⁾ 기무사 소속 현역장성 5명이 병무비리 연루 혐의를 보도한 SBS 등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소송²⁴⁾ 등이 있다.

위 집단명예훼손소송에서의 원고는 현직 검사, 군관사, 현역 장성 등 대부분이 고위 공직자들과고, 그들의 직무는 국가를 지탱하는 법집행기관의 직무로서 중대한 공익사안이며, 국민의 알 권리의 주된 대상이고, 언론의 비판 감시기능이 절실한 영역임에도, 우리 법원은

16) 국민일보, 2001. 11. 28. 5면(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보도자료를 인용).

17) 서울지방법원 1999. 6. 23.판결, 99가합14391

18) 서울지방법원 2000. 6. 7.판결 99가합88873 ; 서울고등법원 2002. 2. 7.선고 2000나 31320.

1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6. 22.선고 99가합 5683 판결.

20) 서울지방법원 2000. 2. 2.선고, 99가합77460 판결.

21) 세계일보, 2001. 10. 25. 29면.

22) 한겨레 2001. 11.14. 14면.

23) 서울지방법원 2000. 7. 12. 선고 99가합90005.

24) 서울지방법원 2000. 10. 18. 선고 99가합95970.

우리 나라 전체 검사 중 8%가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했으며 손해배상청구액은
무려 113억에 달해

서울지검형사 4부 검사들이 제기한 사안에서만 공익보도로서 면책을 인정하고,²⁵⁾ 나머지 사안에서는 공직자들이 제기한 집단명예훼손에서 거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고 압도적으로 원고승소판결²⁶⁾을 선고하였다.

공인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의 대상은 언론사가 대부분이며, 승소율도 1990년대 10년간 공직자의 승소율이 91.6%인 반면, 일반인의 승소율은 72.7%라고 한다.²⁷⁾ 손해배상액도 일반인은 고작 평균 1천6백만원인데 비해 공직자의 배상액은 5천4백만원이나 된다고 한다.²⁸⁾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우리 법원은 공직자 명예를 아주 두텁게 보호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정부, 공공기관, 정당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의 증가

영미법에서는 정부나 공공기관, 국공립회사 등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어 정부나 공공기관, 국공립회사 등도 일반 개인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새정치국민회의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정당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0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은 비록 소가 곧 취하되었지만 정당이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효시가 되었다. 여·야당을 불문하고 서로 자신의 당에 대한 비난발언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거나 정당이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면서 형사고발을 하는 경우 등 정당의 명예보호를 위한 법적인 행동이 활발하다.²⁹⁾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등 지방자치정부, 국가기관까지도 자신들의 정책이나 직무집행에 관한 비리보도나 시민단체의 평가보도와 관련하여 비판을 하는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시가 직접 원고로 나서지 않고 시장이나 구청 직원들,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전남 여수시가 대형 할인매장인 '이마트'의 여수점 입점을 허가한 것에 대해 '행정에 하자가 있고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다'고 유인물을 배포한 시민단체대표와 그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 신문사 등을 상대로, '여수시와 시장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면서 여수시장이 원고가 되어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했다.³⁰⁾

경실련에 의해 부패지수 1위 구청으로 꼽힌

25) 1심 법원은 신문에 이름이 특정된 부장검사 및 부부장 검사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을 인정하여 각 1500만원씩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름이 거론된 부장검사 및 부부장 검사에 대해서 피해자가 특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되나 보도내용이 공익보도이고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26) 대전법조비리보도와 관련한 검사 22명이 제기한 집단명예훼손소송에서는, 보도 당시 대전지검에 소속한 검사 4명에 대해서는 피해자 특정을 인정하여 각 3천만원씩 배상을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기각을 하였기 때문에 일부 승소한 경우이다.

27) 조준원, "1990년대 언론관련 손해배상판결의 사회과학적 분석", 『언론중재』, 2000년 가을호, pp.46~47.

28) 조준원, 위의 논문.

29) 중앙일보 1999. 11. 10, 2면 ; 조선일보 2001. 5. 3, 2면.

30) 순천지원 2001가합481호, 현직 시장의 명예훼손에 따른 10억원의 배상청구를 시민단체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함.

서울 동대문구청은 직원 1,228명이 원고가 되어 이 발표로 동대문구청 전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³¹⁾ 서울 강남구는 강남일대 뇌물커넥션에 관한 고발프로그램을 방영한 SBS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³²⁾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친구의 유흥주점 개업식에 경찰서 명의로 축하화환을 보낸 사람에 대하여 현직 경찰관과 직원 850명의 고소형식으로 경찰관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를 하였다.³³⁾

우리 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명예훼손 소송은 국제적인 추세에도 역행되고 명예훼손 제도의 본질에도 반하는 경우가 많다.

II. 공직자 명예훼손 법리

1. 개인의 명예 대 언론의 자유

명예보호와 언론의 자유, 이 두 가지 법익은 전세계 모든 국가가 헌법상의 명문규정이거나 판례를 통해서 헌법상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고, 또한 거의 모든 국제인권규범에서도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법익은 동등한 가치를 가진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의 명예를 두텁게 보호하면 필연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특히 공직자들의 명예를 일반인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게 된다면 공직자 개인의 명예는 보호될지 몰라도,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더 큰 공익은 희생된다.

“명예훼손의 영역에 보태지는 모든 것은 자유로운 토론의 영역에서 빼앗아온 것이다”³⁴⁾는 말은 바로 개인의 명예보호를 하는 만큼 언론의 자유는 축소된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에 관해서, 미국의 헌법학자 Laurence H. Tribe는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공개장소에서 토론하는 것이 허용될 때 ‘market-place of ideas’를 얻을 수 있고, 지적인 시민자치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공적인 사안에 대해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하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표현이 가능할 때 진정한 자치와 자기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다.³⁵⁾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균형은 역사를 통해 변동이 있었지만, 국제적인 추세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비중을 두고, 명예훼손보다 언론자유 보호를 확장하여 왔다.

2. ‘현실적 악의’ 이론의 탄생

커먼로(Common Law)에서 명예훼손의 면책사유로 허용해온 것은 다음 3가지로 첫째, 진실(truth), 둘째, 공정한 논평(fair comment), 셋째, 특권(privilege)이었다. 언론의 입장에서

31) 한겨레 2001. 4. 6, 16면.

32) 한겨레 2001. 5. 11, 26면.

33) 동아일보 2001. 6. 30, 31면.

34)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281(1964).

35) Laurence H. Tribe, *American Constitutional Law* 785-86, (2d e, 1988).

공직자들의 명예를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한다면 알 권리와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공익이 희생될 우려가 있어

는 진실한 것이 증명되면 무조건 면책되고 (truth 항변),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비판이나 논평은 그 결과로 타인의 명예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면책이 되며(fair comment rule), 의회의 청문회나 법원의 재판절차 등 공적인 절차에 관한 보도는 공정하고 정확한 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를 해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되므로(fair report privilege), 커먼로하에서 인정되는 이러한 항변은 언론의 자유를 위한 보호장치로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언론의 보호를 위한 장치로서 부적당했다. 진실한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은 진실이 아닌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하므로 진실로 드러난 것이 아닌 한 이를 공개토론 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진실의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진실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고, 논평에 대한 면책은 의견에만 국한되고, 특권의 범위는 좁기 때문이다.³⁶⁾

이 때문에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1964년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³⁷⁾을 통해, 공직자 명예훼손에 있어서 '새로운 헌법상의 면책사유'를 설정하였고, 이것이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이론이다.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는 진실한 언론을 보호하지만, 공적인 토론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표현도 불가피하다고 했으며, 비록 허위사실의 표현이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적 가치가 없지만, 허위사실의 표현으로 인한 법적인 책임을 지우

게 되면, 공적인 토론에 있어서 사람들은 법적 책임의 두려움으로 위축되고 전체적으로 언론의 양이 제한 받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자기 검열(self-censorship)'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면서 연방대법원은 '허위언론에 대해서도 '헌법적 보호'를 부여하여, 중요한 언론과 제한받지 않는 공적인 토론을 촉진하기 위하여 '숨쉴 공간(breathing space)'을 창조하였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언론도 바로 '숨쉴 공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명예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보다 더 큰 가치로 인정하였다.³⁸⁾

"공적 이슈와 관련한 토론은 금지되어서는 안되고, 널리 공개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종종 격렬하고, 신랄하며, 때로는 정부와 관리들이 불쾌할 지라도 그들에 대한 날카로운 공격을 퍼부어도 좋다". 연방대법원은 이와 같이 판시하면서,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있었음을 원고가 입증하도록 하여, 입증책임 전환과 현실적 악의 요건을 채택하였다.

그 후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 할 명예훼손 소송은 공직자의 공적 행동, 공직자의 공적 적합성에 대한 판단³⁹⁾에 관련된 소송은 물론이고, 공인의 명예훼손으로까지 확장되었고,⁴⁰⁾ 일반인의 공적인 관심에 해당하는 모든 사안으로까지 확대되어,⁴¹⁾ 미국은 공적인 사안에 관련한 보도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36) Robert D. Sack, *Sack on Defamation*(3d ed, vol 1), ch 3, 4, 9. 참조

37) 376 U.S. 254(1964)

38) Kate M. Adams, 23 Seattle Univ. L. R. 1155 참조.

39) *Garrison v. Louisiana* 사건, 379 U.S. 64(1964)

40)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388 U.S. 130(1967)

41) *Rosenbloom v. Metromedia*, 403 U.S. 29(1971)

도 숨쉴 공간이 넓은 나라가 되었다.

미국이 언론의 자유를 우위에 올리면서 과감히 공직자 명예 보호를 희생시킨 이유는, 공적인 이슈에 대해 시민들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고 진실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고려했지만, 공직자와 공인은 자신의 업무와 위치, 역할, 영향에 있어서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하는 것을 감수했다는 것도 크게 고려하였다.

3. 현실적 악의 이론의 수용

뉴욕타임즈 사건의 현실적 악의 이론은 호주, 인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많은 국가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쳐 이와 유사한 이론이 채택되었다. 인도 대법원은 살인혐의자와 간수간의 범죄관련성을 보도한데 대해 명예훼손으로 문제삼은 R. Rajagopal v. State of T.N.(1994)에서, 'malice'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공직자는 피고가 진실을 무모하게 무시하고 보도를 한 사실(reckless disregard for the truth)을 증명할 수 없는 한, 공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⁴²⁾

파키스탄 대법원도 또한 유명한 정치가에 대해서 노망하고, 타락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문제삼은 Nazami v. Muhammad Rashid(1996)에서 설리반 사건의 기준을 채택⁴³⁾하여, "신문사는 '악의를 가지고

(with malice)' 표현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호주에서는 헌법에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고, 호주의 법원은 전통적으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꺼려왔다.⁴⁴⁾ 1994년 Theophanous v. H&W Times⁴⁵⁾ 사건은, 호주 대법원이 명예훼손에 대한 보호로서 언론의 자유를 헌법상 권리로서 처음으로 도출해낸 중요한 사건이다. 이는 하원의원에 대해 "바보이고, 그리스 이민자에 대하여 편견을 가진 자"라고 한 표현을 문제삼은 사건인데, 호주 대법원은 설리반 사건의 'actual malice standard'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배척했지만, 'reasonableness standard'라는 표현으로서, 증명의 정도를 약간 변화시키고,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전환하여 수정된 형태(a modified version)로 채택했다.⁴⁶⁾

이 사건에서 호주 대법원은 피고가 면책을 하기 위해서는,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무모하게(recklessly) 공표한 것이 아니며, 공표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reasonableness standard'에 의한 면책은 정치적 논쟁(political discussion)에만, 즉 공직자의 행동, 자질, 정책, 정당이나 공공기관, 공직 입후보자 등에 관련한 토론에 적용한다고 했다.⁴⁷⁾ 호주의 위 'reasonableness test'는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쳤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도 1988년 National Media Ltd. v. Bogoshi⁴⁸⁾에서, 정치적 언론에 대해 호

42) (1994) 6 S.C.C. 632, 650 (India).

43) P.L.D. 1996 Lahore 410, 425(Pak).

44) Russell L. Weaver and Hathe Bochringer, 8 Seton Hall const. L.J. 459.

45) (1994) 124 A.L.R. 1 (Austl.).

46) Id. at 161.

47) Id.(124 A.L.R.1), at, 13.

48) 1998(4) SA 1196, 1210 (CC)(S. Afr).

호주, 인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많은 국가에서 현실적 악의 이론과
유사한 이론을 채택

주의 기준을 따라 언론의 면책범위를 확대하였다.

영국의 최고법원인 the English House of Lords는 1999년 Reynolds v. Times Newspapers Ltd. 사건⁴⁹⁾에서, 정치적 이슈와 관련한 보도에 대중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언론에 면책특권을 줄 수 있다는 판결을 하여 공적 이슈와 관련한 보도에 있어 언론의 명예훼손의 면책범위를 크게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필리핀 대법원은 1999년에,⁵⁰⁾ 대만 대법원은 지난 2000년 7월 현실적 악의 이론을 명시적으로 수용했다.⁵¹⁾

ECHR(The European Commission on Human Rights)⁵²⁾은 오스트리아에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the Lingens Case(1986)의 경우, “정치가들은 사인들보다 훨씬 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정치가는 대중의 엄격한 감시를 받을 것을 알고 나선 것이므로 더욱 더 참아야 한다.”고 했다.⁵³⁾

4. ARTICLE 19⁵⁴⁾의 국제적인 명예훼손 기준

세계의 각국은 명예훼손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덜 발달된 나라일수록 명예훼손관련법은 공직자의 부조리에 대한 공개적인 논란과 정당한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남용되어 왔다. 공적인 이슈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자유로운 언론의 보장은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위한 핵심적인 가치로서 명예훼손의 위협을 줄임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국제언론자유수호단체인 Article 19는 각국에서 국가기관과 공직자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은 비판을 잠재우고, 공익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억압하는 도구로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어왔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명예훼손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을 설정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Article 19는 2000년 7월에 국제적인 명예훼손에 대한 기준으로서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칙

49) 3 W.L.R. 1010 (H.L. 1999)(U.K.).

50) 필리핀 대법원이 1999년 ‘actual malice’를 명시적으로 수용한 사실은 the University of Oregon Schoo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의 “Jonathan Marshall First Amendment Chair”로 된 엄규호 교수님이 제공한 정보를 인용했다. 「Luis v. Teodoro Jr. & Rosalinda v. Kabatay, Mass Media Laws And Regulations In The Philippines 200(2d, 2001). “The guarantees of freedom of speech and press prohibit public officials and public figures from recovering damages for an defamatory falsehood relating to his official conduct unless he proves that the statement was made actual malice.”」

51) 대만 대법원이 명예훼손 형사사건에서 ‘actual malice’를 명시적으로 수용한 사실은, 그 사건의 당사자였던 홍콩대학교 Ying Chan 교수가 엄규호 교수님에게 제공한 정보를 인용하였다. 참고자료 「CPJ, Attacks on the Press in 2000, at 203(2001).」

52)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의해 설립된 법원으로, 이 조약에 가입한 유럽각국의 국내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개인들이 ECHR에 바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항소심 역할을 하며, 그 판결은 회원국의 국내법원에 구속력을 가진다. ECHR에 가겨오는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명예훼손 사건이 많고,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국내법이 위 조약 10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많다.

53) Lingens, 103 Eur. Ct. H.R.(ser. A), at26

54) 정식명칭은 the International Centre Against Censorship: 언론자유를 위한 국제인권단체이며,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19조를 따라 이름을 지었다(www.article19.org 참조).

(Principle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Protection of Reputation)”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⁵⁵⁾

Article 19는 위 기준을 제정한 목적이 “유엔과 지역인권기구, 모든 나라의 헌법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데 적합한 균형을 설정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개인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더라도 공적 사안에 관계된 자유롭고 공개된 토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적 발전과 모든 개인의 존엄과 충족, 사회의 발전과 복지, 다른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지극히 중대하다”고 선언했다.

Article 19는 위 기준에서, 명예훼손법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로서, “1)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공직자의 비리 또는 부패행위의 폭로를 막고자 할 경우, 2)국가나 종교적 상징, 국기와 같은 물건의 명예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3)국가나 정부 자신의 명예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4)사망자를 위해 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 등⁵⁶⁾”을 들고 있다.⁵⁷⁾

Article 19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정부의 모든 기관과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선출조직, 국공립회사, 정당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소송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와 당국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매우 중요하고, 이들 기관이 지닌 명예는 제한적이고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들 당국이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동원 가능한 수단이 많다”는 이유에서다.⁵⁸⁾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많은 나라에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법규는 공적 토론을 질식시키고 비판을 억압하기 위해 권력자에 의해 남용되어왔으며,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위축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형벌권 행사는 개인의 명예손상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공적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유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므로 명예훼손에 대한 형벌법규는 폐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⁹⁾ 따라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충분하므로 모든 형사적 명예훼손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⁶⁰⁾

그리고 공직자에 대해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명예훼손법이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안된다. 공직자들은 비판을 더욱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⁶¹⁾

55) <http://www.article19.org/docimages/716.htm>

56) 사망자 자신의 명예훼손을 인정하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자유롭고 공개된 토론을 막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망자에 대한 명예는 생존한 유족 자신의 명예를 보호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57) Principle 2.

58) Principle 3.

59) Principle 4.

60) 형사명예훼손의 남용에 대해 우려하면서 형사명예훼손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제적인 기구와 비정부기구 사이들 사이에 논의가 되어왔다. 1999년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는 정부의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멕시코에 대한 정기보고서에서, “명예훼손 형사처벌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61) Principle 8.

영미법에서는 정부기관의 명예훼손소송을
금하는 판례가 오래전에 확립

III. 정부기관에 의한 명예훼손소송

1. 미국

영미법에서는 정부기관에게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는 중요성 때문에 정부기관의 명예훼손소송을 금하는 판례가 오래전부터 확립되어 있다. 최초의 판례는 영국의 Mayor, Alderman, and Citizens of Manchester v. William 사건⁶²⁾으로서, 시정부는 부패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명예훼손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그 효시이다. 미국에서도 시정부, 모든 공공기관, 준공공기관 및 심지어 공법인까지도 명예훼손소송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미국 법원의 강력한 입장이다.⁶³⁾

이 사안에 대해 선구적 사례로 통하는 City of Chicago v. Tribune Co. 사건⁶⁴⁾은, 시카고시에 대해 시재정이 파산위기에 있다는 등 시행정정책을 혹평한 트리뷴신문사에 대해 시카고시와 시가 운영하는 회사가 공동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제기한 소송이다. 이 사건에서 “시정부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논점이 되었는데,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왕의 신성한 권리를 인정한 시절에는 정부를 비판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관들은 시민들의 봉사자이며, 행정관들도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행정관들의 자질문제와 부패에 대해 비판할 권리가 있고 그들을 교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시민은 명예훼손으로 소환당하는 두려움 없이 그들의 정부에 대하여 토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미국정부의 근본원칙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시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미국사법제도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시운영의 회사에 대해서도, “주로 정부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공공의 이익에 봉사할 목적으로서만이 상업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허용된 것이다”고 하면서, 시정부와 마찬가지로 보아 소송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특이한 것은 트리뷴지에 보도된 내용의 대부분은 허위이고 악의적인 것임이 밝혀졌는데도,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도 절대적 면책특권을 인정한 것이다.

City of Chicago 사건의 판례는 각주의 대법원과 지방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서도 거듭 인용되어,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사건⁶⁵⁾에서 연방대법원은 “정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미국 사법시스템에 존재할 수 없다”고 한 City of Chicago 사건의 판시를 인용하면서, “정부의 업무에 관련한 비난에 대하여 담당관리들에 대한 개인적 명예훼손으로 전환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⁶⁶⁾ 미국 연방대법원은,

62) 1 Q. B. 94, 63 L.T. 805(1891). Rodney A. Smolla, 4:76

63) Rodney A. Smolla

64) 307 Ill. 595

65) 376 U.S. 254

66) Id. at 292

Rosenblatt v. Baer 사건⁶⁷⁾에서도, “헌법은 어떤 형태로든 정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거듭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시정부와 정부기관 등의 명예훼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시는 미국의 여러 주의 판결에서도 거듭 확고한 입장이 되었다. City of Philadelphia v. Washington Post Co 사건에서,⁶⁸⁾ “필라델피아 경찰의 잔혹함에 대한 비판기사가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부는 시의 이익을 위해서 명예훼손소송을 할 수 없다. 정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필라델피아 시정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Johnson City v. Cowles Communications, Inc. 사건⁶⁹⁾에서, 법원은 “미국의 어떤 시민과 회사도 정부나 시정부에 대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반역하는 말이 아니라면, 절대적인 면책특권을 가진다. 정부는 진술자의 발언이 허위이든 악의적이든 관계없이 형사제재는 물론이고 민사상 제재를 과할 권리가 없으며, 그러한 제재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에 의해 금지된다”고 했다.

정부에 의한 명예훼손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College Sav. Bank v. Florida Prepaid Postsecondary Educ. 사건⁷⁰⁾에서,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진술자의 의도를 불문하고 공개적인 토론을 질식시키기 위해 형사제재나 민사소송의 위협이라는 수단을 통해 보복하려는 시도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Rodney A. Smolla는 정부기관이나 시정부에 의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이유로,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은 정부기관에 대한 비판언론에 대한 보복으로서 정부가 명예훼손소송을 사용하게 될 것을 염려하는 점을 들고 있다.⁷¹⁾

공법인에 의한 명예훼손까지 금지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일반회사와 같이 영업상 신용훼손에 대한 손해의 회복을 위한 명예훼손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학자가 있으나, 공법인도 정부기관의 성격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정부기관과 같이 보아 명예훼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미국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⁷²⁾

2. 영국 및 기타 커먼로 국가들

영국은 Mayor, Alderman, and Citizens of Manchester v. William 사건⁷³⁾에서 정부기관의 명예훼손 소송을 금하는 판례를 시작으로 시종일관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영국의 최고법원인 “The English House of Lords”는, Derbyshire County Council v. Times News-paper Ltd. (1993) 사건⁷⁴⁾에서, “정부기관은 선출로 구성되었든 아니든 무제한적인

67) 383 U.S. 75, 81.

68) 482 F. Supp. 897, 898(E.D.Pa. 1979).

69) 477 S.W.2d 750, 753(Tenn. Sup. Ct. 1972).

70) 919 F. Supp. 756 (D.N.J. 1996).

71) Rodney A. Smolla, 섹션 4:76, at 4-123.

72) id, 섹션 4-76, at 4-121.

73) 1 Q. B.94, 63 L.T. 805(1891), Rodney A. Smolla, 4:76.

74) All E.R. 1011(11,1993)(U.K.)

영국, 호주 등은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봉쇄할 목적으로 제기되는
전략적 소송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

대중의 비판에 직면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에 가장 부합된다. 명예훼손 소송의 위협은 불가피하게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한다.”고 하면서, “영국의 Common law에서 지역당국이 명예훼손 소송을 할 권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거듭 판시했다.⁷⁵⁾

영국법원은 1997년 Goldsmith v. Bhoyrul 사건⁷⁶⁾에서 정당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소송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정당은 공직선출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기구와 같은 입장에 있어 무제한적인 비판에 직면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된다는 것이었다.

정부기관에게 명예훼손소송을 금하는 이유는 첫째, 정부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 성공에 중대하고, 명예훼손소송은 자유로운 토론을 억압한다는 것, 둘째 명예훼손제도는 평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구성원이 계속 바뀌게 되면서 평판이 달라지므로 정부당국 자체의 평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셋째 정부에게 명예훼손을 허용하게 되면 비판을 봉쇄하기 위하여 정부가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 등이다.⁷⁷⁾

인도의 대법원도 영국의 Derbyshire 사건의 판례를 따라서, R. Rajagopal v. State of T.N.(1994) 사건에서, “정부, 지역당국, 권력기관들은 명예훼손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하고, 나아가 “공직자는 프라이버시권을 가지지 않

으며, 공적 행동에 대한 토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⁷⁸⁾

영미법 국가에서는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국공립회사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법원은 국영 철도회사⁷⁹⁾의, 짐바브웨 대법원은 국영우체국 및 통신회사⁸⁰⁾의 명예훼손 소송을 허락하지 않았다. ECHR는 스페인 명예훼손 처벌법에 관한 사건인 Castells v. Spain(1992)에서, “정부는 명예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했다.⁸¹⁾

이와 같이 영미법 국가에서는 정부기관, 국공립회사, 정당에 대해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원천봉쇄한다. 그 진술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따라서 진술자는 그 소송에서 방어할 필요조차 없다.

3. SLAPP에 대한 대응

공적 이슈에 관련하여 시민의 비판을 봉쇄할 목적으로 회사 등 이권단체와 관련 정부기관에 의해 명예훼손소송이 이용되는 것도 명예훼손소송 남용의 한 형태로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비판봉쇄 목적으로 제기되는 이러한 소송을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SLAPP)”이라 부른다. 미국에서

75) All E.R. 1011 (H.L. 1993) (U.K)

76) 4 All E.R. 268, 270(Q.B. 1997) (U.K)

77) id

78) (1994) 6 S.C.C. 632 (India).

79) Die Spoorbond v. South African Railways, 1946(2)SALR999, 1012-13(S. Afr)(Schreiner, J.A., concurring)

80)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 v. Modus Publications(Private) Ltd.,(2) ZLR 492(S), Judgement No. S-199-97(1997)(Zimb).

81) 236 Eur. Ct. H.R. (ser. A) (1992), at 21.

는 이러한 소송을 방지할 목적으로 각 주의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이런 소송으로 밝혀지면 조기 소각하를 한다든가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시킨다든가 변호사를 징계한다든가 하는 방법 등이 있다.⁸²⁾ SLAPP 소송은 세계의 여러 나라에도 확산되고 있는데, 호주, 영국, ECHR 등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IV. 한국의 공직자 명예훼손, 이대로 좋은가

우리 대법원은 1988. 10. 11. 선고 85다카29판결에서,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도 면책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면책이 되는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법원이 선고한 그 동안의 많은 판례를 보면,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여전히 공직자 명예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판례에서도 분명하다.

우리 법원은 공인개념 수용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지 못했고, 공익과 관련하여 하나의 고려요소로서 참작해온 정도였다. 그런데 최근에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은, “공적인물과 사인, 공적인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하여, 공인개념을 공익과는 별개의 심사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후에도 우리 법원의 판례를 보면 공적 인물, 공적 관심사안에 대하여 언론의 자유의 폭을 크게 확장하여 상당한 이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정도로 나아간 것은 보이지 않는다.

대전법조비리보도와 관련하여 검사 22명이 집단으로 제기한 사건⁸³⁾에서, 법조계 전체의 고질적 비리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파헤쳐 이를 신랄하게 비판한 공익보도성이 강한데도 굳이 대전지검 검사들이 그 보도로 피해자로서 특정되었다고 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해 주었다. 법원이 이 사건에서 공직자들은 호된 국민의 비판을 감수할 위치에 있다고 하고 공익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아 면책을 시켰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본다.

조폐공사 파업관련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브리핑을 한데 대해 검찰의 도감청 의혹을 제기한 신문 사설에 대해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12명의 명예훼손을 인정하여 1인당 1,500만원씩 모두 1억8천만원의 배상판결을 선고⁸⁴⁾하였다. 이 판결에서도 법원이 ‘의견’으로 인정해서 그 정도 의혹을 언론에서 제기하는 논평은 가능하도록 허용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본다. 진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의견이란 존재하기 힘들데 의견의 영역을 법원이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 발표와 다르게 정당이 성명발표를 한데 대해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4부장이 성명발표자인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을 상대로

82) 12 Temp. Int'l & Comp. L.J. 457 참조.

8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6. 22. 선고 99가합5683호 판결.

84) 서울지방법원 2000. 2. 2. 선고, 99가합77460.

공직자의 명예를 두텁게 보호하면
공적 이슈에 대한 활발하고 공개적인 토론이
위축되어 알 권리와 언론자유를 제한

한 사건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5천만원을 선고하였다.⁸⁵⁾ 이 사건에서도 구태여 법원이 고도로 정치적 논쟁에 해당하는 정당의 브리핑에 대해서까지 대변인 개인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았다고 판단한다.

조폐공사 특별수사본부 사건이나 정당의 성명발표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한 것은 특히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던진다.⁸⁶⁾⁸⁷⁾ 위 판결이 던지는 문제점을 거론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자들이 공식 브리핑을 한데 대해 신문사가 나름대로 사안을 분석하여 믿을 수 없는 구석이 있고, 어떤 의혹이 들 경우에조차 그 의혹이 드는 점을 거론하거나 ‘의혹이 있다’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 둘째, 공직자들이 공식 브리핑을 한 것은 액면 그대로 베껴쓰거나 정치적 야당까지도 앵무새처럼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안전하지만, 이를 불신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편파적이다’는 말을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명예훼손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셋째, 야당인 정당의 대변인은 정당을 대리하여 정치적 행위에 대한 성명발표를 하는 위치에 있는데, 공직자들의 공식 브리핑을 함부로 비판했다가는 정당 대변인이 개인적으로 명예훼손 책임을 무더기로 지게 된다. 넷째, 한국의 공직자들은 공식브리핑을 그대

로 믿지 않고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등에 대해서 집단으로 명예훼손소송을 계속 제기해 올 것이다.

우리는 정부, 공공기관까지도 정책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대해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상대로 공공기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소송을 마구 제기하고 있다. 경찰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경찰서 전직원의 이름으로 고소를 하여 형사사건으로 직접 수사를 하는 것, 시민단체의 부패지수 발표로 구청의 전직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공공기관 등이 제기하는 명예훼손 소송은 시민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명예훼손소송을 남용하는 측면이 아주 강하다고 본다.

우리 법원은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명예훼손소송의 남용현상과 공직자 명예를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어 공익이 피해를 입는 사정을 크게 고려하여 공익과 공직자에 관련된 명예훼손소송에 있어 보다 확실한 입장과 예측가능한 기준을 정립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와 공공기관, 정당, 공공기관의 명예보호를 허용해야 하는지, 공공기관 대표와 구성원들의 명예훼손을 어느 선에서 인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우리 법원은 확실한 기준을 세워야 할 때다.

85) 국민일보 2001. 9. 1. 23면.

86) 조선일보 사설에서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1심 판결은 “진실에 기초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하여, 국제언론인협회(IPJ)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검찰이 공익차원의 절박한 이슈를 제기한 언론에 대해 법적 행동을 한 것은 사회적 논의를 질식시키게 될 것”이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21세기의 새로운 형태의 언론검열”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매일, 2000. 2. 25. 자 5면).

87)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행위나 공식브리핑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면 가차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최규선 사건에서는 “야당대표에게 20만 달러를 주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제3자의 전문진술(이른바, ‘카더라 통신’)을 언론에 공개하였다(조선일보 2002. 5. 10. 2면).

V. 결 론

공직자 명예를 두텁게 보호하면 처벌과 소송을 두려워하여 공익 이슈에 대한 활발하고 공개적인 토론이 위축되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제한되며, 공직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꺼리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사회구성원 모두의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게 된다. 세계적 인권단체인 Freedom House는 1999년도 연례 언론자유조사보고서 '세기의 뉴스: 1999년 언론자유(Then News of the Century : Press Freedom 1999)' 전문에서 언론탄압의 새로운 양상으로 명예훼손법의 남용에 따른 '은밀한 검열'을 지적했다.⁸⁸⁾ 국제언론인협회(IPI)는 2000년 3월 발표한 1999년 세계언론자유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언론의 주요 위협수단으로 명예훼손이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⁸⁹⁾ 국제언론인협회(IPI)는 한국을 금년에도 언론자유감시대상국 지위로 분류했다.⁹⁰⁾

미국의 헌법학자 블라시(Vincent Blash)⁹¹⁾는 언론의 상업적 폐해가 크다고 해도,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의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가치를 언론이 가지므로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⁹²⁾ 매스컴의 권력집중의 폐해가 크다고 해도 "매스컴을 해체하는 것은, 매스컴이 정부의 통제를 받게되면 전체주의를 상대로 한 안전판 자체를 잃게 된다"는 허친스 보고서⁹³⁾는 지금 시점에 진지하게 음미해 볼 만하다.

민주주의가 발달된 선진국일수록 언론이 정보의 제공과 정부기관과 공직자를 감시하는 역할에 큰 비중을 부여하고, 명예훼손소송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큰 위협임을 인정하여 공직자의 명예훼손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간다면 공직자에 대한 비판, 권력에 대한 감시, 공적 이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은 위축되고 언론의 자유,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은 현저하게 움츠러들 것이다. □

88) www.freedomhouse.org/990429.html

89) id

90) 문화일보, 2001. 10. 22. 자 2면

91) 콜럼비아 로스쿨, 미국의 유명한 헌법학자

92) 경향신문, 2001. 12. 19. 자, 18면

93) 중앙일보 2001. 7. 21. 자 33면

특 집

명예훼손의 비교법학적 고찰

언론관련 명예훼손소송 추이 비교

-한·미·일 판례를
중심으로-

이 재 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출. 동 대학원 석사
- 미국 아이오아대 저널리즘 석사.
- 남일리노이대 저널리즘 박사
- JCI 편집위원, 한국언론학회 이사
- "명예훼손법상의 공익과 언론에 나타난 공익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연구"
- "방송관련 명예훼손 판례에 있어서의 진실성과 공익성에 관한 연구"
- "Libel Law and the Press" 외 다수

I. 서 론

무릇 명예는 개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서의 신뢰, 명망, 그리고 전문적 능력 등에 대한 평가와 직결되는 사회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요인이다.¹⁾

그에 반해서 언론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취재, 보도에 있어 시간을 다투어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들의 명예를 세심하게 고려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곧 명예훼손 소송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언론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언론자유와 명예권 사이의 사법적 이익형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세심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러한 이익형량의 근거가 바로 명예훼손법이다.²⁾

그런데 각 사회는 그 사회가 처한 상황에 맞는 명예훼손법이 발달해 왔다. 미국의 헌법학자 샤우어(Schauer)는 영국과 미국의 명예훼손법에 대해 비교분석하면서 같은 보통법(common law) 전통을 가진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도 명예훼손법상의 법리가 이질적임을 밝히고 있다. 그는 명예훼손법이란 각 사회의 고유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며, 명예훼손 현상에 대한 해결은 각 사회가 명예의 중요성과 언론자유 중요성에 두는 사회적, 정치적 가치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피력하였다.³⁾ 그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 상의 언론자유 보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의 경우 영국과는 달리 언론자유를 우월적인 권리로 보고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1) Post, Robert C., "The Social Foundation of Defamation Law: Reputation and the Constitution", *California Law Review*, 71, 1986, pp.691-741.

2) Bezanson, Randall P., Gilbert Cranberg, & John C. Soloski, *Libel Law and the Press: Myths and Reality* (New York: Free Press, 1987), p.7.

3) Schauer, Frederick, "Social Foundation of the Law of Defamation: A Comparative Analysis", *Journal of Media Law and Practice* 1, May 1980, pp.3-23.

피해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이해하는 전통이 세워졌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자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명예훼손법은 각각의 고유한 사회적 환경에 근거하여 사법부의 언론자유와 인격권에 대한 이익형량에 있어 어느 곳에 비중을 두는 것이 사회적 공익 실천에 중요한가하는 판단에 따라서 다르게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 다시 말하자면 비록 한국의 사법체계는 일본과 미국의 사법체계의 영향을 받아왔지만 명예훼손법의 발전 양상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⁵⁾

이러한 이해에 근거하여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명예훼손법 발전의 양상을 살펴보고, 최근의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소송경향을 비교하고자 한다. 즉, 이 연구는 각 국가들의 명예훼손법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점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명예훼손 판례들에서 보이는 명예훼손법의 특성과 경향, 그리고 이전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각국의 명예훼손법의 특징과 발전과정을 설명한 후, 각 국가들의 관련 판례에 있어서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알아본다.

II. 각국의 명예훼손법의 특성과 판례 경향

1. 미국

미국에 있어서 명예훼손법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791년 제정된 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에 의해 보호되는 언론자유(freedom of press)의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즉, 헌법상의 보호를 받는 언론의 자유는 여타의 개인적 기본권에 비해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가 개인의 가치의 발현, 진리의 발견, 시민들의 정책예의 참여를 위해서 필수적인 기본권인 반면⁶⁾ 언론의 자유(freedom of press)는 정부와 권력에의 감시와 견제(checking value)를 위한 권리이며⁷⁾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⁸⁾ 그러나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해도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언론의 자유와 여타의 개인적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들 사이의 조화로운 이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한다.⁹⁾

미국의 경우 1964년 New York Times v.

4) 한국언론재단, 『언론소송 10년의 판례연구』, 한국언론재단, 2001.

5) Ahn, Kyong Whan, "The Influence of American Constitutionalism on South Korea",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Law Journal* 22, 1997, pp.71-115.

6) Emerson, Thomas, *The System of Freedom of Expression* (NY: Random House, 1970).

7) Blasi, Vincent, "The Checking Value in the First Amendment Theory", *American Bar foundation Research Journal*, 1977, pp.521-582.

8) Uhm, Ki-yul, "The Right to Know: Idealism and Realism in National Security Secrec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2000.

9) 1931년 Near v. Minnesota 사건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언론자유도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음란(obscenity), 그리고 치안망해(seditious libel)의 경우 다름이 있는 개인적 법익과 이익형량 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283 U.S. 697 (1931)).

한국의 사법체계는 일본과 미국의 사법체계의
영향을 받아왔지만 명예훼손법의
발전양상은 다르게 전개

Sullivan 사건 이후 명예훼손은 헌법적 논의의 축에 속하게 되었다. Sullivan 사건 이전까지 명예훼손은 수정헌법 제1조상의 영역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피해가 입증되면 명예훼손으로 언론을 처벌할 수 있는 '엄격한 책임주의'(strict liability)가 적용되었다.¹⁰⁾ Sullivan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언론이 직업적인 특성과 사회적 기능(역할)에 있어 본질적으로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직자(public official)의 경우 언론에 대해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증명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보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하여 언론에 대해 획기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연방대법원은 Sullivan 사건에서 처음 도출된 '현실적 악의'라는 개념이 언론인이나 편집인이 기사의 발행 당시에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when the defamatory statements were published, the communicator either knew they were false, or published with reckless disregard of truth or falsity)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즉, 이는 보통법상의 악의(malice), 앙심(spice), 증오(hatred), 원한(ill will), 범의(desire to harm)와는 별개의 것으로 언론의 직업적 특성과 사회적 역할에 맞게 대법원에서 헌법적으로 창

조되어진 개념이다.¹¹⁾ 중요한 점은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이 보통법상의 법리적 전통을 배척하였다는 점이다. 연방대법원은 "언론의 공적 쟁점에 대한 논의는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고 표명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비록 올바르지 않은 언론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허용이 불가피하며, 만일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언론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공간이 축소된다고 주장하였다. Sullivan 사건 이전까지 사실입증의 책임이 언론측에 있었는데,¹²⁾ 이후 진실입증의 책임은 언론측으로부터 개인측으로 넘어가게 되어 언론은 큰 짐을 덜게 되었다.¹³⁾

Sullivan 사건이후 미국의 명예훼손법은 지속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현실적 악의 원리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1967년 연방대법원은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사건에서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현실적 악의원칙을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에까지 확장시켰으며,¹⁴⁾ 이는 더욱 확대되어 1971년 Rosenbloom v. Metromedia 사건에서 소송 당사자의 지위여부에 상관없이 명예훼손적 언사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해졌을 경우 현실적 악의원칙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¹⁵⁾ 그러나 1974년 Gerts v. Welch, Inc.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Rosenbloom 사건에서의 판결을 위헌으로 간주하면서, 현실적 악의 원칙은 사인

10) Smolla, Rodney A., *Law of Defamation* (New York: West Group, 2000).

11) Keinke, Rex S., *Media Law* (New York: The Bureau of National Affairs, 1991).

12) 표성수, 『언론과 명예훼손』, 육법사, 1997.

13) Dworkin, Ronald, *Freedom's law: The Moral Reasoning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MA: Havard Univ. Press, 1966), p.10.

14) 388 U.S. 130 (1967).

15) 403 U.S. 29 (1971).

(private person)에게는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식하고 현실적 악의 원칙의 적용범위를 공인에 한정하도록 하였다.¹⁶⁾ 여기서 연방대법원은 사인은 공인과 달리 매스미디어를 통해 공중의 주목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도 아니며 명예훼손적 연사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 매스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정도가 공인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공인보다는 더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1985년 *D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s, Inc.*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는 단지 “공공의 관심사와 관련된 연사만을 보호한다”고 판시하면서 사인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보상이 해당 주의 이익(interest)과 비교형량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¹⁷⁾ 유사하게 1986년 *Philadelphia Newspaper, Inc. v. Hepps*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진실한 언론이 억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명예훼손소송의 원고가 공인의 경우 논의되는 명예훼손적 연사가 적어도 공적인 관심사에 관련된 경우 그 연사의 비진실성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고 보았다.¹⁸⁾

미국의 명예훼손법의 발전과정을 살피기 위해서는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면책사유(legal defenses)가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명예훼손법에 있어

서의 면책사유는 빈번히 발생하는 명예훼손 소송으로 인하여 언론의 본질적인 측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명예훼손법상 언론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게재된 내용이 진실해야 한다. 이를 면책사유로 인정하는 전통이 시작된 것은 1735년 소위 John Peter Zenger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⁹⁾ 그러나 뉴햄프셔(New Hampshire)주 등 몇몇 주에서는 표현 행위자에게 ‘악의적 의도’(malicious intent)가 있으면 진실성의 면책이 부정되는 등 그 적용에 있어 일치하지 않았다.²⁰⁾ 그러다 1964년 *Sullivan* 사건과 이후의 *Herbert v. Lando* 사건²¹⁾ 등을 통해서 연방대법원이 현실적 악의 원칙을 확립함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표현의 허위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미국의 법에 비취 진실성과 함께 공정한 논평(fair comment)도 중요한 면책사유이다.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나 일반 공중의 관심사인 사항에 관해서는 누구라도 논평의 자유를 갖는 것이며 그것이 공적 활동과 무관한 것으로서 개인적 정보의 폭로나 인신공격이 아니고 또 그 논평이 공정한 한은 그 용어나 표현이 아무리 격렬하고 저속하다고 해도, 또 그 결과로서 피논평자가 사회에서 받는 평가가 저하된다고 하더라도 논평의 주체

16) 418 U.S. 323 (1974).

17) 472 U.S. 749 (1986).

18) 475 U.S. 767 (1986).

19) 자세한 것은 Youm, Kyu Ho, “Truth as a Libel Defense in the United States: Its Judicial Origin and Statutory Status”, *Anglo-American Law Review*, 16, 1987, pp.36-57.

20) Dill, Barbara, *The Journalist's Handbook on Libel and Privacy* (New York: Free Press, 1986).

21) 411 U.S. 153 (1979).

근래 미국의 명예훼손소송사건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배상액은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가 면책된다는 것이다.²²⁾ 이에 반해 공정한 보도(fair report)는 보통법의 법리에 근거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나 절차를 공정하게 전파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공정한 보도의 면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보도가 정확하고 공정해야 하며 악의가 없어야 한다.

가장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면책사유이며 논란이 있는 것이 바로 중립적 보도(neutral report)이다. 이는 1977년 *Edwards v. National Audubon Society* 사건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모두본 면책(Audubon privilege)이라고 한다.²³⁾ 이 사건에서 연방 제2고등법원은 "New York Times 사가 미국의 권위 있는 환경단체인 '전국 모두본 협회' (National Audubon Society)가 비판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은 비록 그 내용의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할지라도 뉴스가치가 있는 기사를 보도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면서 언론사의 면책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 판결을 두고서 과연 새로운 헌법적 면책사유를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고 하급심 판결들도 상반되는 결과들을 낳았다. 아직까지 연방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를 입법화하려는 시도들도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²⁴⁾

이러한 면책사유와 더불어 현실적 악의 원칙은 공인으로 하여금 언론을 상대로 승소하

기 힘들게 만드는 핵심적 요인이다. 현실적 악의 원칙에 대한 최근의 비판과 논의들은 '현실적 악의' 원칙의 적용을 헌법 이론상 표현(언론)의 제한이라는 이유로 폐기하자는 주장보다는 현실적 악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되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자는 경향이 뚜렷하다.²⁵⁾ 또한 현실적 악의 원칙을 공직자에 국한하지 않고 공적 인물로까지 확대 적용한 것은 큰 오류라는 지적도 있다.²⁶⁾ 다시 말하자면 현재의 명예훼손법은 개정되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비판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근래의 미국 명예훼손법상의 특징은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의 수는 점차 줄지만, 배상액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 1980년부터 22년간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소송에 대해 조사해 온 '명예훼손 면책자료센터' (Libel Defense Resource Center : LDRC)가 발간한 2002년 리포트에 따르면 2000년 보다 2001년에 명예훼손 1심 소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디어는 2001년 이전 20년에 비해 가장 높은 승소율을 보였다. 2001년 보고된 명예훼손 소송 17건 중에서 8건에서 미디어가 승소했고, 8건은 원고가 승소했다(1건은 계류중). 약 50%의 미디어 승소율은 2000년의 승소율과 거의 비슷하지만, 1990년대 평균 승소율인 38.7%, 그리고 1980년대의 35% 보다 훨씬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20년 평균 승소

22) 뢰원순, 『매스컴유통법제이론』, 법문사, 1988, p.159. 논평의 범위는 공직자, 공직후보자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화적, 교육적, 종교적 기타 공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제반 문제에 대한 비평이 널리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표성수, 앞의 책, 1997, p.79.

23) 556 F.2d 113 (2nd Cir. 1977).

24) Uniform Defamation Act (1991, 6.) Sec. 18.

25) Dworkin, *ibid.*, 1966, pp.209-211.

26) Schauer, Frederick, "Public Figures", *William and Mary Law Review*, 25, 1981, pp.905-937.

율은 약 39.1%). 2000년대에 들어 소송 평균 건수에 있어서는 2001년의 1심 건수는 1990년대의 평균 건수인 18.5건 그리고 1980년대의 평균 건수인 26.1건에 비해 작았다. 즉, 10년 단위로 볼 때 평균 건수는 지난 22년 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에 대해 LDRC의 배런(Baron) 사무국장은 "보고서는 미디어가 명예훼손과 같은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한 소송에서 여전히 승소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디어 패소시에 미디어 피고측에 부과되는 손해배상액은 2001년이 2000년 보다 조금 낮았으나, 지난 20년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 8건의 미디어 패소 판결에서 평균 180만 달러(중앙치 1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이 부과되었는데, 1980년대에 평균치 144만 달러, 1990년대 평균치 296만 달러에 비교해 볼 때 약간 낮은 액수를 기록했다. 중앙치는 지난 20년간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평균 손해배상액은 2000년의 경우 가장 높은 해로 나타났다(560만 달러). 여기에는 2,450만 달러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이 내려진 Doe v. TCI Cablevision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²⁷⁾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483건의 보고된 1심 중에서 274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언론이 패소했을 경우 부과되는 배상액수는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지난 20년간 소송 건수가 줄어들고, 원고의 승소비율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용액의 액수는 오히려 상승한 결과를 보이고 있

다.²⁸⁾

보고서에 나타난 지난 1997부터 2000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1997년 22건에 달하는 1심(trial) 재판이 보고되었는데 이중 인용된 경우는 11건이며, 손해배상액의 평균은 39만 달러였던 것이, 1998년 16건의 판례 중 8건이 인용되었으며, 손해배상액 평균치는 85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의 경우 11건의 1심 가운데 4건이 인용되었고, 평균 손해배상액은 300만 달러로 상승했으며, 2000년에는 11건의 1심 중 6건이 인용되었으며, 인용된 평균 손해배상액은 560만 달러로 나타났다. 결국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 건수의 감소추세가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처럼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하여 개인과 언론이 다툼을 벌여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감소하였으나 언론에 대해 부과되는 손해배상액은 여전히 고액이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손해배상액의 책정제도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²⁹⁾

2. 일본

미국과는 달리 일본의 명예훼손법은 언론자유보다는 집단주의적 사회문화적 분위기 때문에 개인적 명예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 경향을 보인다. 일본의 명예훼손법은 명예훼손이 발생하는 경우 기사의 '진실성' 입증책임은 언론에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개인의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회복은 금전적 보상보다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27) Med. Law Rep., vol. 29, no. 12: <http://www.ldrc.com>.

28) 山地 修, "名譽毀損の損害額の算定について,"『判例タイムス』No.1055 (2001. 5. 15), pp.14-23.

29) http://www.ldrc.com/Press_Releases/bull2002-1.html.

일본은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의 보상으로
‘공개적 사과’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어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³⁰⁾ 명예훼손법은 진실성의 정도와 개인의 명예에 대한 피해의 정도를 균형 지우는데 대단히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³¹⁾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의 보상으로 “공개적 사과”(public apology)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개적 사과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태도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하는 것으로, 일본인들이 완전히 확증되지 않은 주장조차도 그것이 마치 자명한 것처럼 인식하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명예훼손법에 반영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일본의 명예훼손법은 ‘순응성’(conformity) 지향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와 일본의 전통적인 집단주의적 문화간의 이질성이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낮추기도 하고 동시에 높이기도 하는 역할을 한다.³²⁾ 이러한 특성은 법원에서 명예훼손 보도로 인하여 개인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³³⁾

또 다른 문제는 소송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가 하는 점이다. 판례에 따르면 비록 명예의 보호가 중요하지만 표현을 보호함으로서 얻어지는 사회적 이익에 무게를 두는 경우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적당한 수준에서 용인되기도 한다.³⁴⁾ 일본 형법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한 사람은 발생한 피해에 대해 철저히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⁵⁾ 형법 제230조의 경우 공공연한 사실적 주장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개인은, 그러한 사실이 진실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다분히 혹독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형법은 일상적인 명예훼손과 공익과 관련된 명예훼손을 구분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익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법원은 ‘엄격한 책임’(strict liability) 원칙보다 ‘부주의’(negligence)의 기준을 적용한다. 형법 제230조2항은 여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언론은 문제된 기사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련된 경우’ 그리고 ‘오로지 공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보도된 경우’에 대해서는 그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30) Smith, Ellen M., "Reporting the Truth and Setting the Record Straight: An Analysis of U.S. and Japanese Libel Laws",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4, 1993, pp.871-903.

31) Tanaka, Hideo, ed., *The Japanese Legal System: Introductory Cases and Materials* (Tokyo: University of Tokyo Press, 1988), p.324.

32) Beer, Lawrence, *Freedom of Expression in Japan: A Study in Comparative Law, Politics, and Society* (Tokyo: Kodansha International Ltd., 1984), p.318.

33) 일본의 경우 대개 민사적 해결을 선호하면서도 때로는 형사적인 처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1)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2) 손해 배상액이 명목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3) 실제로 피해 당사자는 금전적 보상보다는 신속한 피해구제에 더욱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Beer, Lawrence W., ed., *Constitutional Systems in Late Twentieth Century Asi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2), p.192.

34) 伊藤正己, "現代社會と言論の自由"(東京: 有信堂, 1974), p.217.

35) Horibe, Masao, "Press Law in Japan", in *Press Law in Modern Democracies: A Comparative Study*, ed., Pnina Lahav (New York: Longman, 1985), pp.315-328.

진실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³⁶⁾ 형법은 만일 언론이 기사를 쓰는 당시에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실제로 그것이 사실이었는지를 확인하려는 선의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범죄 의도를 언론에 전가하지 않는다.

민법의 경우 1949년 ‘신문 및 간행물 규제법’이 폐지된 이후 법원은 피해를 유발한 사람이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금전적 배상을 대신하는(민법 제710조) 또는 금전적 배상과 함께 필요한 적절한 조치(민법 제723조)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민법은 형법과는 달리 ‘공익성’의 이슈와 관련되어 면책되는 규정은 없지만 일본 법원은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의 경우 이러한 공익원칙을 지속적으로 적용시켜 왔다.³⁷⁾ 관례에서의 대개의 경향은 개인의 명예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공격적인 언론 보도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법원은 문제가 된 보도 내용을 보도 당시에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고 보도했다는 ‘선의’(good faith) 또는 ‘비고의’를 증명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훼손된 개인의 명예를 위해 보도 내용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강조한다.³⁸⁾

언론의 면책은 형법 제230조의 2에 근거하

고 있는데, 명예훼손적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전적으로 공익을 도모할 것이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진실한 것의 증명에 있는 때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⁹⁾ 사실 형법 제230조 2의 규정은 1947년 미군정당국의 지시로 명예훼손죄의 특별면책 규정으로 신설되었다.⁴⁰⁾ 이러한 형법상의 규정에 따라 일본에서의 면책사유의 발달은 사실의 공공성, 목적의 공익성, 진실성의 입증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사실의 공공성의 경우 판례상의 경향은 문제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먼저 사실의 배포, 전파의 범위를 판단하고,⁴¹⁾ 다음으로는 표현 방법, 문체, 배포 방법, 조사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공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⁴²⁾ 이때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에 관한 표현은 대체로 공공성이 강하게 인정된다. 이러한 공공성과 함께 면책을 위해서는 표현의 목적이 “전적으로”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어야 한다. “전적으로”라는 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입법론적으로는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⁴³⁾

아울러 진실성의 입증이 요구된다. 일본 형

36) 한국언론재단, 『세계 언론법(상)』, 한국언론재단, 1995.

37) Judgment of Dec. 21, 1958, Chisai District Court, Minshu 1125 (1966).

38) Yamanaka, Hataya et al., eds., *Japanese Communication Studies of the 1970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6), pp.139-142.

39) 일본의 새로운 헌법이론의 경우 비록 표현내용의 진실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책을 인정하고 표현 행위자의 공익 도모의 목적을 면책요건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면책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견해도 있다.

40) 平川宗信, 『名譽毀損罪と表現の自由』(東京: 有斐閣, 1983), p.43.

41) 中森喜彦, 『大コメンタル刑法(9)』(東京: 青林書院, 1988), p.42.

42) 東京高等裁判所 1953. 2. 21, 高判 6. 4. 367.

43) 堀部政男, “表現の自由と人格權の調和”, 『現代損害賠償法講座』2, 伊藤正己(東京: 日本評論社, 1980), p.14.

일본의 경우,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한
명예훼손소송에서 고액판결이
증가하는 추세

법 제230조의 2는 “사실의 진부(眞否)를 판단하여 진실인 것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면책요건으로서 진실성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일단 사실의 공공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사실의 진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개의 관례상의 입장이다.⁴⁴⁾ 진실성의 입증을 위하여 표현된 모든 부분에 대한 진실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진실인 것이 증명되면 족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⁴⁵⁾ 보도 당시에 진실이라고 믿은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것이 면책이 되는가에 대해 논란이 되어 오다가 1969년 판례에서 최고재판소가 진실의 증명이 없어도 일정한 경우에는 면책을 인정하였다.⁴⁶⁾

이처럼 발전해온 일본법의 경우 최근 보도와 관련한 명예훼손소송에서 고액 판결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법원은 1995년까지 1백만 엔 정도, 1998년까지는 1백50만엔 정도를 배상하도록 판결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2000년 들어서는 그 이상의 고액의 소송이 나타나고, 2001년의 경우 9월말까지 5백만엔 이상 배상을 명한 사건이 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⁴⁷⁾ 실제로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의 고액화 문제는 이전부터도 많이 논의되어 왔다. 도쿄지방법원 판사들은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비난에 직면하여, 최근 유명인사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언론의 책임이 발견되면 배상액의 규모를 4백-5백만으로 상향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⁴⁸⁾

명예훼손소송과 관련, 자민당은 1998년 8월 발표한 ‘보도와 인권 등의 바람직한 상(像)에 대한 검토회’ 보고서에서 손해배상액이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고 배상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최고재판소 행정국장도 대언론 명예훼손 배상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마유미(森山眞弓) 법무장관은 손해배상액이 개인들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수단으로 불충분하다는 의사를 피력했다.⁴⁹⁾ 이는 1999년 3월부터 2001년 5월까지 도쿄지방법원이 배상을 명한 소송 30건의 평균배상액이 2백만 엔으로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손해배상액 2천6백만엔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⁵⁰⁾ 3년간의 동경지방법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명예훼손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인용액이 점차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평가방법의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 즉, 현재는 상황에 변화가 보이는 과도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⁵¹⁾

요약하면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부터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기

44) 東京高等裁判所 1953, 2, 21, 高判 6, 4, 367.

45) 東京地方裁判所 1959, 3, 31, 下判 1, 3, 789.

46) 最高裁判所 1969, 6, 25, 刑集 23, 7, 975.

47) 新聞協會報 2001년 9월 25일자, p.3. 동경지방법원은 2001년 3월 27일 선고 공판에서는 프로야구선수에 대해서 주간지는 1천만엔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48) 讀賣新聞, 2001년 10월 27일자, p.18.

49) 新聞協會報, 2001년 9월 25일자, p.3.

50) 朝日新聞, 2001년 9월 8일자, p.37.

51) 東京地方裁判所損害賠償訴訟研究會, “マス・メディアによる名譽毀損訴訟の研究と提言”, 『ジェーリスト』, No.1209, 2001, 10, 1., pp.63-98.

시작했고,⁵²⁾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불신과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정치인은 물론 운동선수, 그리고 배우 등 공인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보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⁵³⁾ 소송의 증가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마이니찌 신문의 경우 1985년부터 1989년까지 해마다 0~2건에 머물렀던 명예훼손 소송이 1990년 6건, 1991년 12건, 1992년 19건, 1993년 20건으로 늘어났고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⁵⁴⁾ 특히 주간지와 같은 잡지사들의 경우 고액판결 소송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잡지사들은 법무담당 부서가 사전에 기사를 검토해 편집자에게 기사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취재원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⁵⁵⁾

3. 한국

한국의 명예훼손법의 발달은 일본법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서의 판단은 형법 제309조

의 비방목적(1항)과 허위사실의 적시(2항)여부에 근거한다. 형사책임의 경우 기자 개인만 책임을 지며 언론사는 형벌에 대해 부담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는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진실성)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공공성)에 관한 것인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고, 비록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도 위법성이 없음을 인정해 오고 있다.⁵⁶⁾ 그러나 진실성과 공공성의 판정 여부가 어렵기 때문에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진실성과 공공성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표현의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진실성이 인정되어, 세부사항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면책된다.⁵⁷⁾ 공공성에 관하여는, 행위자의 목적이나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공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표현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가 중요한 구별기준이 된다.⁵⁸⁾

명예훼손의 요건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비

52) 표성수, 앞의 책, 1997.

53) 김상우, "명예훼손에 대한 언론사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p.51.

54) 勝屋憲一, "法務が忙しいという不幸", 『新聞経営』 No.1, 1999, p.12.

55) 朝日新聞, 2001년 9월 8일자, p.37.

56) 현재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대법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결정 등.

57) 박선영, 『언론정보법연구』, 법문사, 2002, pp.229-244. 또한 한국언론재단의 2001년 연구에 의하면 법원이 언론의 면책사유를 받아들인 77건 가운데 '상당성 인정'이 32.5%로 가장 많았고 '언론의 특수성 고려'(29.9%), '공공의 이익 강조'(20.8%), '사실 보도 인정'(16.9%) 등이 그 다음이었다.

58) 법원도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및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 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대법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결정.

우리 나라는 80년대에 불과 60여 건에 지나지 않던
언론소송이 90년대에는 139건으로
약 2.5배나 증가

방할 목적'(형법 제309조)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과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대해 법원은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⁵⁹⁾

이러한 명예훼손법의 최근의 특성은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이 수적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⁶⁰⁾ 연구들에 따르면 1980년부터 1989년까지 인격권 침해 소송은 60여 건인 반면, 이후 10년간은 139건으로 약 2.5배에 달하며,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인격권 침해 소송의 수는 양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이후 현재까지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⁶¹⁾ 지

난 10년 중 1995년 이후의 평균 건수는 24.8건이고, 1990년에서 1995년까지의 6년간은 약 6.6건 정도로 후반부에 약 3.5배정도 더 많은 소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⁶²⁾ 이처럼 양적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승소율도 저조하여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비율이 72.4%인 반면 언론의 승소율이 2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의 2심과 3심에서의 승소율 역시 각각 30.2%와 27.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봉착하여 언론사들은 범조전담부서를 구성하고 고문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변호사 기사 열람제도를 도입하거나 명예훼손소송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는 언론사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⁶³⁾

이처럼 소송이 증가한 데에는 지난 20여 년간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이유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1980년대 후반 이후 군사정권이 시들고 민주화의 물결속에서 인권에 대한 법적 의식이 크게 신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언론에 의한 인권의 피해를 인내하던 사회적 풍조가 변하여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⁶⁴⁾ 둘째, 정치적 민주화 과정에서 언론에 대한 국가적 강제력이 약화되면서 언론의 자유보다는 언론의 책임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도래하였다.⁶⁵⁾ 셋째, 1980

59) 대법 2001. 10. 30. 선고 2001도1803 결정.

60) 한국언론재단, 앞의 책, 2001.

61) 이승선,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언론종사자 책임에 관한 연구," 『언론과 사회』27(1), 2000, pp.82-133; 조준원, "1990년대 언론관계 손해배상판결의 사회과학적 분석," 『언론중재』20(4), 2000, pp.33-53.

62) 조준원, 앞의 글, 2000, p.38.

63) 한국언론재단, 앞의 책, 2001. 2001년 10월 현재 보험에 가입해 있는 언론사는 모두 6곳으로 종합일간지, 경제지, 스포츠지, 방송사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기자들의 보험가입은 다른 전문 직업인들의 보험가입과 비교하면 저조하다.

64) 표성수, "명예훼손 면책사유로서의 상당성 기준," 『언론중재』20(2), 2000, pp.33-48.

65) 배금자, "보도와 명예훼손: 대안적 검토," 『언론중재』19(3), 1999, pp.31-39.

년대 후반부터 언론은 이전의 강압적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동시에 점차 양적으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언론의 양적 팽창과 함께 개인적 피해가 속출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⁶⁶⁾ 넷째, 언론과 언론인들이 법을 지키려는 의식이 약하다는 점이 소송을 불러오는 요인이 된다.⁶⁷⁾

언론관련 명예훼손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서 몇 가지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무엇보다 손해배상액이 상승한 것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언론사는 점차 증가하는 손해배상액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과거 약 3,000만원을 밀돌던 손해배상 인용액이 지난 10년 동안 평균 3,600여 만원으로 상승하는 등 언론에 대한 책임을 점차 과중하게 묻는 경향이 있다.⁶⁸⁾ 손해배상액수가 1억원을 넘는 사례는 1994년까지 찾아볼 수 없으나 1995년 이후 1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판결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인용액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언론에 대한 책임을 점차 과중하게 묻는 경향은 조만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⁶⁹⁾

손해배상액이 상승한 이유는 공인들의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즉, 공인들의 명예훼손 소송의 증가도 주요한 쟁점이 된다. 언론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소송의 원고 유형은 일반인(25.5%), 언론사 및 언론인(14.2%), 공무원 및 정치인(13.4%), 기업인 및 전문인(11.3%), 종교인(10.0%), 문화예술인(7.9%), 공공단체(6.3%) 등으로 나타나서 일반사람, 즉 사인보다 공인들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손해배상 청구액과 인용액이 상대적으로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⁷⁰⁾ 관례에서 나타난 공인에는 대통령,⁷¹⁾ 청와대 경제수석,⁷²⁾ 전직 국무총리,⁷³⁾ 전·현직 국회의원,⁷⁴⁾ 검사,⁷⁵⁾ 행정부 관리,⁷⁶⁾ 군인,⁷⁷⁾ 경찰관,⁷⁸⁾ 변호사,⁷⁹⁾ 연예인,⁸⁰⁾

66) 이재진, “명예훼손법상의 공인과 언론에 나타난 공인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43(1), 1999, pp.147-176.

67) 박선영,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서의 ‘공익성’과 ‘진실성’ 및 ‘현실적 악의’”, 『언론중재』9(3), 1989, pp.38-58 ; 임병국, 『언론법제와 보도』, 나남, 1999.

68) 이승선, 앞의 글, 2000, p.132.

69) 이승선, 같은 글, 2000.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명예훼손 손해배상에서의 평균 배상청구액이 2억 6,701만원이며 실제 인용액은 3,399만원으로 신청액의 약 12.7%수준이라고 한다(p.123).

70) 임유진, “언론 보도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 관례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론학 석사학위논문, 1998, p.82.

71) 서울지법 1998. 7. 1. 선고 97가합88220 결정.

72) 대법 2000. 7. 28. 선고 99다6263 결정.

73) 서울지법 2000. 1. 19. 선고 99가합42730 결정.

74) 서울고법 2000. 8. 24. 선고 99나11986 결정.

75) 서울고법 2001. 7. 26. 선고 2000나25745 결정 등.

76) 서울지법 1998. 11. 18. 선고 97가합83683 결정.

77)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0. 2. 10. 선고 99카합2941 결정 등.

78) 서울지법 1998. 1. 15. 선고 96가합84238 결정.

79) 대전지법 2000. 7. 21. 선고 2000카기1303 결정; 서울지법 1998. 11. 25. 선고 97가합70271 결정.

80) 서울지법 1997. 2. 26. 선고 96가합31227 결정.

1995년 이후 1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판결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며, 언론의 책임을
과중하게 묻는 경향은 지속될 듯

방송진행자,⁸¹⁾ 그리고 언론인⁸²⁾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관련 소송들 중에서 개인이 실명으로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의 직업집단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도 있고, 사실을 적시한 스트레이트기사가 아니라 사실 또는 논설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과연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소송사건에서 원고적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언론사의 공정한 논평(fair comment)의 자유 및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특정 공무원의 공적 임무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에 국민의 알 권리와 명예훼손의 법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⁸³⁾ 대부분의 사건에서 한국 법원은 공인의 명예를 사인들의 명예보다 더욱 보장하는 모습이 보인다. 간략히 정리하면 한국의 경우 공인의 개념은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사유인 공공의 이익의 일부로서 인식되어지고 오히려 언론의 공인에 대한 비판이 사인들의 경우보다 더욱 신중해야 한다.⁸⁴⁾

판례수의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또 다른 쟁점은 집단의 명예훼손 소송이다.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자연인과 법인 그리고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집

단의 경우에만까지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집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집단명칭을 거론하여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그 명예훼손의 효과가 과연 집단구성원 각각에게 미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집단구성원의 수가 매우 적거나 집단 내의 개별구성원이 특정될 수 있도록 거론되는 경우에는 명예주체성이 인정된다. 다시 말해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⁸⁵⁾는 것이 판례경향이다.

그런데 최근 판결의 경우 집단명예훼손사건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데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서는 '방송보도가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전체를 매도함으로써 그 직업을 가진 자 개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⁸⁶⁾고 하는가 하면,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사건에서는 '제1부'라는 명시적인 지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⁸⁷⁾ 그런가 하면 집단명예훼손의 원고적격은 인정하면서도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여 특정집단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의견표명으로 보아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⁸⁸⁾

81) 서울지법 2000. 2. 2. 선고 99가합84277 결정.

82) 서울고법 1997. 6. 25. 선고 96나50897 결정.

83) 박선영, 앞의 책, pp.247~281.

84) 이재진, 앞의 논문, 1999 : 차용법,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사법적 논의의 한계," 『한국언론학보』 45(2), 봄 2001, pp.387~421.

85) 대법 2000. 10. 10. 선고 99도5497 결정.

86) 서울지법 2000. 2. 2. 선고 99가합77460 결정.

87) 서울지법 2000. 6. 7. 선고 99가합88873 결정.

88) 서울고법 2002. 2. 7. 선고 2000나31320 결정.

언론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손해배상 청구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안 그래도 권력에 비판적 목소리가 미약한 한국 언론에 비판적 예봉을 꺾어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에 검사들의 대언론소송에서 거의 100%의 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기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종교집단이나 이익집단들의 언론사를 상대로 한 반론권 청구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언론사를 상대로 보복을 하거나 괴롭히려는 전략적 소송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들도 발견된다.⁸⁹⁾

유사하게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있어 명예훼손의 원고적격성에 대한 인정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만일 원고적격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게 될 경우 권력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이 저하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의 경우 사인과는 달리 그 업무가 공적인 관심사가 되고, 검사들의 경우 사회적으로 공적이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공적인 토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⁹⁰⁾ 만일 특정되지 아니한 집단에까지 원고적격성이 인정되면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헌법적 의의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고 하는 두 이익의 형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II. 요약 및 결론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명예훼손 관련법을 비교해서 최근의 추세를 살펴 본 결과 앞서 샤우어(Schauer)가 지적한 바대로 각 사회의 명예훼손법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을 비교형량함에 있어 사회적 이익의 실천을 위해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 하는 상황적인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명예훼손법은 기존의 발달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여전히 개인적 명예보다는 언론 자유에 좀 더 우월적인 가치를 두는 반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좀 더 고액화 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 이전까지 법원에서 선호하던 명목적인 손해배상을 버리고 실질적인 고액의 손해배상을 책정하는 판례가 나타나면서,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언론관련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인들에 의한 소송이 크게 늘어나면서 1억이 넘는 고액의 손해배상액이 인용되기도 하였다. 이전까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3천만원 이하의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에 그쳤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고액화 현상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점은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좀 더 예외적인 부분으로

89) 중앙일보, 2001년 1월 27일자, p.13.

90) 김민중, "원고의 신분과 명예훼손의 법리의 적용," 『언론중재』 20(2), 2000, pp.18~32.

손해배상액의 고액화는 언론의 선정적이고
무책임한 보도 태도에 대한 사법부의 부정적인
인식과 불신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인 듯

보여지며, 미국과 일본처럼 적절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액 책정에 대한 법적 논의들이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언론관련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이 고액화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언론의 선정적이고 무책임한 보도태도에 대한 독자들과 사법부의 부정적인 인식과 불신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1987년 4월 8일자 미국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잘못된 보도와 언론관행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20%를 넘는다고 한다.⁹¹⁾ 이러한 위기의식은 일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1997년 일본신문노련은 '신문인의 양심선언' 전문에서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의 충실과 시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⁹²⁾ 한국의 경우 언론의 자유가 더 이상의 중요한 화두라기보다는 언론의 책임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언론도 더 이상 무책임한 태도를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미국, 일본의 명예훼손법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언론의 보도 내용이 '진실한 경우'는 명예훼손으로부터 면책이 된다는 것이다. 이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나 언론의 성격상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밝히기가 힘들기 때문에 각 사회는 현상에 걸맞는 면책사유들을 발전시켜 왔다. 미국의 경우

공인과 현실적 악의 원칙이 핵심적이다. 그러나 현실적 악의란 언론인의 심적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실제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이 언론이 자유롭게 정치권과 정치인을 비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진실입증의 책임이 언론이 아닌 원고측에 있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다.

일본과 한국의 명예훼손법은 유사해서 진실성의 원칙이외에 공익성의 원칙이 중요한 면책사유가 된다. 즉, 내용이 공적 관심사를 다룬 것이며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가 하는 판단이 언론의 면책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때 일본에서의 진실성은 진실이라고 오신할 수 있었던 가능성의 정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즉, 언론이 보도할 당시에 보도 내용 전체가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취재, 보도 당시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증거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면책의 요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국, 미국, 일본의 명예훼손법과 관련 지난 10여 년간의 판례들을 살펴본 결과 각 사회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중에서 어느 한쪽에 비중을 더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각 사회의 명예훼손법은 이들 양 이익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들을 발전시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최대한 오보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91) 김옥조, 『미디어 윤리』, 중앙M&B, 2001, p.1 재인용.

92) 김옥조, 같은 책, p.50에서 재인용.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연구

-독일과 일본,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윤 철 홍

송실대 법과대학 교수

- 송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출
- 독일 프라이브르그대학교 법학박사
- 광운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역임
- 현 송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I. 서 설

1. 대중매체가 발달된 현대에는 대중매체의 보도가 개인이나 법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 더욱 빈번해 지고 있다. 특히 선거철과 같은 정치의 계절에는 적법을 가장한 보도나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보도에 의해 자주 발생하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격권이 충돌되는 현상도 자주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양자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며,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것은 결국 피해자측의 권리 주장에 대한 가해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당성의 반격으로 나타나게 되는 위법성의 조각사유로 귀결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명예의 형법적 보호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의 충돌에 대한 조화 내지 해결의 방안이 바로 위법성조각사유인 것이다.¹⁾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태도는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이나 일본, 한국에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

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우선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주로 문제된다. 그러나 더 거시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공법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²⁾ 명예훼손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 문제 중에서 명예훼손죄나 불법행위책임에서 그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문제가 소위 위법성조각사유이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불법행위법상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됨은 당연하다. 예컨대 정당방위(형법 제21조, 민법 제761조 1항)나 긴급피난(형법 제22조, 민법 제761조 2항)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또한 형사재판시 검사의 기소요지의 진술이나 증인의 증언 등과 같은 법령에 의한 정

1) 平川宗信, 『刑法各論』, 有斐閣, 1997, p.228 ; 最高判 1969, 6, 25, 刑集 23-7, p.975.

2) 이러한 다양한 공법상의 문제에 대해 W. Frotscher, Ehrenschtz im öffentlichen Recht, in: JuS 1978 S.505ff. 참조.

독일과 일본, 우리 나라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형법에 규정하고, 민법에서는 이를 유추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당행위(형법 제20조)와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 자구행위(형법 제23조) 등에 의해서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의 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가 생명이다. 특히 신속한 보도는 언론사간의 경쟁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검증하지 못한 채 보도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게 된 경우 어디까지 그 책임을 면해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 보도내용의 진실성과 공익성이라는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이다.

3. 본고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성문법전에서 위법성조각사유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상호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제 나라의 입법례들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형법전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법 등에서는 이것을 유추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전상의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하여 사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독일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1. 개 설

독일형법 제186조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세

평을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한 자가 이러한 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그 행위가 공연히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의 반포를 통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사실이 증명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사실증명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외에도 독일형법 제187조에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제187조a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사실·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제189조에서는 사자의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하여 독일 형법 제193조는 “학문적·예술적·영업적 업적에 대한 비판, 권리의 행사나 방위 또는 정당한 이익의 옹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판적 의견의 발표, 상관의 부하에 대한 징계 및 견책, 공무원의 업무상 고발 또는 비평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의견발표의 형식이나 의견발표가 행하여진 정황에 비추어 모욕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모욕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독일형법 제185조의 모욕죄, 제186조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제189조의 사자의 명예훼손죄에도 적용되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로 해석되고 있다.³⁾

물론 이러한 명예훼손에 대한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 이외에도 다른 입법례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범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당방위(형법 제32조, 제33조)와 긴급피난(제

3) BGH 12, 293, 18, 181; BGHZ 3, 281, 31, 313, BVerfGE 12, 125; Schönke-Schröder-Lenckner, 25. Aufl., 1997, 193 Rn. 1 usw.

34조, 제35조)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인격권은 특수한 경우에 침해자인 상대방의 이익과 충돌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독일 형법 제193조는 침해자의 침해행위가 정당한 이익의 옹호와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모욕죄와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을 가별성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법익과 이익의 형량에 관한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의 확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⁴⁾ 이와 관련하여 다수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위한 언론기관의 권리와 의무, 정보에 대한 공공성과 동등한 권리 및 자유로운 의견표명의 권리의 고려 하에서 독일 민법 제824조는 이익형량의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독일법상의 '정당한 이익의 옹호' 법리

1) 독일 형법 제19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익의 옹호'와 관련하여 독일의 통설에 의하면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였는가의 문제는 결국 법익 내지 이익형량(Güter- und Interessenabwägung)의 문제라고 한다.⁵⁾ 즉 옹호하려는 정당한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모든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그 행위가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법적으로 승인된 이익의 정당한 옹호는 위법한 것이 되지 않는다.⁶⁾

Lenckner에 의하면 이것은 행위의 적격성과 필요성으로 표현된다. 그에 의하면 정당한 이익을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옹호 내지는 촉진할 위치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는 적격성이 결여되고 효과에 있어 차이가 없는 다른 온전한 수단이 있을 때에는 행위의 필요성이 결여된다고 한다. 또한 수단의 적합성의 인정을 위해서는 행위자가 행위에 앞서 모든 정황을 '심사숙고하고 충실한 정보를 얻어야 할 의무'(Prüfungs- und Informationspflicht)를 이해하였는가 여부가 중시된다.⁷⁾

2) 상술한 독일 형법 제193조의 핵심은 '정당한 이익의 옹호' 원칙이다. 이 원칙은 오늘날 지배적인 견해로서⁸⁾ 형법상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연방법원은 1951년 10월 26일의 콘스탄츠판결에서 제국법원의 형사부에 의해 발진된 이익형량의 지침에 의해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한 이익의 옹호의 법리를 채택하였다.⁹⁾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Schmid-Spiegel 판결에서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의 범위는 곧바로 독일 형법 제193조에서 제공하고 있는 명예와 표현의 자유의 이익형량이 하나의 본

4) Staudinger-Schäfer, 823, Rn. 234.

5) Schönker/Schröder/Lenckner, 193, Rn. 8; BGHSt 18, 184; 이형국, 『형법각론연구 I』, 법문사, 1997, p.310.

6) BGHZ 14, 48; Lenckner in: JuS 1988, S.352.

7) Schönker/Schröder/Lenckner, 193, Rn. 8.

8) Vgl. BGH NJW 1978, 751f.; BGH NJW 2667f.; M. Rehbinder, Die öffentliche Aufgabe und 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der Presse, 1962, S.12-30; Staudinger-Schäfer, 823, Rn. 234; W. Fikentscher, Schuldrecht, 7. Aufl., 1985, S.319; Won-Seon Son, Schutz gegen Ehrverletzungen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 1996, Frankfurt, S.67f.

9) Vgl. BGHSt, 12 287, 293f.

독일의 이익형량법리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익의
옹호 법리를 구현하는 도구

질적인 요소로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였다.¹⁰⁾ 이러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제193조의 의미에서 정당한 이익의 옹호의 관점은 자유스러운 표현에 관한 권리의 특수한 형태이다.¹¹⁾

3) '정당한 이익의 옹호'의 위법성조각사유는 우선 독일 형법 제186조의 적용범위 내에서의 진술임을 의미한다. 또한 명예훼손의 사실주장, 유포의 관점에서 그러한 사실 혹은 허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사실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면, 그리고 제186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위법성조각의 문제와 관련될 것이다. 허위에 대한 무지로서 야기되는 사실의 주장 혹은 유포는 행위자가 스스로가 경솔하게 하지 않을 때에, 즉 정보 혹은 검토의무를 발표하기 전에 수행했다면 면책될 수 있을 것이다.¹²⁾ 허위주장의 반복에 대해서는 보호할만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¹³⁾

4) 독일 형법 제186조를 통해서가 아니라 구성요건, 특히 독일 민법 제823조 1항의 범주에서 일반적인 인격권의 구성요건으로 이해하게 되는 의견 혹은 진실한 사실의 주장에 관한 전파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위법성조각사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범주에서 정당성은 기본법 제5조 1항에서의 언론과 출판의 자유의 보장으로부터 그리고

해당자들의 충돌되는 이익에 대한 그들의 이익형량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범주내에서 손해배상채무의 요소는 이익형량시에 고려되어야 한다.¹⁴⁾

3. 이익형량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가치로서 보장하려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민주주의 요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그러한 표현의 자유의 행사로 인하여 침해되는 개인의 명예를 비롯한 인격권은 헌법이 보장해야 할 중요한 기본권이다. 많은 경우 양자가 충돌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조화의 문제는 이익형량이론에 의해 이익을 상호 비교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익형량의 법리는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익의 옹호법리를 구현하는 도구가 된다.

이익형량의 기준은 우선 표현된 내용과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¹⁵⁾ 결국 이익형량의 기준은 명예를 침해한 의사표시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러한 표현을 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허용되는 한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을 본질적인 가치판단의 요소로 간주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사적인, 예컨대 경제적인 거래상에서 사적인 법익에 대해 행해진 직접적

10) BVerfGE 12,113, 124f.

11) BVerfGE NJW 1976, 1677.

12) Vgl. BGHZ 31, 308f.

13) BGH NJW 1979, 266f.

14) Vgl. K. E. Wenzel, Das Recht der Wort- und Bildberichterstattung, 4. Aufl., 1994, Rn.6 : Won-Seon Son(주 8), S.68.

15) Vgl. Won-Seon Son(주 8), S.73-74.

인 표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공공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그에 대해 법을 통해 입증된 정신적인 의견대립에 대한 보도와 관련된 경우에는, 사적인 법익의 보호는 더욱 후퇴될 수 있고 또한 되어야만 한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자유로운 언론의 허용이 추정된다고 한다.¹⁶⁾ 공개적인 표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주요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경제적인 이익과 같은 개인의 이익들은 기본적으로 후퇴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표현 내용뿐만 아니라 그 표현의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도 주요한 가치판단의 요소가 될 것이다. 특히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공개적인 여론의 형성을 위하여 보도된 경우에는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의 특수한 가치는 무엇보다도 존중되어야만 한다.¹⁷⁾ 예컨대 표현행위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혹은 문화적인 이익과 관련한 보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¹⁸⁾

III. 일본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1. 개 설

일본 형법 제230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형법 제186조가 ‘진실임을 입증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만 하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피해자의 보호에는 충실하겠지만, 반대로 민주주의의 요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차원에서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사유¹⁹⁾ 이외에도 별도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47년에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를 조화롭게 해결하고자 형법개정을 통해 신설된 것이 바로 일본 형법 제320조의2이다.²⁰⁾ 동조 제1항에서는 “전조 제1항의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고, 또한 그 목적이 전적으로 공익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인 것의 증명이 있는 때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2항은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소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본다”고 규

16) BVerfGE 7, 198, 212.

17) Vgl. BVerfGE 7, 198 : 12, 113 : 42, 163, 171 : 25, 256, 261

18) Won-Seon Son(주 8), S.71.

19) 일본 형법에서도 역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방위,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 이러한 일본법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사적 고찰에 대해서는 平川宗信, 『名誉毀損罪と表現の自由』, 有斐閣, 1983, p.320 이하 참조.

일본법원은 형법상의 명예권 보호보다
면책의 범위를 확대하여 언론 자유를 보장

정하고, 이어서 제3항에서는 “전조 제1항의 행위가 공무원 또는 공선에 의한 공무원의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인 것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광범위하게 면책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면책규정에 의해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면책이 인정되는데, 법원은 면책의 범위와 내용의 해석에 대해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간의 충돌에 대한 조화문제는 법원으로서도 하나의 난제였다고 한다. 법원의 태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1969년 ‘夕刊和歌山’ 사건의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면책의 범위를 확장시켜 광범위하게 해석하였다. 더 나아가 1981년 ‘월간 펜’ 사건의 판결에서는²¹⁾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까지 공공성의 의미를 확장시켰다. 법원은 형법상의 명예권의 보호보다는 면책의 범위를 확장하여 언론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²²⁾

2.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일본 형법 제320조의2는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요건을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일 것(사실의 공공성)과 행위의 목적

이 오로지 공익에 도모된다고 인정될 것이며(목적의 공익성), 사실이 진실하다고 증명되는 것(사실의 증명)으로 규정하고 있다.²³⁾

1) 사실의 공공성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형법 제230조의2에서는 광범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은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계된 것이어야 한다. 무엇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인가? 이에 대한 해석은 시민이 민주적 자치를 행함에 있어 알 필요가 있는 시민의 알 권리가 인정되는 사실의 공표를 허용해야만 한다는 관점에서 시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이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²⁴⁾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은 비슷한 의미로서 ‘알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실, 즉 ‘시민이 민주적 자치를 행함에 있어서 알 필요성이 있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²⁵⁾ 공공성의 유무는 공표의 동기, 수단, 태양 등과는 관계없고 오로지 사실의 내용에 입각해서 비슷한 ‘알 필요성’의 유무에 따라서 판단됨이 적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행동이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실도 ‘알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⁶⁾ 판례도 최근에는 비슷한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공공의 이

21) 最高判 1981.1.16. 刑集 35. 3. p.84.

22) 표정수, 『언론과 명예훼손』, 육법사, 1997, p.224.

23) 平川宗信(주 1), p.230.

24) 平川宗信(주 1), p.231.

25) 이것을 ‘알 필요성의 이론’으로 명명해서 지지하는 것으로서 清水英夫, 『言論法研究』2, 1987, p.191을 참조 할 것.

26) 平川宗信(주 1), p.231.

해에 관한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자체의 내용,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것을 적시함에 있어서 표현방법이나 사실의 조사의 정도 등은 공익목적의 유무의 인정에 관하여 고려하여야만 하는 것으로..."라고 판시하였다.²⁷⁾

문제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배포나 전파의 범위를 대체로 들고 있다. 예컨대 사회 일부에만 관계되는 문제를 사회전체에 전파하는 경우에는 공공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²⁸⁾ 일본에서는 1차적으로 표현내용의 객관성이 면책요건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회 일반의 다수인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나²⁹⁾ 그 적시가 공공의 이해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실은 공공성이 인정될 것이지만,³⁰⁾ 단순히 공공의 흥미, 호기심의 대상이 된 데 불과한 사실은³¹⁾ 공공성이 인정될 수 없다.³²⁾

특히 공공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것은 공직자나 공직후보자에 관한 표현이다. 일본 형법 제230조2의 제3항은 이러한 표현에서는 진실성의 증명만으로 면책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현내용의 공공적 성격과 적시 목적의 공공성을 아울러 의제하는 입장을 취한

다. 이러한 규정의 근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선정, 파면은 국민의 권리에 속하므로 공무원이나 공선에 의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실은 널리 국민의 감시하에 두고 자유로운 비판을 허용한다는 데 있다.³³⁾

2) 목적의 공익성

두 번째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으로 목적의 공익성이 요구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명예훼손의 면책을 위해서는 표현의 목적이 전적으로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그것을 공표하는 자유가 확보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성'의 어떤 사실은 공표자의 목적, 의도 등에 관계없이 공표가 인정될 수 있고, 공표자의 동기를 이유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전적으로'라는 표현의 해석과 관련하여, 인간의 심리작용은 복잡하여 유일한 동기만으로 행동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다른 목적이 혼합되어 있어도 무방하지만, 어느 정도 공익이 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³⁴⁾ 예컨대 공표된 내용 중 공공성이

27) 最高判 1981.4.16. 刑集 35-3, p.84. 이 판결에서는 "종래 이러한 사적 생활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을 인정해 왔으나 사인의 사생활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 및 그것을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서는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로서 형법 소정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하여 사실의 공공성을 인정하였다.

28) 福田平, 『註釋刑法(5)』, 1978, p.464 ; 平田宗信(주 20), pp.127-128.

29) 最高判 1981. 4. 16. 刑集 35. 3. 81.

30) 大谷 實, 『刑法各論の重要問題』, 1991, p.142.

31) 松井茂記, 『マヌメディア法入門』, 1996, p.101.

32) 표성수(주 22), p.228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비판한다.

33) 川端博, 『刑法各論』, 1993, p.112 ; 표성수(주 22), p.230에서 재인용.

34)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표성수(주 22), p.235.

일본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으로
목적의 공익성을 요구

주된 동기면 족하다는 견해³⁵⁾와 전적으로라는 문언의 표현에 입각하여 주된 것보다 강한 정도, 즉 지배적인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³⁶⁾ 더 나아가 거의 대부분의 동기가 공익 목적이어야 한다는 견해³⁷⁾가 대립되고 있다. '전적으로'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주로'라고 해석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³⁸⁾

3) 진실성의 입증

일본 형법 제230조의2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인 것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면책을 위해 진실성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그 공표가 사회적 명예를 해한 내용이다. 소문, 풍문, 험의 등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인 사실이 명예를 해함이 통상이기 때문에 소문 등의 존재가 아니고, 그 내용인 사실이 증명의 대상이 된다.³⁹⁾ 다만 소문이나 험의 등의 존재를 적시하는 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소문이나 험의 등의 존재자체가 증명의 대상이 될 것이다.⁴⁰⁾ 진실하다는 것의 증명은 사실의 중요부분에 대해서까지 진실로 증명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진실의 증명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 형법 제230조의2 제1항은

실체법적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는 진실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게 되므로 당연히 그 증거책임도 피고인에게 전환시키는 규정이다. 법원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조사함에도 사실의 진부가 불분명할 때는 이 규정에 의한 위법성조각이 인정되지 않는다. 증명의 방법, 정도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한 합리적인 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의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 판례⁴¹⁾와 통설이지만⁴²⁾ 최근에는 증거의 우월 정도의 증명으로 족하다는 견해도 유력하다.⁴³⁾

3. 불법행위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1) 일본 민법 제709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고의나 과실이 존재해야 하고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타인의 권리침해가 위법하여야 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즉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된다. 불법행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로

35) 福田平(주 28), p.365 ; 大谷實, 『刑法講義各論』, 1989, p.144 ; 堀部政男, “表現の自由と人格權の調和”, 『現代損害賠償法講座』(2), 1980, p.109.

36) 大塚仁, 『刑法各論上』, 1981, p.247.

37) 川端博, 『通説 刑法各論』, 1993, p.111.

38) 平川宗信(주 1), pp.231-232.

39) 最高判 1968, 1, 18, 刑集 22-1, p.7.

40) 平川宗信(주 1), p.232.

41) 最高判 1976, 2, 3, 刑集 30-2, pp.229.

42) 平川宗信(주 1), p.232.

43) 大谷實(주 30), p.157 ; 藤本英雄, 『刑法講義各論』, 1976, p.243.

는 일본 민법 제720조에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형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사유들인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도 유추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에 추가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형법상의 면책규정을 원용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한 면책사유를 형법에서와 같이 사실의 공공성, 목적의 공익성, 표현의 진실성의 증명등을 요건으로 채택하였다. 이 요건들의 해석은 형사사건의 논리와 대동소이하다.⁴⁴⁾

2) 사실의 공정성

표현내용이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음을 뜻한다. 형법에서 공직자 또는 공직후보자에 관한 사실, 공소의 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사실에 관한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과 같이 민사사건에서도 이러한 표현은 대개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중의원후보자가 학력사칭으로 경찰의 조사 대상이 되었으며 전과도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한 사건에서, “국회의원 내지 그 후보자의 적합성에 관한 판단은 거의 전 인격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므로 전력에 관한 공표까지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⁴⁵⁾

3) 목적의 공익성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형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와 같이 표현의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익과 같은 다른 목적이 혼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요건은 충족될 수 있다.⁴⁶⁾ 그러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목적의 공익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부정하는 견해들이 있다.⁴⁷⁾ 예컨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된 보도는 통상적으로 공익의 목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의 공익성의 요건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견해와⁴⁸⁾ 공익의 목적은 사실의 공공성과의 상관적 관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⁴⁹⁾들은 목적의 공익성을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으로서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언론기관의 보도나 논평의 경우에는 통상 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⁵⁰⁾

4) 진실성의 증명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언론은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모든 보도의 진실여

44) 자세한 것은 표성수(주 22), p.270 이하 참조.

45) 最高判 1966. 6. 23. 民集20-5, p.1118. 이와 관련한 일본 판례에 대해서는 표성수(주 22), p.271 이하 참조.

46) 松井茂記, 『マス・メディア入門』, 1996, p.105.

47) 자세한 것은 표성수(주 22), p.272 이하 참조.

48) 竹田稔, 『フライパン侵害と民事責任』, 1991, p.205 이하 참조.

49) 幾代通・徳本信一, 『不法行爲』, 1993, p.91 이하 참조.

50) 松井茂記(주 46), p.105 ; 표성수(주 22), p.273.

일본 학설과 판례는 공정한 논평을
면책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부를 확인하고 보도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에 따라 헌법상의 알 권리와 개인의 법익이 충돌되는 것이다. 이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법원은 알 권리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중 중요부분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족하다고 본다.⁵¹⁾ 예컨대 신문에서 정신과 의료 법인에 대한 고발사건을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법원은 “환자를 불필요하게 구금하고 환자에게 화를 내고 보복목적으로 쇼크요법을 사용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을 적시한 경우에 보복 목적이었다는 증명은 없었으나 쇼크요법에 의하여 환자가 사망한 것이 진실이라고 증명되었다면 중요부분에 진실성의 증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⁵²⁾ 이러한 진실성의 입증에 대한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⁵³⁾

5) 기타

일본법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논평을 표시한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개인의 공정한 의견이나 평가 등의 발표는 보장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정한 논평은 면책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학설⁵⁴⁾과 판례⁵⁵⁾의 태도이다.

IV. 한국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1. 개설

1)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즉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보호가 상호 충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일본 형법과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결국 우리 나라에서도 형법이 공정한 비판을 억제 내지는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법 제310조에서는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사유 이외에 명예훼손에 적용되는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제310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여야 하고(진실성),

51)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표성수(주 22), p.273 이하 참조.

52) 最高判 1983.10.20. 時報 112, p.44.

53) 三島宗彦, “眞實の證明と人格權侵害”, 『現代損害賠償法講座』 2, 1980, pp.150-151 ; 幾代通・徳本信一, 『不法行為法』, 1993, p.91 등.

54) 松井茂記, “意見による名譽毀損と表現の自由”, 『民商法雜誌』 113-3-2, 1995, p.328.

55) 最高判 1989.12.21. 民集 43.12, p.2252에서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비판, 논평은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의 행사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그 대상이 공무원의 행동인 경우에는 비판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는 것이고 그 전체 사실이 주요한 점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 있는 때에는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 논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다.

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공익성).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사실의 중요 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는 사실을 말한다. 따라서 적시사실의 중요부분이 진실이면 충분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합치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허위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⁵⁶⁾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란 국가와 사회 또는 국민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전체의 이익을 말한다. 법문은 '오로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⁵⁷⁾과 판례의 태도이다.⁵⁸⁾

대법원은 이러한 공익성과 관련하여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범위

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⁵⁹⁾ 따라서 부수적으로는 사익적인 동기가 포함된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⁶⁰⁾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의 명예훼손이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이다. 이 때 양자 사이에 명확한 한계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한계는 구체적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판단 과정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이익들에 대한 비교형량과 가치평가가 기초되어야 한다.

3)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인 형법 제307조 1항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는 제307조 2항이나⁶¹⁾ 제308조의 사자의 명예훼손죄, 제309조 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⁶²⁾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출판물 등을 통해 비방을 목적으로 행한 경우(제309조 1항)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56) 大判 1958. 9. 26. 4291刑上323.

57)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p.262 ;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1, p.187.

58) 大判 1989. 2. 14. 88도899.

59) 大判 1996. 10. 25. 955도1473 ; 1998. 10. 9. 97도158.

60) 최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이익 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大判 2002. 4. 29. 2000도4469)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61) 大判 1993. 4. 13. 92도234.

62) 大判 1999. 4. 23. 99도636 ; 1986. 10. 14. 86도1603.

개인의 명예와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다양한 사회적 이익들에 대한 비교형량과
가치평가가 기초되어야

2. 불법행위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1) 위법성조각사유의 의의와 유형

우리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일본 민법 제709조와는 달리 위법한 행위가 성립요건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법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책임이 면해지기 위해서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해야만 한다. 우리 민법은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것으로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불법행위분야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제761조). 이밖에도 자력구제나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역시 위법성조각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명예를 훼손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의 책임은 면책사유로서 형법에서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를 민법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되지만 학설은 긍정하고 있다.⁽⁶³⁾ 또한 대법원 역시 일관되게 위법성의 논의가 정비된 형법의 위법성에 관한 이론을 민사사건에도 채택하여, 사안의 공공성, 목적 내지 행위의 공익성,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사안별로 개인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와의 가치를 비교 형량하고 있다.⁽⁶⁴⁾

2) 공공적 표현과 위법성조각사유

이에 관해서는 형법 제310조에 관한 형법상의 논의가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은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전제하고,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재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⁶⁵⁾

(63) 지홍원, “인격권의 침해”, 『사법논집』 제10집, 법원행정처, 1979, p.225 ; 박철우, “제750조 -인격권의 침해”, 『주석채권각칙(7)』, 사법행정학회, 1999, p.65, p.72 ; 한위수, “명예훼손과 민사상의 제문제”, 『사법논집』 제24집, 법원행정처, 1993, p.420.

(64) 大判 1988. 10. 11, 85다카29 ; 1996. 5. 28, 94다33828 ; 1997. 9. 30, 97다24207 등 다수.

(65) 大判 1996. 10. 25, 955도1473 ; 1998. 10. 9, 975도158.

(1) 공공성

명예훼손이 면책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실일 것을 요한다. '공공의 이해'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표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근거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광범한 기준을 제시한 것은 기준이 될 수 없을 것이다.⁶⁶⁾

(2) 공익성

보도된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공익성이 없고 오로지 사적인 사실에 관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은 조각될 수 없다. 보도기사의 기술내용, 기술방법 등으로부터 객관적으로 보아 흥미위주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더 나아가 개인에 대한 저질적인 모욕적 언사에 의한 인신 공격적인 것을 포함한 개인적인 원한관계 등은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목적의 공익성을 위법성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일본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있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음에도 목적의 공익성을 하나의 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목적의 공익성은 공공성 판단의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⁶⁷⁾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해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긍정한 사례들로서 광복 50주년을 맞아 상해임시정부의 주석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에 헌신한 백범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통하여 국민들의 애국

심을 고취하고 왜곡된 역사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삼기 위한 의도에서 행한 경우나,⁶⁸⁾ 아파트주민들이 자기들의 주장이나 목적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의사 표시 수단으로서 유인물이나 벽보를 배포 부착하는 경우,⁶⁹⁾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준 사건에 관계된 범죄혐의 사실 또는 그와 밀접 불가분의 관련이 있는 의혹들에 대한 사실들에 대한 보도의 경우,⁷⁰⁾ 종교적 표현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교단 소속 목사의 이단성 여부에 관한 연구 책자 중 그 목사의 주장을 비판하고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하고 자기 교단의 교리 및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을 상대로 배포한 경우⁷¹⁾ 등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다. 이에 반해 "대중매체의 범죄사실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나, 범죄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이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⁷²⁾ "청원서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시정되어야 할 연구소의 사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취지가 그 내용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 점 등 그 표현의 방법 외에도 피고인이 위 청원서를 그의 주장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발송하

66) 홍춘의, "명예훼손과 민사책임", 『법학연구』 제19집, 전북대학교, 1992, p.149.

67) 같은 견해로서 지홍원(주 63), p.229.

68) 大判 1998, 2, 27, 97다19038

69) 大判 1995, 6, 16, 94다35718

70) 大判 1996, 10, 11, 95다36329

71) 大判 1997, 8, 29, 97다19755 ; 1996, 4, 12, 94도3309 ; 1996, 9, 6, 96다19246 등 다수.

72) 大判 1998, 7, 14, 96다17257.

우리 판례상 공공의 이익은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을 지닌 것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사익에 관한 것도 포함

여 그 시정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모르되 감독관청인 과기처장관에게 보냄과 더불어 박 바로 그러한 권한과는 무관한 정치인에게 발송하는 것을 시발로 하여 약간의 시차를 두고 정치인, 언론인, 언론기관 등에게 광범위하게 발송한” 경우에는⁷³⁾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판례들을 종합해 보면 공공의 이익은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을 지닌 것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사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이해된다.

3)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명예훼손행위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진실이라는 증명 또는 그 증명이 없더라도 최소한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1) 진실성

진실성이란 공표의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진실성은 우선 적시된 사실의 중요부분이 사실과 합치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공표의 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중요부분이 사실과 부합한다면 곧 바로 허위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 여부의 판단은 일반 독자나 청

취자, 시청자들이 보통의 주의하에 받게 되는 인상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인용이나 소문에 의한 사실의 적시라 할지라도, 그것이 일반인들에게 진실이라고 인정될 정도에 달하여, 그로 인하여 명예가 침해된 경우에는 직접 사실을 적시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사실의 적시가 어떤 형태로든 당해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될 것이다.⁷⁴⁾

(2)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피고가 언론사인 경우 침해한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입증해야 하지만, 내용 자체가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당성의 기준에 대해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 대면 등 진실확인이 용이한 사항인가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⁷⁵⁾ 예컨대 언론사가 입수가능하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가의 여부가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⁷⁶⁾ 따라서 “일간 신문사가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마치 직접 취재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기사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및 관련자

73) 大判 1985. 11. 10. 91도1942.

74)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허근영, “논픽션 역사 드라마에서 특정인물에 대한 묘사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판례해설』, 재판연구관 세미나 자료: 법원도서관, 1998, p.172 이하 참조.

75) 大判 1997. 9. 30. 97나21027

76) 방석호, “명예훼손을 둘러싼 쟁점의 분석”, 『이영준박사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89, p.1132.

와 접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방법이 부적절하였거나 그 노력을 다하지 못하여 실패하자, 더 이상의 사실 확인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근거없이 막연히 기사를 작성한 경우, 일간신문이 신속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언론매체에게 그 기사의 취재과정에서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⁷⁷⁾

또한 “수사기관이 피의자 자백을 받아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된 사안에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⁷⁸⁾

3. 진실성과 공익성의 입증책임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에 대해 입증책임은 공표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견해⁷⁹⁾와 검사에게 있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며, 판례는 피고에게 있다고 한다.⁸⁰⁾ 피고에게 있다는 견해의 논거로서는, 비록 우리 형법 제310조에서는 독일형법이나 일본형법에서처럼 절차법적인 ‘증명’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일본법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법리와 “의심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의

한다면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진다고 해석해야 한다.⁸¹⁾ 더 나아가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려면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는 우리 법제에서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V. 맺음말

1.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하여, 독일 형법은 제186조에서 사실증명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193조에서 별도로 정당한 이익의 옹호를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제320조의2 제1항에서 사실의 공공성, 목적의 공익성, 사실의 진실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형법 제310조는 공익성과 진실성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독일에서는 정당한 이익의 옹호 범리를 구현하기 위해 이익형량론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우리 나라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형법상의 명예권의 보호 사이에 충돌이 나타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모색된 것이 위법성조각사유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에서도 위법성조각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면서도 헌법과 형법상의 법익을 상호 비교 형량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운용상에서는 세 나라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77) 大判 1996. 5. 28. 94다33828.

78) 大判 1996. 8. 20. 94다29928.

79) 이은영, “명예훼손책임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과 공공성”, 『민사판례연구』 XII, 박영사, 1990, p.155.

80) 大判 1988. 10. 11. 85다카29.

81) 같은 견해로 아형국(주 5), p.311.

독일과 일본은 정치인이나 공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예훼손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 입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2. 우리 형법 제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현내용이 공공성 이외에 표현행위자의 주관적 공익 의도를 면책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일본형법은 사실의 공익성 이외에도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라는 목적의 공익성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해석론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위해 이것을 삭제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데,⁸²⁾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에도 목적의 공익성을 하나의 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목적의 공익성은 공공성판단의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 입법론적으로 비록 공익을 위한 것일지라도 진실임을 확신할 만한 근거가 있을 때 그것을 적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진실성에 관한 입증은 피고인이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일본 형법상의 ‘전적으로’라는 표현이나, 우리 형법에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이라는 표현은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주로’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부사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5. 독일 형법 제187조a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사실·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고, 일본 형법 제230조의2 제3항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선에 의한 공무원의 후보자들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태도와는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피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보도목적의 공공의 이익이나의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공적 인물들에 대한 입법적인 조치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⁸³⁾ □

82) 堀部政男, “表現의 自由와 人格權의 保護”, 『現代損害賠償法講座』(2), 1980, pp.14~15.

83) 같은 견해로서 박선영,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서의 ‘공익성’과 ‘진실성’ 및 ‘현실적 악의’”, 『언론중재』, 1998년 겨울호, p.44 참조.



일본 언론윤리법제의 현주소 ②

- 방송계의 자율적 고충처리기관 BRO -

한 영 학

일본 [智大] 신문방송학 박사과정

I. 머리말

최근 일본에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저명인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500만 엔 이상의 고액배상을 명하는 판결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고액화 현상에 대해서 언론의 정당한 표현활동에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그동안 낮은 손해배상액이 일부 언론사에게는 인격권의 침해로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보다는 당해 기사(방송)의 보도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클 수 있다는 안이한 상업적 발상으로 작용한 점, 그리고 보도피해자의 피해구제 요청에 언론 스스로가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이는 견해도 있다.

보도로 인한 피해문제와 관련, 일부 언론의 태도에 쏟아지는 비판은 일본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손해의 보전을 넘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추길 위험성도 없지 않으나 그간 이 문제에 대한 언론의 자율규제의 기능 부전(不伸)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지난호(2002년 봄호)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신문 등 인쇄매체의 경우 최근에 각사별로 자율적 제3자 기관을 창설·운영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자율규제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 언론계에서 본격적인 의미의 자율규제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 말인 점을 감안하면, 자율규제를 통한 보도피해문제 해결이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손해배상의 고액화 현상에 더하여, 개인 정보보호법안, 인권옹호법안 등 언론규제의 색채가 농후한 법안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보도피해문제를 둘러싼 언론의 자율규제의 조기정착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신문·통신사들의 자율적 제3자 기관 창설 움직임에 앞서, 방송계에서는 1997년 일본방송협회(NHK)와 일본방송연맹(민방련)이 공동으로 '방송과 인권 등 권리에 관한 위원회기구(Broadcast and Human Rights / Other Related Rights Organization : 이하 BRO)'를 설치하여 방송피해에 대한 자율적인 구제를 모색해왔다. BRO는 일본에 있어서 언론계의 보도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의 시작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BRO의 설치는 방송계의 순수한 자율노력의 결실이라기보다는 외압에 기인한 측면이 강했지만, 그 후 BRO가 방송계의 자율적인 보도피해 구제기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인쇄매체의 보도피해에 대한 대응을 재촉하는 요소로도 작용해 왔다. 이에 여기에서는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적이 없는 BRO를 중심으로 일본언론의 자율규제의 한 단면을 소개·검토하고 자율규제

에 남겨진 과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II. BRO의 설립경위와 의의

BRO는 1996년 12월 9일에 발표된 '다채널 시대에 있어서 시청자와 방송에 관한 간담회'¹⁾ 보고서에서, 방송으로 인해 빚어지는 시민의 고충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구상이 제시된 것에 크게 힘입어 탄생되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해결을 위한 창구뿐만 아니라 방송에 대한 시민의 액세스 회로가 빈곤하다는 것은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 방송윤리의 결여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방송에 대한 시민의 불신감도 증폭되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국들은 자발적인 대처에 미온적이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권리구제기관의 설치를 둘러싸고 방송기관의 간섭을 자초했다고도 풀이할 수 있겠다.

상기 보고서에서는 권리침해를 포함하여 방송에 관한 고충에 대해 방송사업자에게 해결을 구하는 것은 공정성 등에 한계가 있음을 들고, '방송법령·프로그램 기준에 관계되는 중대한 고충, 특히 권리침해에 관계되는 고충'에 관하여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판단을 위임하는 메커니즘'을 '방송사업자의 외부에 공동기관'형식으로 설립, 고충을 접수하고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함과 동시에, 판단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며 공표하는 기관이 구상되었

다. 또한 고충처리기관의 구체적인 설치형태로서는, ①공적 기관, ②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기관, ③법률규정을 근거로 방송사업자가 설치하는 ①과②의 중간에 위치하는 기관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NHK와 민방련은 이러한 고충대응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협의를 거친 결과, ①은 자금면에서 프로그램 편성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③은 방송의 자주·자율성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고 하여, 방송에 의한 인권 등의 권리침해의 피해를 구제하는 한편 방송에 의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양자가 공동으로 자주적으로 이를 신설하기로 했다(②의 방식). 뒤늦게나마 보도피해 문제에 방송계의 공조가 실현된 데에는 당시 자민당내의 방송규제에 대한 움직임도 한 몫했다. 즉 상기 보고서를 계기로 자민당 내의 통신·방송 산업고도화 소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방송계가 자주적으로 고충대응기관을 설립하지 않을 경우 입법에 의한 제3자 기관의 설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점이다.

이로써 97년 5월, NHK와 전국의 민방련 가맹사(190사)는 순수한 민간단체 형식의 고충처리를 위한 제3자 기관 BRO를 발족시켰다. BRO는 방송사업자가 짊어지는 사회적 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고 나아가 시청자의 기본적인 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방송으로 인한 고충에 대해 자주적으로 시청자의 입장에 서서

1) 본 간담회는 선거보도의 공정성, 인권 등을 둘러싼 텔레비전 보도에 대한 비판이 높아진 것을 배경으로 하여, 다채널화의 진전상황에 즈음하여 '21세기를 향한 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관점으로부터 방송의 바람직한 상을 검토할 목적'으로 1995년 9월 우정성 방송행정국의 사적 연구회로서 설치되었다. 田島泰彦, "放送規律の制度像どう構想するか—郵政省・多チャンネル懇談報告書をめぐって", 『法律時報』, 819(1997.2), p.2 참조.

2)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선보도에서 정치적 공정성에 반하는 보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93년 10월) 관계자의 '국회청문'과 해당 방송국의 '엄중 주의처분'으로 이어진 소위 '즈마키(柵) 발언문제'와, 옴진리교에 의한 사카모토(坂本) 변호사 일가 살해사건은 사카모토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방영하기 전에 그 내용을 옴진리교 간부에게 보여준 것이 원인이었다는 의혹 때문에 해당 방송국의 관계자가 국회에 참고인으로 소환되는 등 여론의 비난이 비등했던 '옴진리교 비디오테이프사건(96년)' 등을 들 수 있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보다 정확한 방송과 방송윤리의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BRO규약 제3조) 출범하였다.

상기한 바와 같이 BRO의 탄생에는 정치적 배경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청자와 당해 방송사업자간의 교섭(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외압으로부터 자유롭게 심리하여 흑백을 가리는 시스템이 마련된 것은 일본 언론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보도의 자유에 공권력의 개입을 배제시키면서 시민의 고충에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 점에 이 기구의 존재의의를 발견할 수 있겠다. 따라서 고충처리, 인권구제라는 BRO의 기본적인 업무는 별도로 하고, 이 기구가 영국의 BSC(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나 한국의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실정법에 근거한 규제기관과는 구별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Ⅲ. BRO의 조직과 심리절차

1. 조직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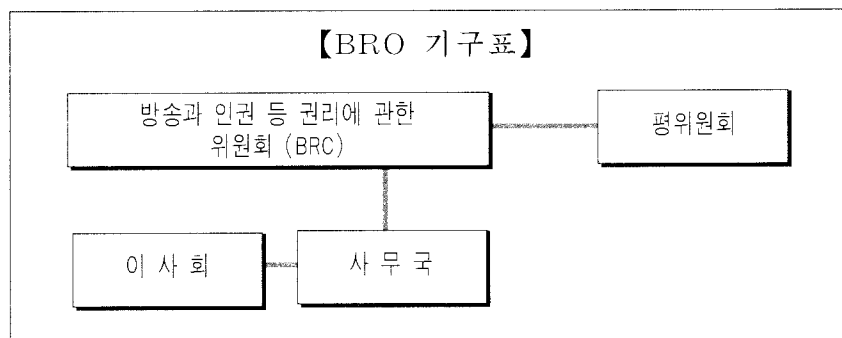
BRO의 조직은 동기구의 중핵으로서 실제로 고충에 대한 심리를 담당하는 방송과 인권 등 권리에 관한 위원회(Broadcast and Human Rights / Other Related Rights Committee : BRC)를 비롯하여, 사무계획 및 수지예산 등을 의결하는 이사회, 시청자로부터의 고충을 접수하고 그 내용에 관한 조사·정보수집을 통해 BRC(이하 '위원회')의 심리에 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

국, 방송계 외부의 식자들로 구성되어 위원회위원의 선임을 맡는 평의회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BRO의 재원은 NHK와 민방 각사에 의해 충당되는데, 현재 연간 1억9500만엔(NHK 6500만엔+민방각사의 합계 1억3000만엔)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시민으로부터 제기된 고충을 심리하여 일정한 구제조치를 제시('견해' 또는 '권고')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현재 방송업계 외의 인사 8인으로 구성(법률가, 교수, 저널리스트 등)되어 있다. 위원회가 위원을 외부인사로만 구성하는 것은 사안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과 위원장 대행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재임도 가능하다.

평의회는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게 되는데, 식자 5인 이내로 구성된다. 방송사업자측으로부터의 평의원 등용은 피하고 있다. 평의회의 평의원의 선임은 이사회가 맡는다. 또한 이사회는 NHK와 민방련으로부터 8인 이내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사무국은 시청자로부터 고충을 수리, 그 내용에 관한 조사·정보수집을 거쳐 위원회의 심리에 회부한다. 사무국은 전무이사, 이사(사무국장), 조사역 등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BRO의 각 조직의 구성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취급요건과 분쟁해결절차

BRO에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 대상, 기간 등의 제반요건 및 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방송으로 인해 권리침해를 입은 개인 혹은 그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 한한다. 그러나 법인 등 단체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인격적 요소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고충을 제기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³⁾ 다음으로 위원회의 심리대상이 되는 사안은 NHK와 민방면 가맹각사의 개별적인 프로그램에 관한 고충(방송 전반에 관한 고충은 제외)으로, ①원칙적으로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 등의 권리침해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②방송된 프로그램에 관해 고충을 제기한 자와 당해 방송사업자와의 교섭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매우 중대한 권리침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충제기를 기다리지 않고 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취급할 수 있다.

그리고 사안이 위원회의 심리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방송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사업자에게 고충이 제기되어야 하고, 1년 이내에 교섭의 결렬을 전제로 위원회에 고충이 제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심리의 제기는 무료이다. 그러나 법적 구제와의 병합을 금지하고 있는 바,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은 위원회가 취급하지 않는다. 심리도중에 양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사법적 해결을 위임한 경우에도 그 단계에서 심리는 중지된다. 더욱이 상업광고방송에 관한 고충도 원칙적으로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제기된 사안이 심리대상 조건을 만족시켜 위원회의 심리에 회부되게 되면, 위원회는 고충제기자 및 당해 방송사업자의 사정을 청취하는 등 신중한 심리를 행하게 된다(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 심리는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의사록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심리결과는 '견해'나 '권고'의 형태로 정리되어 심리의 경과를 포함하여 고충제기자 및 당해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위원회는 그 심리결과를 방송할 것을 당해 방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 5), 결국 당해 방송국이 위원회의 '견해' 또는 '권고'를 방송하는 것을 통하여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상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위원회에 고충을 제기하는 절차 및 분쟁해결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제1단계는 특정 방송 프로그램에 의해 인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하는 자가 당해 방송국에 고충을 제기하는 단계이다. 제2단계는 당해 방송국과의 교섭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과 취지를 제시하면(전화, 팩스, 우편 등), 위원회가 고충내용이 심리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위원회가 심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고충제기자에게 권리침해를 제기하는 서면을 송부하여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사무국에 보내도록 한다. 제3단계는 심리단계로, 사무국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의 심리가 개시된다. 이때 위원회는 필요에 의해 고충제기자 혹은

3) 예를 들면, 유치원(법인)이 주체가 된 사안을 들 수 있다. 경제적 곤경에 처한 어느 유치원의 최신통향을 보도한 NHK의 방송(1997년 12월 9일 방영)내용에 대해, 유치원측이 동 유치원의 특징과 전혀 무관한 사실오인 보도가 있었음을 들어 고충을 제기한 사안으로, 결국 BRC가 심리를 수리한 경우가 있다. 小田桐誠, "BRCが放送界に開いたしたもの", 『放送文化』, 60(1999.6), pp.51-52 참조.

방송국측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4단계는 심리결과를 '견해'나 '권고'의 형태로 공표하는 단계로, 위원회는 당해 방송국측에 이를 방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법적 분쟁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IV. BRO의 운용상황

1. 연도별 대응상황

BRO는 97년 발족 후 2001년도(2001년 4월 ~ 2002년 3월)까지 사무국이 총 10,444건의 고충에 대응해 왔다. 대응내역에는 방송과 관

련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방송과 관련 없는 내용(50%이상)까지도 포함되어 있어, BRO가 특정방송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단순한 고충과 불만 등에도 폭넓게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응내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여기에서 실제로 방송과 관련되는 대응의 내역을 재분류하면, 위원회의 심리범위에 속하는 내용(인권침해에 관련되는 내용)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고충이나 의견, BRO에 대한 문의 등으로 나타난다. 연도별 대응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아래 <표 1>과 <표 2>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고충의 접수건수는 방대하지만, 실제로 특정방송을 통하여 인권침해와 관련되어 위원

<표 1> 대응내용의 분류⁴⁾

	1997년도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계
방송과 관련된 내용	633 (68%)	1004(51%)	1134(43%)	1062(47%)	1198(45%)	5031(48%)
방송과 관련없는 내용	292 (32%)	980(49%)	1506(57%)	1182(53%)	1453(55%)	5413(52%)
계	925	1984	2640	2244	2651	10444

<표 2> 방송과 관련된 내용의 연도별 대응내역⁵⁾

	1997년도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계
심리관련 ()는 사안수	181(43) 28.6%	121(27) 12.0%	83(22) 7.4%	140(32) 13.2%	157(33) 13.1%	682(157) 13.6%
프로그램 관련	228 36.0%	473 47.2%	722 63.6%	568 53.5%	693 57.8%	2684 53.3%
BRO에 대한 문의 등	224 35.4%	410 40.8%	329 29.0%	354 33.3%	348 29.1%	1665 33.1%
계(건수)	633	1004	1134	1062	1198	5031

4) 放送と人権等權利に關する委員會機構, 『BRO年次報告書—2001年度—』, 동 『2000年度』, 『1999年度』, 『1998年度』, 『1997年度』참조.

5) Ibid.

회의 심리대상으로서 대응한 건수(사안)는 비교적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2>의 '심리관련'은 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 고충의 취급기준과 관련된 것으로 하나의 사안에 대해 사무국이 수차례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2001년도의 처리상황만을 살펴보면, 인권침해에 관계되는 사안은 33건이나 실제로 대응한 경우는 157건으로 방송에 관계되는 대응으로 환산하면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중 위원회 결정이 내려진 것은 2건, BRC·BRO의 알선으로 해결된 사안이 16건, 심리대상 외(재판계류 중) 사안이 2건, 해당 방송국과의 교섭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이 5건, 취재·방송상의 요망이 8건 등으로 되어 있다. 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회의 결정('견해' 또는 '권고')에까지 이르는 사안은 극히 소수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 '견해' 및 '권고'결정에 대한 약간의 검토

위원회의 업무가 시작된 이래 2000년도에

이르기까지 심리결과 '견해'결정은 6건, '권고'결정은 2건에 지나지 않는다. 위원회의 결정내역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이와 같이 고충접수의 절대건수에 비해 심리관련 사안은 소수에 불과하고, 더욱이 실제로 결정에 이른 사안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BRC의 결정건수가 소수에 그치고 있는 것은 고충으로 접수되는 대부분의 사안이 인권침해나 방송윤리와 그다지 관련이 없는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최근 실질적으로 방송매체를 통한 인권침해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역으로 위원회의 심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보도피해자가 위원회에 고충의 심리를 제기하지 않고 사법절차를 선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가 자율기관이지만 그 심리대상의 범위와 결정요건을 상당히 좁게 적용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겠다.

한편 '견해'나 '권고'의 본래적 의미에 비추어 지금까지 위원회 판단의 구체적 내용에

<표 3> 위원회의 판단내역⁶⁾

결정일	사안명	결정
1998. 3. 19.	샌디애고 사건보도	견해(권리침해없음/윤리상 문제있음)
1998. 10. 26.	소노에다 유치원 사건보도	견해(권리침해없음/윤리상 문제있음)
1999. 3. 17.	대학 럭비부 폭행용의 사건보도	견해(권리침해없음/윤리상 문제있음)
1999. 12. 22.	옆사람과의 트러블 사건보도	견해(권리침해없음/윤리상 문제있음)
2000. 10. 6.	자동차론 사기사건 보도	권고(권리침해인정/윤리상 문제있음)
2001. 1. 30.	원조교제 비디오관련 사건보도	견해(권리침해없음/윤리상 문제있음)
2002. 1. 17.	인터넷 스쿨 보도	견해(권리침해없음/윤리상 문제있음)
2002. 3. 26.	병원관계자 사망사고 보도	권고(권리침해인정/윤리상 문제있음)

6) Ibid.

대해서도 다소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안의 심리결과 위원회가 내리는 '견해'나 '권고'는 당해 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유일한 제재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조치는 사안의 성격과 실제의 침해 정도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원회의 판단경향을 살펴보면 '견해'는 명확한 권리침해는 없다고 판단한 사안 혹은 방송윤리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한 사안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에 '권고'는 법적·윤리적으로 중대한 사항이나 명확히 권리침해가 존재하는 경우 등이 전제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며, '견해'와 비교하여 당해 방송사업자에 있어서는 무거운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권고'결정에서 당해 방송사업자에 대해 결정의 취지를 방송케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정정이나 반론방송 등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지는 않았다.⁷⁾ 결정기관이 결정내용을 근거로 당사자에게 특정 행위를 동반하는 것을 요청하는 '권고'의 본래적 의미내용을 음미해 보건대, 단순히 결정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권리침해에 대한 분쟁의 해결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하여 '권고'조치의 범위를 무비판적으로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으나, 적어도 명확한 권리침해를 포함하여 특정 형태의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권리침해의 유무를 전달하는 것은 접어두고라도 피해자의 의사표시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구제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의 방송을 하도록 당해 방송사업자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다. '견해'조치와의 확실한 구분을 위해서도 '권고'조치의 구체적인 의미내용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요망된다 하겠다.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구체적인 조치를 구하는 것이 '권고'라고 할 때, '권고'의 구체적인 조치내용으로서는 민사상의 제재조치와 마찬가지로 '사죄', '정정', '반론' 등이 상정되어진다. 그러나 위원회의 내부에서도 권고에 이러한 원상회복조치들이 실제로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통일된 견해가 탐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원회는 그 운용규칙을 개정하여 '권고'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상기 원상회복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사안의 심리결과, '권고'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권리침해의 정도 및 성격에 상응하는 구체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BRO의 현행 구제시스템이 안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가령 이들 원상회복조치가 결정되더라도 당해 방송사업자가 결정내용에 대한 방송을 거부하는 경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방송사업자들이 위원회의 결정을 진지하게 수용해 왔으나, 향후 심리와 구체적인 제재조치로서 결정이 빈번해질 것에 대비하여 담보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장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BRC의 결정내용에 대해 운영규칙상에 당해 방송사업자에게 그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물론 이로서도 근본적인 해결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회원 방송사업자들간의 합의를 도출하여 윤리·자율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⁸⁾

7) 특히 '자동차론 사기사건보도' 결정에서, 위원회는 '사기사건의 용의자 체포를 뉴스보도할 때 체포된 용의자의 실명에 이어 고충제기자가 경영하는 자동차 판매점의 영상을 사용하였으나 영상의 선명, 농암처리, 자막 등의 표현이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제기자가 경영하는 판매점인 것이 특정되어 시청자들에게 용의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 제기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들고, '당해 방송사업자에 대해 제기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회복조치로서 본 결정의 취지를 방송함과 동시에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히는데 그쳤다.

8) 예를 들면, 스웨덴의 보도평의회에 있어서와 같이 행정벌로서 과징금제도를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V. 결어 : 평가와 과제

오늘날 광범위한 정보를 경쟁적으로 취급하는 언론은 오보나 진실의 왜곡을 낳고, 악의가 없는 경우에도 심각한 인격권의 침해를 초래하는 일이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은 일본의 언론도 예외가 아니며, 언론의 자정노력과 더불어 보도피해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수단을 모색하는 것이 과제로 되어 있다. 한편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원리의 하나로, 특히 언론의 표현활동은 국민의 여론형성과 알 권리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인 점에 착안하면, 개인의 인격권 보호·구제를 명목으로 표현의 자유가 일률적으로 침해받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래서 양자의 합리적인 조화(이익형량)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도피해로 야기되는 법적 분쟁에서는 법의 논리처럼 항상 양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형태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법에 의하지 않고 가능한 한 양당사자의 교섭에 의한 신속하고 자율적인 해결이 최상의 방법일 것이다. 이때 양당사자의 교섭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원을 대신하는 중립적이고도 준사법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제3자 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자율적인 해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보면 양당사자간의 교섭과 법적 분쟁의 중간단계에 위치하는 BRO는 비록 그 대상영역이 방송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일본에 있어서 방송에 의한 인권 등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에는 정정방송⁹⁾에 이어 BRO에 고충제기, 법원 제소의 세 단계를 생각할 수 있다.¹⁰⁾ 하지만 방송에 의한 모든 피해 구제에 이와 같은 단계가 상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의 내역과 정도에 따라 그리고 피해자의 선택에 의해 상이한 대응이 물론 가능하다. 정정방송이 실현되는 것은 당해 방송사업자에 의하여 원방송이 진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 국한되기 때문에(방송법 제4조),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이 진실되게 방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침해에 대해서는 구제의 여지가 전혀 없다. 한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경비와 시간 등의 부담에 더하여 불법행위 성립의 확신이 없는 한 일반시민이 결코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인권구제에 있어서 BRO에 거는 기대는 적지 않다 할 것이다.

BRO에 의한 인권구제 시스템은 양당사자간의 교섭이 합의에 달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법적 구제와는 분명히 구분을 지어 계속해서 자율적인 형태로 분쟁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를 통해 방송에

9)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업자가 진실이 아닌 사항을 방송함으로써 인하여 권리의 침해를 당한 본인 혹은 직접적인 관계자가 방송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가 있는 경우, 방송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방송 사항의 진실여부를 조사하여 진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판명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원래의 방송시설과 동등한 방송시설에 의해 상당한 방법으로 정정 혹은 취소방송을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제1항). 또한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에 대해서 진실이 아닌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한 의무가 부여된다(제2항). 상기 두 규정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음도 명시하고 있다(제3항). 정정·취소방송제도와 연동하여 방송사업자는 방송 후 3개월간 프로그램 보존의무가 있다(동법 제5조). 당해 방송사업자가 보도피해자로부터의 정정 혹은 취소방송 청구를 거부했을 경우, 피해자는 범죄규정(방송법 제56조)에 의거하여 형사재판소에 심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민사재판소에 정정·취소방송강제 청구의 가부와 그 외 다른 권리회복수단의 청구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히 나누어져 있다(이를 둘러싼 최근 판결에 관한 소개와 검토는 한영학, “NHK 위자료 정정방송 판결”, 『해외언론동향』, 2001년 9월호, pp.63-65 참조).

10) 小田桐誠, p.50 참조

대한 시민의 액세스를 강화·확충시킨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또한 이것은 당해 방송사업자가 위원회의 판단에 반드시 승복하여 특정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닌 바, 보도의 자유에 대한 배려가 근저에 흐르고 있다. 특히 행정관청(구 우정성, 현재는 총무성)이 직접적으로 방송행정·감독의 전권을 쥐고 있는 현행 메커니즘하에서 적어도 고충처리, 피해구제에 있어서는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차후 이와 같은 시스템이 확고하게 정착될 경우 방송행정에 대한 국가적인 지배에도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리라 본다.

그러나 BRO가 법적 구제 일변도였던 종래의 보도피해의 해결풍토에 언론의 자율적인 구제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¹¹⁾은 사실이나,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방송의 자유를 더욱 견지하면서도 전문성의 제고가 요청된다 하겠다. 그 방안으로서 현재 위원회의 멤버 구성을 보면 현장을 대변·옹호할 수 있는 현역 방송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적어도 방송유경험자 혹은 일정비율의 언론관계자를 위원으로서 발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리가 가능하도록 법률전문가의 비율도 적정 하한선을 정해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위에서도 언급했으나 고충의 절대 접수건수에 비해 실제 심리대상과 결정건수는 극소수에 그치는 것에 대해 '견해', '권고' 등

의 고충판단의 기준에 의심의 여지도 없지 않으므로, 심리대상의 안전선별과 심리결과에 이르기까지 객관·공정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 구 보도평의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윤리강령에 의거한 PCC(Press Complaints Commission)를 재정립하여 심리와 판단의 불투명성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법기관과 같은 강제 조사권(법적 구속력)이 없는 BRO에 있어서는 보도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권리침해에 대한 엄격한 판단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바, 방송윤리의 고양이라는 궁극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각사의 윤리강령이나 프로그램 기준과의 균형된 조화속에서 명확한 윤리규범과 판단 절차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요망되는 것이다.

셋째,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수용자의 인권의식의 신장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BRO의 관할범위의 조정 등 구조적 개선이 다각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BRO의 발족당시와 비교하여 현재는 기존의 케이블TV에 더하여 CS(통신위성)방송, BS(방송위성)방송, 인터넷 방송 등 통신과 방송의 융합시대를 맞아 다양한 형태의 방송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NHK와 민방련 가맹 각사의 개별방송에 관련된 고충처리에 국한되는 BRO의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여 방송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구로 재탄생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공중파, 케이블, 위성 등 업계별로 이해관계를 극복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겠지만, BRO의 회

11) 무엇보다도 BRO의 정립을 계기로, 인쇄매체업계에도 이와 같은 기능을 담당할 기구(보도평의회)의 창설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학자, 저널리스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コミッテエ21(Committee 21,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21조에 연관시켜 명명)이 '미디어 시민 평의회'를 제창한 것을 들 수 있다(1999년). 다만 신문, 잡지, 출판의 연대를 한번에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내의 회의론도 대두되고 있어 당분간 보도평의회와 같은 기관의 성립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原諒雄ほか, 『メディアと市民・評議会の可能性アンケート調査から』, 『世界』, 680(2000.10), pp.155-63 참조.

원사 이외에서도 보도피해 문제를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만큼 점진적인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중앙에만 두고 있는 이 기구를 다매체 다채널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에도 지부를 둬서 보도피해자 중심의 권리구제에 역점을 옮겨가야 한다고 본다.

넷째, 언론계 전체로 눈을 돌려보면, 권력의 언론에 대한 공적 규제의 움직임이 공공연히 대두되고 있는 현재, BRO 등 자율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대한 시민의 신뢰회복이 급무이다. BRO를 비롯하여 신문·통신사의 제3자 기관의 정립 등 자율규제가 뿌리를 내리려는 중요한 시점에, 모두에서도 지적했듯이 무비판적인 손해배상의 고액화나 개인정보보호법안, 인권옹호법안 등 언론규제를 직·간접적으로 내포하는 사안들이 부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이 공적 규제의 저지라는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은 결국 국민의 알 권리의 제약으로 이어짐을 여론에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론은 자신들에 있어서 법적 규제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현행 각종 자율규제의 실상과 그 개선방향에 대한 시민의 열린 논의에도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방송과 인권 등 권리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 (주요부분 발췌)

[고충의 취급기준]

제5조 위원회에 제기된 고충의 취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 등의 권리침해에 관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방송전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및 방송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상 취급하지 않는다. 단지 방송된 프로그램의 취재과정에서 발생한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판단으로 취급할 수 있다.

③ 심리의 대상이 되는 고충은 방송된 프로그램에 관해 고충제기자와 방송사업자 사이의 교섭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 이른 것으로, 원칙적으로 방송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사업자에 대해 제기되어,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제기되는 것으로 한다.

④ 재판에 계류 중인 문제는 취급하지 않는다. 또한 고충제기자, 방송사업자의 어느 일방이 사법에 해결을 위임한 경우는 그 단계에서 심리를 중지한다.

⑤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그 방송에 의해 권리의 침해로 입은 개인 혹은 그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를 원칙으로 한다.

⑥ 방송프로그램 제작담당자 개인에 대한 고충제기는 심리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⑦ 상업광고방송에 관한 고충은 원칙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제5조의2 매우 중대한 권리침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충제기를 기다리지 않고 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충수리, 심사절차]

제6조 고충제기는 사무국에 대해 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의 서면에 의해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의2 제기된 고충에 대해서는 사무국이 제17조 제1호에 의해 심사를 거친 후, 사무국장이 규약 제4조 제1호의 합치여부를 판단하여 합치하는 것만을 수리한다.

제7조 위원회는 사무국이 사전에 수리, 수집, 작성한 자료 등에 의거하여 심리한다.

[사정청취, 테이프제출 등]

제8조 위원회는 심리에 있어 고충제기자 및 당해 방송사업자에게 사정을 청취하는 외에 당해 프로그램의 방송을 필한 테이프, 기타 관계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2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고충제기자에게 전항에 의해 제출된 방송을 필한 테이프를 시정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3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안건에 관계하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한다.

(비 용)

제9조 고충제기자로부터 위원회에 심리를 제기하는 것은 무료로 한다.

(공 개)

제10조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정하는 사정청취는 위원회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의2 위원회는 심리에 관한 의사록을 공개한다.

(권고, 견해)

제11조 위원회는 심리결과를 '권고' 혹은 '견해'로서 정리하여 심리의 경과를 포함하여 고충제기자 및 당해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1조의2 통지내용은 기구의 전 회원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고충제기자 및 당해 방송사업자에게 공표할 것을 통고한 후 기구가 위원회 명의로 공표한다.

제11조의3 전항의 공표에 있어 위원회는 실명으로 발표하는 것에 대해 고충제기자의 사전승인을 얻는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익명으로 한다.

제11조의4 공표는 기자회견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해 행한다.

제11조의5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리결과를 방송할 것을 당해 방송국에 요구할 수 있다.

(의결방법 등)

제13조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 및 위원장 대행 중 2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4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사회를 맡아 의사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그 위에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장은 필요에 의해 사무국에 대하여 의제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전원일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원일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장 및 위원장 대행 중 2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다수에 의해 의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수결에 의한 의결인 경우, '권고' 혹은 '견해'에 소수의견을 부기할 수 있다. 또한 부득이 한 이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서면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사무국)

제17조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사무 중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사무국이 행하게 한다.

①제기된 고충이 위원회의 심리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와 보고

②전항의 심사결과, 위원회가 수리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 경우는 그 취지 및 이유를 고충제기자 및 당해 방송사업자에게 통지할 것

③고충제기자와 당해 방송사업자 사이의 교섭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우선 당사자간의 해결노력을 촉구할 것

④심리를 위한 자료로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고충제기자 및 당해 방송사업자로부터 관계자료의 제출, 당해 프로그램의 방송을 필한 테이프를 얻는 등 심리에 도움이 된다고 사무국이 판단한 사항에 대한 협력을 얻을 것

⑤심리종료 후 제8조 제1항에 의해 제출된 당해 프로그램의 방송을 필한 테이프, 기타 관계자료 등을 고충제기자 및 당해 방송사업자에게 신속하게 반환할 것

⑥위원회의 심리결과를 위원회의 명의로 고충제기자 및 당해 방송사업자에게 통지할 것

⑦회의, 기록에 관한 사무를 행할 것

⑧그 외 심리를 위해 필요한 사무처리

1997년 6월11일 제정

1998년 8월 1일 개정

언론보도의 면책요건과 한계

이 병 섭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교수

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 운용과 대국민홍보를 목적으로 지난 5월 10일 경남 창원에서 지역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의 인사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병섭 위원(주제발표와 박춘서 위원(경남대 언론홍보학과 교수)의 사회로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주제발표논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언론은 보도행위를 통하여 사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환경감시를 통하여 사회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사회구성원들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언론은 그 속성상 사회의 감시자나 비판자로서 민주사회가 유지, 발전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언론의 기능이 아무리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언론자유가 다른 권익과 충돌할 경우에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그 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언론의 보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다. 먼저 언론활동과 관련된 형사책임은 고의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으며,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예를 들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비방목적이 있어야 하고(형법 제307조 제1항),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형법 제307조 제2항). 이처럼 고의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실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경우 그에 따른 위축효과(chilling effect)로 언론의 사회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사책임에 있어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언론사는 별도의 양벌규정이

없는 경우 형벌에 대한 부담이 없다.

다음으로 언론보도의 민사책임은 보도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모두 발생하며, 언론보도의 피해를 받은 자는 원고로서, 피해를 가한 자는 피고로서 민사소송이 진행된다. 피고는 일차적으로 보도기사를 작성한 기자 또는 보도프로그램을 제작한 제작자, 연출자가 되며, 이차적으로는 피고가 종사하고 있는 언론기관, 관련행위(보도)에 책임이 있는 자, 편집인 등과 정보를 제공한 정보제공자(취재원), 공공기관(검찰, 경찰 등 포함), 투고, 수기, 대담, 기고 행위를 한 제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책임의 주체는 언론사와 기자가 된다.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언론을 불신하며, 언론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지만, 언론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기능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므로, 언론이 일정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보도에 의한 침해행위가 면책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단지 현재 언론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사회적 분위기는 언론보도의 면책요건에 대한 법리를 재판부가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

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보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면책요건을 구성하는 개념들로는 공익성 및 공공성, 진실성, 성실성, 공정성 등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먼저 공익성은 보도내용이 사회공익의 증진에 바람직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한다. 언론보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익성을 띠고 있으나 언론보도의 공익적 내용이 다른 권익의 침해로 정당화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만 한다. 명예훼손 등 대부분의 침해행위에 대한 면책요건의 구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개념이다.

둘째, 공공성은 언론보도의 내용이 공공의 관심을 끄는 대상에 대한 것인가와 관련된 것으로 공익성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셋째, 진실성은 보도내용의 진실성과 관련된 것으로 명예훼손에 있어서 면책요건을 구성하는 개념이지만, 사생활침해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명백한 침해행위의 요건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넷째, 성실성은 언론보도가 진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언론이 악의(혹은 범의)없이 진실을 보도하고자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와 관련된 개념이다. 허위의 보도로 인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많이 적용되는 면책요건의 구성개념이다.

마지막으로 공정성은 논평이나 대립되는 주장들이 존재하는 기사를 다룰 때 요구되는 개념으로, 특히 논평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반론 보도청구와 관련된 사건에서 주로 인용된다. 이러한 면책요건의 구성개념들은 언론보도의 침해내용에 따라 면책요건을 달리 구성하게 되므로, 언론이 보도를 위한 기사를 작성하고자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속성들이라 하겠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면책요건은 진실증명(defence of truth)의 원칙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진실에 입각한 보도나 비판은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되어 면책된다. 그러나 진실증명이 되지 못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면책요건들은 판례를 통하여 축적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상당이유의 이론이다.

상당이유의 이론은 언론이 진실의 존재를 잘못 판단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을 경우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 면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 나라 법원도 상당이유에 따라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을 결정한다. 이때 판단의 관건이 되는 것은 언론의 보도양태 중 사실 또는 진실을 밝히려는 기자의 성실한 노력과 아울러 믿을 만한 정보원으로부터 사실을 확인하였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둘째,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이 원칙은 미국 설리만사건에서 제시된 원칙으로 ①공직자의 공무행위에 대해서는 ②잘못된 사실을 갖고 비판하더라도 ③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거나 부주의하게 알리고 하지 않았거나 하는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갖고 하지 않는 한, ④명예훼손의 책임이 면제되며, ⑤그 악의의 유무도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공직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공정한 논평(fair comment)의 원칙이다.

공정한 논평의 원칙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나 일반공중의 관심사인 사항에 관해서는 누구라도 논평의 자유를 지니며, 논평이 사생활의 폭로나 인신공격이 아니고, 또 그 논평이 공정하다면 그 언어나 표현이 아무리 격렬하고 신랄하다고 해도, 논평자가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논평의 원칙이 잘 인용되지 않고 논평이나 의견은 다른 측면에서 다루어 진다.

우리 나라에서 모멸적 언사를 통한 논평은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만 의견이나 논평 자체를 명예훼손행위로 보지는 않는다. 또한 의견

이나 논평에 있어서 사실에 반드시 근거해야 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으므로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논평이라도 면책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의견이나 논평이 사실을 전제로 하였을 경우 그 전제로 한 사실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책이 인정되고 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 10208 판결 참조).

넷째, 제한적 면책특권의 개념을 들 수 있다.

이는 면책특권자의 발언내용을 단순전달할 경우에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면책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회의 의사를 중개방송하는 경우, 면책특권을 갖는 의원의 국회발언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보도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판례가 보이지는 않지만 국회의원의 발언을 사실 확인없이 중개보도하면서 객관보도라는 논리로 채색하는 우리 나라 언론의 관행을 비판하는 주장을 감안할 때 법원의 다양한 해석이 필요한 개념이라고 하겠다.

한편 다음의 경우는 명예훼손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보도목적에 있어서의 고의성 혹은 악의(actual malice)

보도내용이 비방 등 명예훼손이 목적이거나 동기일 경우에는 의견이나 논평의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다. 이는 보도가 공익성을 결여하였기 때문이다.

2) 보도내용의 허위성

보도내용이 진실한 경우 면책이 된다. 그러나 허위의 사실에 의한 보도일 경우 면책되지 않는다.

3) 취재의 불성실성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면책이 인정된다. 그러나 면책

의 인정여부에는 진실한 보도를 위해 언론이 얼마나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는가가 관건이 된다.

4) 책임회피적 보도태도

머릿글자(initial)만을 표기하였거나, 명예훼손의 내용이 불명확하였거나, 우회적이고 간접적으로 서술되었거나, 의견이나 논평의 형태를 띠더라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명예훼손의 내용이 불명확하게 서술되었다라도 정황에 따라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다.

5) 사적 사항에 대한 보도

공인이든 사인이든 사적 사항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은 면책되지 않는다. 따라서 범죄 보도에 있어서도 범죄자의 신상보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단, 공인이 갖는 정치사회적 비중이 매우 클 경우 면책이 고려될 수 있다.

6) 상해를 벗어나는 보도태도와 비상식적 내용의 보도

비평이나 논평의 경우 거친 언사가 허용되지만 모멸적 언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인의 상식에 벗어나는 내용을 보도할 경우에는 진실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7) 불확실한 내용에 대한 단정적 보도

예를 들어 범죄보도에 있어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 "...혐의를 받고 있다."와 같은 표현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 맥락 등을 감안하여 불확실한 내용을 근거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하였을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8) 불확실한 정보에 근거한 보도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나 추측에 근거한 보도는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계당국의 피의 사실 공표도 공식적인 발표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

토론

사회 박 춘 서
경남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사회자 : 언론보도의 면책요건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해주신 이병섭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개진과 적극적인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주임환 (마산문화방송 보도국장) : 수용자들의 반론이나 정정보도 요구가 부쩍 증가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사의 경우 초상권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체로 왜 본인 얼굴이 방송되었느냐, 왜 허락 없이 본인 얼굴을 취재하느냐, 또는 왜 본인 음성이 방송되었느냐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시청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초상권이 어떤 범주 내에서 인정되는지, 어느 범위까지 음성변조가 이뤄져야 하는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발표자 : 초상권 침해 여부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과 초상의 영리목적 사용으로 인한 일종의 재산권 침해 부분으로 대별되는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에 있어서 음성변조, 신상의 모자이크 처리, 뒷모습 촬영 등이 명예훼손이 되는가의 문제는 방송 등 언론사에서 이와 같이 신경써서 보도했다라도 그 정황상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예컨대 특정 사무공간에서 그 공간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즉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하겠습니까.

홍성란 (마산YWCA 간사) : 각 신문이나 저널 등을 보면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지방 일간신문의 경우 정정이나 수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독자들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정정요구는 보도에 대한 일종의 피드백 역할로써 각 신문사가 공정성, 진실성이라는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동철 (경남신문 편집국장) : 언론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언론사가 명예훼손보도나 오보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한다든지 기타 후속보도에 인식하다는 비판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신문사나 기자의 자존심 때문에 정정보도요구에 대해 인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진실보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요구내용이 진실하고 타당하다면 독자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요즈음 언론피해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추세가 정착되고 있다는 발표자의 주장에 공감하고, 기자들은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현업기자들은 사회부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신문사의 경우 언론사의 경영이 어려울 정도의 배상판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 배상을 해야 할 경우 구체적으로 판례가 보여주고 있는 배상액의 한계가 평

균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발표자 :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명예훼손의 정도를 따지게 되고, 이에는 언론의 배포 범위, 보도된 지면, 사용된 언사, 표현된 내용 등을 감안해서 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방언론사의 경우 배상액의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본 적은 없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까지 배상액이 증가하다 주춤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급법원으로 올라갈수록 배상액이 떨어지는 추세에 있어 언론의 자유를 좀더 보장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석 (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 : 신문 헤드라인에서 비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주재발표자는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 계신 것 같은데 미풍양속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가 그 한계를 직접 규정하고 일반인에게 이를 강제하는 것보다는 사회 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치목표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 예컨대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적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미풍양속에 대한 판단은 시민사회의 판단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발표자 : 비속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면 인신 공격적 표현은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의견을 개진하거나 논평을 하는 경우 다소 거친 표현들은 인정되겠지만 그것이 비속하거나 타인의 인신을 저하시키는 모멸적 언사들은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환 (한국예총 경남도지회 회장) : 사회단체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험한 바로는 사회단체에 관한 기사내용이 왜곡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언론과의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도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

니다. 또한 기자들은 행사보도의 경우에 직접 행사에 참석해서 취재하기보다는 보도자료에 의해서만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러한 보도태도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표자 :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보도가 왜곡된 경우가 많고, 이의제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서는 좀 더 열린 시각으로 우리 언론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근 언론사들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 보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지역사회에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비교적 폭넓게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사 또한 수용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용기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 오늘 토론회의 주된 관심은 언론보도가 고의, 과실로 피해를 준 경우, 그에 대한 구제문제가 논의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와 달리 보도를 해주지 않는 경우, 즉 부작위에 의해서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구제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여론형성을 위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 언론매체의 이용,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언론의 현실은 독자들의 의견수용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이러한 일반국민들의 의사표현 내지 보도매체이용, 접근권이 침해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대안이나 입법적인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표자 : 매체접근권이란 매체를 이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러한 개념이 생겨난 것은 상당히 오래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방송에서는 공공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용자의 의견이 표현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문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 이른바 '공정한 보도의 원칙'이라고 하여 사회의

논쟁이 되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립되는 두 가지 주장을 모두 게재하여야만 언론사가 면책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이 이를 회피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결국 언론이 공적 책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여론 형성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이 원칙은 폐기되었습니다.

결국 현재는 매체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매체접근권은 인정되지만 그 전제로서 지역에 다른 신문, 다른 매체는 없는가를 따져보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의 의견을 공표할 다른 공간이 없다면 매체이용을 강제할 수 있지만, 대안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있을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을 공표할 공간을 제공하라고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도를 해주지 않아서 의견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도를 해줄 언론사를 찾던가, 아니면 또 다른 매체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추세는 매체접근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는 개방된 매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방송에서는 여전히 매체접근권이 보장되고 있지만, 신문의 경우에는 많은 신문들이 경합적, 경쟁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독자투고란 등 언론사 자율적으로 매체접근권을 부여해주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박수성 (창원대학교 대학원 법학전공) : 오늘 토론의 주제내용은 언론보도의 면책요건인데 그 전제는 언론의 자유이고 언론의 자유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봅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언론기관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중요시하는 언론 자체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고, 법적인 사후구제라든지,

정정보도 등은 침해된 명예를 회복하기에는 너무 미미하므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언론계 종사자 여러분들의 자성과 책임의식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 위원장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의 토론회를 마치고,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의 관심과 열띤 토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 활발한 질의와 응답으로 진지한 토론을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과 발표자, 사회자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론내용 중 참석자 여러분의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재신청사건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기관, 단체가 신청한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외에도 정간물법상 중재신청이 가능토록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신청한 사건,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 장관이라든지 도지사 등 국가나 기관, 단체의 장이 신청한 사건이 최근 3년 동안 크게 증가하여 작년 한해에만 40여 건을 넘었습니다. 한편 중재신청인의 유형별 특색으로는 최근 2년 내의 한국적인 현상으로서 신문사와 신문사, 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사간 중재신청사건이 증가하였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위에 의한 권리침해, 인격권 침해의 경우 권리구제방법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반론보도의 경우 정간물법상 사실적 주장을 공표한 자만이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부작위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반론보도청구는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상 어렵겠지만, 민법상 일반적인 불법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해서 정정보도청구는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여러 분야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내실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토론회였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언론의 한견주의와 부정확한 예단이 빚어낸 이중살인

김 창 룡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교수

그것은 참혹한 죽음이었다. 21살, 22살의 한국 여대생들이 지구 반대편 영국에서 어학 연수 중 어느 날 끔찍한 시체로 발견된 것이다. 한 명은 살해된 후 여행용 가방 안에 구겨진 채 길가에 버려졌었다. 다른 한 명은 오랜 실종 끝에 런던의 한 주택 현관 벽장에서 뒤늦게 시신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비극의 장본인들은 2001년 어학연수를 떠났던 진효정, 송인혜 양. 이제는 대학생들의 필수코스가 되다시피 한 어학연수를 위해 이들도 푸른 꿈을 안고 해외로 떠났던 것이다. 떠난 지 불과 1년도 못 돼 꽃다운 한국의 두 여대생은 이처럼 참혹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들을 이처럼 보내야했던 부모들의 가슴에는 평생의 회한과 끝모를 슬픔만을 남겨둔 채.

그러나 정작 이들 부모가

습에 대못질을 한 것은 자식의 죽음 그 자체와 함께 한국언론의 고질적인 한견주의식 보도와 부정확한 예단이었다. 언론이 입을 다물고 있어 다수의 국민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한견주의 때문에 성급한 보도로 인격을 침해한 대다수 신문과 방송은 과거처럼 현재에도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앞으로도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2002년 5월 공영방송 소속 변호사를 만난 자리에서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이렇게 물었다. “진효정, 송인혜 살해사건은 이제 영국법원의 판결만 남아있지만 이들이 마치 마약복용을 하거나 범죄조직과 연루돼 있었던 것처럼 보도한 한국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

로 드러났다. 당신이 속해 있는 방송사는 먼저 이 오보에 대해 사과하고 정정할 용의는 없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사과를 한다면 이는 우리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역시 언론사 스스로 오보를 밝히고 사과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필자의 허망한 희망사항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언론사에 소속된 변호사들의 임무나 역할의 한계도 분명했다. 대부분의 한국 언론은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이처럼 비겁하게 대응한다. 우선 사실 확인이 안됐다는 구실로 시간끌기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측이 권력이나 힘이 없을 경우 간단하게 무시하



기 심상이다. 더구나 자식들은 슬픔에 소송이나 정정보도는 엄두도 못내는 평범한 시민의 인격권 수호는 안중에도 없는 식이다.

언론의 잘못은 언론 스스로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알기 힘들다. 언론소비자의 칩묵 속에 부당한 인격권 침해보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것은 곧 한국언론을 퇴행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글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진효정, 송인혜 살해사건은 2002년 6월 현재 영국 법원에 계류 중이다. 유력한 살해용의자 런던 민박집 주인 김규수 씨는 구속 중이며 첫 재판은 오는 10월경에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의 보도는 살해된 학생들의 '마약복용의혹'과 '범죄조직과의 관련성' 등에 모아진다. 영국경찰은 공식적으로 이번 사건이 '범죄조직과 직접적인 관련 증거가 없다'고 이미 밝혔으며 '마약관련 혐의'는 기소내용에조차 올리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사건의 내용은 무엇이며 국내 신문과 방송은 어떻게 보도했는가. 또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인가.

경찰에 의하면, 한국인 여대생 진효정 씨는 프랑스 리용에서 어학연수를 받던 중 2001년 10월 사흘 일정으로 영국여행을 떠난 뒤 런던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소식이 끊어졌다고 한다. 약 한달 뒤인 2001년 11월 18일 진씨는 영국 요크시 근처 마을 골목에 버려진 가방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시신의 신원은 영국 경찰이 한국대사관에서 실종자 지문을 넘겨받아 40여 일만에 확인됐다고 한다. 한국언론의 보도는 신원이 확인된 후인 2002년 1월 10일경부터 대서특필되기 시작했다. 송인혜 양의 시신은 몇 개월 뒤에 발견되지만 문제의 보도는 1월 15일과 그 며칠 후 동안에 집중돼서 나타났다.

2002년 1월 15일경부터 유력한 용의자 민박집 주인 김씨의 이메일을 일부 한국特派원이 접했다고 하면서 문제를 비약하기 시작했다. KBS와 MBC 방송보도에 의하면 김씨는 이메일을 통해 "사망한 진씨와 실종된 송씨에게 마약을 알선, 복용하도록 주선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이 무렵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 등 국내신문들도 연

합뉴스의 기사를 인용하거나 자사 특파원의 이름으로 '마약복용 및 마약범죄단과 연루설' 등을 주장했다.

아래 인용한 관련 보도기는 법적 문제와 잘못된 저널리즘의 관행 등을 내포하고 있다.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각 문장의 서술어 형태, 악명의 취재원 남용여부, 추측을 나타내는 '가능성', '시사한다'란 용어의 남발 등이다.

각 신문사가 인용한 연합뉴스사 보도내용 전문

英 경찰, 진효정 씨 약물과용 사망 가능성 수사 (2002. 1. 15)

프랑스 어학연수 중 영국 여행에 나섰다가 가방에 든 변사체로 발견된 진효정 씨(21) 사건을 수사 중인 영국 경찰은 진씨가 약물과다복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경찰의 사건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소식통들은 진씨가 묵었던 민박집 주인 김모 씨(30)가 14일 오후에 발신한 e-메일에서 이 같은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김씨가 e-메일을 통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아

씨씨와 엑스터시라는 약을 먹게 알려준 죄 말고는 없다”고 말한 것은 김씨가 진씨에게 약을 먹도록 주선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 (중략) ... 이 소식통들은 특히 김씨가 “아시아 여자를 소개해주면 30일 상당의 물건을 주더라”며 “만나고 싶으면 항상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항상 같은 자리에서 볼 수 있다”고 한 부분은 김씨가 진씨 등을 평소 알고 지내던 약물 밀매인에게 소개해줬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김씨가 약물 밀매조직원과 연결돼있었다는 정보를 최근에 들은 바 있다며 김씨의 e-메일 내용으로 볼 때 김씨가 진씨를 약물 밀매인에 소개하고 진씨가 약물과다복용으로 숨지자 이 밀매인이 진씨의 사체를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중략) ... 이 소식통들은 진씨의 사체에 외상이 전혀 없었던 점도 이 같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며 현재 진씨의 사체에 대한 독극물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실종된 영국 유

학생 송인혜 씨(22)도 김씨가 e-메일을 통해 “인혜가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서로 더 친해졌다 ... 인혜가 학교를 그만두고 우리집에서 살게된 이후 우리는 3주간 매일 약을 먹었다”고 말한 것을 볼 때 송씨도 김씨를 통해 약물을 복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형사사건을 보도하면서 ‘소설식 추측기사’와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저널리즘의 기본을 무시한 처사

형사사건에서 낭발하는 추측성 보도

형사사건에 관한 보도에서 언론의 일반적인 추측이나 비공식적인 취재라인에 의한 정보수집과 공개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담당수사경찰이라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정보수집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합법화되기 어렵지 않다. 독자적인 취재라 하더라도 그 내용의 사실관

계 확인을 위한 기자의 충분한 노력(성실취재의 의무)을 다했느냐가 주요한 관건이 된다.

위에서 인용한 연합뉴스와 각 신문사 뉴스에서 나타난 보도의 추측성은 일반 저널리즘의 기본을 무시하고 있다. 연합뉴스의 이 기사는 한 페이지의 기사에서 무려 5번이나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추측을 남발하고 있다. 또한 ‘시사하고 있다’, ‘보인다’ 등의 막연한 표현도 자주 눈에 띈다.

사실(fact)이 가장 중시되는 ‘살인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을 보도하면서 기자가 이처럼 ‘소설식 추측기사’를 작성하고 국내 앵커는 여기다 ‘상상력’을 덧붙이는 이런 보도가 그대로 방영된다는 것은 한국 방송뉴스가 얼마나 인권수호에 무심한가를 보여주는 증거다. 형사사건에서는 수사담당자의 공식적 수사결과 이외에 추측이나 문제제기성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료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추측성 표현 외에 취재원의 신빙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표현을 역시 이용하고 있다.

취재원이 수사경찰도 아니고 “영국경찰의 사건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소식통들”, “이 소식통” 등으로 막연하다. 이런 막연한 취재원을 인용하여 영국경찰이 밝힌 ‘범죄조직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을 뒤집고 있는 것이다. 익명의 취재원을 동원하여 수사내용과는 관계 없는 돌발주장을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미국 텍사스 지역의 유력지 ‘달라스 모닝 뉴스’ 윤리규정에 의하면 이런 보도는 불가능하다. 이 윤리규정에 의하면 익명보도는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익명보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동일 진술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다.

KBS와 MBC TV 방송의 마약관련 보도 일부

KBS-1TV : 1월 15일자 9시 뉴스

민박집 주인 E-메일로 범행 부인

◎앵커 : 영국에서 일어난 두 여대생의 피살 실종사건이 마약복용과 모종의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민

박집 주인이 오늘 E-Mail을 통해서 자신이 이들에게 마약을 알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런던에서 이동식 특파원입니다.

◎기자 : 진효정 양과 송인혜 양이 묵었던 민박집 주인 김씨는 오늘 언론사에 보낸 E-Mail에서 자신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며 먼저 범행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김씨는 E-Mail에서 자신은 아씨씨와 엑스터시라는 약을 먹게 해 줬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김씨가 진양에게 마약복용을 주선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송인혜 양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김씨가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마약밀매에 손을 댔고 유학생 등 민박집 손님에게 마약을 알선했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진양의 사인이 금품을 노린 납치 외에 마약밀매나 복용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후략)

MBC-TV : 1월 18일자 9시 뉴스

◎기자 : 김씨는 오늘 MBC에 보내온 E-메일을 통해 자신이 런던 시내 소호

근처에서 활동하는 4개의 마약조직과 거래를 해 왔다고 말하고 이번 사건은 너무 큰 조직과의 싸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거래하던 사람들도 자신을 찾고 있다며 두려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피살된 진양과 함께 약을 사러 간 적이 있으며 그때부터 진양이...(후략)

MBC-TV : 영국 약물문제, 서유럽에서 최악(2002년 1월 16일)

◎앵커 : 민박집 주인 김씨의 E-메일은 즉각 영국 경찰에 전달됐습니다. 김씨 주장의 신빙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영국이 서유럽 국가 가운데 마약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라고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사건에 영국 마약조직의 개입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자 : 인구 10만명당 마약 등 약물 과용에 따른 사망자 수가 5명.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 주변 국가들과는 달리 영국의 마약 문제는 서유럽 국가 중 최악입니다. 영국 사회의 심각한 마약 문제는 곧바로 범죄로 이어집니다. 범죄자 3명 가운데 2명이 약물 복용자이고 ...

(중략) ... 이처럼 심각한 영국 의 약물 실태를 볼 때 살해되거나 실종된 우리 연수생들이 영국인 마약 중독자에 의해 희생됐을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금기시하는 일방적 주장을 보도하는 관행

형사사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 등 이해당사자가 극명하게 대립될 때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바로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장을 과다하게, 불공정하게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저널리즘의 기본으로 수습기자 시절부터 강조되는 내용이다.

그러면 방송과 연합뉴스의 한국 특파원들은 왜 이런 기본원칙조차 지키지 않았을까?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거론된 민박집 주인 김씨의 주장을 고스란히 인용하고 있다. 그 내용이 모두 충격적이다.

“이들은 김씨가 약물 밀매조직원과 연결돼있었다는 정보를 최근에 들은 바 있다며 김씨의 E-메일 내용으로 볼

때 김씨가 진씨를 약물 밀매인에 소개하고 진씨가 약물과 다복용으로 숨지자 이 밀매인이 진씨의 사체를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언론은 진씨가 약물과다복용으로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혜가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서로 더 친해졌다 ...

용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서특필하여 법적분쟁이 야기된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어

인혜가 학교를 그만두고 우리집에서 살게된 이후 우리는 3주간 매일 약을 먹었다”고 말한 것을 볼 때 송씨도 김씨를 통해 약물을 복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언론은 당시 실종된 송인혜도 약물을 복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오늘 MBC에 보내온 E-메일을 통해 자신이 런던 시내 소호 근처에서 활동하는 4개의 마약조직과 거래를 해 왔다고 말하고 이번

사건은 너무 큰 조직과의 싸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거래하던 사람들도 자신을 찾고 있다며 두려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피살된 진양과 함께 약을 사러 간 적이 있으며 그때부터 진양이 그들을 만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방송은 한 걸음 더 나아가 4개 범죄조직과의 연계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역시 마약복용을 주장하고 있다.

김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옮기는 것도 부족해서 MBC방송의 경우 ‘서유럽 최악’ 영국의 마약실태까지 외신을 인용해서 보도하며 희생자들이 마약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더욱 관련성을 높였다. 저널리즘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언론의 오만이나 무지 외는 설 명할 길이 없다. 유력한 용의자의 일방적 주장을 대서특필한 언론이 그 보도가 잘못됐을 경우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된다는 것은 그동안 판례의 교훈이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에 있어서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과 제308조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에 의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규정은 기자는 물론 데스크도 알고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한국언론은 법문 제가 나오면 변호사에게나 맡길 생각을 하고 있다. 스스로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셈이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어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진·송사건' 기사는 형사사건에서 수사경찰의 수사결과와는 무관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는 점, 보도내용이 수사경찰의 공식발표가 아니라는 점, 취재원을 알 수 없는 익명의 취재원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점, 내용이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고 자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 추측성 표현을 남발하여 스스로 기사의 기본요건을 결하고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기사화하지 말았어야 했다.

인터넷상의 정보를 언론매체가 기사화했을 때 법적 책임 소재는 언론사

위에 인용한 기사의 주장은 모두 김씨의 이메일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김씨가 이메일을 특파원에게 보낸 것이라고 한다. 먼저 결론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정보를 취재에 이용하는 것은 기자의 자유지만 그것을 언론이라는 공적매체를 통해 기사화했을 때는 그 진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해당기자나 언론사에 있다.

서울지방법원은 2000년 2월 2일자 판결에서 "공인인 원고

의 사생활에 대한 인터넷상의 허위사실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명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동의 없이 보도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유명 방송인 백지연 씨는 이 소송으로 스포츠투데이에 승소했다.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을 언론사가 확인과정없이 그대로 기사화했을 때 역시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정보를 그대로 기사화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보도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약박복용'이라는 과격하고 위험한 주장을 펼치는 근거로 인터넷상의 용의자의 서신이라는 것은 그 근거가 빈약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영국 수사기관에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거나 부정하는 사안을 언론이 독자적으로 주장할 때는 그 근거가 구체적이고 타당해야 한다.

연합뉴스 기사서비스를 전재했을 때 해당 언론사와 연합뉴스의 법적 책임

조선일보는 1월 15일자 신문에서 '英 경찰, 진효정 씨 약물과용 사망 가능성 수사'

라는 제목으로 '약물복용'과 '약물밀매조직원과 연계' 등의 추측 기사를 내보냈다. 한겨레신문도 같은 날짜에 '숨진 진효정 씨 마약복용 가능성 조사'라는 기사를 소개했다. 경향신문도 같은 날짜에 '꽃 경찰, 진짜 약물과용 사망 가능성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중앙, 동아, 한국일보, 문화 등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다. 원인은 바로 신문사에 뉴스를 공급하는 연합뉴스에 있었다. 연합뉴스의 런던특파원이 보낸 '약물기사'를 각 신문들은 거의 그대로 보도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 연합뉴스 특파원의 이름까지 밝혔고 대부분 신문은 연합 크레딧만 달아서 보도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연합뉴스 기사에다 자사 '파리 특파원' 누구라고 이름만 바꿔서 내보내는 비윤리적 관행을 저질렀다. 각 신문이 연합뉴스를 받아서 게재했기 때문에 책임은 연합뉴스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일본에서 이와는 다른 판레이론을 도입했다. 즉 통신사의 글을 그대로 게재했다라도 신문사에 책임을 묻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2년 1월 29일 통신사 기사를 게재한 매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통신기사전재의 항변'을 인정한 3건의 2심 판결을 파기, 도쿄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고 한다. '로스'의혹사건으

우리 언론은 인권수호의 보루, 정당한 알 권리를 위한 공기로 거듭나야

로 살인죄 혐의가 추궁되었던 三浦和義가 共同通信과 통신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19건)의 상고심 판결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례적으로 신문사에도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金谷利廣 재판장은 "일본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사인의 범죄행위나 스캔들 보도에 있어서 통신사의 송신 기사를 포함하여, 보도가 과열된 나머지 취재에서 신중성이

결여된 진실이 아닌 내용의 보도가 간혹 보이기 때문에 통신사로부터 송고받은 기사라고 하더라도 사실의 진실성 면에서 높은 신뢰성이 확립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지적, "사인의 범죄나 스캔들에 관한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통신사 송고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통신사 전재의 항변을 '사인의 범죄와 스캔들 보도'분야에 국한하고 있지만 통신사 기사를 전제한 신문사에도 그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유사한 판례가 우리 나라에도 있으나 이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번 사건에 대한 각 신문사의 책임 역시 피할 길이 없어진다.

정정에 인색한 한국언론, 저널리즘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는 한국언론, 인권유린을 별 죄의식없이 저지르는 언론으로 남는 한 한국언론은 미래가 없다. 언론개혁의 핵심이 저널리즘의 회복으로 나타나 인권수호의 보루, 정당한 알 권리를 위한 공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

신문의 권위와 신뢰성

조 군 상

대전중재위원 · 전 대전일보 논설위원

예전 한때는 시중의 보통사람들 사이에선 “신문에 낫대”라고 하면 좀처럼 믿기 어려운 일이라도 사실로 인정받곤 했다. 의문을 갖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다가도 “신문에 낫다”는 한마디로 이의 없이 판정이 나버리는 때가 있었다. 그때는 그만큼 신문의 권위가 인정되었고 신문보도가 신뢰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신문에 낫다”는 말이 확인돼도 “요즘 신문 믿을 수 있나”라든지 “신문에 낫다고 다 믿을 수는 없지”라면서 좀처럼 수긍하려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전에 비해서 신문이 권위와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더구나 신문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주장을 펴는 논평 등에 대해선 신문사의 글이든 기고자의 글이든 반론을 제기하고 이론을 내세우며 격렬한 비판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신문의 논조에 쉽게 공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예전의 보통사람들은 신문보도뿐 아니라 어떤 형태의 정보라도 쉽게 믿어버릴 만큼 순박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해 불만하다. 그리고 그때는 정보유통수단이 비교적 단순하고 수적으로도 적어 신문이 쉽게 권위를 인정받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설득력 있는 이유는 세월이 흐르면서 독자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져 비판적 안목과 논리적 사고 내지는 민주적 사고가 크게 신장되었기 때문일 것이란 분석이다.

이유야 어떻든 신문이 절대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독자들의 분석력과 판단력 등 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는 측면에선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신문의 권위와 신뢰가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저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대중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요즘의 독자는 예전의 독자가 아니다. 적극적이고 논리적이다.

우수한 신문을 만드는 것은 일반독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집단이나 특정 사회, 경제집단들이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따져 때로는 언론을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타하기도 하지만 결국 최종적인 평가는 일반 독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독자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결국 그 신문은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근래 신문은 물론, 다양한 정보유통수단이 대량으로 태동하면서 미디어들간에 무한경쟁 시대를 맞고 있다. 경품을 돌리고 부가지를 뿌리는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보급망의

독자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신문의 존재가치 상실

확보나 광고수입의 증대를 위한 과열경쟁은 언론이 스스로의 권위를 깎아 내리면서 저널리즘 본연의 기능마저 훼손하고 있다.

자본주의시대에 있어서 언론사의 이윤추구는 불가피한 일이지만 지나친 상업주의는 선정적 보도 및 과장, 축소보도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취재현장에서 언론사간의 치열한 경쟁도 언론보도에 요구되는 공정성, 정확성, 윤리성을 저하시키면서 독자들의 신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언론사 세부조사와 일부 언론사에 대한 검찰고발과 경영주의 사법처리, 신문고시의 강행 등 소위 언론개혁이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는 더욱 어지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계기로 권력과 신문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신문과 신문, 신문과 TV 등 언론사간에도 극단적 대립국면이 노출되면서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사들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해야만 권력으로부터도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언론들이 자제력을 잃고 편향된 보도를 하게 된다면 독자들의 신뢰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언론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롭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한다. 독자들은 언론사와 언론인에게 특별히 차원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도 기업이기에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지만 언론사가 통속적인 장사꾼이 될 수는 없다. 또한 기자도 먹고살아야 하는 생활인이긴 하지만 평범한 월급쟁이여서는 안된다. 언론이 비판의 주체이긴 하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바른 길을 걷지 못하면 스스로도 독자들의 준엄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노동, 통일, 인권문제 등 수많은 분야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으면서 국론분열과 이념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올해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국운을 좌우할 대사를 앞두고 있는 마당이고 보면 어느 때보다도 언론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 공정하고 날카로운 비판을 해주어야만 한다.

언론이 권위를 잃고 보도가 신뢰를 얻지 못하면 국민은 일대 혼란에 빠지고 선거도 성공을 거두기가 어려워진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건 언론이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재물을 다하지 못하면 그 시대, 그 사회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

미국, 언론소송 감소 추세 지속되고 있으나 손해배상액은 여전히 높아

LDRC(Libel Defense Resource Center)가 2002년 2월에 발표한 “언론소송과 배상액에 관한 보고서”(LDRC 2002 Report on Trials and Damages)에 따르면 지난 2001년 한해 동안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언론매체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2000년도보다 증가하였으나 1980년대나 1990년대에 비해서는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손해배상액은 2000년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나 지난 20년 기간의 손해배상액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LDRC는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법제 동향 및 언론소송의 추이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광범위한 정보를 바탕으로 1980년 이래 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2002년 보고서 발간에 즈음하여 LDRC의 Baron 사무국장은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와 같은 수정헌법 제1조에 기반한 소송에서 언론매체가 승소할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2001년도에 언론매체를 상대로 한 소송 판결은 17건으로 이는 1990년대의 평균 판결 건수 18.5건, 1980년대의 평균 판결 건수 26.1건 보다 낮은 수치이다. 판결결과를 보면, 17건 가운데 8건은 언론사측이 승소했으며, 8건은 원고측이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건은 계류 중이다. 50%의 언론사측(피고)의 승소율은 2000년도의 46.2%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이나 1990년대의 평균 언론매체 승소율 38.7%, 1980년대의 35%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원고측이 승소한 판결을 살펴보면 평균 손해배상액이 180만 달러, 손해배상액의 중앙치(median)는 1백만 달러로 나타났다. 중앙치 손해배상액은 지난 20년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액수에 해당한다. 평균 손해배상액은 1980년대에 평균치 144만 달러, 1990년대 평균치 296만 달러에 비교해 볼 때 약간 낮은 액수를 기록했다.

원고측이 승소한 판결 가운데 30.4%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내려졌는데 2000년도에는 전체 손해배상 가운데 단지 3.7%만이 징벌적 손해배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의 67.1%, 1980년대의 63.1%의 징벌적 손해배상 비율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LDR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이래 언론매체를 상대로 한 소송판결은 총 483건이며, 이 가운데 274건에 대해 언론매체는 손해배상을 명받았다. 항소율은 45.8%로 조사되었으며, 22%만이 1심 판결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판결에 패소한 언론매체 가운데 14%는 항소하지 않았으며, 원고측이 승소한 사건 가운데 12.8%는 항소전에 조정 내지 화해처리되었다. 계류 중이거나 현재 소송진행 상황이 알려지지 않는 것은 전체 사건 중 5.4%이다.

(http://www.ldrc.com/Press_Releases/bull2002-1.html, : Media Law Reporter, Vol. 30, No. 11) □

일본, 언론관련 소송의 손해배상액 고액화 추세

2001년도 일본의 언론관련 명예훼손소송에서 저명인사가 제기한 사건을 중심으로 500만 엔 이상의 손해배상 판결이 속출하여, 손해배

상액의 고액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법관들로 구성된 연구회 등에서도 명예훼손소송에서의 고액화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예를 들면 '도쿄지방법관소 손해배상소송연구회'는 "매스미디어에 의한 명예훼손소송의 연구와 제언"을 통해 유명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의 기본액을 400만~500만엔 정도로 책정할 것을 제안했으며 '사법연수소'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손해액의 산정" 보고서를 통해 고액화 제안과 함께 위자료액 정형화의 산정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전직 판사 崎勤씨는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하여", 井上繁規 판사는 "명예훼손에 의한 위자료산정의 정형화 및 정액화의 시론"을 발표했는데, 전자에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평균 기준액으로써 500만엔 정도를 제시했으며, 후자에서는 위자료산정의 정형화 및 정액화의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500만엔 이상의 고액판결은 약 15건이며 1,000만엔의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도 2건이나 된다.

500만엔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한 2001년 7월 5일의 도쿄고등재판소 판결에서는 고액화의 필요성에 대해 "가볍게 평가되어온 과거의 명예훼손 등에 의한 손해배상 사건의 재판례의 위자료액에 구속된다든가, 그것과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은 반드시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합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인식을 표시한 후 "출판사가 본건 주간지에서 상당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추인되며, 약간의 배상금의 지불로는 본건과 같은 위법행위의 자제가 기대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언론계에서는 언론규제라는 정치적요인이 엿보인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한편 명예훼손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때 기사전체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느냐, 아니면 제목이나 리드부분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도쿄고등재판소는 2001년 4월 11일 판결에서 "대부분의 일반독자들이 제목, 리드부분, 본문의 모든 내용을 읽는다고 할 수 없으며 제목과 리드부분만을, 혹은 제목만을 읽는 일반독자들도 적지 않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전제, 제목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은 제목이나 리드부분만으로는 독자적으로 안되고, 기사전체를 가지고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를 판단해야만 한다는 근년의 판례(福岡고등재판소 1999년 7월 16일 판결, 2000년 10월 20일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판결이 시인한 도쿄고등재판소 1997년 1월 29일 판결) 경향과 다른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新聞研究』, 2002년 5월호)



유명 모델의 마약 치료 사실을 보도한 영국의 주간지, 패소 판결 받아

영국의 세계적인 모델 나옴이 캠벨이 마약 중독치료센터에서 치료받은 사실에 대해 상세히 보도한 Mirror Group Newspaper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유명인의 프라이버시권이 또다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나옴이 캠벨은 법정에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나 프라이버시권은 법원 결정의 핵심에 놓여 있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만

한가에 대한 판단이며, 두 번째는 신문사의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 위반 여부이다.

신문사측은 원고 나옴이 캠벨은 언론매체를 통해 모델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세세한 사생활을 밝혀온 만큼, 스스로 언론의 노출을 초래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는 프라이버시의 보호 영역에 있었으며, 은밀한 비밀영역을 침해하는 언론의 폭로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마약치료와 관련한 보도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 기사의 취재원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법원은 원고의 측근이나 동료 환자일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다. 나옴이 캠벨은 소송의 또다른 청구원인으로 신문사측의 데이터보호법 위반을 제기하고 있다. 법원은 이 데이터보호법의 입법 취지는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명시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캠벨의 마약치료와 관련한 정보는 데이터보호법의 대상이므로 신문사측은 캠벨의 마약 치료와 관련한 정보를 통제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문사는 데이터보호법을 위배하였다고 판시했다.

또한 잠복한 사진 촬영자로부터 구한 은밀한 모습의 사진을 비롯한 다른 정보의 취득 방법과 관련하여서도 원고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문사는 런던의 한 마약중독치료센터에서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장면을 촬영하여 게재하였다.

신문사측은 세계적인 모델인 나옴이 캠벨의 마약 치료 사실은 공중에게 알릴 만한 사안이며

로 정당한 관심사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마약 치료의 세부적인 면까지 알리는 것은 정당한 관심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Press Gazette, 2002, 4, 5.)

□

재판소의 허락없이 법정의 피고인을 촬영 보도 한 것은 초상권 침해

-일본 大阪지방법재판소 판결-

일본 和歌山시 독물카레 사건관련 소송의 피고인인 林眞須美 씨가 자신의 법정에서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게재한 사진주간지 FOCUS(휴간)의 기사로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新潮社와 동사 사장, 임원 5명을 상대로 2,200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를 청구한 소송에서 大阪지방법재판소 제20민사부는 2002년 2월 29일 新潮社측에 660만엔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에 의해 법정에서의 사진촬영은 금지되어 있으며, 촬영장소와 촬영 방법 측면에서도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 일러스트화를 게재한 기사에는 공익성이 없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新潮社 사장에 대해서는 "FOCUS에 의한 위법행위의 계속적인 발생을 방지할 사내체제 구축의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지적, 관리책임을 인정했으나 다른 임원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FOCUS는 1999년 5월 26일자 "법정을 비웃는 '眞須美(피고인)'의 독카레 - 첫공개, 이 '괴물'을 재판한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재판소의 허락 없이 촬영한 법정 내의 林씨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또 동년 8월 25일자에 "'초상권'으로 본지를 제소한 '林眞須美'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라는 제목으로 법정에서의 林씨의 일러스트를 게재하면서 林씨가 5월 26일자 기사를 문제삼아 新潮社를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8월 25일자의 일러스트에 관해 재판부는 "사진이나 일러스트화냐는 초상권 침해 유무를 결정하는 본질적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 다음 "원고가 新潮社를 제소한 것을 야유할 의도로 작성한 기사에 일러스트를 게재한 것으로 공익성을 인정할 수 없다. 기사에서는 강한 악의가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新潮社は 2월 28일 항소했다.

(『新聞協會報』, 2002년 3월 5일자) □

일본 최고재판소, 또다시 통신기사전재의 항변 불인정

로스의혹사건의 살인피의자 三浦和義 씨가 共同통신사의 전재기사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로 기사를 게재한 福島民友신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재판에서 일본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정평있는 통신사의 송신기사라는 이유만으로, 통신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에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신문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도쿄고등재판소 1995년 12월) 판결을 파기하여 심리를 도쿄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판결은 "통신기사전재의 항변"을 부정한 지난 1월 29일의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의 판단을 따른 결과이다.

福田博, 龜山繼夫 두 재판관은 "민주주의 국

가에서 불가결한 언론의 기능은 국민이 기사의 책임원을 인식할 수 있음으로써 비로소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통신기사에 크레디트가 없는 경우,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는 통신기사 전재의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고 찬성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梶谷玄 재판관은 "통신기사전재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으면 지방지와 통신사 쌍방에 위축효과를 미친다. 가맹사에 불필요한 배상의무를 과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불가결의 역할을 맡고있는 통신사의 기사송신시스템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新聞協會報』, 2002년 3월 19일자) □

일본신문협회, 의회에서 심의 중인 인권법안 등이 언론을 규제하는 악법이라며 반대성명 발표

일본 언론계와 변호사단체를 비롯한 각 분야의 사회단체들은 의회에서 심의 중인 인권옹호법안과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언론규제법안으로 규정, 일제히 강력한 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언론계를 대표하는 신문협회는 2002년 4월 24일 "두 법안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어 언론사의 사활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긴급 성명까지 발표했다.

신문협회는 성명에서 "보도에 의한 인권, 프라이버시의 침해문제는 언론사의 자주적인 대응으로 해결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간방송연맹에서도 4월 25일 이 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담화를 발표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보도책임자 명의의 반대성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이에 앞서 2002년 3월 7일에는 일본신문협회, 일본민간방송연맹, 일본방송협회의 320개 신문, 통신, 방송사들은 두 법안의 언론규제내용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일본펜클럽, 일본변호사연합회, 신문노련 등 많은 사회단체들도 연대하여 법안반대 간담회를 갖는 등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다.

〈신문협회 긴급 성명서〉

개인정보보호법안과 인권옹호법안에 대해 일본신문협회는 거듭 '보도의 자유'를 충분히 배려하도록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한 두 법안은 우리들의 주장을 거의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나 인권옹호를 명목으로 보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한다든지, 보도기관을 감독하는 주무장관을 둔다든지, 취재·보도활동을 독립행정위원회의 재량에 맡기는 등 언론사의 사활과 관련이 있어 단호히 반대한다.

보도에 의한 인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는 보도기관의 자주적인 대응으로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의 '알 권리'는 모든 기관으로부터 독립한 미디어가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보장된다고 우리들은 굳게 믿고 있다.

(『新聞協會報』, 2002년 4월 9일·30일) □

기사제목이 독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면 정정해야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매일신문 기사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종교단체 옴진리교가 손해배상과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일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2002년 3월 28일 매일신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매일신문에 정정기사의 게재를 명한 항소심(도쿄고등재판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매일신문은 2000년 5월 26일자 조간에서 '사린연구 계속'이란 제목과 함께 사린의 화학식 등을 기록한 신자의 메모가 경시청에 압수되었다는 등의 보도를 했다.

1심인 도쿄지방법재판소는 2000년 12월 제목의 표현은 부적절했으나 기사를 읽어보면 교단이 사린의 연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교단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인 도쿄고등재판소는 2001년 4월 "제목만을 읽는 독자도 적지 않으며, 제목은 교단이 제조목적으로 사린의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판단, 매일신문 지상에 제목이 부적절했다고 삭제·정정하는 기사를 게재하도록 명했다.

(『新聞協會報』, 2002년 4월 2일) □

기사에 게재된 사실의 중요부분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의견 또는 논평으로서의 영역을 일탈하면 명예훼손

-일본 사이다마 지방재판소 판결-

사이다마현(埼玉縣)의회 전 의원이 자신이 탈세했다고 보도한 内外타임스사와 동사 회장을 상대로 1천2백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埼玉지방법재판소 제1민사부는 2001년 11월 9일 "기사에 게재된 사실은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기는 했으나 의견 또는 논평으로서의 영역을 일탈한 표현이 있었다"고 판단, 内外타

임스사에 66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그러나 회장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7억8천만엔 이상의 유산을 상속받았으나 아버지가 체납하고 있었던 납세채무의 일부인 약 4300백만엔에 대해서는 상속 후에 시효가 넘어버렸다.

원고는 1996년 6월 현(縣)의회 의원에 당선되었는데, 内外타임스는 1999년 3월 11일 발행지면에 “탈세”, “‘시효’에 의혹” 등의 제목으로 “현의회 의원이 4천4백만엔이나 되는 세금을 체납(탈세)하고, ‘시효’를 이유로 범망을 피해나갔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공익성, 진실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사는 범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사실로서의 탈세를 했다는 인상을 독자에게 주고 있다”고 지적, 의견이나 평론의 영역을 일탈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1999년 4월의 현의회 의원선거에서 낙선한 원고는 “탈세후보를 용서하지 말라”고 적힌 현수막을 上尾역전에 걸어놓고 당선된 상대후보에 대해서도 1천2백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33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新聞協會報』, 2001. 11. 27)



영국,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한 법원 소송 증가

PCC(Press Complaints Commission)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두 가지 신화, 즉 영국에는 프라이버시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분위기와 일부 계층을 위한 인권법(Human Rights Act)과 대중을 위한 PCC라는 2단계

구제시스템이 있다고 인식되는 점에 대해 비판했다.

PCC 관계자는 사생활 침해에 관한 불만을 법에 호소하기 위해 “일부 명사들과 공적 인물들이 불쌍 사납게 급한 마음으로 PCC를 무시한 채 법원으로 몰려가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경향은 유명 영화배우인 마이클 더글라스와 캐서린 제타존스가 자신들의 결혼식 사진 게재와 관련한 소송인 2000년 12월의 항소법원 재판 결과 더욱 만연해졌다.

한 항소법원 판사는 영국법에 의해 보호받고 인정되는 법익으로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구제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1년 PCC는 프라이버시와 관련 520건의 불만신청을 접수했다. 2단계 구제시스템과 관계없이 지난 해 PCC는 그 어느 때 보다 공적 인물이나 유명 인사들의 불만신청을 많이 다루었다.

PCC는 재정적 이득을 구하려는 자들이 그릇된 신화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마이클 더글라스와 캐서린 제타존스와 관련한 판결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판결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저작권 침해나 악의적인 허위(malicious falsehood), 신용훼손, 불법적인 계약 관계 개입 등에 비하면 부수적인 것이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PCC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의 전망이 전적으로 낙관적이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만일 영국 법원이 PCC의 보도실천강령을 기껏해야 형식적인 기능만을 한다고 판단하여 출판 제한 명령을 내린다면 언론자유의 심각한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Press Gazette, 2002. 1. 25.)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언론자유이므로
사건관계인과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신청인 남편이 사고 가해자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2강원중재2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김 연 옥

피신청인 : 춘천MBC-TV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2. 3. 2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춘천MBC-TV : 「뉴스」 프로그램 (2002년 2월 26
일 19:00)

내 용 :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승
용차가 직행버스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숨
졌습니다.

오늘 낮 1시쯤 춘천시 칠전동 사거리에서 대
우자동차 순회정비반소속 47살 박영찬 씨가 운
전하던 라노스 승용차가 좌회전하다가 직진하
던 진흥고속 직행버스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박씨가 숨지고, 버

스에 타고 있던 승객 8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
었습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사망운전자 박영찬의 아내
로 춘천MBC방송 2002년 2월 26일자 7시 저녁
뉴스에 “직행버스 승용차 충돌” 제목의 방송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하던 승용차가 직행버스와 충돌해 승용
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라고 교통사고 당일
방영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즉 사실은 승용차가 정상신호인 좌회전신호
에서 춘천C.C로 좌회전하여 연중 사고 다발지
역인 현장 교차로를 거의 다 빠져나가려는 상
황에서 서울방향에서 춘천방향으로 불법과속
(경찰조사결과 불법과속으로 판정)으로 교차
로를 진입하려던 직행버스와 교차로에서 충돌
한 사건으로 신호위반과 불법과속은 버스측에
있다.

피신청인은 현재 춘천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직행버스 운전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놀아나 편파보도하여 청천벽
력 같은 망자의 죽음 앞에 망연자실해 있는 유

가족들이 상중에 조문객들로부터 본 보도내용을 전해듣고 유가족 및 조문객 모두 심한 심적 육체적 고통의 피해를 입고 있어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춘천MBC가 지난 2002년 2월 26일 저녁 7시 “직행버스 승용차 충돌”제하의 방송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직행버스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 박영찬이 숨졌습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운전자 박영찬 씨는 불법 좌회전 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은 동 사건관련 현재 춘천경찰서 조사 중인 사건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연중 사고 다발지역인 사고현장 교차로에서 직행버스(진흥여객소속)의 불법과속(경찰조사결과 충돌당시 정상속도 보다 30km넘은 약 시속 90km로 판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위 사건의 진실 규명차원에서도 현장을 목격하신 분들은 춘천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유족, 경찰 조사에 의문
- 내 용 : 지난 2월 26일 오후 1시 10분쯤 칠전동 사거리에서 발생한 직행버스와 승용차 충돌사건과 관련, 사망한 승용차 운전자 박영찬 씨의 유족들은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경찰 조사에 의문을 품고 제보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춘천MBC-TV 저녁7시뉴스 프로그램 말미에 2002년 4월 10일 이전까지 아나운서 육성으로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되, 화면 하단에는 동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흰 자막으로 표시하며 배경화면에 유족들의 사건현장에 설

치한 ‘목격자를 찾습니다’ 플래카드를 반드시 보여준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춘천MBC-TV : 「뉴스」 프로그램 (2002년 4월 8일 19:00)

내 용 : 지난 2월 춘천시 칠전동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속보입니다.

지난 2월 26일 오후 1시 10분쯤 춘천 칠전동 사거리에서 발생한 직행버스와 승용차 충돌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운전자 박영찬 씨의 유족들은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경찰조사에 의문을 갖고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

신청인이 불신임당한 전임 재건축 조합 집행부의 배후이며 총회에서 물의를 일으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2서울중재76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김 수 남

피신청인 : 재건축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2. 4. 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재건축신문 : 『간석주공 임시총회 개최까지』 제하의 기사 (2001년 12월 24일 21면)

내 용 : 조합과 바른재건축추진위원회(위원장=최성호·이하 바재추)는 그 동안 재건

련의 중재하에 용적률 및 지분율문제, 집행부 재구성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 왔다. 9차에 걸친 협의 과정에서 조합과 바재추는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듯 했으나 집행부 재구성 문제에서 지난 11월 조합측이 재건련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듯 했다. 그러나 재건련과 끈질긴 협상 끝에 결국 이번 총회를 성사시키기에 이른 것. (중략)

조합과 바재추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잠정적으로 12월 1일 재건련의 중재하에 총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조합측에서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16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결국 이 날 총회 결과 바재추 진영의 후보자들이 모두 당선됨으로써 그 동안 전임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과 불신이 어느 정도였는지 분명하게 밝혀졌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임 조합 집행부의 '배후'로 알려진 김아무개 씨가 16일 총회에 대한 무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배우자가 조합원인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이날 총회에도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해 회의 진행에 물의를 일으키는 등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신임 집행부는 이 같은 조합 내 불안 요소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며,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투표에 따라 '퇴장'하게 된 구 집행부도 '총회 결과에 따르겠다'는 애초의 합의대로 총회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향후 사업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피신청인은 "현재 알려진 바에 의

하면 전임 조합 집행부의 '배후'로 알려진 김아무개 씨가 16일 총회에 대한 무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배우자가 조합원인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이날 총회에도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해 회의 진행에 물의를 일으키는 등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신청인은 위 조합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의 가족으로서 권리권자의 인감을 첨부, 정상적으로 대리한 것을 왜곡하여 보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명예훼손은 물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 것임이 틀림없으며 이로 인한 인격이 저하되어 사회활동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과 등 응분의 조치가 없을 시 법적인 대응을 불사할 것을 천명하면서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재건축신문이 2001. 12. 24.자 21면 상단에 "간석주공 임시총회 개최까지"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전 조합 집행부의 배후로 알려진 김아무개 씨가 16일 총회에 대하여 무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하였으나 현재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은 임선자 외 1인이 소를 제기하여 진행 중이므로 신청인과 다르므로 반론보도한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2001. 12. 24.자 21면 『간석주공 임시총회 개최까지』 제하의 기사에서 김아무개 씨가 조합원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

석해 진행에 물의를 일으키는 등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자신은 조합원의 직계가족으로서 인감증명원을 첨부시켜 회의참석자격을 부여받아 참석하였고 조합장후보로부터 발의 동의를 받아 제한된 시간 3분 내에 조합장 정견발표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일 뿐이므로 총회에서 물의를 일으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자신은 조합의 배후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김씨는 총회에 대한 무효소송을 준비중이라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재건축신문 21면에 4월 21일까지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조합장포함 바채추진영 대부분 당선...)과 같게 하고 본문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재건축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2년 4월 21일자 2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쓰레기 소각로 건설사업을
불법적으로 추진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2대전중재3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청인 :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소영)

피신청인 : 중도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2. 4. 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중도일보 : 『소각로 배상액 얼마까지? 최고 50억 이상 될 수도』 제하의 기사 (2002년 3월 13일자 14면)

내 용 : 대전시 도시개발공사(사장 이소영)는 12일 '소각로 비리'와 관련, 도개공의 입장을 발표했다.

대전도개공은 이날 한국중공업(두산중공업으로 법인변경)이 대한상사중재원에 103억원의 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 "담당 변호사를 통해 배상책임 범위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토지대금 4억8300만원, 기성공사대금 1600만원, 노무비 및 사업관리경비 4800만원 등 총 5억4900만원만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개공은 또 이날 입장을 통해 "토지대금 4억8300만원은 대물배상이 가능해 실제 배상금액은 1억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전도개공과 한중이 소각로건설사업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한데다 착공지시까지 내리는 등 책임부분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최소 청구액의 절반 이상은 물어줘야 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또한 윤모 씨(업무이사)의 사직서 처리가 지연된 것은 "현행 관계법상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 강제적인 면직 규정이 없고 본인 및 주변 친지 등이 재판진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염려해 잠시 유보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차일피일 미뤄오다 지난 8일자로 사직처리했으며

윤씨의 구속 이후 일체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관의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는 임원(사장)의 결격사유와 관련, “중대한 과오가 있거나…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대전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는 최근 계속되는 중도일보의 보도로 시민의 복리와 편익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으며 직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정상적인 업무추진에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어 더 이상의 왜곡보도로 인한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공정한 중재를 요청하게 되었다.

지난 3월 9일부터 3월 30일까지 모두 34회에 걸친 중도일보의 이른바 ‘소각로 비리’ 관련 보도는 도개공이 흡사 엄청난 탈법과 비리의 온상인 양 시민에게 잘못 전달되어 창립 이후 10년간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해 온 모든 노력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겪고 있다.

도개공은 대전시의 재정과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순수한 의도로 민자유치방안을 제안받아 제반 절차를 준수하면서 쓰레기소각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진행 과정에서 행정상 다소의 오류가 노정되었으나 이는 탈법이나 불법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사항이었으며 이로 인해 이미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처분지시에 따라 시정하였다.

윤모 씨 사건은 검찰이 장기간에 걸쳐 수사를 벌여 기소한 사안으로 현재 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임에도 확정판결이 나지도 않은 상태

에서 도개공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소각로 사업이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개인의 로비에 좌우된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다.

또한 도개공과 두산중공업(구 한국중공업) 사이의 중재와 관련하여서는 지금까지 모두 9차례의 중재가 진행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결을 앞두고 있음에도 두산중공업의 일방적 주장인 ‘103억 배상금’ 부분을 여과 없이 보도에 반영하여 도개공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시민의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듯이 보도하였다.

도개공과 한중과의 협약서에는 “감리단을 통한 과업지시가 내려져야 공사를 진척시킨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음에도 한국중공업은 감리단이나 도개공과는 일체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도 이에 대한 모든 귀책을 도개공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진실을 보도해야 할 사회적 소명을 부여받은 언론기관이 추측과 편향된 시각에 근거한 보도로 당공사는 물론 800여 임직원 및 수천에 달하는 사원가족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3주째 계속되는 보도로 정상적인 업무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게다가 중도일보는 법원과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과 중재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사법기관의 판단을 예단이라도 하는 듯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도개공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보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개공은 시민에게 진실을 알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더 이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도가 계속되어 산적한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되겠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중도일보가 지난 3월 13일자 14면 “소각로 배상액 얼마까지? 최고 50억원 이상 될 수도” 제하의 기사에서 대전도시개발공사가 한중이 소각로 건설사업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한데다 착공지시까지 내리는 등 책임부분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최소 청구액의 절반 이상은 물어줘야 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전도시개발공사는 한국중공업과 소각로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서 상에 민원, 행정절차 등 제반사항을 한중이 해결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따라서 도개공의 착공지시는 이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착공지시였으므로 민원 및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은 한중의 귀책사유라는 입장이다.

또 협약서 및 건설기술공모 지침서 상에 “본 사업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전면책임관리로서 시행되므로”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감리단의 과업수행 지시가 있어야만 공사진척이 가능한데도 한국중공업은 감리단이나 도개공과 아무런 협의 없이 공사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그에 대한 배상을 도개공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도시개발공사의 입장은 이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과정에서 밝혔듯이 도개공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대금 등 5억4천8백만원만 지급할 수 있으며 기부채납된 토지대금은 대물배상이 가능하므로 실배상금은 1억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기사로 인해 시민세금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

합의사항

- 제 목 : 소각로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보가 3월 13일부터 3월 26일 사이에 보도한 소각로 관련 기사에 대해 대전도시개발공사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했다.

대전도시개발공사는 민원 및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은 한중의 귀책사유라는 입장이다. 협약서 및 건설기술공모 지침서상에 ‘본 사업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전면 책임관리로서 시행되므로...’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한중은 감리단이나 도개공과 아무런 협의 없이 공사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그에 대한 변제를 도개공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당시 환경부 공문은 착공지시가 내려진 일반폐기물 소각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도개공과 한중의 협약과기 이전까지는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과 폐수농축증발설비의 수수료를 재원으로 한다는 당초의 협약이 유효했으며, 한중과 협약이 파기된 것은 2000년 12월로 대전시와 도개공은 사업차질을 우려해 다각적인 국비 및 시비조달 계획을 협의하여 48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대전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에 폐기물관련사업이 명문화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하자가 없었으며 폐기물 처리사업은 수익적 측면 이외에 공익적 기능이 특히 강조되는 분야로 공기업인 대전도시개발공사의 사업영역에 포함돼 있다.

한국중공업은 당초 제안에서 369억원의 일반폐기물 소각로는 도개공이 부담하고 나머지 2종의 부대시설비용은 한중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있으나 도개공 실무진의 분석결과 299억원에 3가지 시설을 건설하도록 최종적 협약이 맺어졌고 70억원의 경비를 절감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한국중공업에 유리한 협약체결을 한 것이 아니라 한중에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 70억원의 경비절감에도 불구하고 '특혜', '한중에 유리한 조건' 등의 보도내용은 잘못된 것이며 도움을 준 것은 전혀 없음을 주장한다.

윤해병 씨는 2000년 1월 환경사업체 운영 경력과, 전문건설협회 대전지회장 경력을 감안, 관련절차와 규정에 의해 도개공 업무이사로 임용됐다. 도개공 업무분장을 보면 소각장 업무와 무관하고 소각장 건설에 개입할 수 없었다.

2001년 12월 검찰 구속으로 한국중공업과의 관계가 알려진 것으로 윤씨의 업무는 환경영향평가승인 등 소각로 사업과는 무관함을 밝힌다.

2000년 2월에 실시된 대전시의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는 시 감사관실의 정기감사 일정에 따라 1999년부터 계획된 것이며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감사가 아님을 주장한다.

대전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이다. 수익과 공익의 조화를 이루며 시민복리와 편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공적자금비리 수사는 윤해병 씨가 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윤씨 개인이 추징당할 금액으로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시민세금으로 물어줘야 할 이유가 없다.

한국중공업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없고 단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을 뿐이며 103억원 또한 한국중공업의 일방적 주장으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해명한 바와 같다. 기부채납한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대물변제가 가능해 실변제금액은 1억원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

는 중도일보 2002년 4월 19일자 14면 (사회면) 5단 광고 위 우측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환경부 승인...)과 같은 크기로 하되 본문은 중재대상기사 본문 활자체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도일보 : 『소각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2년 4월 20일자 1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단체가 중도를 위장한 보수세력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2서울중재84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공동대표 김석준 외 8인)

피신청인 : 한겨레21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2. 4. 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겨레21 : 『자유시민연대, 동무 생겼네』 제하의 기사 (2002년 3월 28일자 32면)

내 용 :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 기업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시장이 개방되고,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

해야 하는 상황에서 덩치가 크다고 규제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는 삼성전자·포철도 미국의 제네럴일렉트릭·마이크로소프트 등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전경련이나 재벌기업이 세운 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주장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말없는 다수를 대변하는 중도 시민단체’를 자임하며 지난 3월 12일 창립한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전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대한 검토’ 의견이다. 이영조 사무총장(경희대 교수·정치학)은 “우리 사회는 지나친 평등주의와 집단주의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창의력이 훼손되고 있다”며 “특정 담론에 치우치지 않고 사회 중심에 있는 분들과 함께 중산층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시민단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회의가 지금까지 보여준 언행을 보면 그들이 과연 ‘중도’를 지향하는지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경영이 낳는 폐단을 막기 위해 마련된 출자총액제한완화를 환영하는가 하면, 고교평준화제도는 “능력에 따른 수업을 받을 권리를 차단한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목에서는 보수적 색채가 너무 뚜렷하게 읽힌다. 지난 2000년 11월 창립해 대표적 극우보수단체로 자리 잡은 자유시민연대가 “시민회의가 주장하는 바는 우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말할 정도다.

시민회의가 창립식에 맞춰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www.cubs.or.kr)에 올려놓은 ‘시민회의의 생각’을 보면, 이들 단체간 차이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관련해 시민회의는 “누구든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국방의 의무 등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된 책무를 거부해도 좋다면 공동체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단 말이나”며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싫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병역거부자의 인권이 4천만의 인권보다 중요한가”를 따져물은 자유시민연대의 주장과 정확히 닮아 있다.

지난달 8일 여야 국회의원 27명이 국회에 제출한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두 단체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자유시민연대는 “편집위원회의 구성이나 편집규약의 제정 공표 등에 왜 정부 권력이 간섭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냐”는 문제를 제기했고, 시민회의는 마치 화답하듯 “이는 정치권력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 조정하기 위한 의도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략)

박원석 참여연대 시민권리국장은 “시민회의의 출현은 우리 시민사회의 자연스런 이념적 분화현상이 아니라 시민단체로 위장한 특정 이익집단의 조직적 움직임으로 보인다”며 “각종 개혁정책이 퇴색·후퇴하면서 비판적 시민단체에 대해 재벌 등 보수진영이 대항세력화를 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는 2001. 4. 중립적 지식인 모임을 표방하여 출발한 ‘비전@한국’을 모태로 하여, 개혁과 보수의 어느 한 쪽에 편향되지 않은, 중립적인 지식인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자생적 시민단체이며, 침묵하고 있던 다수 중산층의 합리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시키고, 제반 사회 현상에 대한 균형 잡힌 의견 제시 및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체제를

확고히 다지는 파수꾼이 되는 것을 그 설립목표로 한다.

그러함에도 피신청인은 마치 바른사회를 위한시민회의가 재벌이나 기타 특정 이익집단이 정당한 개혁정책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생적인 시민단체인 것처럼 위장하여 극우적인 주장을 펼치기 위해 급조한 사이비단체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의 보도를 함으로써,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의 중립적인 실체를 오도하고 설립목적에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수많은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사건 보도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제목에서부터 “자유시민연대, 동무생겼네-고교 평준화조차 반대하는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는 중도 위장한 보수?”라고 표현하여 마치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가 자유시민연대와 유사한 극단적인 보수단체인 것처럼 묘사하고, 나아가 실제로는 극단적인 보수단체이면서도 외견상으로만 중도적인 노선을 취하는 단체인 것인 양 ‘위장’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가 겉과 속이 다른 비도덕적인 단체인 양 묘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교평준화 ‘조차’ 반대한다고 표현하여 마치 국민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사안에 관하여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진,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단체인 양 묘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보도는 본문에서도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가 고교평준화제도의 폐지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수적 색채가 너무나 뚜렷이 나타나는 단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고교평준화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과 보수적인 색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위와 같이 보도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의 설립 목적이나 기본적인 노선에 대해 혼동을 초래하게 하였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와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극우적인 보수단체인 자유시민연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가 자유시민연대와 다를 바 없는 극우적인 보수단체인 양 표현하여, 바른사회를 위한시민회의의 정체성에 대해 혼동을 초래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보도는 비록 제3자의 발언을 인용하는 형태로 보도하기는 하였으나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가 우리 시민사회의 자연스런 이념적 분화 현상에 따라 자생적으로 생겨난 시민단체가 아니라 특정 이익집단이 조직적으로 개혁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시민단체인 양 위장하여 결성한 단체로서, 그 실질은 자생적 시민단체가 아닌, 재벌 등 이익집단의 하수인에 불과한 것처럼 표현하여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의 실체에 관하여 구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키게 하고,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나 그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보도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비약이 심한 보도로 이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이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의 실체에 관하여 오해를 할 우려가 크고,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및 그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내용의 보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반론보도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는 중도

적인 노선을 지향하는 자생적 시민단체이다.

내 용 : 한겨레21은 2002. 3. 28.자 32면 기사에서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를 지칭하여 '중도를 위장한 보수세력이다.', '극우보수단체인 자유시민연대와 그 주장에서 차이가 없다.', '시민단체로 위장한 특정 이익집단의 조직적 움직임이다.', '재벌 등 보수진영이 개혁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세력화한 것이다.'라는 요지의 보도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는 2001. 4. 중립적 지식인 모임을 표방하며 출발한 '비전@한국'을 모태로 하여, 개혁과 보수의 어느 한 쪽에 편향되지 않은, 중립적인 지식인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자생적 시민단체이다. 그리고,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는 침묵하고 있던 다수 중산층의 합리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시키고, 제반 사회 현상에 대한 균형 잡힌 의견 제시 및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체제를 확고히 다지는 파수꾼이 되는 것을 그 설립 목표로 한다.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는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폐지', '고교평준화제도의 폐지', '언론에 대해 정치권력이 간섭할 여지가 있는 내용의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반대' 등의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익을 증진하고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며, 능력에 따른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무너져 가는 공교육을 바로잡고, 언론을 정치권력의 영향권에서 독립시켜 권력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고자 하는 중도적인 대다수 국민 및 지식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대변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를 극우단체로 몰아붙이거나 반개혁세력의 대변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

약이자 대다수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또한,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는 균형 잡힌 의견 및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설립 목적에 적극적으로 찬동하여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일반 시민 등을 회원으로 하여 결성된 자생단체이며, 특정 이익집단이나 재벌 등의 관여 하에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한겨레21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반론보도신청인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2. 3. 28.자 32면 『자유시민연대, 동무 생겼네』 제하의 기사에서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이하 시민회의)가 주장하는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폐지, 고교평준화 제도의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반대 등의 내용이 극우보수단체인 자유시민연대가 주장하는 내용과 다를 바 없어 중도를 지향하는 시민단체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회의는 이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익을 증진하고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며, 능력에 따른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교육을 바로잡고, 언론을 권력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고자 하는 등 중도적인 다수 중산층의 합리적인 의견을 대변한 것으로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시민회의를 극우단체로 몰아붙이거나 반개혁세력의 대변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자 대다수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21 2002년 5월 1일자로 배포되는 호의 사람과 사회면 우측하단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반론보도문)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고교 평준화조차...)과 같게 하고 본문활자 크기는 동 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21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2년 5월 9일자 39면)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28일자 401호 사람과 사회 ‘자유시민연대, 동무 생겼네’ 제하의 기사에서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가 주장하는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폐지, 고교평준화 제도의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정기간행물등록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반대 등의 내용이 극우보수단체인 자유시민연대가 주장하는 내용과 다를 바 없어 중도를 지향하는 시민단체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시민회의는 자유로운 기업활동등을 보장함으로써 국익을 증진하고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며, 능력에 따른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교육을 바로잡고, 언론이 권력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고자 하는 등 중도적인 다수 중산층의 합리적인 의견을 대변한 것으로,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시민회의를 극우단체로 몰아붙이거나 반개혁신력의 대변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자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신청인이 업무추진비를 높게 책정하는 등 아파트 관리비를 낭비해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2충북중재4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조규상

청 구 명 : 충청일보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2. 4. 1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충청일보 : 『아파트 관리비 ‘횡령’ 잇따라』 제하의 기사 (2002년 2월 28일자 16면)

내 용 : 충주시내 일부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가 주민들의 관리비를 빼돌리거나 특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등 비리 또는 업무상 과실을 자행하고 있어 과문이 예상되고 있다.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시 문화동 럭키아파트(812가구) 조모 동대표의 경우 지난 1년간 업무추진비를 관리규약상의 제한금액보다 두배 많은 월 40만원으로 책정해놓고 관리비를 물 쓰듯 낭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충주경찰서가 지난해 12월 24일 구속한 충주시 용산동 남산주공아파트 정모 관리소장도 출금전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의 관리비 7700만원 가량을 횡령하는 등 관리소장과 동대표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중략)

이처럼 충주시내 곳곳에서 관리비 횡령 등

의 비리와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의 업무소홀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공동주택관리령과 관리규약은 세부규정까지 포괄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충주시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입주민들이 꼼꼼히 따져보지 않을 경우 어렵게 납부한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자치단체가 아파트 위탁관리 및 관리비 운용실태를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충주력키문화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으로서 충청일보 2월 28일자 16면 “아파트 관리비 ‘횡령’ 잇따라”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1년간 업무추진비를 관리규약상의 제한금액보다 두 배 많은 40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관리비를 물쓰듯 낭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즉, 업무추진비는 당아파트의 관리규약 제19조 제4항(입주자대표회의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지출 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지출되어야 하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1994. 6. 20.)부터 업무추진비 동결,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회의개최 다수 및 업무량 과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타단지 견학 및 교육참가 빈번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어 2001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심의회의에서 업무추진비를 월 20만원 인상하기로 의결한 후 투명한 관리업무를 실현하고자 단지내 게시판 공고 및 방송 등을 통하여 입주자에게 공시하고 집

행을 하던 중 2001년도 업무추진비 결산시에 잔여 금액이 발생하여 사회적 여건 및 주민들의 관리비 절감을 위해 집행액 중 월 20만원의 인상분 금액 240만원을 2001년 12월 19일에 기반납조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물쓰듯 낭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신청인은 이 보도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고 있어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충청일보가 지난 2월 28일자 16면에 “아파트 관리비 횡령 잇따라”제하의 기사에서 충주시 문화동 럭키아파트(812가구) 조모 동대표의 경우 지난 1년간 업무추진비를 관리규약상의 제한 금액보다 두 배 많은 월 40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관리비를 물쓰듯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조모 동대표는 이와 관련 관리비를 물쓰듯 낭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2001년도 업무추진비 결산시(내부회계감사)에 잔여 금액이 발생되어 월 20만원의 인상분 금액인 240만원을 입주민의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2001년 12월 19일에 기반납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물쓰듯 낭비했다는 사실은 왜곡된 내용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자산가치 증대는 물론 관리비 절감을 위해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관리 운영으로 입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충청일보가 지난 2월 28일자 16면에 “아파트 관리비 횡령 잇따라” 제하의 기사

에 대하여.

조모 동대표는 2001년도 업무추진비 결산시 (내부회계감사)에 잔여 금액이 발생되어 월 20만원의 인상분 금액인 240만원을 입주민의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2001년 12월 19일에 기 반납하였으므로 관리비를 물쓰듯 낭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충청일보 2002. 4. 19. 자 충주지역면 우측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업무추진비 과다 책정 등...)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제 목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2년 4월 19일자 1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코스닥 기업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다 (청청보도)

사건번호 : 2002/서울중재89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이명박

피신청인 : 시사저널

중재부 : 서울제3중재부

접수일 : 2002. 4. 11.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시사저널 : 『옵셔널벤처스 뒤에 이명박이 있

었다?』 제하의 기사 (2002년 4월 11일자 62~64면)

내 용 : (전략)

옵셔널벤처스 사기극은 코스닥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엽기적이다. 코스닥 공시를 여러 차례 거부하더니 급기야 경영진이 야반도주해 미국으로 사라졌다. 거기에 주조작, 유령 회사 투자, 외화 유출 등 각종 비리가 총망라되어 있다. 여기에 빠지지 않는 메뉴가 하나 더 등장했다. 유력 정치인이

다. 경영진이 야반도주하기 전까지 옵셔널벤처스는 서울 삼성동 코스모타워 8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자리는 전 한나라당 의원이명박 씨가 운영하던 이뱅크증권이 있었던 자리다. 이뱅크증권이 사업을 청산하고 사무실을 비운 것이 지난해 6월 말이다. 옵셔널벤처스가 코스모타워 8층에 본점을 냈다고 등록한 것이 지난해 4월 27일이었다. 단순히 자리만 겹치는 것이 아니다. 이뱅크증권 출입자 명단과 옵셔널벤처스 직원 명단도 겹친다.

야반도주 직전 옵셔널벤처스 직원 14명과 이뱅크증권 출입카드 명단 20명 중 겹치는 사람이 9명이다. 옵셔널벤처스 대표이사였던 김경준 씨는 이뱅크증권 이사였다. 그는 옵셔널벤처스 사기극의 핵심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이뱅크증권 직원이 옵셔널벤처스 직원이 되면서 급여도 변하지 않았고 직급도 변하지 않았다. 이런 정황 때문에 소액 주주들은 옵셔널벤처스를 이뱅크증권의 후신으로 보고 있다.

이뱅크증권은 이명박 씨가 2000년에 세운 벤처 회사다. 그 해 10월 금감원이 증권업 예비 허가를 내자 각 언론이 앞다투어 그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다. 당시 이명박

씨는 “2001년 초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것이다. 첫해부터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이뱅크증권은 1년이 못되어 문을 닫았다. 그 자리를 읍서널벤처스가 이어받은 것이다.

출입자 명단이 겹치는 것에 대해 이명박 씨는 “이뱅크증권 출입카드를 가진 직원들은 대부분 BBK 직원들이다”라고 설명한다. 코스모타워 8층의 한 칸에는 실제 BBK라는 투자자문회사가 있었다. 이뱅크증권은 코스모타워층과 8층 전체를 임대계약했는데, 그 중 일부는 BBK에게 떼어주었다는 것이다.

BBK라는 회사 역시 이명박 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BBK는 김경준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투자 회사이나 실제로는 이명박 씨가 회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회사 카달로그에는 ‘회장 이명박’이라고 나와 있었다. 2001년 10월 반도채 기업인 사사가 이명박 씨와 BBK를 함께 고소한 뒤로 둘간의 특별한 관계가 세간에 알려졌다. 고소 이유는 BBK가 투자금 3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인데, 사사는 이명박 씨를 함께 고소한 이유를 ‘그가 BBK의 회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략)

실사 이명박 씨가 김경준 씨에게 농락당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있다. 이름을 팔도록 방치해 소액 투자자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씨에게 답변을 들으려 했으나 서울시장 선거 준비로 바빠 인터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대변인으로부터 들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시사저널 2002년 4월

11일자 62면 “읍서널벤처스 뒤에 이명박이 있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를 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몇가지 정황을 들어 최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주)읍서널벤처스의 배후에 신청인이 있다는 의혹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신청인은 이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어 피신청인의 잘못된 보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이명박이 김경준과 한 때 동업관계에 있었으니 이명박도 (주)읍서널벤처스 사건의 배후인물이다.”라는 기사는 신청인이 김경준과 엘케이이뱅크나 이비케이증권중개회사를 같이 하였으니 신청인도 곧 김경준이 주도한 (주)읍서널벤처스 사건의 배후인물이라고 추단한 것은 상식 이하의 논리적 비약이요, 잘못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신청인은 2001년 4월 초 김경준과의 모든 사업을 청산하기로 합의하고 결별하였으며 그 후 김경준과 일체의 접촉이 없었다. 따라서 신청인은 (주)읍서널벤처스의 인수과정이나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

“(주)읍서널벤처스가 이비케이증권중개회사의 사무실을 승계하였다”라는 보도도 (주)읍서널벤처스가 이비케이증권중개회사의 사무실에 입주한 것은 승계가 아니고 (주)읍서널벤처스가 임차인으로서 건물주인 담배인삼공사와 체결한 별도의 독립된 계약에 의거한 것이다.

증권업 허가를 받으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예비인가와 본인가라는 두 단계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비케이증권중개

회사의 경우 2000년 10월 13일 예비인가를 받은 다음 본인가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BBK투자자문회사의 인가가 취소됨으로 말미암아 사업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2001년 4월 6일 본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하였다. 따라서 이비케이증권중개회사 이름으로 이루어진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약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시사저널은 김경준이 이비케이증권중개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주)옵셔널벤처스도 관계한 것을 들어 이비케이증권중개회사가 (주)옵셔널벤처스에게 사무실을 인계(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옵셔널벤처스는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자기들의 명의로 건물주와 계약하고 입주한 것이고, 이비케이증권중개회사 입장에서 임차시설비의 보상 및 사무실 원상복구비 절약 등 경제적 판단에서 (주)옵셔널벤처스의 입주 희망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사실이 그럴진대 (주)옵셔널벤처스가 이비케이증권중개회사가 사용하던 사무실에 입주하였다 해서 신청인이 (주)옵셔널벤처스의 배후라고 보도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또한 “이비케이증권중개회사와 (주)옵셔널벤처스의 직원이 중첩되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 이비케이증권중개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본인가를 얻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하여 중도에 본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하고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또한 이비케이증권중개회사는 비용절감을 위하여 관계회사의 직원을 차출하여 설립 준비작업을 했다. 따라서 이비케이증권중개회사 자체 직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 2002년 4월 11일자(제650호) 62면에 게재된 “옵셔널벤처스 뒤에 이명박이 있었다?”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하여 최근 주가 조작 및 회사자금의 악의적 유용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주)옵셔널벤처스의 배후에 이명박 씨가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명박 씨는 문제의 옵셔널벤처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씨는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 종합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김경준과 함께 2000년 2월 18일과 2001년 2월 2일 엘케이뱅크와 이비케이증권중개회사를 각각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이비케이증권중개회사의 수익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투자자문기능이 필요하였기에 김경준에 의해 1999년 4월 27일 설립 운영되어 오던 BBK투자자문회사와 업무를 제휴하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 3월 초 BBK투자자문회사가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은 결과 영업허가 취소 및 대표이사 김경준에 대한 중징계(대표이사 해직권유)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돌출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비케이증권중개회사가 계획대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사업계획 수정과 주요 주주의 재구성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이명박 씨와 김경준이 합작으로 추진코자 하던 회사에 대한 시장의 신인도가 크게 손상되어 당초 계획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명박 씨는 2001년 4월초 이비케이증권중개회사의 증권업 허가(본인가) 신청을

자진철회함은 물론 함께 하려던 모든 사업을 청산하기로 김경준과 합의하고 결별하였으며, 그 후 김경준과의 일체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비케이증권중개회사가 사용해 오던 사무실(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2 소재)에 옵셔널벤처스가 입주한 것은 같은 회사인데 이름만 바꾸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임차시설에 관련된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별도의 독립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비케이증권중개회사 명의로 발급된 출입카드를 일부 옵셔널벤처스 직원이 사용함으로써 일어난 혼선도 담당직원의 관리 소홀로 말미암은 오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명박 씨는 (주)옵셔널벤처스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지가 그릇된 취재로 마치 이명박 씨가 옵셔널벤처스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함으로써 이명박 씨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본사는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바로잡고 아울러 이명박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립니다.
- 내 용 :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이명박 씨는 본지 제650호(2002. 4. 11. 발행) '옵셔널벤처스 뒤에 이명박이 있었다?' 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시사저널은 위 기사상의 이른바 '스사'가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어 이명박 후보를 비롯한 피고소인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던 점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이명박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점만 강조되었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지가 검찰 당국을 상대로 취재한 바 검찰은 본지의 위 기사상 '스사'가 이명박 씨 등 3명에 대하여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고소인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어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미 2002. 1. 29. 피의자들을 모두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그 처분에 대하여 위 '스사'가 검찰 항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사건은 본지의 위 보도가 있기 전에 이미 무혐의로 확정되어 이명박 후보는 위 고소 사건과 무관함이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시사저널 2002년 4월 30일자 독자한마당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한다.

· 2002년 5월 중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내용의 보도를 1회 게재한다.

· 위의 항을 피신청인이 정확히 이행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본 건 중재대상보도와 관련, 상대로 더 이상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시사저널 :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2년 5월 9일자 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계약회사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2/서울중재90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1. 사단법인 한국제약협회

(회장 김 정 수)

2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회장 신 상 진)

피신청인 : 대한매일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2. 4. 1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대한매일 : 『약값 10~25%는 ‘의사용돈’』
제하의 기사 (2002년 3월 2일자
3면)

내 용 : 1일 제약사 영업사원과 의약품
도매상인들에 따르면 리베이트는 품목에 따라
약품공급가의 10~15%, 일부 카피전문 제약
사들의 경우 20~25%까지 지급하는 곳이 있
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초기 의사들은 오리지널 약품 처
방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카피
약 처방이 늘고 있다.

이를 비집고 제약사들의 치열한 영업전술이
펼쳐지고 있다.

S제약사 영업소장 S(42)씨는 병원담당 영
업사원으로 입사해 올해 16년 째 근무하고 있
는 베테랑. S씨는 “의약분업 실시와 더불어
병·의원 의사들에게 약을 써주는 대가로 건
네는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하다.”면서 “달라
진 것이 있다면 현금을 건네는 방식에서 백화
점·농수산물상품권 등으로 바뀐 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들의 학술대회 참가에 따른
지원과 해외 나들이 때 항공권, 체재비 등
을 건네는 것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며 “제약사들은 제품을 써주는 데 대한 성
의표시로 이를 통과의례로 생각한다.”고 밝
혔다.

한 제약사 경영책임자도 “우리 사회에서 대
가없이 영업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느냐.”
고 반문하면서 “리베이트는 불법이라기보다
관례상 제품사용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건네
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한국제약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대
한매일 3월 2일자 3면 『약값 10~25%는 의사
용돈』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약값의 10~25%
는 의사용돈”이라고 단정하였으나 이는 사실
을 크게 왜곡한 것이다. 즉,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처방약과 그렇지 않은 비처방
약(일반의약품)으로 나뉘는데 비급여 일반의
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 가격에 의사 용돈
몫이 들어 있는 것으로 표현했다. 또한 모든
의료인과 전체 제약업체가 뒷돈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했다.

이 보도로 정도경영을 하고 있는 다수의 제
약기업과 양심적인 의료인이 지울 수 없는 도
덕적 상처를 받는 등 명예를 실추했다. 또한
의약품 가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막대한 산업적 손실을 입고 있어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가 지난 3월 2일자 3면에 “약값 10~
25%는 의사용돈” 제하의 기사에서 의약품 리
베이트가 여전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
습니다.

그러나 “약값 10~25%는 의사용돈”이라는

표현으로 전체 의약계가 불공정거래를 하고 모든 의약품 가격이 부당하게 책정된 것으로 독자들의 오해를 살 수 있었던 점에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의약품에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 일반의약품이 다수 있고, 이러한 비급여 일반의약품은 주로 약국과 거래되는 것으로 의사와는 관계없는 만큼 보험약 리베이트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비록 처방약이라 하더라도 의약품 가격에 의사용돈 몫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의약품 거래에서 뒷돈 거래가 만연한 것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정도 경영을 하고 있는 다수의 제약기업과 양심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료인에게 사과의 뜻을 표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3월 2일자 3면 「약값 10~25%는 '의사 용돈」 기사와 관련,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신상진)는 “일부 제약사들과 병·의원 의사들간의 리베이트 사례를 근거로 전체 의약계에 뒷돈 거래가 만연되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한 것이고, 특히 비급여 일반의약품은 보험약 리베이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대다수의 제약사와 의사들은 양심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대한매일’ 4월 25일 이전에 3면 상자기사로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대한매일 : 『제약·의사협회 반론보도문』 제
하의 기사 (2002년 4월 24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경찰서장인 신청인이 최규선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최씨 비리를 폭로한 자를 무리하게 수사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2서울중재95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이 철 규
피신청인 : 세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2. 4. 1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세계일보 : 『전 비서 ‘보복수사’ 종용 의혹』
제하의 기사 (2002년 4월 13일
자 23면)

내 용 : 최규선(미래도시환경 대표) 씨가 분당경찰서 A서장에게서 1억원을 받고 분당으로 부임시키는 등 경찰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달 25일 최씨가 비서출신인 천호영 씨의 동생 호림 씨를 별다른 연고가 없는 분당으로 유인, 경찰 수사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천씨 형제는 분당경찰서의 잇따른 영장신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모두 무혐의로 풀려난 것으로 밝혀져 최씨가 A서장을 등에 업고 자신의 비리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천씨 형제를 무리하게 처벌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략)

특히 최씨가 신고 이후 “공갈 협박을 당했다”는 최씨의 진술과 최씨가 제시한 녹취록만으로 호림씨를 긴급체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도 통상적인 경찰수사 절차에 비춰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신고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천호영 씨를 공갈협박의 주범으로 단정. 호영 씨가 경실련 홈페이지에 최규선 씨의 비리내용을 올린 지난 달 28일 곧바로 천씨를 지명수배한 것은 최씨가 분당서에 모종의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실제로 최씨는 사건을 맡은 분당서 강력1반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천씨 형제의 처벌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경찰청은 A서장이 1998년 대통령직 인수위에 경정급으로 파견됐을 때 최씨를 만나 알고 지내왔다는 사실에 주목. 감찰반을 동원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피신청인은 최근 국민의 지탄 대상으로 거론되는 최규선계이트와 관련하여 2002. 4. 13.자 사회면 기사에서 “분당경찰서장 승진개입설 최규선 씨”라는 제목하에 신청인이 최규선에게 인사청탁을 하여 분당경찰서장으로 옮겼고 신청인이 최씨의 부탁으로 천호영 형제를 무리한 수사를 하여 영장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것처럼 기사화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최규선과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없어 인사청탁을 할 처지도 아니며 분당경찰서에는 2002. 3. 25. 19:28경 112 강도 신고가 들어와 파출소에서 출동하였고 관련자가 10여 명으로 많아서 인근에서 수사공조

중이던 형사기동대의 협조를 받아 관련자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였으며, 엄정수사결과 천호영의 동생 천호림을 공갈로 영장신청하였으나 검찰에서 주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구속되었으며 주범인 천호영을 체포하여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자백하였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었는 바 이 과정에서 최규선이나 누구로부터도 보복수사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게재하였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허위보도로 인하여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 정정을 요구하고자 중재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가 지난 4. 13.자 사회면에 “분당경찰서장 승진개입설 최규선 씨 전 비서 보복수사 종용 의혹”이라는 제목하에 “최규선이 분당경찰서장에게서 1억원을 받고 분당으로 무임시키는 등 경찰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달 25. 최씨가 천호영 씨의 동생 호림씨를 별다른 연고가 없는 분당으로 유인. 경찰수사를 종용하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천씨 형제는 분당경찰서의 잇따른 영장신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모두 무혐으로 풀려난 것으로 밝혀져 최씨가 분당경찰서장을 등에 업고 자신의 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천씨 형제를 무리하게 처벌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이철규 씨는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은 최규선과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없어 인사청탁을 할 처지도 아니며 분당경찰서에는 2002. 3. 25. 19:28경 112 강도 신고가 들어와 파출소에서 출동하였고 관련자가 10여 명으로 많아서 인근에서 수사공조

조 중이던 형사기동대의 협조를 받아 관련자를 경찰서로 임의 동행하였으며, 엄정수사결과 천호영의 동생 천호림을 공갈로 영장신청하였으나 검찰에서 주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구속 지휘가 되었으며 주범인 천호영을 체포하여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자백하였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었는 바 이 과정에서 최규선이나 누구로부터도 보복수사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철규 씨는 최규선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정정보도신청인 이 철 규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4월 13일자 사회면 『분당경찰서장 승진 개입설 최규선 씨』 제하의 기사 중 “분당경찰서장이 최규선에게 1억원을 주고 인사청탁” 취지의 내용과 “최규선이 천씨의 폭로와 관련해 분당경찰서에 보복수사를 종용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세계일보 5월 3일자 사회 1면에 게재하되, 제목(정정보도문)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소재목(천씨 동생 분당유인 협박 혐의 체포)과 같게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세계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2년 5월 4일자 2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간통사건 고소인인 신청인이 사기전과가 있으며 신분을 사칭했다는 피고소인의 일방적 진술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2서울중재99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김 용 남

피신청인 : 일간스포츠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2. 4. 2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일간스포츠 : (1) 『정한용 “못참아” 간통 누명 씌운 부부는 위장결혼 낙태수술도 거짓...맞고소하겠다』 제하의 표제 기사 (2002년 4월 19일자 1면)

(2) 『정한용 “포옹밖에 안했다”』 제하의 기사 (2002년 4월 19일자 36면)

내 용 : “임신 중절 수술까지 했다고 주장하는데 더 이상 참기 힘들었다. 이제 진실을 입증하겠다.”

작년 8월 9일 간통 혐의로 피소된 탤런트 출신 전 국회의원 정한용 씨(49)가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 자신을 고소한 김모 씨(43·미국 거주)와 당시 그의 아내였던 장모 씨(43), 그리고 한국 대리인 강모 씨(40) 등 세 명을 19일 서울지검에 공갈 및 사기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들에게 김씨와의 전화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정씨는 “그간 대응을

자제하자 마지 혐의 사실을 시인하는 것처럼 보여 맞고소를 결심했다. 임신 중절 수술까지 했다는 그 쪽의 주장에 맞설 내용을 확보한 상태"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정씨는 임신 중절 수술 진단서 발급처로 알려진 샌프란시스코 소재 모 병원을 알아본 결과 외항 선원 예방접종 전문 병원이었다며 울먹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씨의 신원은 파악됐나?

▲금융인으로 자신을 소개했지만 사기 전과가 있는 기소중지자였다. 주위 사람들에게 정몽준 회장의 재무담당 이사라고까지 사칭했다. 영주권 때문에 위장 결혼한 그들 부부는 현재 이혼한 상태다.

-그간 협박과 회유는 없었나?

▲처음에는 200만달러 (한화 26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지난 2월 30만달러(2억 6,000만원)로라도 합의할 용의가 있으니 서두르자고 종용했다. "난 결백하기 때문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탤런트 출신 전직 국회의원 정한용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간통혐의로 고소하였다. 피신청인은 2002년 4월 19일자 36면에 "장씨 남편 사기전과"란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인으로 자신을 소개했지만 사기전과가 있는 기소중지자였다. 주위 사람들에게 정몽준 회장의 재무담당 이사라고까지 사칭했다. 영주권 때문에 위장결혼 한 그들 부부는 현재 이혼한 상태."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즉 신청인은 1998년 무역업을 하다 IMF 여파로 환율급등과 유동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약 200억 상당의 부도가 발생했다. 하지만 당

시 운영 기업의 전 재산과 모든 사재를 털어서 부채를 지급변제하였으며 이때 가정까지 무너지고 이혼을 하였으며 힘들게 생활을 할 때 선배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하여 도미하였다.

그런데 1998년 부도가 난 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모 채권자가 불만을 가지고 서울지검에 사기로 고소하였으며 그때 서울지검에서는 본인과 연락이 되지 못하여(미국에 거주하였기에) 기소중지를 내렸으며 그후 본인이 소식을 듣고 한국에 와서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중대한 사기행위를 하고 도주한 뉘앙스를 풍기는 형식으로 보도하였다. 정한용이 사칭한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으로 그의 말만 믿고 보도한 것은 명백히 한 사람의 명예와 인권을 파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정신적인 충격과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아야 하는 이중고통을 겪고 있어,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 4월 19일자 36면 "정한용 '포옹밖에 안했다' - 장씨 남편 사기전과 ... 결백입증 맞고소"제하의 기사에서 전 국회의원 정한용 씨를 간통혐의로 고소한 김모 씨가 사기전과가 있는 기소중지자였으며, 김씨가 자신을 정몽준 회장의 재무담당 이사라고 사칭하고 다녔고, 김씨 부부가 영주권 때문에 위장결혼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김씨가 사기전과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김씨가 정몽준 회장의 재무담당 이사를 사칭한 적이 없고, 김씨 부부가 위장결혼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4월 19일자 제36면 “정한용 ‘포옹밖에 안했다’ - 장씨 남편 사기전과 ... 결백입증 맞고소”제하의 기사에서 전 국회의원 정한용 씨를 간통혐의로 고소한 김모 씨가 사기전과가 있는 기소중지자였으며, 김씨가 자신을 정몽준 회장의 재무담당 이사라고 사칭하고 다녔고, 김씨 부부가 영주권 때문에 위장결혼했다는 정한용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모 씨는 사기전과가 없으며 김씨가 정몽준 회장의 재무담당 이사를 사칭한 적이 없고, 김씨 부부가 위장결혼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스포츠 2002년 5월 6일까지 36면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정정보도문)활자크기는 중재대상기사 부제목(장씨 남편 사기전과...)과 같게 하고, 본문활자 크기는 중

재대상기사의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은 본 건 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기자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을 취하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일간스포츠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2년 5월 4일자 36면)

내 용 : 본지 4월 19일자 36면 ‘정한용 “포옹밖에 안했다” - 장씨 남편 사기전과 ... 결백입증 맞고소’제하의 기사에서 전 국회의원 정한용 씨를 간통혐의로 고소한 김모 씨가 사기전과가 있는 기소중지자였으며 자신을 정몽준 회장의 재무담당 이사라고 사칭하고 다녔고 김씨 부부가 영주권 때문에 위장결혼했다는 정한용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사기전과가 없으며 정몽준 회장의 재무담당 이사를 사칭한 적이 없고 김씨 부부가 위장결혼한 사실도 없다고 밝혀왔기에 바로잡습니다. □

판결 1

방송사 사정으로 통상의 방영시간과 달리 반론보도문이
방송되었더라도 판결이 정한 방송순서에 따라
방송하였다면 이는 판결주문의 적법한 이행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12.자 판결(2001다81450)

사실개요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002년 3월 12일 만민중앙교회가 문화방송 PD수첩의 이단과문 보도와 관련, “반론보도문을 제때 방송하지 않았다”며 방송사측을 상대로 낸 집행문 부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방송사에게 반론보도를 명한 경우에 방송사가 판결에 정하여진 방송시간에 방송순서에 따라 정하여진 방송보도문을 방송하였다면, 그 반론보도의 내용이 어떠한 사정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하였거나 왜곡되어 전달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송보도는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원심에서는 반론보도청구소송의 판결 주문에서 방송시간을 정한 것은 통상의 방송개시시각을 표시한 데 불과하며, 뉴스의 제목 방송 후 광고방송을 하기에 앞서 반론보도를 방송하였더라도 ‘뉴스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순서

로’ 방송할 것을 명한 판결의 주문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반론보도 당시 사용한 화면이 반론보도 방송이 허위라는 것을 나타내거나 이를 암시하여 반론내용이 충실하게 전달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적법한 이행이며, 반론보도를 하는 방송사가 반론보도 경위나 반론보도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교회의 신도들은 1999년 5월 11일 23시경 문화방송 <PD수첩>에서 “이단 과문, 이재록 목사-목자님 우리 목자님” 제하의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문화방송 사옥에 침입하여 이 프로그램의 방영을 중단시킨 사실이 있는데 이와 관련 문화방송사측은 각종 프로그램에서 20여 회에 걸쳐 원고 교회와 원고 이재록 및 프로그램의 방영 중단과 관련한 보도를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반론보도심판청구를 하여 “판결을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에 21:00경에 방송하는 MBC뉴스데스크 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그 다음 날 21:00경 방송하는 MBC뉴스데스크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1회씩”, “위 뉴

스의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순서로 방송하
라”는 인용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방송사는 축구시합의 생중계 방송을
하였던 관계로 반론보도문을 방송한 첫날의 9
시뉴스를 정규시간이 아닌 22:43경부터. 다음날
에는 편성관계로 20:51경부터 반론보도문을 각
방송하면서 배경화면으로 원고 교회의 예배전
경이나 원고 이재록의 기도 장면 이외에 원고
교회 신도들이 피고의 사옥에 난입한 당시의
사진을 사용하였고 반론보도문 방송 직후에 반
론보도를 방송하게 된 사실 및 원고들을 비난
하는 취지 등이 담긴 보도를 방송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반론보도문이 방송되는 취지
를 몰각시켜 원고들의 반론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이
원고들의 명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결
국 반론보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
로 항소심 판결에서 명한 배상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고 따라서 금전배상에 관한 채무 명의
에 기하여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
하여 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 결 문

사 건 : 2001다81450 집행문부여
원고, 상고인 : 1.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서울 구로구 구로동 851
대표자 당회장 이재록
2. 이재록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승준, 신성철,
김오수, 이해수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김중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류홍섭, 김성규,
정대화, 한상혁, 김태수, 박경홍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1. 11. 22. 선고
2001나21023 판결
주 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1. 원심은, 원고 1 예수교대한
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는 종교활동을 영
위하는 단체이고, 원고 2 이재록은 위 교회의
대표자인 목사인데, 원고 교회의 신도들이
1999. 5. 11. 23:00경 피고의 방송프로그램인
'PD수첩'에서 '이단파문, 이재록 목사! - 목
자님 우리 목자님!' 제하의 프로그램이 방영
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의 사옥에 침
입하여 위 프로그램의 방영을 중단시킨 사건
을, 피고가 기사화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5.
24.까지 사이에 피고의 TV 및 라디오의 뉴스
등 각종 프로그램에서 20여 회에 걸쳐 보도를
한 사실, 이에 원고들이 1999. 6.경 피고를 상
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99카합1694,
1754,1755(병합)호로 반론보도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위 법원은 1999. 10. 14. '1. 피청
구인(피고)은 판시 각 방송시간과 프로그램에
서 판시 각 순서 및 방법에 따라 판시 각 내
용의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

2. 만일 피청구인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청구인들(원고들)에게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각 1회 방송분 반
론보도문에 대하여 1일 500만원의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그 판결이 1999. 10. 23.경 피고에게 송
달된 사실, 그 후 피고는 정해진 기간 내인

1999. 10. 30.까지 사이에 위 판결에 따른 원심 판결의 별지(이하 같다) 제1목록 기재의 각 반론보도문을 방송하였으나, 다만 첫째, ① 위 판결을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에 21:00경 방송하는 MBC 뉴스데스크 TV 프로그램 및 그 다음날 21:00경 방송하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1회씩 각 뉴스의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순서로 방송하도록 되어 있는 제1목록 라.항 기재의 반론보도문을 방송함에 있어서, 피고의 'MBC 결의 항소심 판결이 정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첫째, 위 판결에서 위 'MBC 뉴스데스크' 및 '화제집중 6시'의 방송시간을 정한 것은 당해 프로그램을 특정하기 위하여 통상의 방송개시시각을 표시한 데 불과하므로 당해 프로그램이 방송사의 사정 등으로 통상의 방영시간과 달리 방송될 경우에 당해 프로그램 내에서 위 판결이 정한 방송순서에 따라 방송하였다면 이는 위 1심판결에서 명한 반론보도방송의 적법한 이행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뉴스의 제목방송 후 광고방송을 하기에 앞서 위 각 반론보도를 방송하였더라도 '뉴스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순서로' 방송할 것을 명한 위 판결의 주문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둘째, 피고가 반론보도 당시 사용한 배경화면의 내용이 피해자의 반론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나타내거나 이를 암시하여 피해자의 반론내용이 충실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는 반론보도의 적법한 이행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위 판결에서 명한 반론보도의 내용이 원고측 신도들의 피고 사옥 난입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러한 영상이 위 각 반론보도 방송이 허위임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 피고의 반론보도의 이행이 부적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셋째,

반론보도를 하는 방송사로서는 반론보도의 방송효과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청자들에게 반론보도제도에 대한 설명이나 반론보도의 경위에 대한 보도 및 반론보도 제도 자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볼 것인데 반론보도방송 후에 한 제2목록 기재 각 보도의 그 내용에 비추어 위 판결에서 명한 반론보도의 방송효과를 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3. 법원이 방송사에게 반론보도를 명한 경우에 방송사가 판결에 정하여진 방송시간에 방송순서에 따라 정하여진 방송보도문을 방송하였다면, 그 반론보도의 내용이 어떠한 사정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하였거나 왜곡되어 전달되었다고 불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송보도는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서 실시한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모두 수긍되고 특별히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 때문에 반론보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하였거나 왜곡되어 전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반론보도청구권의 내용 또는 반론보도의 적법한 이행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3. 12.

재판장 대법관 이 용 우

대법관 서 성

대법관 배 기 원

주심 대법관 박재윤 □

판결 2

원고 언론사에 대한 비판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나 언론사간 건전한 상호비판의
순기능적 측면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 책임으로 손해배상보다는
정정보도만을 명함이 상당하다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2002. 4. 10.자 판결)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안영를 부장판사)는 2002년 4월 10일 동아일보사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화방송사가 “언론사인 원고에 대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부주의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그에 근거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의혹제기를 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원고는 언제라도 자신이 발간하는 신문 등을 통하여 올바른 사실을 알리고, 피고의 잘못을 지적하여 해명을 요구하면서 피고를 비판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은 앞서 본 언론사간 건전한 상호비판에 따른 여러 순기능을 산출해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으로는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명하기보다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써 정정보도만을 명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언론사간 상호비평에 대해 “언론사간 건전한 상호 비판은 언론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언론사를 감

시, 비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언론사는 “자신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혹 제기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광범위한 정보 획득 및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가 한 의혹제기는 시청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의혹제기에 따른 조사, 확인의무도 더 높아야 할 것임에도 금융관계자의 의혹제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에 동조하여 위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의혹제기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1년 1월경 방송광고시장의 개방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 상호간 견해의 대립과 언론사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전개되던 중 동아일보가 이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사를 게재하자, 피고는 같은 날 뉴스데스크에서 ‘동아일보 판죽걸기’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신문광고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에서 그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취지의 비판보도를 하였다. 이어서 동아일보가 언론사라는 힘을

등에 업고 일반 기업들과는 다르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싼 이자에 큰돈을 빌려서 지난 96년 한통프리텔 주식 174만주를 44억원에 사들여 3년만에 1,000억원대로 불리는 등 재테크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3억원의 위자료와 정정보도문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1가합18051 손해배상(기) 등

원 고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재호, 김학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훈

피 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김중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정영일, 유태현, 이재형,

김봉학, 이은기

변론종결 : 2002. 3. 20.

주 문 :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전국에 방송되는 MBC 텔레비전의 저녁 9시 정각부터 진행되는 뉴스프로그램인 'MBC 뉴스데스크'의 진행 중에, 화면상단에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동아일보사 주식투자 관련 정정보도'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밑에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작성한 [별지 1] 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천천히 표시하면서 뉴스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2. 만약 피고가 위 1.항의 기간 안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1.항의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

까지 1일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는 이 판결 확정후 최초로 전국에 방송되는 엠비씨 텔레비전(MBC-TV)이 매일 밤 방영하는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앵커의 오프닝 멘트 직후, 9시정각)에서 화면상단에 "동아일보 비방보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글자 크기는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밑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도록 천천히 표시하면서 (글자 크기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진행자로 하여금 원프로그램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나. 피고가 위 가.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금 50,000,000원으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 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12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일간지 '동아일보'를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MBC 뉴스데스크(이하 뉴스데스크라 한다)'라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은 MBC TV에서 매일 21:00경 방송되고, 피고의 뉴스 프로그램 중 가장 영향력이 크고 시청률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등

을 방송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한통프리텔 주식의 매입 경위 등

(1) 원고는 1996.경 PCS 사업자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한통프리텔 주식 50만주(전체 지분율 0.57%, 취득가액 4,478,840,000원)를 취득한 이후 유상증자를 받아 79,380주를 더 취득하였다(1999. 12. 31.기준 보유주식은 579,380주이고, 시가는 101,721,746,000원이다). 원고의 제75기(2000. 1. 1. ~ 2000. 12. 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을 제1호증의 2)에 따르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한통프리텔 주식은 모두 615,380주이다(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동아닷컴이 매수한 36,000주를 합산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당시 다른 대부분의 언론사들도 PCS 사업에 참여하여 출자를 하였는데, 피고는 한솔 PCS 주식(지분율 1.52%, 취득원가 6,670,000,000원)을 취득하였고, 하나로통신 주식(지분율 0.09%, 취득원가 1,230,000,000원) 등 다른 회사 주식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갑 제5호증).

(2) 한통프리텔 주식은 1999.말 주당 약 28만원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2001. 1. 11.경에는 주당 약 40,000원 정도로 하락하였다.

(3) 원고의 1999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당기순이익에서 유가증권 처분이익 및 평가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1.6%이다(유가증권 처분손실과 평가손실을 제외한 순처분이익과 평가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4.2%이다).

다. 이 사건 보도의 내용

(1) 방송광고시장의 개방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 상호간 견해의 대립과 언론사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 2001. 1.경 이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났다. 원고가 같은 달 11.

자 동아일보에 위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사를 게재하자, 피고는 같은 날 뉴스데스크에서 '동아일보 판죽걸기'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신문광고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에서 그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취지의 비판보도를 하였다.

(2) 피고는 위 보도에 이어 아래와 같은 보도(괄호 안의 숫자는 인용의 편의를 위한 것임, 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하였다.

제목 : 썬 이자 재테크

앵커 : 신문사의 주 수입원은 구독료와 광고료로 보통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신문도 있습니다. 언론사라는 힘을 등에 업은 탓인지 일반 기업들과는 다르게 썬 이자에 큰 돈을 빌려서 재테크에 신경을 쓰는 동아일보 사례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①).

기자 : 동아일보의 자본은 99년말 현재 4,000억원대, 부채는 3,600억원으로 한국, 중앙일보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동아일보는 지난 96년 한통프리텔 주식 174만주를 44억원에 사들여 3년만에 1,000억원대로 불렀습니다. 주식값이 무려 20배나 넘게 오른 셈입니다. 그래서 88%로 나온 부채비율은 주식투자로 얻는 1,948억원의 평가이익을 자본에서 빼게되면 168%에 이릅니다. 동아일보에는 자사가 보유한 한통프리텔이라는 기사가 적지 않았습니(②).

금융관계자 : 한통프리텔같이 무지하게 뽀는 것들은 미리 구매를 해 엄청난 돈을 벌었다. 보통 사람들과 형평성을 놓고 볼 때 뭔가 특혜의혹이 있다(③).

기자 : 결국 금융기관에서 썬 이자로 돈을 빌려다가 주식투자로 번 돈이 영업이익의 절반이 넘습니(④).

은행관계자 : 다른 데는 싸게 해주는데 너희는 왜 비싸냐. 싸게 해줘라. 언론사 특징이 바로 이거야. 그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거

.....

의 안남지, 고생만 하는 거지(⑤).

기자 : 관련기자들이 윤리적으로 주식을 사지 않는데 반해 정작 신문사는 주식투자로 재미를 톡톡히 본 셈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문사가 재테크에 나서더라도 어느 누구도 비판하거나 제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론개혁이 관심사로 떠오른 11일 독자들은 스스로 돌아보는 공정한 비판의식을 동아일보에 기대하고 있습니다(⑥).

한편,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가 진행될 당시 원고 회사의 사옥 전경, '동아일보'라는 로고 등을 배경으로 하여 '동아일보 한통프리텔 주식으로 20배 평가이익'이라는 자막, 한통프리텔이 '땅콩' 김미현의 공동스폰서로 나섰다는 내용의 동아일보 기사 등이 화면으로 방영되었다.

2. 불법행위의 성부

가. 명예훼손의 성립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과 일반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프로그램의 제목, 배경 화면과 자막, 내용의 전체 흐름, 구성과 배치 및 진행자의 태도, 그밖에 보도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도는 다음과 같은 사실적시 또는 의혹제기를 하면서, 관련 기자들이 윤리적으로 주식을 사지 않는 것처럼 언론사들도 주식투자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1) 싼 이자 관련 부분

(가)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다른 데는 싸게 해주는데 너희는 왜 비싸냐, 싸게 해 줘라"는 취지로 말하며 싼 이자를 적용받기를 요구한다.

(나) 결국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반 기업들과는 달리 싼 이자에 큰돈을 빌렸다.

(다) 또, ①의 '언론사라는 힘을 등에 업은 탓인지'라는 표현과 ⑤의 '실질적으로 거의 안남지', '고생만 하는 거지'라는 표현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대출조건 협상과정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일반적 요구를 하는 수준을 넘어 은연중에 언론사로서 힘을 행사한 결과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제기를 하고 있다.

(2) 재테크 관련 부분

(가) 원고는 이와 같이 빌린 돈으로 1996. 한통프리텔 주식 174만주를 44억원에 사들였는데 3년만에 1000억원대로 주가가 상승하여 그 평가이익이 약 20배에 달한다(①의 '재테크에 신경을 쓰는'이라는 부분, ③의 '엄청난 돈을 벌었다'라는 부분, ④의 '주식투자로 번 돈'이라는 부분, ⑥의 '재미를 톡톡히 본 셈'이라는 부분 등으로 인하여 시청자들이 원고가 위 주식을 처분하여 실제 그와 같은 돈을 벌었다는 인상을 받을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피고는 ②의 '주식투자로 얻는 1,984억원의 평가이익'이라는 부분, '동아일보 한통프리텔 주식으로 20배 평가이익'이라는 자막 등을 통하여 '평가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주식을 거래하여 실제 그와 같은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또, 원고가 한통프리텔 같이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한 주식을 미리 구매하여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이는 일반인과 비교하여 보면 무언가 특혜의혹이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금융관계자의 말을 인용,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②의 '174만주를 44억원에 사들여'라는 표현은 액면가인 5,000원 보다 밑도는 주당 약2,528원 정도에 대량의 주식을 산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점, 또 '동아일보에는 자사가 보유한 한통프리

텔이라는 기사가 적지 않았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시청자들로서는 위와 같이 싼 가격에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은 원고가 언론사로서 향후 기사 게재 등을 통하여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주어진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는 점. ①의 '언론사라는 힘을 등에 업은 타인지'라는 표현 및 이 사건 보도에 사용된 표현의 전취지를 고려하면, ③은 단순히 금융관계자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피고 자신이 그와 같은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한통프리텔 기사를 많이 써서 주가를 올렸다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여러 사실을 적시하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언론사가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표명은 중립적인 의견이라 할 것이므로 명예훼손적 의견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위법성판단

피고는,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도에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는 항변을 한다.

(1) 공익성

법상 언론사의 주식투자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아니할지라도, 언론사가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등의 투자활동을 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지면을 제작할 수 있는지 의문시될 수 있고, 소속 기자들도 위 회사가 보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문제에 관한 공적 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이 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 목적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도는 원고를 일방적으로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도 언론사로서 1996. 당시 PCS 사업에 참여하여 출자의 일환으로 주식을 취득하였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등의 주식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그와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원고만을 지목하여 위와 같은 주식투자가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고, 또 시의성을 중요시하는 뉴스 보도에서 이미 1년여가 지난 정보에 근거한 의혹제기, 의견표시를 하면서도 보도 당시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취득 주식 수량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방송광고시장 개방문제에 관한 원고의 입장을 비판하는 보도를 한 데 뒤이어 이 사건 보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를 함에 있어 앞서 본 공익적 목적 이외에 부수적으로 원고를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소 내포되어 있음이 엿보이기는 하나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공익 목적성은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요구하는 것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형성을 위하여 언론사의 논조 또는 그 운영 행태 등에 관하여 언론사간 건전한 상호비판은 활발히 이루어질

.....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보도는 위와 같은 상호비판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진실성, 상당성 또는 의혹 제기의 정당성
(가) 싼 이자 관련 부분

1) 갑 제7호증의 1,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가 1995.말경 은행권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적용받은 금리는 10~10.5% 정도이고, 한국은행이 발간한 통화금융(2001. 3.호, 을 제5호증)에 따르면, 1996.경 은행권의 대기업에 대한 이자율은 10.86%,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율은 10.97% 정도이다.

② 원고가 1998.경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적용받은 금리는 3월 12.20%, 4월 12.19%, 5월 12.20%, 8월 11.88%, 12월 10.70%이다. 한편, 위 통화금융(을 제5호증)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의 당시 기업대출 이자율은 12.84% 정도이다.

③ 원고는 1999.경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금 600억원을 변제기 2003. 10.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위 통화금융(을 제5호증)에 따르면 당시 생명보험회사의 기업대출 이자율은 연 9.51% 정도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싼 이자로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사실적시는 진실에 기초한 것으로 볼 것이다(원고는 금전을 차용할 때 금융기관의 구속성예금에 가입해야만 했기 때문에 실제 원고가 적용받은 금리는 위보다 높은 이율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면서 오로지 원고만 그와 같은 구속성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강제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금전을 차입하면서 금융기관 중

사자들에게 싼 이자를 적용해주기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대출조건 협의 과정에서 차입 회사가 대출이율, 기간, 담보설정 등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차입 회사의 특성을 설명하고 유리한 대출을 요구하는 것은 거래관행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허위사실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가 은연중에 언론사로서 힘을 행사한 결과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제기 부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도는 위와 같은 의혹제기 차원을 넘어 원고가 언론사로서 부당하게 힘을 행사하였다는 단정적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은 점, ⑤의 '실질적으로 거의 안남지', '고생만 하는 거지' 등의 표현에서, 금융관계 종사자들은 은연중 언론사의 힘에 영향을 받아 대출조건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넉넉히 추지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로 일반 기업들보다는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온 점 및 공적 존재인 언론사들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혹제기는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국, 이 사건 보도에서 싼 이자와 관련된 사실적시와 의혹제기에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있다 볼 수 없다.

(나) 재테크 관련 부분

1) 이 사건 보도 중 원고가 싼 이자로 빌린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였다는 내용은, 원고가 뉴미디어 시대의 다양한 콘텐츠 공급 채널에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PCS를 정보통신사회 미디어채널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주식을 취득한 사실과 차입금이 아닌 당기순이익으로 위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 사실을 적

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르면, 1996.경의 원고의 장, 단기 차입금증가가 약 379억원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차입금으로 한통프리텔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보도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원고가 설명, 그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주식투자 또는 채테크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적시로 볼 수 없다.

2) 원고가 취득한 주식의 수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1996.경 취득한 위 주식은 500,000주이고, 그 후 유상증자 등으로 79,380주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174만주를 44억원에 사들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디어오늘'에 보도된 것을 인용한 것이므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사소한 허위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시간을 다투어 위와 같은 내용을 보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확인하거나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가볍게 진실이라고 믿어 버린 이 사건의 경우 위 보도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또, 위 내용은 원고가 액면가 이하로 한통프리텔 주식을 대량 취득했음을 암시하고, 원고의 한통프리텔 관련 기사가 위와 같은 저가 매입의 특혜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단순히 사소한 부분으로 치부해버릴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 한통프리텔 주식 취득 과정에서 원고에게 어떠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제기 부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주식 취득은 PCS 사업자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 피고도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여 한솔PCS 주식을 다량 취득하였던 점, 또 원고의 한통프리텔 관련 기사도 언론사로서 통상적 기사 게재의 일환일 수 있는 점, 원고가 특혜를 받았다는 근거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위 주식에 대한 액면가 이하 매입 부분도 허위의 사실인 점, 언론기관의 의혹제기가 정당화되려면 그에 대한 구체적 정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황에서 합리적으로 그와 같은 의혹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며, 광범위한 정보 획득 및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가 한 의혹제기는 시청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의혹제기에 따른 조사, 확인의무도 더 높아야 할 것임에도 금융관계자의 의혹제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에 동조하여 위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의혹제기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볼 수 없다.

3.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가. 정정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764조). 원, 피고는 공정한 여론형성을 표방하는 언론사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대행하여 충족시켜 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언론사간 건전한 상호 비판은 언론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언론사를 감시, 비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피고는 자신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견허하게 수용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언론사인 원고에 대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부주의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그에 근거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의혹제기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에 대하여 원고는 언제라도 자신이 발간하는 신문 등을 통하여 올바른 사실을 알리고, 피고의 잘못을 지적하여 해명을 요구하면서 피고를 비판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은 앞서 본 언론사간 건전한 상호비판에 따른 여러 순기능을 산출해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으로는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명하기보다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써 정정보도만을 명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정정보도의 방법과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위 보도 내용과 그 중 허위 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이 판결 확정후 최초로 전국에 방송되는 MBC 텔레비전의 저녁 9시 정각부터 진행되는 뉴스프로그램인 'MBC 뉴스데스크'의 진행 중에, 화면상단에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동아일보사 주식투자 관련 정정보도'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밑에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작성한 [별지 1] 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천천히 표시하면서 뉴스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함이 상당하다.

나. 간접강제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위 가.항의 작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언론사인 원고의 공신력을 감안하면 조속한 명예회복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만약 피고가 위 가.항 기간 안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항의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금원 지급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정정보도문 게재 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2002. 4. 10.

재판장 판사 안영률
판사 오석훈
판사 정경인

<별지 1>

제목 : 동아일보사 주식투자 관련 정정보도
내용 : 본 방송은 2001. 1. 11. 저녁 9시에 방영한 'MBC 뉴스데스크'에서 동아일보사가 지난 1996년 한통프리텔 주식을 사서 재테크를 하였고, 또 위 주식취득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아일보사가 1996년에 한통프리텔 주식 50만주를 취득한 것은 PCS 사업자 컨소시엄에 참여함에 따른 것이고, 당시 본 방송사와 대부분의 다른 언론사들도 PCS 사업에 참여하여 출자하였습니다. 또, 당시 동아일보사가 한통프리텔 주식 취득에 어떠한 특혜를 입은 것은 없

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본 방송사는 법원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특혜의혹을 제기하여 동

아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이 정정보도문을 방송합니다. 끝. □

판결 3

신도수가 수십만에 이르는 종교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수에 대한 영향력이 커 이른바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
원고가 법법행위를 한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다면 그 진실에
대한 규명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속한다

서울지방법원 2002. 4. 2.자 판결 (99가합78203)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2002년 4월 2일 '세계정교'라는 종교단체의 대표자인 하정효 씨와 세계정교의 신도들 10인이 문화방송 소속 윤길용 프로듀서와 과거 세계정교의 신도들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종교활동을 구실로 성폭행을 자행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범법행위가 된다. 더구나 신도수가 수십만에 이르는 종교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수에 대한 영향력이 커 이른바 공적 인물(public figure)에 해당하는 원고 하정효가 그와 같은 범법행위를 한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다면 그 진실에 대한 규명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전제한 후 "피고들은 원고 하정효에 의한 성폭행

피해자들이거나 방송프로그램의 프로듀서로서, 비록 원고 하정효에 대한 고소시효는 지났으나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각 명예훼손행위들은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원고 하정효의 성폭행 사실 및 성문란 행위를 지적하기 위하여 행하여졌으므로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결국 각 명예훼손 행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진실 내지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들을 적시하였으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 윤길용 외 1인이 원고 하정효의 침실을 촬영하여 이를 방송할 목적으로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사실과 피고 배성희 외 3인이 미신고 옥외시위를 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서만 원고들이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

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윤길용 프로듀서는 전 세계정교의 신도들 5인이 원고 하정효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취재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거지에 들어가서 그 침실을 허락 없이 촬영한 후, 취재결과를 1998년 12월 10일 「PD수첩」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하고, 같은 해 12월 22일 위 피고들의 시위장면을 위 프로그램을 통해 재차 방송하자, 원고들은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99가합78203 손해배상(기)

원 고 : 1. 하정효

2. 최정희

3. 손장순

4. 김봉옥

5. 강희옥

6. 이간란

7. 박연순

8. 오예슬

9. 김성자

10. 송숙연

11. 이옥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 고 : 1. 윤길용

2. 배성희

3. 이부자

4. 윤제호

5. 김희숙

위 피고들 송달장소 서울 서대문구

옥천동 126-170

6. 김영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상

변론종결 : 2002. 3. 12.

주 문 : 1. 가. 피고 윤길용, 배성희는 각자 원고 김봉옥에게 1,000,000원, 원고 하정효, 손장순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8. 11. 17부터, 2002. 4.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배성희, 이부자, 윤제호, 김영심은 각자 원고 하정효, 최정희, 손장순, 김봉옥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8. 12. 10.부터 2002. 4.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하정효, 최정희, 손장순, 김봉옥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강희옥, 이간란, 박연순, 오예슬, 김성자, 송숙연, 이옥희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하정효, 손장순, 김봉옥, 강희옥, 이간란과 피고 김희숙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윤길용, 배성희, 이부자, 윤제호, 김영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윤길용, 배성희, 이부자, 윤제호, 김영심 사이에 생긴 부분은 10분하여 그 9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가. 피고 윤길용, 배성희는 연대하여 원고 하정효에게 50,000,000원, 원고 손장순, 원고 김봉옥에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8. 11. 17.부터 2002. 4.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피고 윤길용, 배성희, 이부자, 윤제호, 김영심은 연대하여 원고 하정효에게 100,000,000원, 원고 최정희, 손장순, 김봉옥, 강희옥, 이간

란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10.부터 2002. 4.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다. 피고 배성희, 이부자는 연대하여 원고 하정효, 최정희, 손장순, 김봉옥, 강희옥, 이간란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박연순, 오예슬, 김성자, 송숙연, 이옥희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1.부터 2002. 4.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라. 피고 김희숙은 원고 하정효, 손장순, 김봉옥, 강희옥에게 각 30,000,000원, 원고 이간란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1.부터 2002. 4.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하정효는 '세계정교' (한국종교사회연구소 발행의 한국종교연감에 따르면, 1997. 5.경의 신도수는 약 81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의 창시자로서 그 총령본존으로 있는 자인데 '와한뵤루'라는 전통부예를 창시하기도 하였다. 원고 하정효는 '이제 세계정교를 밝히니라'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세계정교는 결코 인작(人作)이 아니라, 이는 전적으로 강림(降臨)에 의한 천작(天作)임을 밝히니라. 네 번 절하여라. 이제 이 땅이 세계정교의 출현을 알리니라. 본교는, 세상과 지구보다, 천체와 우주보다, 은하와 대계(大界)보다 먼저, 이들이 출산되기 이전, 비경(秘境)으로 감추어진 채, 이미 있고 늘 있었던, 한 옛날의 망씩뜰메세돌(望境聖夜境宗宮殿)

에서 그동안 사사(四死)와 칠악(七惡)에서 헛되어 죽어가는 이 세상의 일체군생을 사망과 최악으로부터 살려내기 위해, 비로소 이 땅에 강림하신 「세스팔다스 총령본존 하정효 계음」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범전대계(汎全大界)의 군생(群生)과 삼생세계(三生世界)의 인류를 위한 종교라. ... 그러므로, 우리는 다같이 「세한계음에 네 번 절하고, 일곱 마루에 일곱 번 절하며, 세스팔다스 계음의 뜻이신 한나라사람살이 앞에 서로 한 번씩 절하는 새시대를 만들어야」할 것이다.'

(2) 원고 최정희('단모'라 불린다)는 위 하정효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원고 손장순(종교명 창덕), 김봉옥(해당), 강희옥(옛산), 이간란(행렬당)은 세계정교의 교역자이자 원고 하정효를 보좌하는 '시자'(카톨릭의 수녀나 개신교의 집사 개념)이고, 원고 박연순(황궁)은 세계정교 사무총장, 원고 오예슬은 위 박연순의 딸, 원고 김성자(이당)는 세계정교 진주지역 책임자, 원고 송숙연(정한당)은 교역자, 원고 이옥희(연이당)는 세계정교신자이다.

피고 윤길용은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속 프로듀서이며, 피고 배성희, 피고 이부자, 피고 윤제호, 피고 김희숙, 피고 김영심은 과거 세계정교의 신도들이었다. 피고 이부자와 배성희는 모녀관계, 김희숙과 김영심은 자매관계이다.

(3) 세계정교는 전국 각지에 7대 본산과 28대 수도단지를 두고 있다. 원고 하정효는 평소 서울 종로구 창성동 105의 1 소재 주택(이른바 '성경루')에서 독서, 집필 등을 행하거나 종교의식을 행하고, 같은 동 125의 2 소재 주택(이른바 '일신정')에서 원고 최정희 및 위 1명이 시자들과 더불어 생활하고, 위 주변에는 '천궁원'(세계정교의 일반 사무를 처리

.....

합). '실전당' (세계정교가 시작된 집, 기도와 교육이 이루어짐) 등으로 불리는 집들이 있다 (이들을 통칭하여 '총령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피고 배성희, 이부자의 성폭행

(가) 피고 이부자는 1986. 3.경 세계정교를 알게 되었는데 목에 난 혹이 수술 없이 낫자 세계정교의 각종 행사 및 교육에 열심을 보였다. 1992. 3. 초순경 원고 하정효는 성경루에서 피고 이부자를 대면하고 그녀의 목부위를 만져주다가 갑자기 "너와 내 몸이 합쳐져야 가정이 편하고 병도 낫는다", "내 몸과 네 몸이 합치지 않으면 너와 네 가정에 재앙이 내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위 피고를 간음하였다. 원고 하정효는 1993. 2.경 진주 동방호텔에서, 같은 해 4. 5.경 제주 동남장에서, 1994. 6. 전라도 호산콘도에서, 1996. 3. 20.경 성경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고를 간음하였다. 위 피고는 같은 해 3.말경에 자신의 딸인 피고 배성희가 원고 하정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세계정교와의 관계를 끊었다.

(나) 피고 배성희는 어머니인 피고 이부자를 따라 세계정교를 믿게 되었다. 1993.경 윤영구와 결혼하였는데 1994.말 또는 1995.초경에 시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원고 하정효를 찾아가게 되었다. 원고 하정효는 1995. 1.말 또는 2.초순경 피고 배성희를 성경루로 부른 다음 "네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얼굴이 안 좋다. 신경성으로 유방 근처에도 덩어리가 있고 자궁도 안좋다"고 말하며 웃옷을 벗게 하고 맛사지를 하다가 "넌 원래 계옴의 사람으로서 전생에 내 부인이었다. 너와 내가 몸을 합쳐야 네 모든 병이 낫는다"고 말하면서 위 피고의 반항

을 억압한 후 간음하였다. 원고 하정효는 위 피고에게 "만약 이런 일로 이 곳에 발을 꿇거나 나를 멀리하면 너에게 병이 오고, 너희 가족이 몰살한다. 계옴의 말은 꼭 지켜진다"라고 고지하였다.

그 후에도 원고 하정효는 피고 배성희를 여러 차례 간음하였고 위 피고는 1995. 3.초순경 임신(약 2개월)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사실을 안 원고 하정효는 원고 김봉옥을 동행시켜 낙태케 하였다. 위 피고는 같은 해 5.경 윤영구와 협의이혼을 하였다.

(2) 피고 윤제호, 김희숙의 성폭행

(가) 피고 윤제호는 1989. 8.경 세계정교에 입문한 이래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고자(자신은 중풍을 앓았고, 아들 부부는 이혼을 하였다) 열심히 원고 하정효를 추종하고 신앙생활을 하여왔다. 원고 하정효는 1992. 10.경 강릉 경포대 호텔에서 위 피고에게 "네 몸에 병이 있다"며 허리와 등, 가슴과 배를 만져주다가 그녀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1994. 6.경 전라도 호산콘도에서, 1994. 11.경 홍천관광호텔에서, 1997. 12. 24.경 성경루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고를 간음하였다. 위 피고는 가깝게 지내던 피고 이부자로부터 성폭행관련 사실을 전해들은 1998. 이후 세계정교와의 관계를 끊었다.

(나) 피고 김희숙은 1989. 언니인 피고 김영심을 따라 세계정교에 입문한 후 1990. 3.까지 세계정교를 신봉하였는데 원고 하정효로부터 여러 차례 위와 같은 성폭행을 당하였다.

(3) 이 사건 인터뷰, 주거침입 및 집회의 경위

(가) 1998. 10. 19.경 김강자 총경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성피해를 당한 자들은 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법에 호소할 것을 촉구하였다.

(나) 피고 배성희, 이부자, 윤제호, 김희숙,

김영심은 위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같은 해 11. 초순경 경찰청을 방문. 자신들이 원고 하정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하였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박미옥 경사는 피고 배성희 등의 진술들이 신빙성은 있으나 이미 성폭행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원고 하정효에 대한 소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및 유사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문화방송사라 한다)에 위와 같은 사실을 제보하도록 하였다.

(다) 위 박정미 경사와 피고 배성희, 이부자, 윤재효, 김희숙, 김영심은 같은 해 11. 9. 피해진술서와 세계정교 경전, 행사비디오 등 증거서류를 갖고 문화방송을 방문. 당시 PD수첩 담당 프로듀서였던 피고 윤길용 피디를 만나서 4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였다.

(라) 위 인터뷰에서 피고 배성희는 피고 윤길용에게 원고 하정효의 자신에 대한 성폭행 사실을 진술하면서 원고 손장순, 김봉옥, 강희옥, 이간란 시자 4명 및 사무총장인 박연순이 원고 하정효와 성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하며, 원고 최정희가 원고 하정효의 성관계를 도와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이부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원고 손장순, 이간란, 강희옥, 김봉옥 및 박연순, 오예슬, 김성자, 송숙연, 이옥희가 원고 하정효와 성관계를 했을 것이라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 김희숙 역시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원고 하정효와 이간란이 1990년경 성관계를 가진 것을 보았으며, 원고 손장순, 김봉옥, 강희옥, 이간란 등 4명의 시자들이 원고 하정효의 잠자리부터 식사까지 시중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피고 윤길용은 이를 취재하여 보도하기로 결정

하고 1998. 11. 10경부터 원고 하정효 등에 대하여 성폭행 등의 사실확인작업에 착수하였으나 위 원고는 지방순례 중이라는 이유로 인터뷰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원고 최정희는 원고 하정효가 지병인 당뇨병 등으로 인하여 20여 년 전부터 발기부전증을 앓고 있으므로 성관계를 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들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하였다.

(바) 피고 배성희, 윤길용 등은 원고 하정효의 침실을 촬영하여 이를 방송할 목적으로, 1998. 11. 17. 14:30경 서울 종로구 창성동 125의 2 소재 일신정에 이르러, 피고 배성희가 같은 달 14.경 가져간 김치통을 돌려주기 위해 온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원고 김봉옥으로 하여금 일신정의 출입문을 열도록 한 다음, 피고 배성희, 윤길용 등의 순으로 일신정 안으로 들어가 피고들의 예고 없는 갑작스런 방문에 놀란 위 김봉옥이 피고들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피고 윤길용은 오히려 “아줌마 이런 식으로 하면 경찰을 불러요”라고 말하며 카메라맨인 박재영과 함께 신발을 신은 채 1층 안방 및 2층에 있는 하정효의 침실로 올라가 침대와 옷가지, 성상 등을 촬영하였고 피고 배성희는 카메라 앞에서 “나 열 받아 죽겠어... 나 성추행 시켜놓고... 내 인생 망쳐놓고...”라고 소리쳤다.

(사) 문화방송사는 위와 같은 취재결과 등을 토대로 「총령본존 어디 계십니까?」제목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작하고 1999. 11. 24. 23:00에 시사교발 프로그램인 ‘PD수첩’을 통하여 이를 방영하였다.

(아) 피고 배성희, 이부자, 윤재효, 김영심은 1998. 12. 10. 10:35경부터 11:05까지 서울 종로구 창성동 125의 2 골목에서 원고 하정효의 비위사실이 위 ‘PD수첩’을 통해 방영된 이후

에도 위 하정효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짐승만도 못한 놈! 피도 눈물도 없는 놈! 성추행자 하정효 나와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옥외 시위를 하였다. 피고 윤길용은 PD수첩 연말특집을 준비하고자 위 장소에서 잠복취재를 하던 중에 우연히 위 시위 장면을 취재하였고, 이를 같은 해 12. 22. 23:00경 PD수첩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하였다.

(자) 2002. 1. 16. 서울지방법원 98가합 111257, 99가합46565 사건에서 피고 윤길용의 사용자인 문화방송사와 피고 배성희는 원고 하정효가 거주하는 일신정에 들어가서 허락 없이 그 침실을 촬영, 공표한 점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되어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로 각자 원고 하정효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하정효는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배성희에게 30,000,000원, 피고 이부자 및 윤제호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항소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 2002나10464호 사건으로 계속되어 있다.

(차) 피고 윤길용은 주거침입죄로, 피고 배성희는 주거침입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서울지방법원 2000고약29865호로 각 벌금 2,000,000원에 약식기소되어 피고 배성희는 2000. 10. 16. 정식재판청구 취하로 위 벌금이 확정되었고, 피고 윤길용은 정식재판청구하여 같은 법원 2000고단8731호 판결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02. 4. 15. 항소하였다.

[인정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의 1 내지 3, 5의 1 내지 2, 갑 14 내지 18의 각 기재, 갑 19의 일부 기재(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갑 31의 1 내지 5, 갑 31의 8 내지 14, 갑 31의 16, 갑 31의 27, 갑 31의 29 내지 30, 을 44, 을 48 내지 55, 을 56, 을 67, 을 68의 1 내

지 12, 을 67, 을 69, 을 70, 을 71, 을 72의 1 내지 3, 을 73의 각 기재, 갑 21 및 22(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증인 윤희복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갑 23 내지 25, 갑 28, 갑 31의 6 내지 7, 갑 31의 17내지 26, 갑 31의 28, 갑 32의 1 내지 5, 갑 33, 갑 35의 1 내지 2, 갑 37 내지 40(각 가지번호 포함), 갑 41의 1, 갑 42의 1, 갑 43 내지 45(각 가지번호 포함), 갑 46 내지 55, 갑 67 내지 70, 을 68의 13 내지 14의 각 기재, 증인 강민경의 증언

[부족증거] 갑 13, 갑 20, 갑 56의 1 내지 2, 갑 57 내지 63, 갑 65의 1 내지 2, 갑 71, 갑 72의 각 기재, 갑 64, 갑 66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카톨릭대 대전성모병원장, 주일억 산부인과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중 원고 하정효의 피고 윤길용, 배성희, 이부자, 윤제호, 김희숙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98가합 111257 사건의 소와 그 소송물 및 당사자가 동일하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펴건대 이 사건의 청구원인은 피고들의 원고들의 주거에 대한 침입 및 원고들 사이의 성관계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인 데 비해, 을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 98가합111257 사건의 소송물 및 당사자는 원고 하정효가 문화방송사와 피고 배성희, 이부자, 윤제호, 김희숙을 상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이 하정효가 위 피고들을 성폭행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해 위 하정효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 하정효의 침실을 공개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으로 서로 당사자 내지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므로, 비록 이

사건 청구원인이 서울지방법원 98가합111257 사건의 청구원인과 일련의 과정에 있고 원고들이 전소에 이 사건 청구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중복제소에는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윤길용, 배성희는 공모하여,

1998. 11. 17. 14:30경 원고 하정효, 손장순, 김봉옥의 거주지인 서울 종로구 창성동 125-2 주택(일신정)에 배성희, 윤길용 등 4명이 집안으로 들어와 주거침입하고, 배성희는 카메라 앞에서 “나를 성추행시켜 놓고 흥천사람다 당했어” 등 소리치며 욕설을 하여 원고 하정효의 명예훼손하고.(이하 제1불법행위라 한다)

(2) 피고 윤길용, 배성희, 이부자, 윤제호, 김영심은 공모하여,

배성희, 이부자, 윤제호, 김영심 등은 1998. 12. 10. 10:35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원고 하정효, 최정희, 손장순, 김봉옥의 거주인 일신정 앞 도로에서 “성추행자 하정효 나와라” 등등의 욕설과 고함을 질러 위 원고들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고, 원고 하정효가 원고 손장순, 김봉옥, 강희옥, 이간란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윤길용은 위 피고들의 시위 및 위 언동을 부추겼으며.(이하 제2불법행위라 한다)

(3) 피고 배성희, 이부자는 1998. 11.초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 윤길용에게 원고 하정효가 원고 손장순, 김봉옥, 강희옥, 이간란, 박연순, 오예슬, 김성자, 송숙연, 이옥희와 성관계

를 가졌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피고 배성희는 원고 하정효가 원고 최정희와 짜고 배성희와 다른 여자들을 성폭행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위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 김희숙은 1998. 11.초 불상 장소에서 윤길용에게 원고 하정효, 이간란이 1990년 성관계를 가진 것을 보았으며, 원고 손장순, 김봉옥, 강희옥, 이간란이 원고 하정효의 잠자리 시중을 드는 등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의 말을 유포하여 원고 하정효, 손장순, 김봉옥, 강희옥, 이간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이하 제3불법행위라 한다.)

나. 제1불법행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배성희, 윤길용이 원고 하정효의 침실을 촬영하여 이를 방송할 목적으로 1998. 11. 17. 14:30경 원고 하정효, 손장순, 김봉옥의 거주지인 서울 종로구 창성동 125의 2 소재 일신정을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원고들이 사생활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배성희와 윤길용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위 일신정이 원고 하정효의 주민등록지가 아니고, 원고 김봉옥은 위 주소지에 동거인 신고만을 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거 평온성이 직접 침해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주거침입’의 ‘주거’란 실제 생활의 근거지를 의미하므로 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또한 위 일신정이 종교상 시설로서 누구나 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 배성희는 위 주거침입 도중에 카메라 앞에서 “나 열받아 죽겠어... 나 성추행시켜놓고... 내 인생 망쳐놓고...”며 사실을 적

시하여 원고 하정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원고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배성희와 윤길용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제2불법행위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배성희, 이부자, 윤제호, 김영심은 1998. 12. 10. 10:35경부터 11:05까지 원고 하정효, 최정희, 손장순, 김봉옥의 주거인 서울 종로구 창성동 125의 2 골목에서 “성추행자 하정효 나와라”라는 문구를 적은 플래카드를 들고, “성추행자 하정효 나와라. 짐승만도 못한 놈 나와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옥외시위를 하여 위 원고들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원고들이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위 일신정은 개인집이 아닌, 세계정교 시설물이고 원고 하정효의 주민등록지가 아니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일신정은 대중적인 종교시설이라기보다 원고 하정효와 그 처 및 시자들이 거주하는 개인적인 주거지로서의 의미가 강한 곳으로 타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곳으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위 피고들이 원고 하정효와 원고 손장순, 김봉옥, 강희옥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적시하여 위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위 피고들이 원고 하정효와 원고 이간란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적시하여 위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19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윤길용이 위 옥외시위 및 명예훼손에 가담하였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9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1호증의 8 내지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윤길용은 원고 하정효를 취재하기 위해 위 일신정 근처에서 삼복근무를 하던 중 위 시위 현장을 우연히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윤길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제3불법행위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배성희는 1998. 11. 9. 피고 윤길용과의 인터뷰를 하던 도중 원고 손장순, 김봉옥, 강희옥, 이간란 시자 4명 및 사무총장인 박연순이 원고 하정효와 각 성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진술을 하였고, 원고 최정희가 원고 하정효의 성관계를 도와준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또 피고 이부자는 원고 손장순, 이간란, 강희옥, 김봉옥 및 박연순, 오예술, 김성자, 송숙연, 이옥희가 원고 하정효와 성관계를 했을 것이라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 김희숙은 원고 하정효와 이간란이 1990년경 성관계를 가진 것을 보았으며, 원고 손장순, 김봉옥, 강희옥, 이간란 4명의 시자들이 원고 하정효의 잠자리부터 식사까지 시중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원고들은 피고 배성희와 피고 이부자가 위와 같은 명예훼손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배성희와 피고

이부자는 윤길용과의 인터뷰에서 개별적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진술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배성희는 원고 손장순, 김봉옥, 강희옥, 이간란, 박연순, 최정희, 하정효가 명예훼손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피고 이부자는 원고 손장순, 이간란, 강희옥, 김봉옥 및 박연순, 오예슬, 김성자, 송숙연, 이옥희, 하정효가 명예훼손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피고 김희숙은 원고 하정효, 손장순, 김봉옥, 강희옥, 이간란이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을 각 돈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위 인터뷰 내용은 공언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민법상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서 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명예훼손'은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들을 수 있는 상태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각 불법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1) 제1불법행위와 제3불법행위 중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판단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가) 공익성

종교활동을 구실로 성폭행을 자행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범법행위가 된다. 더구나 신도수가 수십만에 이르는 종교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수에 대한 영향력이 커 이른바 공적 인물(public figure)에 해당하는 원고 하정효가 그와 같은 범법행위를 한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다면 그 진실에 대한 규명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들은 위 원고 하정효에 의한 성폭행 피해자들이거나 방송프로그램의 프로듀서로서, 비록 원고 하정효에 대한 고소시효는 지났으나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위 각 명예훼손행위들은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원고 하정효의 성폭행 사실 및 성문란 행위를 지적하기 위하여 행하여졌으므로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실성 또는 상당성

제1불법행위의 경우 피고 배성희의 사실적 시행위("나 성추행 시켜놓고... 내 인생 망쳐놓고...")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진실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제3불법행위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내부 인터뷰 과정에서 위 진술들이 이루어진 점, 피고들은 자신들의 성폭행 피해사실을 위주로 진술하면서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피고 윤길용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들의 성관계사실을 적시한 점,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 중 피고 김희숙이 직접 목격하였다는 원고 하정효와 이간란의 성관계를 제외하고는 방영되지 않은 점, 원고들 역시 위 명예훼손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서울지방법원 98가합111257 사건에서 문화방송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취득한 미공개테이프를 통

해 비로소 위 사실을 알게 된 점 및 원고 하정효의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행사실과 원고들 간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위 명예훼손에서 적시된 원고들의 성관계는 비록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하정효가 받기 부전증을 앓고 있어 성관계를 가질 수 없고 또한 피고들이 성폭행관련 사실을 진술할 때마다 그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들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하정효가 그와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취지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가 앞서 본 각 성폭행 일시에 위 병을 앓고 있어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들은 성폭행을 당한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후에야 기억에 의존하여 그 피해상황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진술들 간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위 각 명예훼손 행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진실 내지는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들을 적시하였으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제1불법행위 중 주거침입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주거침입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속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항변하므로 먼저 위 주거침입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타인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셋째, 부득이 행한 행위이어야 한다. 비록 원고 하정효의 성폭행 사실이 있었고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목적이 원고 하정효의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침해의 현재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나아가 위 일신정예의 침입행위 없이 방송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점, 침입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부득이 행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건대, 긴급피난에 해당하려면 첫째, 현재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려는 행위여야 하고 둘째,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이어야 하며, 셋째, 부득이 할 것이 요구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난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도 없고, 나아가 위 침입행위가 부득이 행한 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제2불법행위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시위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속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항변하므로 살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시위를 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제1불법행위 중 주거침입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 배성희가 원고 하정효의 성폭행 피해자인 점, 피고 윤길용과 배성희가 더 이상의 성폭행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

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그 제작 중에 이 사건 주거침입이 발생한 점, 이미 서울지방법원 98가합111257 사건에서 이 사건 주거침입과 일련의 과정에 있는 주거 촬영 및 방송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해 피고 윤길용의 사용자인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피고 배성희는 각자 원고 하정효에게 5,000,00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실, 원고 하정효, 손장순, 김봉옥은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 김봉옥에게 1,000,000원, 원고 하정효, 손장순에게 각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제2불법행위에 대한 판단

피고 배성희, 이부자, 윤제호, 김영심이 원고 하정효의 성폭행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의 가족인 점, 피고들이 원고들의 주거인 일신정에 직접 침입하지는 않고 단지 그 앞 골목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인 점, 원고 하정효가 성폭행 사실이 방송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들을 반박하는 성명을 낸 데 분개하여 이에 대한 항의로 본 시위에 이르게 된 점, 원고 하정효, 최정희, 손장순, 김봉옥은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 하정효, 최정희, 손장순, 김봉옥에게

각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윤길용과 배성희는 각자 원고 김봉옥에게 1,000,000원, 원고 하정효, 손장순에게 각 500,000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1998. 11.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2. 4. 2.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배성희, 이부자, 윤제호, 김영심은 각자 원고 하정효, 최정희, 손장순, 김봉옥에게 각 500,000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1998. 12. 1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2. 4. 2.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하정효, 최정희, 손장순, 김봉옥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하정효, 최정희, 손장순, 김봉옥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강희옥, 이간란, 박연순, 오예슬, 김성자, 송숙연, 이옥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2002. 4. 2.

재판장 판사 김 용 호
판사 손 홍 수
판사 김 정 민



일본 판결

TV방송이 전 남편의 일방적인 인터뷰만으로 이혼의 경위와 원인에 관한 보도를 한 것은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되므로 위자료와 함께 정정방송하라¹⁾

항소인 甲野花子

피항소인 일본방송협회(NHK)

동경고법 1999 (ホ) 제502호, 정정방송 등 청구 항소사건

2001. 7. 18. 제20민사부 판결. 변경 · 상고

원심 동경지법 1996 (ワ) 제23253호, 1998. 11. 1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항소인은 항소인에 대해 130만엔을 지불하라.

2) 피항소인은 항소인에 대해 본판결 확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피항소인이 방송하는 NHK “생활, 굿모닝”프로그램의 토요일 방송시간대에, 토요일에 위 프로그램의 방송이 없을 때는 다른 요일의 위 프로그램의 방송시간대에, 위 프로그램의 방송이 폐지되었을 때는 토요일의 위 프로그램이 방

송되었던 같은 시간대에 별지 게재의 정정 보도문을 2회 반복하여 소리내어 읽는 방법으로 정정방송하라.

사실개요

1. 항소인의 청구내용

본건은 피항소인이 NHK의 프로그램 “생활 굿모닝”에서 “처로부터의 절연장(絶縁狀) · 갑작스런 이별에 당황하는 남편들”이라는 제목으로 항소인의 전 남편의 인터뷰

1) 이 판결에서는 항소인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변경. 위자료 지불명령외에 일본에서는 최초로 방송법(1조1항)에 근거한 정정방송을 명했을 뿐만 아니라 정정을 가급적 간단하게 처리하는 우리 나라 방송과는 달리 2회 반복방송 하도록 했고, 정정방송문도 이례적으로 200자 원고지 7매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어서 말미에 전문을 소개한다.

등을 삽입한 방송(이하 '본건 프로그램'으로 한다)을 하면서, 항소인이 전 남편의 바쁜 직장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불만만을 털어놓으며, 전 남편에 대해 갑작스럽게 이혼을 선언하고 강행한, 인간성에 결함이 있는 처였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데 대해 ①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 ②명예회복을 위한 위한 사죄방송, ③방송법 4조1항에 근거한 정정방송 등을 청구한 사안이다.

2. 쟁점

불법행위의 성립여부와 손해배상청구 및 명예회복처분으로서의 사죄광고방송의 정당성 여부.

①본건 프로그램에 의해 항소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는지의 여부.

②항소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

③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해서 손해배상 외에 명예의 회복처분으로 사죄방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④항소인에게 방송법 제4조1항에 의한 정정방송청구권이 있는지의 여부.

쟁점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

1) 우선 본건 프로그램이 어떠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①본건 프로그램의 모두 나레이션에서

“이 50대의 남성은 결혼생활 21년째의 어느 날 아침, 처로부터 갑자기 ‘이혼해 달라’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4년, 왜 저는 이혼을 들고 나왔을까?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장면에, 그가 혼자 주방에 서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방영되고, “처로부터의 절연장”이 텔롭(telop : TV에 두사·삽입하는 글자, 사진)으로 삽입되었으며, 이어 전 남편이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인터뷰에 응해 “그 당시를 회상해 보아도 정말 모르겠네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다.

잠시 후에는 다른 여성의 인터뷰 등이 삽입된 다음 프로그램 개시 약 5분 10초 경과 후에는 프로그램의 타이틀로 “처로부터의 절연장 - 갑작스러운 이별에 당황하는 남편들”이라는 텔롭이 삽입되었다.

위 방송은 나레이션 부분에서, 이혼후 4년이 경과했는데도 전 남편이 이혼사유를 알 수 없다는 사실과 암암리에 전남편에게는 이혼원인에 대해 비난받을 만한 책임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사실도 적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②나레이션이 “결혼 21년만에 이혼한 이 50대의 남성은 대기업의 관리직에 있습니다. 1년 전에 저는 갑자기 이혼을 들고 나오더니 장녀를 데리고 가출했습니다. 지금은 대학생인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표현되어, 처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것처럼 받아들이질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③전 남편이 8년 전 회사의 바쁜 부서에 배치되어 심야에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처와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는데, 전 남편이 2~3년만 참으면 된다고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는 이해를 해주지 않고 전 남편이 하는 일에 일일이 조건을 붙이고 식사도

함께 하는 것을 피해왔다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할 수 있다.

④또 그 후의 나레이션에서 “처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걸까? 두 사람은 여러 번 대화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되풀이되는 처의 주장은 남편에게는 사소한 대수롭지 않은 일로 밖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의 진심을 알지 못한 채 남편은 이혼에 동의하고 말았습니다.”라는 말이 있는 직후 “남편이 모르는 시나리오”라는 텔롭이 삽입되었다.

위 방송은 처가 전 남편에게 사소한 일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 납득할 수 있는 이혼사유도 없는 상태에서 미리 이혼의 결심을 굳히고 그 준비를 갖춘 다음 전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 전 남편은 처가 내세우는 이혼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혼에 응하게 됐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이상 ①~④의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항소인은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전 남편의 인식 또는 그 인식을 전제로 한 코멘트를 표시했을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TV방송의 경우 시청자는 보통 그 내용을 반복하여 되짚어보지 않으며 연속적으로 흐르는 영상과 음성을 순간적으로 받아들여 내용을 파악하고 전후사정을 연관시킨다.

때문에 당해 방송이 어떠한 사실을 적시했든 간에, 일반의 시청자가 당해 방송을 통상의 주의를 갖고 보고 그 내용으로부터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는 바, 시청자들이 이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본건 프로그램을 보았다고 한다면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은 사실이 적시된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2) 본건 프로그램에 의해 적시되었다고 인정되는 위 1)①~④의 사실은 이혼의 경과와 원인 등 극히 사적인 사안을 공개한 것으로, 처가 남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자기중심적인, 인간성이 결여된 냉정한 여성이라는 인상을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전 남편과 아들의 얼굴이 방영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항소인의 남편 또는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지고 보았을 경우 그들의 이혼문제를 다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 1)①~④의 사실이 방영됨으로써 항소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으며 동시에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3)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전기 1)①~④의 사실은 모두 진실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위 사실들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인데, 피항소인은 항소인으로부터는 취재를 하지 않고 전 남편에게서만 일방적으로 취재하여 본건 프로그램을 편집·제작했으며 이에 대한 항소인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방송했다.

그러므로 피항소인은 가능한 취재를 다했거나 항소인의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 본건 프로그램을 편집·제작·방송했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항소인에게 전기 1)①~④의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4) 피항소인은 본건 프로그램이 사회일반의 중년부부들에게 참고되도록 한 사회적 의의와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의 공표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혼의 경과나 원인은 관계당사자들에게는 극히 사적인 사안이며 특히 항소인과 같은 무명의 일개 사인의 이혼문제는 사회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재하여 방송함에 있어서는 관계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하든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리 공공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라도 관계당사자의 승낙을 얻어 가급적 진실의 파악에 노력을 다했어야 했다.

피항소인이 그러한 노력을 태만했다는 것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명백하므로 피항소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전 남편이 항소인으로부터의 반대취재를 거부한 사실은 피항소인이 반대취재를 하지않은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피항소인 으로서는 전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항소인으로부터 반대취재를 하여 전 남편의 발언 등이 진실한가를 검증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방송을 중지했어야만 했다.

이상으로, 피항소인이 본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행위는 항소인의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항소인이 입은 손해의 회복

1. 항소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액은 전기 인정사실 및 본건에서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100만엔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

사회방송의 청구는 피항소인에 의한 정정방송이 사회의 취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유가 없다. 변호사비용 청구는 본건이 어려운 사건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

하여 30만엔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정정방송에 관해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업자가 진실이 아닌 사항의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그 방송에 의해 권리의 침해를 받은 본인 또는 그 직접관계인으로부터 방송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가 있을 때는 방송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방송사항의 진실 여부를 조사하여 진실이 아님이 판명되었을 때는 판명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그 방송을 한 방송설비와 동등의 방송설비에 의해 상당한 방법으로 정정 또는 취소방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방송에 의한 피해자가 정정방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3개월 이내 청구란, 방법의 여하에 관계없이 정정방송을 구하는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하며 이 의사표시가 방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있었을 경우에는 그 후 그 의사표시가 철회되거나 취소되는 등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사정이 없는 한 정정방송청구권은 방송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피항소인은 항소인에 대해 본건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전기 1)①~④의 사실의 적시가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밝히는 내용(별항 정정보도문)의 정정방송을 본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과 동등한 방송설비에 의해 상당한 방법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방송법에 근거하여 법원이 처음으로 명령한 정정보도문〉

방송법 제4조에 따른 정정방송을 하겠습

니다.

NHK에서 1996년 6월 8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의 시간대에 “처로부터의 절연장(絶縁狀) - 갑작스러운 이별에 당황하는 남편들”이란 제목으로 방송한 “생활 곳모닝” 프로그램에서 이혼경험이 있는 남성이, 대학생인 아들과 함께 얼굴을 드러낸 채 인터뷰에 응하는 비디오가 방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남성에 대한 인터뷰와 함께 “이 50대의 남성은 결혼생활 21년째가 되는 어느 날 아침, 처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 해 달라’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4년, 왜 처가 이혼을 결심했을까. 지금까지도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생활 21년만에 이혼한 이 50대의 남성은 대기업의 관리직에 있었습니다. 4년 전 처가 갑자기 이혼을 들고 나오면서 장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지금은 대학생인 장남과 단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처와의 관계가 어색하게 되기 시작한 것은 8년 전, 회사에서 일이 많은 부서에 배치되어 심야에 귀가하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였습니다.”, “남편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처는 점점 더 신경을 곤두세우기만 했습니다. 남편의 거동 하나 하나에 쓸데없는 주문을 붙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었을까? 두 사람은 여러 번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되풀이되는 처의 주장은, 남편에게는 하찮은 것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의 진심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남편은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등의 나레이션을 내보내고,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경과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이어 8년 전에 직장관계로 남편의 귀가시

간이 늦어지면서부터 부부관계가 어색해지기 시작했다. 남편은 처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설득도 했지만 처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신경을 곤두세우기만 했다. 몇 번이고 대화를 가졌으나 남편에게는 처의 주장이 하찮은 것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았다. 처는 남편이 모르는 사이에 이혼준비를 진행해 오다가, 갑자기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 이 남성은 처의 진심을 모른 채 이혼에 동의했다. 처의 메시지에 깊은 의미를 느끼지 못한 것이 부부 사이를 악화시켰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 의해 이 남성과 그 처의 이혼의 경과와 이혼원인이 밝혀져 그 프라이버시가 공표됨과 동시에, 그 처가 남편에 대한 동정심이 없는,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성이 결여된 냉정한 여성이라는 인상을 주었으며, 더욱이 그 남성과 그의 아들의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출연시켰기 때문에, 그 남성의 처가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특정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처는 이 방송이 있기 9년 전에 남편에게 분명히 이혼의사를 밝혔으며,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이혼을 요구했다. 약 7년 전부터는 가정 내에서조차 얼굴을 마주치는 것을 피해왔으며 남편도 처의 이혼요구와 그 이유를 인식한 상태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에 응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는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며 그 후 가출을 한 것입니다. 약 1년간의 이혼조정 후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이 처는 전업주부가 아니며, 결혼 이후 일을 계속하면서 가게를 지탱하여 왔습니다.

이 부부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차이가 이혼의 원인이 되었던 부부였습니다.

이와 같은 진실과 다른 방송을 하게 된

것은, NHK가 처측에 대한 취재와 사실을 충분히 취재하지 않은 채 방송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정방송과 함께, 이러한 잘못된 사실을 방송하여 전처의 프라이버시를 공표하

였을 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데 대하여 깊이 사죄하는 바입니다.

출처: 『判例タイムズ』, 1077호, p157~173

번역: 한동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

미국 판결

시사방송프로그램 제작진이 원고의 비촬영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는 점만으로는 현실적 악의를 인정할 수 없다

Isgrigg v. Cosmos Broadcasting Corp.
(미국 연방 지방법원 인디애나주 남부지구)

판결 요지

카운티 측량기사가 카운티 공금을 유용하고 의심스러운 고용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의 심층 보도 시리즈를 방송한 어느 지방 텔레비전 방송국은,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 인디애나주 남부지구를 관할하는 미국 연방 지방법원이 판시하였다. 특히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지 않는 인터뷰(off-camera interview)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현실적 악의를 입증할 만한 부주의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판단하였다.

사건 개요

원고 Robert L. Isgrigg 씨는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인디애나주 클라크 카운티의 측

량기사였다. 원고 Isgrigg씨는 카운티 측량기사로 일하면서 Bob Isgrigg & Associates라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1986년 Bob Isgrigg & Associates는 원고 Lewis M. Love III를 고용하였다. Love씨는 1992년 7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카운티 측량기사 사무실의 직원으로도 일하였다.

피고 Michelle Moon 씨는 피고 WAVE 방송국의 기자이고, 피고 Kathy Slaughter Beck은 WAVE 방송의 보도국 책임자이다. 피고 Cosmos Broadcasting Corporation은 WAVE 방송국의 모회사이다. 1998년 상반기에 WAVE 방송의 심층 보도 프로그램에서 카운티 측량기사 사무실, 특히 원고들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 피고들은 Isgrigg씨가 Love씨를 카운티 측량기사로 채용하여 공금으로 월급을 주면서 그를 Isgrigg & Associates라는 개인 사무실

을 위해 일하도록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들은 또한 Isgrigg씨가 수취인이 카운티 측량기사 사부실로 된 수표를 자신의 개인 사업용 계좌에 넣어두었다고 보도하였다. 피고들은 그 후 그와 같은 보도내용의 일부를 WAVE 방송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2000년 2월 7일, Isgrigg씨와 Love씨는 이 법원에 피고들을 제소하였다. 2001년 10월 5일, 피고들은 약식재판(summary judgment)을 신청하였다.

판결 이유

Isgrigg씨와 같은 공무원이 자신의 공적인 업무에 대한 비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판이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가지고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283). 또한 Gertz v. Welch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각 주는 부과할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한 공무원이 아닌 일반 개인(private individual)에 대한 명예훼손에 있어 스스로 적절한 책임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 개인의 명예훼손 소송에 적용될 인디애나 주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Journal-Gazette Co., Inc. v. Bandido's, Inc. 사건에서 인디애나 주 대법원은 일반 개인이 원고인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서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한 '현실적 악의'의 기준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채택하였다. 이 사건에서, Love씨가 공무를 수행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월급을 세금에서 받았는지 여부는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Love씨 역시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

다.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은 명예훼손적인 보도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무모하게 무시한 나머지 행하여졌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Isgrigg씨와 Love씨는 피고들이 Moon기자의 추적보도 기사를 방영함에 있어서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들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다룬다.

원고들은, Love씨가 카운티 당국으로부터 받지 않아야 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기에 충분한 자료를 피고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수석 대리인(first deputy)으로서의 Love씨의 종전 업무 형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는 점, 즉 Love 씨의 업무는 오로지 사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주 사부실 외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종류의 것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보를 피고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Love씨가 때때로 사부실을 비운 것이 곧 그가 Isgrigg & Associates를 위하여 일하였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고들이 분명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들이 Love씨의 작업별 소요시간 기록용지(time sheet) 사본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본들은 Love씨의 카운티 공무 수행 시간이 때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었고, 때때로 주말에도 공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러한 정보를 소지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피고들이 허위 고용에 관한 그들의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혹은 그 허위성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

장한다.

기록을 검토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누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클라크 카운티 측량기사 사무실의 수석 대리인으로서의 Love씨의 업무가 주로 사무실 외에서 행하여진다는 점을 기자가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 Isgrigg씨가 1993년 카운티 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설명서에 의하면, 수석 대리인의 업무에는 도면 작성, 전화 답변, 사본 작성, 토지 지도의 갱신 그리고 임금대장의 준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분명히 사무실 근무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원고들은 같은 서류 중 1996년 9월 10일경의 'Bob Isgrigg가 나에게 업무 설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1994년 6월 근무위치가 바뀌었다.'라는 내용의 손으로 쓴 메모를 지적한다. 원고들은 왜 우리가 기자가 소지한 공식 설명문에도 원고들이 제출한 사본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손으로 쓴 메모가 있다고 가정하여야만 하는지에 관하여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설령 기자가 가지고 있는 설명문에도 동일한 메모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메모의 내용이 바로 '수석 대리인'의 업무가 바뀐 것을 나타내거나 혹은 그 업무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들은 또한 기자가 Love씨의 작업별 소요시간 기록용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기록용지는 Love씨가 카운티 업무에 적절한 시간을 사용하였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취재기자가 그 기록용지 상의 근무시간을 합산해보기만 하였어도 Love씨가 매주 카운티의 공직을 수행하는 데에 적절한 시간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주

장한다.

물론 Love씨의 작업별 소요시간 기록용지의 기재에 의할 때 카운티가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현실적 악의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입증되는 것이 아니다. 피고들의 약식 재판 청구에서 살아남으려면, Love씨는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확신을 가질 정도로 분명히 현실적 악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Jean v. Dugan, 20 F.3d 255, 263. 그러나 기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녀로서는 기록된 시간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즉, 그녀가 카운티 측량기사 사무실의 전 직원 Krista Helbig와 한 인터뷰에서, Helbig은 원고들이 허위 고용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기자는 1991년에 Isgrigg씨 밑에서 수석 대리인으로 근무한 바 있는 Keith Holz씨와도 인터뷰를 하였는데, 그는 Isgrigg씨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Isgrigg씨의 개인 사무실인 Isgrigg & Associates의 업무 처리에 사용하였다고 말하였다.

원고들은 Helbig과 Holz가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들이며, 따라서 그들의 말을 기자가 믿은 것이 옳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Helbig과 Holz가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진술을 보도 내용에 담았다 하여 Moon이 부주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Jean v. Dugan 사건에서 법원은 정보제공자에 대한 피고의 신뢰에 대하여, "비록 정보제공자의 진실성 혹은 그의 진술의 정확성에 관하여 의심할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원고에 대한 고발이 익명의 것이거나 증거를 대지 않은 것이라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

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 대한 약식재판 신청을 받아들인 지방법원의 판결을 유지하였다.

이 사건에서, Helbig와 Holz는 공개적으로 Moon과 대화를 나누었다. Helbig은 카메라 앞에서 기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에게 Love씨가 사무실에 있는 일은 아주 가끔이었다고 말하였다. 게다가 기자의 조사가 오로지 Helbig 및 Holz와의 인터뷰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조사를 통하여 기자는, 1994년에 인디애나 주 예산 위원회가 클라크 카운티 측량기사 사무실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카운티 측량기사가 수석 대리인의 시간당 업무 기록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감사 결과 Isgrigg씨는 Love씨가 자세한 작업별 소요시간을 기록하도록 권고받았다. 주 정부 회계 위원회는 공무 수행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으면 그 종업원으로 하여금 봉급을 카운티에 반납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였다. 또한 조사의 일환으로 기자는 Love씨 및 Isgrigg씨와 인터뷰를 하려고 하였으나, 두 명 모두 카메라로 녹화하는 인터뷰(on-camera interview)를 거절하였다.

기록을 검토해 볼 때, Love씨에 관한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피고들이 알았거나 그 허위성에 대하여 무모하게 무시한 채 행동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Moon은 Helbig으로부터 Love씨가 카운티를 위하여 일정하게 일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Holz로부터 Isgrigg가 Love씨에게 카운티 돈으로 월급을 주면서 그를 개인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진술을, 각 확보하고 있었고, 또한 1994년도 Love씨의 작업별 소요시간 기록용지는 공무 수행 시간과 개인 사업

수행 시간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있었다. 기자가 가지고 있던 증거 중 Love씨에 관한 자신의 주장이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유일한 자료는 Love씨 자신이 기록한 작업별 소요시간 기록용지라는 미약한 증거뿐이었다. 그리고 Love씨는 카메라로 녹화하는 인터뷰를 하자는 기자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Isgrigg씨가 카메라로 녹화하지 않는 인터뷰를 요구하였던 기록이 있으므로 기자가 만약 Isgrigg 또는 Love와 카메라로 녹화하지 않는 인터뷰에 합의하였더라면 시청자에게 좀 더 도움이 되었겠지만, 우리는 기자의 행동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부주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Love씨는 자신에 대한 허위고용 혐의에 대한 방송을 제작함에 있어 기자가 몇 가지 사항을 부정확하게 보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1) Love씨의 주장에 의하자면 일과시간 시작 이전에 촬영한 것임에도, 그가 카운티 측량기사 사무실에 있어야 할 시간에 그가 다른 곳에 있었다고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였고, 2) Love씨의 주장에 의하자면 실제 휴가를 얻은 날이었음에도, 그가 1998년 1월 23일 Isgrigg의 자격정지 관련 청문회에 참석하고도 그날분 급여를 카운티 예산에서 지급받았다고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논의의 편의상 Love씨가 주장하는 사실들이 진실이라고 가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정이 Love씨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Love씨의 의무는 기자의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Love씨의 책임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

들이 알았거나 혹은 그 진실성에 대하여 심각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그 보도에 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가졌다는 점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비록 기자가 휴가 중인 Love씨를 필름에 담고서 Love씨가 카운티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다고 시청자들에게 보도한 것이 부적절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껏해야 기자가 실수를 하였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그와 같은 사실은 그녀가 무모하게 진실을 무시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 Love씨가 카운티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믿음을 묘사하는 방편으로, 오전 8시 30분 이전의 Love씨의 모습을 이용한 것이 현실적 악의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결국 Love는 피고들의 현실적 악의를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로써 입증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원고 Isgrigg씨에 관한 약식재판 청구에 대하여 살핀다. Isgrigg씨는 피고들이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을 방영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1) 자신이 카운티 앞으로 발행된 930달러 짜리 수표를 자신의 개인 계좌에 입금해 두었다는 내용, 2) 그가 Love씨를 허위고용하였다는 내용, 3) 자신이 기자와의 인터뷰를 거절하였다는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한다. 앞에서 살핀 바와 마찬가지로 이유로 원고 Isgrigg씨도 위 2)항 및 3)항에 관하여 현실적 악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위1)항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TransAmerica라는 이름의 회사 대표인 Philip O. Sheridan이 클라크 카운티 측량기사 사무실로 보낸 1993년 5월 15일자 편지를 언급하였는데, 그 편지는 클라크 카운티의 완전한 지도 한 세트를 주문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자신의 주문에 대

한 대가로 930 달러를 편지에 동봉하였다. Isgrigg의 주장에 의하면, 클라크 카운티 측량기사 사무실은 그 용역을 완수할 만한 인력과 예산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Isgrigg는 카운티 측량기사 사무실이 TransAmerica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Bob Isgrigg & Associates의 직원들이 개인 사무실의 시간과 비용으로 그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Isgrigg씨는 카운티 측량기사 사무실이 방대한 업무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 즉 Isgrigg씨가 TransAmerica의 수표를 부당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피고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에 따르면, 기자는 Isgrigg씨가 Etak Navigation에게 보낸 1992년 5월 18일자 편지의 사본을 받았는데, 그 편지에서 Isgrigg씨는 Etak에게 카운티 측량기사 사무실이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Isgrigg씨는 Etak에게 그 업무가 자신의 카운티 사무실 자금을 고갈시키고, Etak이 지불한 돈은 카운티 측량기사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카운티 일반 자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Isgrigg는 편지에서, Etak의 수표를 편지에 동봉하여 반송한다고 하였다. 원고들은, Isgrigg가 Pinnacle Data Company에게 보낸, Isgrigg씨가 단순히 Pinnacle의 수표를 반송하고 Pinnacle에게 자신이 그 회사의 주문을 처리할 만한 가용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의, 1996년 6월 19일자 편지를 WAVE 방송사가 서류함에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편지는, 카운티 측량기사 사무실이 TransAmerica의 요청 업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는 점을 기자가 알고 있었고, 따라서

Isgrigg씨가 TransAmerica의 수표를 횡령하였다고 잘못 보도하였다는 원고들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자료로 보여진다. 그러나 기자가 이러한 서류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현실적 악의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첫째로 원고들은 기자가 Isgrigg씨의 편지를 읽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기자가 설사 그 편지들을 읽었다 할지라도, 그 편지들은 두 가지 다른 상황을 언급하고 있고, TransAmerica의 요청에 관하여는 다루고 있지 않다. 기자가 그 편지들을 Etak과 Pinnacle에게 확인하여 보았다 하더라도, 그녀는 여전히 TransAmerica의 수표에 관한 한 무엇인가 잘못이 있었다고 믿었을 것이다.

실제로, 기자는 TransAmerica의 수표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기자는 카운티 직원인 Melisa Love Fischer가 작성한 공식 서신을 읽었는데, 그것은 당초 TransAmerica가 클라크 카운티 측량기사 앞으로 발행한 수표의 수취인으로서 Isgrigg씨를 추가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 후 기자는 TransAmerica의 Sheridan과 접촉을 하였는데, 그는 그녀에게 위 회사가 지도를 주문하기 위하여 클라크 카운티와 교섭을 하였고, 클라크 카운티 측량기사인 Bob Isgrigg 앞으로 발행된 Trans-America의 930달러짜리 수표는 카운티에 입금될 예정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기자는 Phillip Sheridan으로부터, TransAmerica의 취소된 수표는 Bob Isgrigg & Associates에 의하여 배서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자는 Phillip Sheridan으로부터, TransAmerica에 의하여 발행된 실제의 수표는 연방 수사국에 의하여 영장이 발부되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자는 Sheridan과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녀의 노트가 그녀의 공증 진술서의 내용을 뒷받침하였다.

원고들은 "TransAmerica가 '클라크 카운티 측량기사인 Bob Isgrigg' 앞으로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그 수표가 Bob Isgrigg & Associates의 구좌에 입금되었다."는 피고들의 보도 내용에 관하여 다룬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들의 보도 내용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다. 원고들은 우선 Isgrigg의 개인 사무실 직원들이 TransAmerica를 위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원고들은 TransAmerica가 용역 업무의 대가로 보낸 수표가 '클라크 카운티 측량기사' 앞으로 발행되었던 점을 지적한다. 원고들은, 따라서 Isgrigg가 Melissa Love-Fisher로 하여금 TransAmerica에게 수표의 수취인란에 Bob Isgrigg의 이름을 추가한 후 보내 달라는 내용의 메모와 함께 그 수표를 TransAmerica로 반송하도록 하였고, 그 후 TransAmerica가 Bob Isgrigg의 이름을 수취인란에 추가한 다음에, 그 수표가 Bob Isgrigg의 구좌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논의의 편의상 원고들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진술이 현실적 악의에 대한 원고들의 입증책임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비록 원고들이 사건의 경위를 단계별로 설명하였지만, 원고들은 Isgrigg씨가 수표를 자신의 개인 사업용 구좌에 입금시킨 것이 정당하였다는 점을 피고들이 알고 있었다거나 알았어야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Isgrigg씨는 실제로 그가 카메라로 녹화하는 인터뷰만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Isgrigg씨가 기자의 인터뷰 요구를 거절한 것처럼 부정확하게 보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고자 한다. Isgrigg씨는 인터뷰가 비디오로 녹화되지 않는다면 인터뷰에 응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허위고용과 절도에 관한 피고들의 보도에 현실적 악의가 있었다는 점을 원고들이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바 있다. Isgrigg씨의 위와 같은 주장이 있다 하여 그 부분에 관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Isgrigg씨가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내용을 기자가 보도한 것은 사실이다. Isgrigg씨가 단지 카메라로 녹화하는 인터뷰를 거절하였다는 것을 기자는 분명히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1998년 2월에 Isgrigg씨가 피고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인터뷰도 거절하였다는 것이 인정된다. 나아가,

기자가 카메라 녹화 상태에서 Isgrigg씨에게 답변을 요청하였을 때, Isgrigg씨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텔레비전은 영상매체이다. Isgrigg씨의 인터뷰 요청은 그가 제시한 조건에 따르도록 정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피고들이 얻고자 한 인터뷰는 아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Isgrigg씨가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보도 내용을 허위로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은 현실적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명예훼손 청구에 관한 피고들의 약식재판 청구를 받아들인다.

출처 : Media Law Reporter 30권 pp.1331-1339

번역 : 장상균 (서울고등법원 판사)



외국신문

신청인의 인터뷰 내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였으므로 불만신청은 정당

Veronica씨는 2001년 10월 8일자 Woman's Own지에 게재된 "피와 땀과 눈물"이란 제하의 기사가 보도실천강령 제1조 정확성에 위배되었다며 PCC에 불만을 신청했다. 불만신청은 수용되었다.

신청인은 한 유아용 식품회사가 실시한 아동식품 욕구와 관련한 조사에서 어머니 집단의 패널로서 2주일 한 번씩 자원봉사활동을 하였다. 신청인은 식품회사측이 바뀐 신문사 프리랜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조사 관련 모임이 있는 동안에는 탁아소에서 자녀들을 돌보아 왔으며, 조사 대가의 일부로서 이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과자봉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문제의 기사는 신청인이

회사측 조사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자신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상품을 시식 하도록 했을 것이라는 암시를 던져주는 보도를 하였다고 기사의 부정확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다.

언론사측은 신청인이 문제삼고 있는 기사의 내용은 명백한 사실이며, 호의적인 시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신청인은 기자에게 회사측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건본 상품을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언론사측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물증이 없으며, 신청인은 이러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의 불만이 제기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언론사

측은 신청인의 아들이 새로운 제품을 실험적으로 시식했다는 부적절한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견해를 담은 불만 신청인의 편지를 게재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러한 제안을 거절했다.

평 결

보도실천강령은 기사의 심각한 부정확성이나 독자를 오도케 하는 내용은 즉시 정정되어야 하며, 정당한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PCC는 회사측이 제공한 새로운 제품을 신청인의 자녀가 시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기록이나 인터뷰 녹음 테이프 등을 언론사측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언론사측은 이러한 보도내용을 즉시 정정하여야 했지만 그러하지 못했다. 또한 보도가 있는지 1개월이 지나서야 신청인의 편지를 게재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였으므로 신청인의 불만 신청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

영국사례 2

폭로 기사를 게재하면서 당사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 없이 부정적인 내용을 암시하였으므로 잘못

Railtrack사 공보담당관인 Kevin Groves씨는 Independent지의 2002년 1월 29일자 의 헤드라인 기사가 보도실천강령 제11조(오해)를 위배하였으며, 후속기사는 부정확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어 보도실천강령 제1조(정확성)를 위반한 것이라며 PCC에 불만을 제기했다. 불만신청은 수용되었다.

문제의 기사는 유명작가가 담배회사에 유리한 기사의 작성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내용이다. Independent지 기자는 유명작가가 이와 유사한 또다른 작업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회사에 전화문의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Independent지는 Railtrack사 여성대변인은 이러한 제안이 당혹스러웠다고 밝혔지만 유명작가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작가는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기는 했으나 회사에 긍정적인 기사 작성의 대가로써 돈을 지급할

것을 은밀하게 제안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즉시 Independent지의 편집인과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항의했으며, Independent지측은 Railtrack사의 공보담당에게 사과를 표명하며, 신문사측은 회사가 호의적인 기사의 대가로서 돈을 지급할 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신청인은 Railtrack사가 작가에게 지급한 돈을 다시 받았다는 신문기사는 잘못된 서술이며, 부정한 제안에 대해 회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암시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신문사측은 취재기사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결과라며 반박하였고 기사가 속임수에 의

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며 회사측의 입장을 담은 편지 게재를 제안하지 않았다.

평 결

신청인의 불만이 사소해 보일지라도 기자가 어떻게 취재 정보를 얻었는가에 대해서 원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PCC는 신문사가 가벼운 마음으로 취재를 시작했으나 실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보도실천강령의 위반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Railtrack사의 공보실에 대한 오해를 가져온 점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불만신청을 수용하면서 PCC는 Railtrack사가 기사 게재 전에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문제의 기사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일부 독자에게 Railtrack사가 작가의 부정한 제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암시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

호주사례 1

주의회 의원의 해외시찰 및 시찰보고서를 왜곡 보도한 것은 잘못

호주신문평의회는 Victorian주의회 의원인 Graeme Stoney씨

가 멜버른에 소재한 The Herald Sun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

청을 수용하였다. 피신청인은 Graeme Stoney의원이 휴양철도와 국립공원 등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시아와 유럽 등지를 여행한 사실에 대해 보도하였다.

신청인은 “유흥을 위해 지불된 세금” 제하의 문제의 기사내용은 그의 연구목적의 여행에 대해 부정확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의 시찰보고서의 일부만을 취사선택하여 보고서 자체를 평범하고 가치없는 것으로 평가절하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의 이번 여행은 의회복지협회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었다. 더 나아가 문제의 기사 내용으로 인해 다른 두 개 신문사에서 자신의 시찰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게 되었다고 분노를 터트렸다.

신청인은 Victorian주 철도위원회를 구성한 점을 강조했고 Victorian주의 관광산업에 식견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히 시찰 전에 수개월 동안 철도와 철도망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the Herald Sun지는 이러한 배경과 시찰목적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기사는 신청인이 여행에서 돌아온 지 6개월 후 의회도서관에 보고서를 제출한 뒤 게재되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남세자들은 스코틀랜드 고

지인(高地人)이 입는 격자무늬 치마와 백파이프가 여전하며, 스코틀랜드 기념품이 저속한 품질로 전락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칵테일 가격이 올랐고 싱가포르 의회에 비치된 호주 신문이 시간이 지난 것이었다는 사실을 Graeme Stoney 주의원이 깨닫게 하기 위해 23,000달러를 모아준 셈이라고 힐난하고 있다.

신청인은 The Herald Sun지의 기사는 정치인들은 하찮고 가치없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값비싼 여행을 하고 있다는 대중의 인식을 고착화시키기 위해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청인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신문평의회는 이 보고서가 5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직접 얻은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서 내용의 상당 부분은 싱가포르, 영국 그리고 스코틀랜드와 북부 독일의 국립공원과 철도망 구축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의 보고서는 기술적 측면을 다룬 6개의 부록이 100여 페이지가 넘었으며, 철도망과 보도(步道)와 관련하여 4개의 부록을 싣고 있다.

신청인은 기사내용의 상당부분의 부정확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다. 신문사측은 신문평

의회의 조정과정에서 신청인의 보고서에서 북부 독일에 소재한 국립공원을 도보여행했다고 서술하고 있는 부분을 신청인은 “독일에서 사냥 여행을 했다”고 기사화한 것에 대해서는 그 오류를 인정했다.

신문사측이 잘못을 인정한 이 점에 대해 신청인은 유권자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신문사측의 잘못이 인정된 또 다른 부분은 신청인이 싱가포르 의회에 최근 호주신문이 부족한 데 대하여 애석해 하였다는 기술이다. 신청인의 보고서에는 “싱가포르 의회에 호주신문이 없었는데 최근 발행된 호주신문이 없는 것은 런던에 있는 호주상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신청인의 보고서가 발행된 지 거의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The Herald Sun지는 앞서 언급한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정정보도를 했다.

하지만 신청인은 자신의 신뢰를 앗아간 보다 많은 부분의 기사 내용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신문사측의 위와 같은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 신청인이 만족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평의회는 판단했다. □

호주시례 2

의견이나 논평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지만 종교나 인종에 관해서는 특히 사실에 근거해야

호주신문평의회는 이슬람 이민자들이 종교적 갈등을 선동하고 호주사회의 심각한 범죄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언급한 Canberra City News지의 칼럼 기사에 대한 불만신청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Michael Cove씨와 Mark Dossetor씨는 익명으로 작성된 The Whip이라는 칼럼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였다.

신청인들은 칼럼에서 담고 있는 논평은 부정확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며 인종차별적이고 사회집단 갈등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칼럼은 도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국적 혹은 지역적으로 뉴스가치가 있는 소재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기사는 개인적인 화제들을 통해 서로를 연결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상호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

문제의 칼럼은 이슬람 이민자들은 결코 쉽게 호주인으로 동

화될 수 없다고 단정짓고 있다. 또한 시드니의 일부 지역에서 기독교신자 소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폭행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거나 창이 어깨까지 덮는 발라크라바 모자를 쓴 네 명의 남자가 빌딩 안에 있는 100여 명의 사람을 죽이기 위해 캔버라 유대교회로 순찰차에 폭탄을 싣고 질주했으며, 회교국의 종교적 원수는 호주 이슬람 사원에서 선동적인 설교를 늘어놓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호주신문평의회는 모든 신문 기사에 대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자 하지만 이 사건 기사와 같이 의견 내지 논평의 범주에 있는 칼럼의 경우 필자의 관점을 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남겨 두고자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누림에 있어, 사실에 근거한 관점을 가지고 논평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다. 이러한 원칙

은 특히 논평의 내용이 종교나 인종문제와 관련하여 사회 구성원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사건을 다루고자 할 때는 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칼럼에서 이슬람교인이 유대교회 폭파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은 호주사회 내의 다양한 집단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범주에서 불만신청은 수용되었다.

불만이 제기된 칼럼의 논평 부분은 신문사측이 신청인과 접촉할 때 거만하며, 경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신문평의회는 신문은 비록 독자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을지라도 때로는 도발적이고 다소 강경한 견해 등 다양한 시각을 견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신념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권리는 남용되어서는 안되며, 추측에 근거하여 감정적인 의견 표명으로 나타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

언론과 법

언론소송과 판결

오홍근 씨, 조선일보 상대 손해소

오홍근 전 청와대 공보수석(한국가스 안전공사 사장)은 21일 "내가 언론탄압에 앞장선 것처럼 왜곡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오 전 수석은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지난 2월 기사와 사실을 통해 본인이

언론탄압에 앞장선 공로로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임명된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정홍보처장 재직 시절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조선일보 등에 반론보도청구를 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국정홍보처장으로서 당연한 업무"라고 주장했다.

오 전 수석은 "법적 대응 여부를 논

고 심각히 고민했으나 88년 군사문화 청산을 주장하는 기사를 썼다가 테러까지 당한 본인이 언론탄압 당사자로 오해받고 있어 본인과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2. 5. 21

MBC, 연제협 보도 승소

MBC '시사매거진 2580'의 '연예인 노예계약' 관련 보도로 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와 갈등을 빚었던 MBC가 연제협 측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잇따라 승소했다. 이에 따라 MBC와 연제협과의 갈등은 1년여 만에 MBC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연제협 소속 연예기획사인 예당엔터테인먼트가 MBC를 상대로 제기했던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허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며 MBC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연제협이 이상호 기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소송은 지난 3월 무혐의 처리됐으며, 함께 제기했던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연제협측이 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연제협 및 연예기획사와 MBC간의 소송은 SM엔터테인먼트가 이 기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만 남아 있으나 소취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외에도 MBC출연을 거부한 가수 김건모 씨의 제릴라 콘서트 불방과 관련, MBC가 김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으나, 김씨가 실질 피해금액 1억원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지난 13일 소를 취하함으로써 연제협 파동으로 불거진 소송들이 대부분 일단락됐다.

기자협회보, 2002. 5. 22.자(7면)

허위 여론조사 보도 지방지 기자 구속

전주지검은 15일 허위로 작성된 여론조사를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로 전북 전주의 일간지 C일보 정치부장 정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3월 초 전북 전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같은 달 4일자 1면에 보도한 혐의다.

검찰은 또 유명 여론조사기관인 'MK리서치' 명의로 '전주시장 후보 지지여론 설문조사'를 실시해 정부장에게 제공한 건설업자 서모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여론조사 설문지 1000여 장의 작성자 필체가 모두 같고 보도를 의뢰한 건설업자 서씨가 출마예상자 이모 씨의 동생 친구인 점 등으로 미뤄 설문조사가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신문과 보도를 의뢰한 건설업자들간의 대가성 여부와 설문조사의 배후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 신문은 3월 4일자 1면에 '전주시민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직 시장과 이모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2002. 5. 16.(A31면)

'국민의 알 권리' 반신론범죄자 명예에 수선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이전에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하더라도 반인륜적 범죄일 경우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13일 조모 씨 등 2명이 "경찰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공표,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

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조씨 등에 대한 혐의를 공표할 시점에는 피의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고, 이들의 범행내용도 사회적 대책 강구 등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였다는 점에서 공소제기에 앞서 피의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

된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 98년 4월 채무자 장모 씨에게 생명보험에 들게 한 뒤 자살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빚 변제를 독촉한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구속됐다가 재작년 3월 서울고법에서 자살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2002. 5. 13.

국방부, FX사업관련 동아일보에 손해소 제기

김동신 장관과 국방부 관리 3명은 30일 "공군의 FX기종 선정과 관련, 월간 신동아에 실린 기고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동아일보사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문 게재와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장관 등은 소장에서 "동아일보사가 신동아 2002년 4월호에 '성능이 우수한 라팔전투기 구매를 희망하는 공군을 소

외시키고 미국 보잉사에 휘둘러 교묘하게 고안된 기종평가 및 결정방법을 통해 고물이 된 F-15기를 선정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고문(공군 소위 '육방부' 주도)을 게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측은 "기고문 내용은 공정성이 의심되어온 FX사업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였다"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김 장관 등은 "신동아 4월호의 발행을 막아달라"며 출판물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신동아 4월호가 이미 지난달 중순에 전국에 배포 완료됐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15일 신청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2002. 4. 30.

동아일보 '표절' 특집기사, '표절' 시비로 법정행

표절을 고발하는 신문 기사가 스스로 '표절' 시비에 휘말리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동아일보 5일자 A8면에 실린 창간특집 '페어플레이의 적들 (5)표절' 기획의 일환으로 실린 '지재권 선진국은 어떤가' 제하의 글. 이 글은 '이진(재미교포·미국에 관한 77가지 진실)'의 저자'이라는 필자 이름과 사진을 포함하여 기고문 형식으로 편집돼 있다. 그러나 정작 이진 씨는 기고를 한 적 없고, 자신의 책 내용이 '무단표절'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지난 17일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이씨는 "사전에 아무 통고나 허락 요청도

없이 내 책 '미국에 관한...'에 실린 내용을 임의로 짜깁기해 편집을 하고서도 마치 내가 직접 글을 쓴 것처럼 왜곡했다"며 "남의 글을 표절하는 것이 '페어플레이의 적'이라고 규정한 기사를 실으면서 정작 자신들은 남의 글과 사진을 도용하다니 법적인 책임을 묻기에 앞서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씨는 "미국에서 이 사실을 뒤늦게 접하고 내용증명으로 해명 및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며 "이제라도 동아일보가 사과문 게재, 피해 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기사를 담당한 허문명 기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하

고 글을 실게 된 것은 일단 잘못된 일"이라며 "하지만 해명과 사과를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허기자는 "이씨와는 교교 동창 사이로, 그의 책을 소개하는 것이 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선의에서 출발한 일"이라면서 "신문에 글이 실린 전후로 그의 연락처를 알지 못했고, 나도 그 사 이에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바람에 빨리 연락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며, 통화가 되었을 때 '미안하게 됐다'는 말을 전했었다"고 말했다.

이진 씨는 현재 미국 웨스트턴 켄터키대학 '국제언론·미디어경영프로그램'에서 '언론윤리' 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며, '미국에 관한...'을 비롯해 4권의 책을 냈다

미디어오늘, 2002. 4. 18(1면)

아가동산 김기순 씨 일부 승소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18일 아가동산의 김기순 씨가 “허위사실을 기재한 기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독교계 모 잡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김씨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 잡지사측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기사에서 김씨 반대세력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김씨의 사생활을 언급한 부분은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를 ‘사이비종교집단의 교주’로 묘사한 부분은 사회의 질서, 윤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작년 6월 기독교계 월간지 등을 발행하는 이 잡지사가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2002. 4. 18.

윤태식 씨 상대 사기, 빚송사 전 PD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현 부장판사)는 11일 수지김사건 의혹 관련 프로그램 방영을 막아주겠다며 윤태식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모 방송사 전PD 정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로부터 패스21 주식을 받은 K금고 사장 김모 씨에 대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6천9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범죄사실이 전체적으로 인정된다”며 “다만 사기금액이 5천만원대로 그리 크지 않고 전액 변제해 윤씨측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0년 1월 윤씨에게 “담당 PD에게 말해 수지김 사건 의혹을 다룬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현금 2천만원과 패스21 주식 100주, 법인카드 등 모두 5천여 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씨는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시가 2억5천만원 상당의 패스21 주식 5천주를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2002. 4. 11.

정통부, MBC에 반론보도 청구

정보통신부는 11일 “디지털TV 전송방식 선정에 관해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보도를 했다”며 MBC를 상대로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반론보도심판을 청구했다.

정통부는 청구서에서 “MBC가 시사매거진 2580 ‘그래도 미국식인가’편에서 자체실한 비교실험 결과를 근거로 미국식이 우수하다고 보도했다”며 “하지

만 당시 실험과정에 대한 정통부 감리위원들의 많은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실험이 공정하게 이뤄진 것처럼 편향된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17일 방송된 시사매거진 2580 ‘그래도 미국식인가’편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수성이 입증된 유럽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 정통부만이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 미국식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22일 언론중재위는 정통부의 신청을 받아들여 직권중재로 MBC가 반론보도를 하도록 결정했으나 MBC가 이를 거부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2002. 4. 11.

동아일보, MBC에 복분승소

서울지법 민사합의 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10일 동아일보사가 “본사가 특혜성 주식투자를 했다는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정정방송을 하라”며 원고 부분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화방송이 뉴스보도를

통해 ‘동아일보가 한통프리텔 주식 174만주를 액면가의 절반선에 사들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 동아일보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원고가 언제라도 자사 신문을 통해 올바른 사실을 알리고 피고를 비판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손해배상보다는 정정보도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96년 PCS사업자 컨소시엄에 참여, 액면가 5천원인 한통프리텔 주식 50만주를 주당 8천900원선에 사들였다가 작년 1월 문화방송측이 “동아일보가 언론사의 힘을 이용, 한통프리텔 주식을 액면가 이하에 사들여 채테크했다”고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2002. 4. 10.

권노갑 씨, 조선일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민주당 권노갑 전 최고위원은 8일 자신의 정치자금 살포 의혹을 보도한 기사와 자택 내부 회의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한 조선일보 편집국 간부와 기자 등 4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고, 조선일보사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는 5

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권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일보가 지난 6일자 1면에 ‘권노갑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자택에서 측근들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논란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붙인 사진을 관련 기사와 함께 게재한 것은

편파 허위 보도로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모임은 지난 2월 하와이 동서문화센터에서 주관한 동북아경제포럼 세미나에 참가한 결과를 자료로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02. 3. 8.

성남시장과 검사사칭 통화, PD 구속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 정성운 검사는 1일 수사 중인 지방자치단체장과 검사를 사칭해 통화한 혐의(공무원자격사칭)로 모 방송사 PD 최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0일 김병량 성남시장과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

면서 자신을 ‘모 검사’라고 지칭, 김 시장으로부터 시민단체 고발사건 등과 관련된 진술을 이끌어내 녹음한 뒤 이를 제보 받은 것처럼 제작, 방영한 혐의다.

최씨는 “김 시장과 통화한 적이 없으며 녹음테이프는 제보자로부터 건네받아 방송한 뒤 돌려줬다”고 혐의를 부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내용의 녹음테이프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이모 변호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이날 소환했으나 이 변호사는 편파수사 등을 주장하며 소환연기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2002. 6. 1.

언론사 고문 변호사 현황 조선일보 상근 변호사제 도입

문제가 될만한 기사를 사전 열람해 명예훼손 소송에 대비하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제도가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송 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기자들은 자문 변호사 수를 늘리거나 상근 변호사를 채용해 기사 사전 열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일부 언론사들은 외국처럼 상근 변호사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적게는 1명, 많게는 3~5명 정도의 고문·자문 변호사를 선임해 사전 기사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MBC는 5명의 자문 변호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순번제로 출근해 오후 6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9시 뉴스데스크의 모든 기사를 열람하고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을 점검하고 있다. SBS는 보도와 관련, 3명의 자문 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도국 기자들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이 있는 기사에 대해 전화나 팩스로 자문을 받는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은 1명의 고문 변호사를 두고 사전 기사열람을 의뢰하고 있다. 한겨레도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어 민감한 기사에 대해서는 사전 열람을 의뢰하고 있다.

국민일보, 대한매일 등은 기사 사전 열람 대신 소송이 발생할 경우 사후 처리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나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다. 따라서 이들 언론사들은 장기적으로는 상근 변호사제를 도입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가 지난 1일 김태수 변호사를 상근으로 채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변호사는 매일 오후 조선일보 독자서비스센터로 출근해 조선일보 가판 기사의 사전 열람을 담당한다. 또 독자서비스센터에 접수되는

법률문제 검토, 반론·정정보도 게재 여부, 독자권익보호위원회 소집 여부 등을 판단하는 일도 함께 진행한다. 조선일보는 이번에 상근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기존의 기사 사전 열람 변호사를 7명에서 5명으로 줄였다. 상근 변호사가 가판 전체를 점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대부분 걸러질 것으로 판단, 가판 이후의 기사를 열람하는 변호사는 5명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독자서비스센터 이항수 기사는 “법률적 더듬이나 사소한 실수 등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사전 기사 열람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 변호사를 채용했다”며 “변호사가 매일 출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기사에 대해 편집국에서 바로바로 상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기자협회보, 2002. 4. 3.(7면)

청와대 정부수석, "동아·조선일보 제소"

청와대 이만영 정부비서관은 21일 자신이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을 통해 최규선 씨에게 '밀항을 권유했다'는 보도와 관련, 동아·조선일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일부 언론이 검찰에 구속된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

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함으로써 본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서 "일단 2개 신문에 대해 22일 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또 "최규선 씨가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 만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의 경위 조사 결과 이 비서관에 대한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2. 4. 21.

돈받고 영화홍보한 기자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3단독 하현국 판사는 10일 영화사로부터 돈을 받고 홍보성 기사를 써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스포츠서울> 전 편집국장 이기종 씨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아무개 기자 등 2명에게 각각 1천만원~800만원의 벌금형과 추징금 1050만원~600만원을 선고하고, 돈을 건넨 영화사 관계자 최아무개 씨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1998년~2000년 연예부장관과 편집국장으로 일하면서 영화사 등으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실어주는 대가로 1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겨레, 2002. 4. 11.

제주 4·3유족회, 월간조선에 11억 소송

제주도 4·3희생자유족회(4·3유족회) 이성찬 회장 외 유족 446명은 월간조선 2001년 10월호 여순사건 관련 기사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달 28일 월간조선사와 조갑제 대표, 취재기사를 상대로 11억1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주 4·3사건 관련 보도에 대해 유족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유족들은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이제껏 정부에 의해 왜곡되어 왔던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기만을 고대해왔는데 월간조선은 기존 평가

마저 부풀려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4·3유족회는 소장을 통해 "월간조선이 <한국전쟁사>라는 책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을 인용해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제주4·3무장폭동'이라고 보도, 이를 정부 내지 국방부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독자들을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4·3유족회는 "'<한국전쟁사> 어디에도 '북의 지령을 받았다'거나, '무장 폭동'이라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하고 "영화 '애기섬'을 제작한 감독과의 인터뷰에서도 '제주 4·3폭동은 북의 지령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규정해 유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월간조선은 '여수 14연대 반란진압을 양민학살로 몰고 간 영화 애기섬 제작에 군 장비가 지원된 과정' 기사에서 <한국전쟁사>를 인용, 4·3사건을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10총선을 반대하라는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으로 규정했다.

또 인터뷰 기사에서 기자 질의를 통해 "제주 4·3폭동은 유엔의 결의에 의해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는 5·10선거를 반대하라는 북의 지령에 따라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기자협회보, 2002. 4. 3.(2면)

심은하 씨, 스포츠지 상대 손해소

작년에 은퇴를 선언한 영화배우 심은하 씨가 1일 "과거에 사귀 적이 있는 정모 씨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기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모 스포츠신문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심씨는 소장에서 "과거에 사귀 적이 있던 정모 씨와는 이미 헤어졌을 뿐 아니라 다시 만날 생각이 추후도 없는데

도 사실확인절차를 생략한 채 마치 정씨와 연인관계로 돌아갈 것처럼 허위 기사를 작성, 인격과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02. 6. 1.

MBC, 시청자에 보상금 지급

국내방송사상 처음 출범한 MBC '시청자 주권위원회'가 최근 초상권 등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유로 2명의 시청자에게 위로금 차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MBC 시청자주권위원회(위원장 서규석)는 최근 정기회의를 열어 지난 1월 8일「아침뉴스」 '현장포커스'에서 신세대 사이에 유행하는 '부적속옷'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진을 사전동

의없이 방송했다고 이의를 제기한 2명의 시청자와 중재를 거친 끝에 각각 150만원,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MBC의 이번 결정은 시청자 주권시대에 명실상부하게 부응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피해보상에 나선 첫 번째 사례로 향후 국내방송의 시청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주목된다. MBC측은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시청자 피해에 대해 금전 보

상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시청자 불만을 앞으로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MBC 시청자주권위는 올들어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며, 보도 및 프로그램으로 인해 초상권 침해 등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누구나 이 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02. 3. 19.

한국일보, 2002. 3. 20.

공적신 존재의 정치적 이념은 철저히 공개, 검증돼야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안영률 부장판사)는 10일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인민위원회'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자유시민연대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등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유시민연대가 학교운영위를 사회주의 국가의 행정기관인 인민위원회로 비유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자유로운 문제 제기와 토론이 허용돼야 하므로 다소 과장된 의견 표명이 있다고 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은 철저히 공개, 검증돼야 하며 광범위한 문제 제기와 공개토론을 통해 관련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언론의 자유는 인격 보호보다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지난해 6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사립학교법 재개정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유시민연대 등이 일간지에 '지금은 인민위원회의 사학접수 전야, 사학을 난장판으로 만들자는 건가'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해 이를 비판하자 소송을 냈다.

동아일보, 2002. 4. 11.

인터뷰위해 무단침입 PD 벌금형

서울지법 형사9단독 박태동 부장판사는 15일 취재 과정에서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인터뷰를 하려 했다가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모 방송국 PD 윤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부장판사는 "윤씨의 행위가 업무상 취재에 해당하고 취재내용이 진실이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주거 침입은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고 진실여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씨는 98년 모 신흥종교 여신도들이 교단 간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고 관계자 집에 허가 없이 들어가 인터뷰를 시도했다가 약식기소됐다.

동아일보, 2002. 3. 16.

방송순서파라 반론보도 방송 적법

대법원 1부(주심 박재은 대법관)는 3월 12일 만민중앙교회가 문화방송 PD수첩의 이단파문 보도와 관련, "반론보도문을 제때 방송하지 않았다"며 방송사측을 상대로 낸 집행문 부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교회측의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방송이 9시뉴스를 국제축구경기 중계방송 관계로 정규시간이 아닌 밤 10시 43분에 방영했고, 뉴스 프로그램 제목을 방송한 후 광고방송에 앞서 반론보도문을 방송

했지만, 방송순서에 따라 정해진 반론 보도문을 방송한 것이 인정되므로 반론 보도의 효과를 해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2. 3. 17.

경남지방토론회 개최

위원회는 5월 10일 경남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 대회의실에서 경남지방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경남지역 언론계, 법조계, 학계, 관계, 사회단체 인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언론보도의 면책요건과 한계”라는 주제논문을 발표한 이병섭 위원은 언론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언론이 지닌 사회적 기능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므로, 언론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보도에 의한 침해행위가 면책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언론이 기사를 작성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면책요건과 한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박춘서 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경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도과정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 기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감 있는 언론의 자체노력 요구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9집 발간

최근 국내 언론관련 판결을 담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9집이 6월 30일 발행되었다. 이번 제9집에는 2001년도부터 올해초까지 있었던 상하

급심 판결 가운데 반론보도청구사례와 손해배상 청구사례를 중심으로 총 27건의 사건을 수록하였다.

강원 및 부산지역 언론사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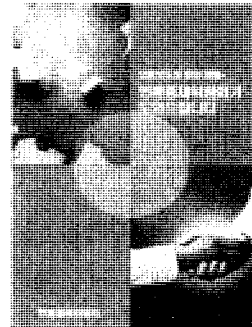
박영식 위원장은 4월 23일 강원지역 언론사 대표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5월 9일에는 부산지역 언론사 대표들을 초청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피해발생시의 신속한 구제에 관해 논의했다. 강원간담회에는 언론계에 서 최승익 강원일보 사장, 안형순 강원도민일보

사장, 변원일 KBS춘천방송총국장, 박기병 강원민방 사장, 이영선 CBS춘천방송본부장이, 부산간담회에는 이종덕 국제신문 대표이사, 이봉희 KBS부산방송총국장, 김 영 부산MBC 사장, 김성조 부산방송 사장, 이계영 CBS부산방송본부장이 참석하였다.

언론중재 홍보책자 제작, 행정기관 민원실 및 도서관 등에 배포

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발생시 민원인들이 보다 손쉽게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신청절차 등을 상세히 소개한 홍보책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 언론중재위원회가 도와 드립니다> 4,000부를 제작. 각 시·도, 시·군·구청 민원실과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지에 배포했다.

이 책은 언론중재 신청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해 그림과 도표 등을 활용하여 기술하고,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중재사례를 청구권별로 예시하는 등 일반인들이 중재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사무처 직원 집체연수교육 실시

위원회는 직원의 심신단련과 연대의식함양을 위해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천안 상록호텔에서 직원집체연수교육을 실시했다.

27일에는 김병조 씨(조선대 사회교육원 강사)를 초청하여 "현대생활과 명심보감"이란 주제로 강의

를 들었다. 이어 축구, 발아구 등의 체육활동을 실시했다. 28일에는 독립기념관을 찾아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한민족의 역사와 불굴의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신임 중재위원 박영상 위원 위촉

5월 17일, 박영상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장이 신임 중재위원으로 위촉됐다. 박위원은 서울제2중재부에서 중재심리를 맡게 되었으며 임기는 2005년 3월 30일까지이다.

사무처 인사

위원회는 2002년 5월 1일부로 아래와 같이 사무처 인사를 실시했다.

전북사무소장 최 영 훈
기획실 총무팀 안 백 수

권혁남, 『미디어 선거의 이론과 실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서정우, 『현대신문학』, 나남, 2002.

이상철, 『언론문화론』, 일지사, 2002.

임동욱, 『언론개혁의 15가지 쟁점과 논의』, 박영출판사, 2002.

강경근, “선거제도는 언론자유 실현수단으로 기능해야”, 『열린 미디어 열린 사회』, 2002년 봄호.

강남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과 가이드라인”, 『방송 21』, 2002년 4월호.

강태영·이호규, “방송과 통신 경계영역 서비스에 대한 법제적 문제점”, 2002년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권기훈,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관한 판결례 검토”, 『언론중재』, 2002년 봄호.

권혁남,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공표금지는 유권자 모독”, 『열린 미디어 열린 사회』, 2002년 봄호.

김경호,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과 사이버 상에서의 성(性) 표현의 허용범위 : 매체적 특성에 근거한 새로운 접근”, 『한국언론학보』, 2002년 봄(46-2호).

김경호, “언론매체로서의 인터넷과 정치토론 그리고 법적 이슈 : 오마이뉴스 사례를 중심으로”, 2002년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김기중, “판결에 나타난 선거보도의 문제점”, 『언론중재』, 2002년 봄호.

김동규,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 표명”, 『언론중재』, 2002년 봄호.

김상배, “언론과 공인의 윤리적 문제와 명예훼손”, 한국

언론법학회 제1회 학술심포지엄 〈한국언론의 현황과 공인의 명예훼손〉 발표논문, 2002. 6. 3.

김서중, “언론자유와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 『언론중재』, 2002년 봄호.

김서중, “정보화시대의 통신사와 정보주권”, 전국언론노동조합 / 한국기자협회 주최, 〈미디어환경 변화와 연합뉴스시법〉, 2002. 5. 16.

김승수, “신문소유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2002년 봄(46-2호).

김영욱, “한국 언론환경 변화와 뉴스통신사의 역할”, 전국언론노동조합 / 한국기자협회 주최, 〈미디어환경 변화와 연합뉴스시법〉, 2002. 5. 16.

김영호, “신문-방송-인터넷 선거보도 통합 심의기구 필요”, 『열린 미디어 열린 사회』, 2002년 봄호.

김우룡, “TV 옴부즈맨 프로그램과 편성의 자유(하)”, 『방송문화』, 2002년 5월호.

김재협, “보도 현장사진 게재의 한계”, 『신문과방송』, 2002년 4월호.

김재협, “‘동아일보 대 MBC’ 명예훼손 소송 판결의 의미”, 『신문과방송』, 2002년 5월호.

김정곤, “디지털시대 방송저작권”, 『방송문화』, 2002년 5월호.

김창룡, “언론판례법리로 본 진효정, 송인혜 살인사건”, 2002년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김택환, “외국의 선거보도”, 『관훈저널』, 2002년 봄.

김호열, “선거보도의 법률적 한계”, 『관훈저널』, 2002년 봄호.

남시욱, “정간법 개정안의 문제점”, 『관훈저널』, 2002년 봄호.

- 박무익, “선거여론조사의 역사와 의의”, 한국방송협회 주최 <방송과 선거> 세미나, 2002. 5. 2.
- 박선영, “한국 언론의 특성과 2000년 이후의 언론소송분석”, 한국언론법학회 제1회 학술심포지엄 <한국 언론의 현황과 공인의 명예훼손> 발표논문, 2002. 6. 3.
- 배금자, “집단소송으로서의 명예훼손의 문제점”, 한국언론법학회 제1회 학술심포지엄 <한국언론의 현황과 공인의 명예훼손> 발표논문, 2002. 6. 3.
- 백선거, “선거보도 - 상대방 비방하는 ‘폭로 저널리즘’ 막아야 한다”, 『방송21』, 2002년 4월호.
- 성동규, “스포츠신문의 연예인보도와 인격권 보호”, 『언론중재』, 2002년 봄호.
- 성선제, “온라인상 명예훼손의 문제점”, 한국언론법학회 제1회 학술심포지엄 <한국언론의 현황과 공인의 명예훼손> 발표논문, 2002. 6. 3.
- 안영섭, “사설의 특정 후보지지”, 『관훈저널』, 2002년 봄호.
- 엄기열, “미 수정헌법 1조에 대한 해석의 문제”, 『신문과 방송』, 2002년 5월호.
- 유일상, “인용(Quotation)과 사실성의 구현”, 『관훈저널』, 2002년 봄호.
- 이병섭, “언론보도의 면책요건과 한계”, 언론중재위원회 경남토론회 주제논문, 2002. 5. 10.
- 이용균, “취재원 서열 정형화와 뉴스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2002년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용식, “현장에서 본 선거보도의 문제점”, 『관훈저널』, 2002년 봄호.
- 이재진, “정치와 신문 만평 표현의 자유와 한계”, 『신문과 방송』, 2002년 5월호.
- 이준웅, “선거여론조사보도의 문제점과 공정성 확보 방안”, 『언론중재』, 2002년 봄호.
- 이효성,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을 위하여 : 인터넷 매체의 법적 지위와 선거보도의 문제에 관한 일고찰”, 『한국언론학보』, 2002년 봄(46-2호).
- 이효성, “언론의 후보지지를 위한 조건과 문제점에 관한 일고찰”, 2002년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 임상원, “비람직한 선거보도의 방향”, 『관훈저널』, 2002년 봄호.
- 장호순, “인터넷 대안언론의 선거보도”, 2002년 한국언론학회 ‘쟁점과 토론 2’ <선거보도의 변화와 개혁>, 2002. 4. 25.
- 정국진, “최근 방송저작권의 새로운 쟁점”, 『방송문화』, 2002년 4월호.
- 조성경, “선거 여론조사 보도의 개선방안”, 관훈클럽 / 한국언론학회 주최 워크숍 <선거여론조사보도>, 2002. 4. 19-4. 20.
- 조준원, “판결에 나타난 공인과 ‘현실적 악의’”, 『방송문화』, 2002년 4월호.
- 조준원, “위법적 취재관행, 그 질긴 고리와의 단절”, 『방송문화』, 2002년 5월호.
- 조준원, “반론문의 보도방법에 관한 판결”, 『방송문화』, 2002년 6월호.
- 한영학, “일본 언론윤리법제의 현주소-신문사의 제3자 기관의 설치상황과 실제”, 『언론중재』, 2002년 봄호.
- 한위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비교법제적 고찰”, 한국언론법학회 제1회 학술심포지엄 <한국언론의 현황과 공인의 명예훼손> 발표논문, 2002. 6. 3. □

On-Line 중재 상담실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 문의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얼마전 광주의 한 언론사로부터 사실무근의 부당한 기사 내용으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곳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려다가, 일단 먼저 해당 언론사에게 정정보도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때 해당 언론사가 저의 정정보도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며칠 이내에 정정보도를 해야 합니까? 해당 언론사가 저의 정정보도요청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까?



사실과 다른 신문기사에 대해 피해자가 해당 신문사에 직접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청구를 하였을 때, 일간신문사나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신문사의 경우 9일 이내에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게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신문에 정정보도청구를 하였으나 신문사가 9일 이내에 이를 게재하지 않았다면 신문사와의 직접 협의는 불성립한 것으로 보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위원회 광주중재부(062-676-0360)로 문의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하여

저는 전라남도 신안군청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모 신문사에서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연륙연도교 사업과 관련 오보가 있어 5만여 군민과

6백여 공무원들이 충격을 받고 들끓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 신문기사의 정정 및 사과보도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언론중재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신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와 신청 자격이 있다면 그 절차에 대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신문보도의 내용 중 신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직접 언급된 부분이 있고, 이 내용이 사실과 달라 피해를 입으셨다면 직장협의회의 명의로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사의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신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언급된 사실이 없고, 직장협의회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 없으며, 단지 연륙교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면 신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중재신청의 자격이 없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에서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29일 오후에 한 지인으로부터 제가 방송에 나왔다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는 정말 금시초문인 일이라 어이가 없더군요. 모 지역방송의 아침프로그램에 담배꽂초를 버리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방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선 모자이크 처리 등으로 신원을 공개하지 않다가 저의 경우는 전신 및 얼굴이 공개되어 나오더군요. 정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촬영되어 방송되었는데.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본 상담실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사항을 토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소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2-732-6031로 전화주십시오.



R 문의하신 내용은 자신도 모르게 촬영된 본인의 초상이 본인의 동의 없이 방영된 경우로, 이는 초상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도의 내용 진위여부와 직접 연관이 없는 초상권 침해만의 문제는 저희 위원회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해 직접 도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독자투고형식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저는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한 지역신문의 독자투고 형식을 띤 기사에 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투고자에 대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조만간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 지방 신문사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입니다.

사실 이 신문사에서는 독자의 투고라고 하면서 빠져나갈 것 같은데요. 이 신문에서 독자투고 기사는 이제껏 없었습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 답답합니다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R 신문사의 기자가 직접 취재한 기사가 아닌 독자투고의 내용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 피해를 입었다면 저희 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기사형식의 보도이든, 독자투고형식의 보도이든 그 형식을 불문하고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례(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12. 11. 자 판결 - 87카40175)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재신청을 하시려면 언론중재신청서 양식 및 중재절차를 참조하시고, 지방신문에 게재된 기사이므로 해당지역 중재부로 중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오보로 인한 피해

모 경제신문 2002년 4월 16일자의 코오롱 첨단 인텔리전트 아파트 짓는다라는 기사와 관련하여 연락처를 재접 전화번호로 기재하여 전화가 불통이 될 정도로 통화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R 신문 보도에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피해를 입으셨다면 언론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관련 오보로 인한 피해

본인은 4월 18일 증권사 속보난에 모언론사가 o o o 소프트라는 회사의 특별이익이 3억5천만원인데 3500억이라고 오보하는 바람에 매수를 했다가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항의를 했더니 곧 연락을 주다더니 연락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전화로 왜 연락을 안 해주었냐고 물으니깐 천덕스럽게 무슨 일이나고 다시 묻더군요. 어제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는 등 자기네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사과문이 올려 있으니 읽어 보라고하며 이런 문제로 손해배상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더군요. 너무나 억울해서 하소연 드립니다.

손해 본 금액을 떠나서 이런 거만하고 파렴치한 언론사를 가만 둔다는 건 너무나 서글픈 일입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당해야 합니까? 그 오보 기사가 증권사 속보로 뜬 순간 o o o소프트의 주가는 상한가인 10,300원이었다가 그날 종가는 9,100원으로 끝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대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R 특정 기업에 대한 신문의 기사를 믿고 증권투자를 하였으나 그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는 법원에 해

당 신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해당 기업이 될 것이며, 그 기사의 내용으로 인해 투자자 개인의 명예 등에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투자자의 명예로 중재신청을 하실 수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송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사진 좀 그만...

그제 신랑 친구 아들의 돌잔치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안면도 없는 사람이 저때문에 시어머니께 쓴소리를 들었다며 제가 원망스럽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3일 방송된 모방송의 다큐멘터리 내용 가운데 모유수유한 쌍둥이 엄마가 저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좋은 뜻으로 촬영에 응했는데, 그 뒤 좀 불편한 얘기들이 전해져 속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젖을 먹이지 못한 엄마들로부터 책망도 들었고, 가슴이 다 나오는걸 찍게 한 남편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는 등, 젖소부인이 따로 없다는 비아냥거림에 그렇게 젖이 좋으면 너 혼자 집에서 조용히 먹이란 말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위의 방송내용과 관련한 기사가 실리면 대부분 제가 가슴을 드러내놓고 젖을 물리고 있는 사진이 첨부되어 당혹스럽습니다.

제게 따지고 들었던 그 사람도 모 일간지에 게재된 PD의 기사에 첨부된 사진을 보고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사실 기사 자체는 저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내용임에도 계속 저의 사진을 실는 보도매체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제 사진을 쓰지 못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본인의 초상이 본인의 동의 없이 보도된 경우와는 초상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상권 침해의 문제로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를 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기사의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본인의 사진이 게재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만일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해당 사진이 기사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었음"을 밝히는 내용으로 저희 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언론 피해에 대한 문의

얼마전 모 음반사의 경영문제에 대한 헛소문을 기사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사화했다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헛소문이라고 분명히 밝혔으며 그 회사의 부서 책임자의 코멘트도 성실하게 따랐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군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글을 올려 주신 분이 아마도 기사를 작성하신 본인 것 같습니다. 만일 기사의 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음반회사가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사가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게재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사의 내용에 허자가 없다면 음반회사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기사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면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측이 중립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동호회 글 퍼가기에 대해

안녕하세요? 뜻맞는 사람들끼리 운영하는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우리끼리 글로써 수다를 떠는 내용들을 누군가가 퍼 가서 카페 방장이나 혹은 글 올린 이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신문 기사화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것도 그 글을 쓴 사람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면 사전통보없이 기사화 한 그 기자에게 어떤 권리

를 주장할 수 있는지 빠른 시일 내로 알려주세요.

R 인터넷 상의 발언 내용이 복음의 허락 없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일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거취, 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언론중재 신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4월 20일자 모방송 오락프로의 독서를 권장하는 코너에서 만화와 만화가를 비하하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과방송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만화가들과 만화독자들의 항의 글이 프로그램의 자체 게시판을 통해 계속되고 있지만 제작진은 아직까지 아무런 정정보도나 사과도 없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만화가 단체(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여성만화가협회, 젊은작가모임)의 공식적인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조차 무시되고 있기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몇 가지 문의할 일이 있어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첫째, 신청서류를 작성할 때 보도 자료로 방송의 녹화분을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의 방송이 오락프로라는 특성상 그 방송의 녹화분을 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녹화분을 제출해야 하는지, 신문에 난 관련 기사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둘째, 방송사 홈페이지에 문제가 된 방송의 다시 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만화비하 부분이 상당부분 수정이 되었다는 의심이 가지만, 생방송 녹화분이 없기에 확인해볼 길이 없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물이므로 MBC측에 생방필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셋째, 편집의 의혹은 있으나, 현재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인 프로그램 다시보기 4월 20일자 VOD파일 이 녹화분을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중재신청 기간에,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

월 이내에 해야 하며, 6개월이 경과된 보도에 대해서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있던데, 문제의 방송이 4월 20일에 방송되었으니, 5월 20일까지 중재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인지, 6개월 후인 10월 20일까지 중재신청을 해야한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R 방송사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만화가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전체 만화가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한국만화가협회)가 아닐까 합니다. 그 명의로 거취, 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도내용 중 특정 개인을 지칭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만화가 전체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일지 확실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특정 개인의 이름으로 중재신청을 하실 수는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중재신청을 위해서는 언론중재신청서 양식 및 중재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의 보도내용에 대해 중재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보도내용의 녹화물과 그 녹화물의 녹취본(방송대본과 같은)을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관련된 신문기사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미리 녹화를 해 둔 테이프가 없다는 이 방송의 경우 해당 방송프로덕션에서 해당 프로그램 내용을 구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내용이 방송되었음은 중재신청을 하는 신청인이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VOD파일이라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재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늦어도 6개월 이내에는 중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도일로부터 1개월'이 아닌 '보도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은 피해자가 해당 보도가 있었음을 보도 당일이 아니라 좀 늦게 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늦게 알게 된 경우, 즉 보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보도에 대해서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경우에는 문제가 된 방송이 4월 20일자였고 그 방송을 그 날 보셨다면 5월 20일까지는 중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언론중재 신청과 처리 절차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업무

*중재업무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기관간의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업무

•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하여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재신청서의 제출요령

- 중재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보도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보도문 및 중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을 할 때는 반론보도

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대리인(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서양식은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나 지방사무소에서 무료로 배부하며, FAX나 인터넷 홈페이지(www.pac.or.kr)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 및 처리절차

*중재신청의 종류

• 반론보도청구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자신의 반론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청구

허위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정정 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형사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자신의 결백을 추후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기간

-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보도가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사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중재부의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중재심리

- 중재심리는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

는 중재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할 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중재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출석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중재기일에 해당 중재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중재대리인에 대한 중재부의 허가

- 변호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재기일에 중재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및 합의간주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합의간주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 및 중재불성립결정

-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중재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중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또한 중재부는 중재에 적합치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합니다.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중재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취하 및 취하간주

- 중재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재기일에는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신청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신청은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 전국 15개의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사무처가 있습니다.

- 75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5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5개의 중재부가 있습니다.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중재부의 관할구역

-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방송법, 선거법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조항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월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

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 ①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은 언론계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

한 자를 포함한다)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⑦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중재절차등) ①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언론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제16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 합의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한다.

③ 중재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중재사건의 대상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에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

거소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지체없이 중재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는 자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불성립 결정을 한다. 다만,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⑧ 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중재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사무처의 조직, 시정권고의 방법과 절차, 중재위원회 위원의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제18조 제6항의 중재불성립 결정 또는 제7항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한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론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 2(불복절차) ①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청구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

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 게재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0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언론중재위원의 위촉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 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

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재신청)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중재관할권등) ①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 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중재절차) ①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재재를 요하는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재재방법 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출석요구서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⑤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기일을 지정한다.

⑦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결정문 등) ①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는 때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서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권고) ① 법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⑥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⑦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

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중재부에 사무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사무처 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 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등) ① 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

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방 송 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 ①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반론보도청구권은 당해 방송이 행하여진 날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된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주소를 기재하며, 이의 대상인 보도내용과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반론보도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요구받은 날부터 9일 이내에 무료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한정되며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반론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 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⑧ 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 및 심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를 행하며,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18조·제19조·제19조의2·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 ① 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

표하여야 한다.

-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 ④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각각 중재부에 사무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사무처 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 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등) ① 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

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방 송 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 ①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반론보도청구권은 당해 방송이 행하여진 날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된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주소를 기재하며, 이의 대상인 보도내용과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반론보도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요구받은 날부터 9일 이내에 무료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한정되며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반론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 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⑧ 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 및 심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를 행하며,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법 제18조·제19조·제19조의2·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

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청구)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
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
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
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
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
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후보자나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
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
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
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
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
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
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정기간행물의 등
록등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
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
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반론보도청
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
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
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
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를 거
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나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
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
받은 때부터 18시간 이내에 심의
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후보자
와 방송사 또는 언론

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
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
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
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
여야 한다.

④ 방송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
권) 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선거방송에 관한 반론보
도청구에, 정기간행물의 등록등
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
구권) 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의 규정은 정기간행물의 선거기
사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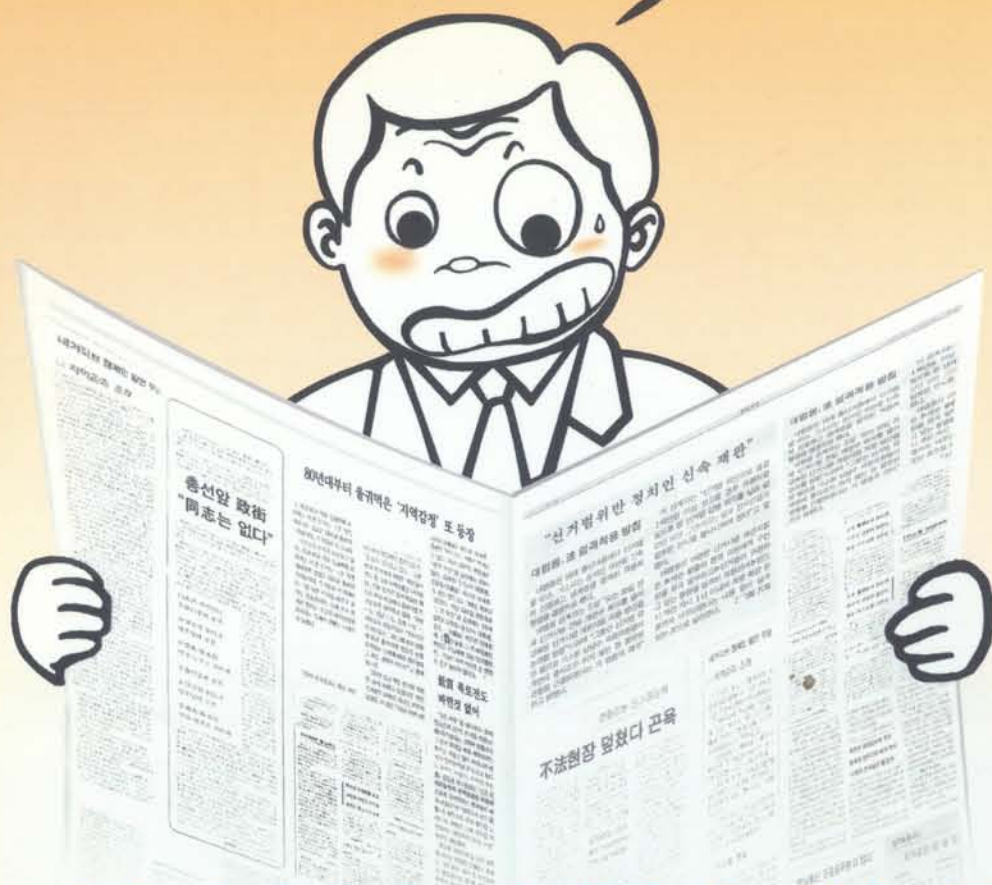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통
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
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
회)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4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나. 제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



아니? 어떻게 이런 기사가...



불공정한 선거 기사로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찾아 주십시오.
왜곡되고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 바른 선거문화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심의합니다.
- 선거기사에 대한 후보자의 시정요구를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 불공정한 선거기사에 대한 사과문, 정정보도문 게재 및 주의, 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후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사건을 회부받아 심의하여 반론보도 게재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제보해 주십시오. (<http://www.pac.or.kr>)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상담: (02)732-6023~4

<http://www.pac.or.kr>